



2012



#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2012**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2012

인 쇄 2012년 4월

발 행 2012년 4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9,500원

기획디자인·인쇄 두일디자인

전화 2285-0936

ISBN 978-89-8479-653-9 9334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사무실 : 394-0337

# 북한인권백서

**2012**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2012**

김 수 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 국 신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 순 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 현 준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조 정 현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 목차

일러두기	9
요약	13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41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42
2. 북한의 인권개념	49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54
II.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61
1. 생명권	62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92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40
4. 평등권	183
5. 자유권	203
6. 종교의 자유	252
7. 참정권	273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279
1. 식량권	280
2. 사회보장권	294
3. 건강권	299
4. 근로권	318
5. 직업선택의 자유	323
IV. 소수자 인권 실태	331
1. 여성권	332
2. 아동권	360
3. 장애인의 권리	387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403
1. 납북억류자	404
2. 국군포로	425
3. 탈북자	429
2011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460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	470

# 표·그림 목차

〈표 II-1〉 2009년 개정 북한형법의 사형 구성 요건	63
〈표 II-2〉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64
〈표 II-3〉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본 공개처형 사례	85
〈표 II-4〉 북한의 구금형태	95
〈표 II-5〉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96
〈표 II-6〉 북한의 강제노동 처벌	103
〈표 II-7〉 개천 14호 관리소의 운영 실태	129
〈표 II-8〉 북한 행정처벌법상 행정처벌의 종류와 대상행위	173
〈표 II-9〉 행정처벌 부과 기관 및 대상행위와 처벌 종류	173
〈표 II-10〉 여행증 관련 불법사례	209
〈표 II-11〉 강제추방 사례	219
〈표 II-12〉 남한 방송 및 CD-R 시청 관련 내용	227
〈표 II-13〉 MP3 관련 증언	228
〈표 II-14〉 한국노래(음악) 처벌 관련 증언	229
〈표 II-15〉 핸드폰 사용 처벌 사례	231
〈표 II-16〉 녹화물 처벌 사례	235
〈표 II-17〉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255
〈표 II-18〉 종교시설 관련 증언	257
〈표 II-19〉 북한 종교단체 현황	260
〈표 II-20〉 북한 종교 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262
〈표 II-21〉 종교 처벌 관련 증언	265
〈표 II-22〉 미신행위 처벌 관련 증언	267
〈표 II-23〉 10대원칙 및 생활총화 관련 증언	272
〈표 III-1〉 아사자수 및 영양상태	287
〈표 III-2〉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290
〈표 III-3〉 호담당의사제의 유용성	303
〈표 III-4〉 예방의학 실태	304
〈표 IV-1〉 연령별 장애아동	388
〈표 V-1〉 전쟁 시기 납북자 규모	405
〈표 V-2〉 전시 납북자 연령분포	406
〈표 V-3〉 6·25전쟁 납북자 결정 현황	411
〈표 V-4〉 납북 및 억류자 현황	411
〈표 V-5〉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412
〈표 V-6〉 귀환 납북자 현황	412
〈표 V-7〉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417

# 표·그림 목차

〈표 V-8〉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419
〈표 V-9〉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및 인정 현황	424
〈표 V-10〉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424
〈표 V-11〉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426
〈표 V-12〉 탈북과정 중 사살 사례	432
〈표 V-1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448
〈표 V-14〉 탈북자 처벌 사례	452
〈표 V-1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453
〈표 V-16〉 인신매매 관련 처벌 사례	454
〈표 V-17〉 최종탈북 - 남한입국 기간 별 탈북자 통계	457
〈그림 II-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령	66
〈그림 II-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1)	69
〈그림 II-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2)	70
〈그림 II-4〉 전거리교회소 2과와 5과 건물 내부 모습	97
〈그림 II-5〉 전거리교회소의 운영 실태	98
〈그림 II-6〉 전거리교회소 모습	99
〈그림 II-7〉 청진 도 집결소 모습	107
〈그림 II-8〉 정치범 수용소 위치	124
〈그림 II-9〉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127
〈그림 II-10〉 북한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	168
〈그림 II-11〉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	169
〈그림 V-1〉 납북자 사진	416
〈그림 V-2〉 납북자 사진	416

# 일러두기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납북자 등 남북간 인도주의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술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전문 분야로서 여성권, 아동권, 장애인권리로 실태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개정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특정국가의 인권실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접근하여 조사를 통해 기술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당국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 국제비정부기구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인권침해 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통일연구원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핵심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2』는 2011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1,983명)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230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2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1년 심층면접을 실시한 23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56	24.35
	여자	174	75.65
소계		230	100
연령대	10대(1993년 이상~)	5	2.17
	20대(1992~1983년)	74	32.17
	30대(1982~1973년)	55	23.91
	40대(1972~1963년)	56	24.35
	50대(1962~1953년)	24	10.43
	60대 이상(~1952년 이하)	16	6.96
소계		230	100
최종탈북연도	2000년 이전	12	5.22
	2001~2005년	24	10.43
	2006~2010년	95	41.30
	2011년 이후	99	43.04
소계		230	100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명)	비율(%)
탈북횟수	1회	130	56.52
	2회	59	25.65
	3회	27	11.74
	4회	5	2.17
	5회	3	1.30
	6회	3	1.30
	10회	1	0.43
	무응답	2	0.87
소계		230	100

이렇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NKHR201100000)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을 북한인권백서에 인용할 경우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 심층면접과 별도로 특정 권리에 대해 심층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 연월일, 서울에서 면접”으로 출처를 명기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수기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인민보안부 포고문, 판결 문서 등 일부 입수한 북한문건을 활용하였다.

셋째,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좋은벗들의 오늘의 북한소식, 데일리NK의 보도 등을 활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넷째, 북한당국이 유엔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최종 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 등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



(UNFPA), 한국 통계청 등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필요할 경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북한문헌 등 북한원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을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제약 속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백서 2012』를 작성하였다. 본 백서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논의와 활동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4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 요약

##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구비한 북한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당·국가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행·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보장권을 중시한다는 사회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북한경제가 만성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잘못된 자원 배분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하였다.

북한체제의 이념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주적 존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자주성은 개인의 창조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개인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라고 주장하여 개인의 자주성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에 종속시키고 있다.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혔다고 공언하는 주체사상이 제시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실질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세계관이며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통치이론이다. 수령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고 규정하여 봉건적인 세습권력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체제위기 상황에서 핵개발을 통해 정권 안보를 추구해 온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 수술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후계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대외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이 남한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2010년 9월 28일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하여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1년 북한 정권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고화하기 위해 당·국가기구의 간부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지속하였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김정일 사후 북한은 김정은 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 Ⅱ.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 1. 생명권

2011년 북한의 공개처형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지역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공개처형을 목격한 북한 주민의 탈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11년 현재로서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이 줄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1년 북한의 공개처형이 감소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실시하거나 무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북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공개처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개처형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전반적인 부패 만연과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공개처형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함경북도 지역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내륙지역보다는 국경지역이 그리고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공개처형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처형 사유로는 경제사범, 사회일탈, 마약 관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처형 대상 범죄행위가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체제저항 행위, 살인죄, 살인, 강간, 인신매매 등의 사회일탈행위, 외부 정보 유통, 마약 밀수 및 밀매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인한 행위,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 국가재산 탕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증언이 없었던 인육을 먹는 행위, 가축 절도 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및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통제강화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가중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일반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공개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평양시 재판소는 리성철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였다. 2010년 9월 최고재판소는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의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평안북도 재판소는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를 적용하여 김춘남에게 사형을 판결하였다. 최고재판소는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처형 집행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 문건들은 북한이 공개처형을 함에 있어서 형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들로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공개처형이 위의 문건에 나타나 있는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구금 및 교정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구금시설 반장이나 동료수감자들이 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도원이 직접 가혹행위를 가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영양 및 의료상황도 심각하다. 수감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노동을 시키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배려는 하지만 약품 제공과 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 강제

노동과 가혹행위로 인한 부상과 질병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으며, 질병과 부상,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집결소의 경우에는 청진 집결소, 교화소의 경우에는 전거리교화소, 구류장의 경우에는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구류장에서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경우에는 북한의 주민 통제 및 단속 강화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서의 침해 사례가 증언되고 있는데,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의 사례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언되고 있다.

북한 내에는 6개 정치범수용소에서 15~20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남한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가족이 탈북한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수용하는 사례,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을 이유로 수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수기 발간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무려 27년간 수용되었다가 탈북한 김혜숙은 수기 『눈물로 그린 수용소』에서 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 북창 18호 관리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회령 22호 관리소의 실태도 추가로 증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각자 일은 각자가 완수해야 하고,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밤과 낮에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고 한다. 또한 22호 관리소에는 ‘수로’가 있었는데 이는 유사시 수용자를 사살할 경우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수로에 익사시킬 목적이었다.

###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례는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시간이나 예심 또는 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사례도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제상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제1심 재판에 참여해야 하지만 재판 전 단계인 수사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시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북한은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지공개재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많은 경우 공개처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지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로 나타나고 있다. 공개재판 사유는 인신매매, 살인, 성매매 등의 사회일탈에 따른 공개재판이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사범과 ‘도강’(탈북)에 따른 공개재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공개재판의 결과로는 유기노동교화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공개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재판의 증감을 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지심판은 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지만 동지심판 이후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증언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지심판은 주로 군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탈영, 불법월경 등의 사유로 동지심판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 및 식량난이 북한 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소기간은 형식상 준수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상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가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신소'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변호사법에서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북한주민들은 변호 받을 권리를 모르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역할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보다는 조선노동당 정책을 설명하거나 피의자의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례도 있지만 변론을 아예 하지 않거나 피고의 죄행을 폭로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북한은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을 근거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최근 핸드폰 사용, CD-R(녹화물) 유통, 장마당 단속 등과 관련하여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 등 형사처벌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한편, 북한 후계구도와 맞물려 주민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폭풍군단'이라는 조직을 동원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부패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단속과정이나 수사 및 예심 과정, 구금 및 교정시설, 형사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

#### 4. 평등권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호위총국 등을 제외하면 성분(토대)보다는 경제력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가 확

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입당과 간부등용에 있어서 조차도 뇌물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에 다녀온 사람도 뇌물을 바치면 입당할 수 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뇌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뇌물수수료 토대까지 바꿀 수 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맞물려 뇌물수수가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남한으로의 탈출을 기도한 사람이나 정치범수용소 수용 전력에 있는 사람은 입당이 불가능하다. 월남자 가족들,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인 경우도 입당과 군입대, 간부등용,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당이 이점이 없어 돈을 써가며 굳이 입당을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사회를 떠받치는 당 조직까지 성분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자유권

자유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용인되지 않고 있다. 첫째,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비록 사회주의헌법상에는 거주 및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 없이 거주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할 수 없다. 여행이나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람은 당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나 이전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노동단련대 또는 교화소에 가게 된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불법적인 여행 및 거주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뇌물에 의해 여행증명서가 발행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여행증명서 없이 여행하다 발각될 경우 담당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면 해결된다. 심지어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처음부터 여행증발급 자체를 하지 않은 채 발각될 경우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 경제난 이후 거주 이전의 불법화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집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최빈곤층은 집을 팔고 ‘꽃제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범은 물론 경제사범이나 사회사범들도 강제추방된다. 절도범, ‘도강자’(탈북자를 지칭하는 북한어), CD-R 시청자 등이 강제추방의 대상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담당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도 사회주의헌법 상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언론과 출판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오직 국가기관의 신문이나 방송만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용되지 않은 책이나 CD-R 등을 보거나 유포할 수 없다. 이것을 어길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밀리에 남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몰래 시청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다. 남한 방송 청취나 텔레비전 및 CD-R 시청, MP3 사용이나 남한노래 청취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계 핸드폰을 통한 남한과의 통화가 많은 국경지역 시·군·리들에 대한 단속 및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도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법적인 행위도 뇌물을 주면 해결된다는 점이다.

셋째,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 북한도 사회주의헌법상으로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넷째,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는 없다. 북한도 사회주의헌법상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신검열, 가택수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이것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데에 더 정신을 쏟아붓고 있어서 더욱 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하려고 하며 상호비판 같은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인민반장은 국가안정보위부나 인민보안부와 연계되어 있다.

## 6. 종교의 자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인식하에 종교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6·25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당국은 대외적 선전을 위해 종교단체를 재조직하였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54조)”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종

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진보적인 면을 보였으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들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세 개의 종교단체로 재조직하고, 남한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정투쟁과 통일방안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당시 종교는 대남정치 선전에 동원되었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북한은 법률개정, 종교건물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등 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정책의 변화는 우선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1992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제68조)”고 규정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반종교선전의 자유가 삭제되었다.

종교시설에는 불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정백사원, 보현사, 신계사, 영통사 등이 있다. 또한 지하교회가 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는 미신이 성행하고 있다. 북한은 미신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가 불확실한 간부들이 더 많이 이를 선호하고 있다.

## ● 유일사상 10대원칙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다. 북한당국이 외세침탈 수단과 사회

질서 문란의 요인으로 종교를 인식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수령유일지배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절대적 존재인 김일성·김정일의 위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는 유일지배체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절대적 지도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10대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활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일반주민들에게 생활총화를 통하여 10대원칙을 철저하게 내재화시키고 있다. 당 생활총화시에 발표자는 꼭 10대원칙을 인용한다. 어떤 북한이탈주민은 10대원칙이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다고 주장한다. 다만,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반주민들의 경우 10대원칙을 여기지는 않지만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 7. 참정권

북한은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대의제도 원리를 수용하여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다. 북한의 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일반·평등·

직접·비밀투표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실질적으로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투표방법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주관 하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되며 투표절차는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 주민들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만일 선거를 거부할 경우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2009년 3월 8일에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직후 북한 당국은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99.98%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선전하였다. 2011년 7월 24일 도·시·군 인민회의의 선거에서도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도·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 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 〈종합 평가〉

2011년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하였다. 북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가중,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주민통제 및 처벌 강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첫째,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에 공개처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의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새로

운 전기를 맞이한 북한이 공개처형을 확대할지의 여부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집결소, 구류장,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 열악한 영양상태와 의료 수준으로 인한 사망사건도 지속되었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도 여전하였다. 변호권을 비롯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도 지속되었다.

셋째, 법치와 관련하여 공개처형 승인요청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는 북한이 형사법 분야에서 법 규정을 준수하는 사례로 북한에서도 법치 의식이 빠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식량난으로 인한 탈영과 불법월경을 사유로 실시된 군대 내에서의 동지심판 사례들이 주목된다. 북한 군대도 식량난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식량난이 지속될 경우 선군사상의 핵심 주체들인 북한 군인들의 질서와 규율 문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경제력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입당과 간부등용 조차도 뇌물로 해결되며, 나아가 입당의 이점이 없어 입당하려 들지 않는다는 증언들이 주목된다.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한 결과로 분석된다.

###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 1. 식량권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배급체계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가운데 기형적으로 변형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에 차별을 받게 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해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주요 기관·기업소에서 식량 자력 조달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의 경우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배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농민들의 식량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어 배급체계에서 소외된 가정의 경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를 활용한 체제 유지를 도모하면서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 내부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량권의 차이는 군복무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면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층별·직종별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에 따른 차별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차별적 배분정책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의 일부나 전부를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별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식량에 대한 접근 차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1월 말 전격 실시된 화폐개혁이 북한주민의 식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화폐개혁 이후 일반주민들이 적응하면서 식량에 대한 최악의 접근 상황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량구입 방식과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 양에 대한 접근의 차별과 더불어 식량의 질(종류)과 부식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

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화폐개혁 이후,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의 사람들 속에서는 아사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아사자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최하류층의 경우 극단적으로 헌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2. 사회보장권

북한당국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와 실천 간 커다란 괴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필요한 재원의 부족이 핵심요인이지만 북한당국의 지역과 성분에 따른 차등정책도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당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난과 배급체계의 와해가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권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연로연금을 지급받더라도 배급체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시장의 구매에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 사실상 연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 부양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거나 장사에 나서기도 한다. 둘째, 경제난으로 연금수급자 대상에 포함이 되나 수급경험이 없는 사례도 많다. 또한 연로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로연금에 해당되는 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기업소에 다녀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수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셋째, 산재의 경우에도 연로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산재보장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돈을 바치고 자격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3. 건강권

북한은 형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무상치료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다. 북한에서 전반적 무상의료제의 붕괴는 계층별로 건강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주민과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 수준과 접근기회의 차이는 북한 내 계층별 의료 혜택 수혜 불균형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차적인 통합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 보건 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담당구역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권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첫째,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 지급되는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권 계층과 간부들은 제한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연줄과 권력에 의해 제한된 의약품이 제공됨으로써 건강권에 차등적 접근이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개인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구매력에 따라 효능에 차이가 있는 약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이것이 건강권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구입하는 의약품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 사이에 약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사서 먹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약의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난에 따른 치료를 위한 마약 복용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치료 항목이 사실상 실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입원하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병실에서 필요한 대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치료와 입원할 경우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해야 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의료혜택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은 수술과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우선 친척 등 연줄을 통해 수술을 주선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진료를 받는 순서도 뇌물 여부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돈의 제공 유무에 따라 진료 순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난으로 의사들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여 받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가정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의사들이 부족한 의약품마저 병원에서 빼돌리면서 하층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근로권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무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사회주의노동법 제2장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해 노동자들이 일할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장사에 나서고 있다.

북한 내에서 노동정량 평가와 이에 따른 보수 지급은 상반된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약간의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노동정량을 평가하고 노동정량 평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노동정량을 평가하지만 평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 5. 직업선택의 자유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소질·능력은 부차적이다. 당의 직장배치에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건설현장 등에 '무리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을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2011년에도 탄광을 중심으로 무리배치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뇌물을 상납하여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무역기관과 같은 곳에 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직장에 무단결근 하면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는데 대부분 뇌물을 주고 해결하고 있다.

## IV. 소수자 인권 실태

### 1. 여성권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북한 여성들은 여전히 국제인권규약 및 협약에 명시된 주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현행 여성 관련 법·제도 역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북한의 관련 법·제도가 표방하는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이를테면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8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가정에서 세대주(남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대주의 권위 및 지위 약화와 여성의 위상 제고는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여성들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강제 납치, 또는 유인에 의한 인신매매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원해서 ‘도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특히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사례가 적지 않게 알려지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행은 단지 성적 만족을 위해서이거나, 또는 구금시설에서의 편의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대가성의 성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이전과 다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성매매가 많아졌으며, 부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딸을 성매매로 내모는 사례도 있다. 또한 조직적인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지만, 성매매 알선 브로커가 있고 브로커는 보안원을 끼고 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여성의 건강문제도 나아지지 않았다. 관련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사망비(정상출산 10만 명당 사망하는 산모의 수)와 영유아 사망률(생후 1년 미만 영유아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구금시설에서의 강제 낙태로 인해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임신한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낙태를 시키며, 이를 위해 복부 구타와 심한 강제 노동, 수술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을 채택,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 인권 규탄 및 개선 촉구를 의식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의도성 있는 법제정일 개선성도 낮지 않다고 할 때, 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

## 2. 아동권

북한의 대다수 아동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교육시설도 대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마약이다.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마

약 복용 및 거래가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 하루를 연명해 가는 아동들은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수용시설로 보내지만 아이들은 수용시설에서의 통제와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를 못해 수용시설을 몰래 빠져나와 다시 거리를 떠돌며 산다고 한다.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성매매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동을 수용하는 구급시설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급시설에 아동이 수용되어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례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며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1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제40조에서도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해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그 외의 과목에 대한 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조선소년단’ 생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 등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로 인해 북한의 아동들은 교육에 의한 보편적 인격의 완성을 방해받으며, 집단화·획일화된 학습활동과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는 특정학습을 강요당함으로써 교육내용을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들은 연례적인 농촌지원 외에도 수시로 각종 노동현장에 동원되어 일을 해야 하며 중학교 5학년이 되면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을 해야 하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다.

2010년 12월 22일,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이하 아동권보장법)을 채택, 발표하였다.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를 다수 반영하고는 있다. 그러나 선언적 규정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상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민권과 자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법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 장애인의 권리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 북한당국의 장애인 차별대우는 다음의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난쟁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정관수술의 시행과 격리시설의 운영이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0%가 난쟁이를 ‘격리 수용한다’고 답하였으며 난쟁이 강제불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18%가 ‘한다’라고 답하였으나, 목적, 또는 전해들은 때는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장애인 차별대우는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난쟁이를 격리에서 풀어주었으며 난쟁이 격리시설이 해체되었다는 증언들도 있다. 또한 최근의 평양 방문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일부는 평양과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2011년의 조사에서는 장애인 목격 사례와 관련하여 ‘지체장애’(61%), ‘시각장애’(14%), ‘언어장애’(13%), ‘정신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말하는 지체장애는 소아마비, 난쟁이, 꼽추, 신체일부 상실 등의 장애를 뜻한다.

북한당국은 ‘장애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와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모색, 추구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애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하였다. 북한에서는 소아마비, 맹인(시각장애인), 병어리(언어장애인), 꼽추, 앓은뱅이(하반신장애인), 난쟁이, 신체일부 상실자 등의 장애인이 드물게 눈에 띄는 편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장애인 시설로 농아(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와 맹인(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와 재활센터가 있으며, 영예군인 공장을 비롯하여 맹인과 농아 등 일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공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꼽추, 소아마비 등의 장애인들은 지역 편의봉사시설(편의봉사관리소)에서 도장 만드는 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 등을 수리하는 일 등의 경노동을 하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타를 연주하여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 1. 납북억류자

6·25전쟁 시기 납북억류자의 문제는 남북 간 체제경쟁시기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발생한 실종사유에 대해 월북과 납북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납북자의 ‘행방불명’이 가족 전체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에 이어 2008년 7월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2010년 3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정부위원(5명)과 전시납북자가족(3명), 민간위원(6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4년간 전국 시군구단위에서 납북피해신청을 접수하여 정부차원에서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강제 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국장급 공무원과 전문가, 납북자가족단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납북자 결정 예비심사, 신고 홍보방안 구상 등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2011년 12월까지 총 4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납북피해 신고 접수된 총 1,034건 중 319건에 대해 납북자 여부를 심사하고 이 중 272건을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하였다.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이고, 이들 납북자 중 일부가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최근 탈북하여 귀환한 8명을 제외하면 현재 총 517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4월 2일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납북피해자가 귀환하는 경우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인과 가족이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2011년 12월까지 총 40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25건에 대한 피해위로금 및 정착금 등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한편,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확인 및 송환 운동이 2011년 5월 신숙자씨의 고향 통영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1월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씨를 면담하고 12월에는 캐나다 의회가 신숙자씨 모녀 관련 결의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 2. 국군포로

국군포로는 적국 등에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인을 의미한다. 6·25전쟁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만 2,000여 명이었으나,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전쟁포로 상호 교환에 의해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기준으로 귀환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고 있다. 귀환한 국군포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 3. 탈북자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등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이동경로인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합법적인 해외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한 국경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는데, 2011년에도 탈북자 단속 강화 경향은 지속되었다.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 차원에서 국경경비대의 탈북자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혜산시의 국경초소에는 인민무력부 산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 배치되었으며, 10월 25일에는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측 도로에 올라섰던 한 탈북자가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12월 31일에도 40대 북한 남성 3명이 역시 혜산에서 압록강을 건너다 북한 경비병들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민을 적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해상탈북을 막기 위해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소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탈북자를 ‘적대계급’으로 규정한 북한 당국은 1천 가구 이상의 탈북자 가족을 산골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으며,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탈북자 가족에 대한 박해가 한층 심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탈북여성이 강제 송환되는 경우 상당수의 자녀들이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또 대다수의 탈북여성 자녀들은 중국호구가 없어 적절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만 명에 달하는 이들 탈북 고아 문제가

최근 중요한 인권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성폭력 등 관련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인 미해결 인권 과제이다. 2009년 이후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은 2011년에도 대폭 강화된 국경통제와 함께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 가족을 인신매매범으로 규정하여 강제 추방하는 사례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1년 2,737명(잠정)의 탈북자가 국내로 입국하여 현재까지의 총 국내 입국인원은 23,100명을 기록하였다. 탈북자의 한국 입국 소요시간이 점차 짧아져, 탈북 후 1년 이내에 국내 입국한 경우가 2009년 30%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동반 입국자의 비율도 2009년 12%에서 2011년 상반기 49%로 크게 상승하였고, 한국에 이미 정착한 가족이 있는 비율도 2009년 23%에서 2011년 상반기 47%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도 해상으로 입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데, 서해를 통해 4건, 동해를 통해 2건 등 총 6건의 해상탈북사례가 있었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과 정착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등 제3국으로 재이동하여 정치적 망명 내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 망명' 사실이 드러나 국내로 귀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돕는 시설인 제2하나원 착공식이 2011년 7월 개최되었다. 2012년 말 제2하나원이 완공되면 1년에 최대 5,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받을 수 있고 고학력·전문직 탈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I

##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1



##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 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에 의한 인권유린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1945년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의한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한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주요 산업시설 및 토지를 국유화하였다. 사회주의정권은 계획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 사회를 집단주의원칙에 의해 조직하였다. 북한은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폭력수단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병영국가 (garrison state)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sup>1</sup>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구비한 북한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은 당·국가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다.<sup>2</sup> 즉, 북한주민들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1. Harold Lasswell, “The Garrison State and Specialists on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6 (January 1941).

2. 전체주의체제는 ① 정교한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② 일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통치, ③ 비밀경찰에 의한 심리적·물리적 테러체제, ④ 라디오·신문·영화 등 대중매체에 대한 총체적 독점, ⑤ 무장력의 효율적 독점, ⑥ 중앙집권적 통제·지시 경제체제

못할 뿐만 아니라 여행·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으며 직장배치도 조선노동당에서 결정하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 중국과 소련의 이념분쟁이 격화되자 김일성 정권은 주체사상을 제시하고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인 당의 지도이념으로 격상시켜 개인숭배와 부자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하였다. 주체사상은 그 후 점차 조선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74년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10대원칙을 발표하여 김일성 우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 모순으로 인해 성장이 거의 중단되었다. 이에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을 격감하고 ‘하루에 두 끼 먹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의 직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며 ‘선군정치’로 불리는 새로운 군사주의적 통치방식을 내세웠다. 선군사상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군대가 정치·경제·사상·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면 인민들의 창조적 활동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체사상을 보완한 것이다.<sup>3</sup> 선군정치는 북한의 체제위기 원인을 제국주의 침략정책 탓으로 돌리며 국가재정을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북한경제가 만성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는 잘못된 자원 배분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failed

등의 특징을 가진 체제를 의미한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3.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 83.

state)로 전락하였다. *Foreign Policy*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010년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 북한을 ‘실패한 국가’ 19위로 선정하였고,<sup>4</sup> 2011년에도 실패한 국가 22위로 기록하였다.<sup>5</sup>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 수술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북한은 세습 후계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세습 후계체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강경정책을 추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체제생존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한 국제제재를 받게 되었다.<sup>6</sup>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이 남한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공격으로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2010년 4월 북한의 치안기구인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승격하여 개편하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탈북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였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등 정보기관 요원들을 중국 각지에 대규모로 파견하여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북한에 송환된 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였다. 탈북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양강도 등으로 추방하여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개최된 제3차 조선노동당대표자회는 27세 나이에 불과한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여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

4. *Foreign Policy* (July/August 2010), pp. 76~90.

5. *Foreign Policy* (July/August 2011), pp. 48~49.

6.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를 확대 보강한 것으로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2009),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141st meeting (June 12, 2009).

으로 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하여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1년 북한 정권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고화하기 위해 당·국가기구의 간부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지속하였다. 특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sup>7</sup>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김정일 사후 북한은 김정은 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체제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부가 교체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나. 경제난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회주의국가들은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보장권을 중시한다는 사회권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한편,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가기구를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데 있다.

1990년대 초반 북한경제는 외화난·에너지난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하였다.<sup>8</sup> 북한당국의 계획경제체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1995~1997년 잇

7. 최진욱 외, 『2011년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서울: 통일연구원, 2011.8), pp. 36~37.

8. 북한경제는 1990년 -3.7%, 1991년 -5.2%를 기록하였다.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 결과』(1995.6.19).

따른 수해로 이미 부족하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식량배급이 중단되자 굶주린 주민들은 북한 각지로 이동하며 생존을 위해 식량을 절취하고 공장 설비를 뜯어다 장마당에 팔아먹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들이 아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였고,<sup>9</sup>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이 급증하였다. 이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여 유엔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식량난을 완화하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분적이지만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경제개혁을 모색하였다. 2002년 7월 1일 발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1조치)는 가격 보조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소비품과 중간재 가격을 현실화하였다. 시장경제 기능을 도입한 7·1조치로 인해 경공업과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증대하고 상업·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7·1조치는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의 기본틀 내에서 일부 시장 공간을 허용하여 공식 계획경제 부문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sup>10</sup> 2005년 북한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우려한 북한당국은 일부 지역에 배급을 재개하고 주민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식량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배급제는 곧바로 다시 중단되었다.

북한경제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2009년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과 서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대부분 단절되

9. 통계청은 1996~2000년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3만 6천 명, 출생 손실은 9만 9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5~2005년 11년간 정상적인 사망률을 넘는 초과 사망은 48만 2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 『1993~2005 북한 인구추계』(보도자료, 2010.11.22), pp. 12~13.

1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p. 164~165.

었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축소되었다. 대외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sup>11</sup> 하지만 화폐개혁으로 인해 쌀 가격 등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다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남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을 대부분 중단하였는데 그 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재발하자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대북 인도지원 사업마저 전면 중단하였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0.9%, 2010년 -0.5%를 기록하였다.<sup>12</sup>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북한은 2011년 경제정책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인민생활 향상’을 설정하였다. 북한당국은 2011년 초부터 경공업 부문의 발전, 석탄 생산 증가, 농업 생산 증진 등을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독려했다. 그 결과 올해 한 해 동안 경공업 부문과 농업생산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으로 인해 시장 물가가 급등하여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하층계급 주민들의 생활난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실태 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 약 610만 명이 식량조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sup>13</sup> 즉 북한 전체인구 약 2,400만 명 중 25% 이상이

11.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12. 한국은행, 『2010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1.11.3), p. 1.

13. World Food Programme(WFP)·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UNICEF,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pecial Report, March 24, 2011)*.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발육을 하지 못하고 결핵 등과 같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보건·의료체계가 마비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2



## 북한의 인권개념

### 가. 집단주의원칙과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인권인식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북한체제는 인권을 계급적 시각을 반영한 집단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2조는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 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4</sup> 사회주의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조선노동당 규약은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과 혁명의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계급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010.4.9.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

15.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2010.9.28.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수정보충).

노선과 인민독재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의 자유권은 북한에서 원칙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와 생존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북한은 인권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를 생존권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주의원칙을 강조한 사회주의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식량난도 해결하지 못하여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생존권의 실질적인 의미는 개인의 생존권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북한이라는 집단의 자주적 생존권이다. 북한은 생존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즉,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sup>16</sup> 미국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권외교를 제국주의적 개입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는 북한은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7</sup> 따라서 ‘인권은 국권이며 국권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국가주권을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17조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적인 주권의 평등원칙을 내세워 소중한 가치로서

16. 리경수,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 『로동신문』, 2010년 10월 7일.

17.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11.2), 『김정일 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53.

지키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념의 실체는 사회주의적인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통치자의 절대 권력에 종속되는 봉건적 논리이다.

## 나.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인권개념

북한체제의 이념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sup>18</sup>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주체철학은 사람을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이론을 계승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석은 제한된 의미만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즉, 유물변증법은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을 밝힐 수 있어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은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철학은 유물변증법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인 인간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밝히지 못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인간에 대한 바른 과학적 이해를 완성했다고 주장한다.<sup>19</sup>

주체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주적 존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강조하는 자주성은 개인의 창조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개인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sup>20</sup> 그

18. 주체사상을 처음 체계화시켜 발표한 논문은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3.31)이며, 그 후 1985년 발간된 주체사상총서 10권은 주체사상·혁명이론·영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9.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48~149.

20. 위의 글, p. 162.

리고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라고 주장하여 개인의 자주성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에 종속시키고 있다.<sup>21</sup>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혔다고 공언하는 주체사상이 제시한 ‘인간중심의 세계관’은 실질적으로 집단주의적인 세계관이며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통치이론이다.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로 규정된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10대원칙은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④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등을 명시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sup>22</sup> 그리고 “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고 규정하여 봉건적인 세습권력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주체사상을 반영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시작하였다.<sup>23</sup>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 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를 베풀어

2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p. 160.

22.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4).

23.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4.

나라 전체가 화목한 대가정을 형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권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인 봉건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인권개념은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인권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 3



##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으로 굶주린 북한주민들이 대량으로 북한을 탈출함으로써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가 국제사회에 크게 노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레짐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2005년 3년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2004년 4월 제60차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이행실태를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에 매년 각각 한 번씩 보고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당시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태국 출신 비딧 문타폰(Vitit Muntarbhorn) 교수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sup>24</sup> 한편,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2006년 3월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sup>24</sup> 문타폰은 2010년 6월까지 6년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수행하였고, 그후 인도네시아 출신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이 새로 임명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4월부터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를 통해 1년에 48개국, 4년간 192개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이 자국 내 인권상황을 보고하여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2월 7일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대상국이 되어 북한 내 인권상황을 국제적으로 점검받았다.<sup>25</sup> 2010년 3월 1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당시 북한은 2009년 12월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항목 가운데 공개처형 금지, 강제수용소 폐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등 50개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태도를 보이지 않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 개선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3월 24일 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는 한편,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였다.

한편,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1년 11월 2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전년도와 같이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sup>26</sup> 북한인권결의안은 먼저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25.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에서 진행되는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하여 발언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편, 『2009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 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3), pp. 129~157.

26. UN General Assembly Sixty-sixth session Third Committe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C.3/66/L.54 (28 October, 2011).

그리고 북한이 2010년 3월에 발표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결과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대화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최근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보건·교육·개발 영역에서 인권개선 움직임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문과 비인간적인 구금, 독립적인 사법제도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사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거주·이전의 자유 부재, 탈북 송환자에 대한 가혹한 법집행, 표현·사상·종교의 자유 탄압, 인신매매·매춘·강제낙태, 장애인에 대한 집단적 박해, 노동단결권 불인정 등 심각하고 조직화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외국인을 강제 납치한 후 이 문제에 관해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북한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와 식량 거래마저 금지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당국에 대해서 인권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유엔의 범세계적인 인권증진 활동은 지역기구, 개별 국가 및 국제비정부기구(NGO)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개되고 있다. 사실 유엔·유럽연합(EU)·미국·국제비정부기구는 세계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권침해국에 대해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공동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1년 6월 북한과 처음 인권대화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핵개발을 지속하자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2005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유럽연합과 대화를 단절하였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2007년 다시 외교적 접촉을 확대하였다.<sup>27</sup> 하지만 2009년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유럽연합과 북한 관계는 또 다시 냉각되었다. 유럽연합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에 관해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대화를 통해 개방으로 이끈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유럽연합 식량평가단은 2011년 6월 6~15일 북한을 방문하여 병원·유치원·시장·협동농장 등을 둘러보고 북한의 식량사정을 평가하였다. 그 후 7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북한 동북부 지역 650,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0만 유로 규모의 긴급 식량지원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sup>28</sup>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며 국제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8년 9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sup>29</sup>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인권외교는 자유권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빈곤타파 등 생존권 문제 해결에도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제2차 핵실험 등 도발적 공세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북 인권정책을 시도하지 못 했다. 미 국무부가 2011년 4월 발표한 「2010년도 국가별

27\_2007년 10월 제3차 EU-북한 경제워크숍이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6월 제9차 정치대화 및 2009년 3월 제10차 정치대화가 연속적으로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주재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EU-북한,” <[www.delkor.ec.europa.eu/home/kr\\_relations/dprkrelations/dprkrelations.html](http://www.delkor.ec.europa.eu/home/kr_relations/dprkrelations/dprkrelations.html)>.

28\_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give emergency food aid to North Korea” (Brussels, 04 July, 2011).

29\_U.S. House of Representative, H.R. 5834,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 (September 25, 2008).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잔인한 고문 등이 여전히 지속되어 인권실태가 전반적으로 가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0</sup> 한편, 로버트 킹(Robert King)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11년 5월 24~28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식량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한편, 북한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후 킹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비정부기구들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는 2010년 인권보고서에서 9백 만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2차 핵실험 이후 국제지원도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1년 인권보고서는 김정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상황에서 집회자유 제한, 자의적 구금, 고문 등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도 2010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새롭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비판하였다. 2011년 인권보고서는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처벌 등의 인권탄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이외에도 미국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등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감시 및 인권개선을 위한 주창활동(advocacy campaign)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민간단체는 미국과 한국

<sup>30</sup> U.S. Department of State, 2010 Human Right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il 8, 2011).

의 인권 관련 국제비정부기구들이다. 특히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은 2004년부터 매년 4월 워싱턴에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리고 7회째를 맞는 2010년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북한자유연합이 처음으로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과 함께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한·미 양국의 인권단체들은 4월 25일~5월 1일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에 서울 곳곳에서 전시회·강연회·집회들을 개최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제8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한국의 ‘북한인권법 조속한 통과’를 구호로 내세우고 2011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기간 중 북한인권 단체들은 전시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집회도 개최하였다. 그 후 북한자유연합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9월 22일 13개국 24개 도시에서 일제히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2





# II

##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 



# 1



## 생명권

### 가. 북한의 사형규정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ICCPR)’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과 자유권 규약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조).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2005년 4월 19일과 7월 26일, 2006년 4월 4일과 10월 18일, 2007년 6월 26일과 10월 16일 각각 형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4월 이후에 형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은 기존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성요건 역시 기존 형법

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파괴암해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하였다(제64조). 그리고 2009년 개정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20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두도록 형사소추시효기간 규정을 개정하였다(제56조). 사형에 있어 2009년 형법은 형사소추시효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반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함으로써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반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형법에 규정된 사형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2009년 개정 북한형법의 사형 구성 요건

국가전복 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테러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파괴암해죄	반국가목적 파괴, 암해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북한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고의적 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에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한편,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였다. 형법부칙(일반범죄)은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마약 밀수, 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중살인죄

등 제한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 해당 범죄를 확대한 것은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라고 평가된다. 또한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형법부칙(일반범죄)은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북한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제23조).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관련 규정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사형 규정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	국가재산약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국가자원밀수죄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행위 중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비법적인 영업죄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 중상해죄	고의적 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

그런데 북한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sup>1</sup>에서 사형은 오직 다섯 가지 범주의 극도로 중대한 형사적 범죄들에 한하여 부과된다고 하고 있다(보고서 제34항). 이를 볼 때 북한이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를 제출할 시점에는 2009년 형법이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당국이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의 제정을 통해 사형을 확대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북한형법 제6조). 그러나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 예로 <그림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한 포고령에서 외화유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공개처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포고령은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가 2009년 12월 28일 포고한 것이다. 북한

<sup>1</sup> UN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Sixth session, Geneva, 30 November–11 December 2009,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A)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6/PRK/1 (August 27, 2009).

〈그림 11-1〉 북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포고령

**포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국가의 유일적인 화폐류통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법적의무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의 경제기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가의 화폐류통질서를 란폭하게 위반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게 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헝클어놓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강성대국건설을 저해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쪼먹는 매우 위험한 해독행위이다.

인민보안성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화폐류통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국내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 범죄와 위법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내에서 외화현금을 류통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1) 외화상점, 식당, 봉사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외화현금을 받고 진행하던 봉사를 일체 중지하고 우리돈으로 봉사하라.
  - 비행장, 국제려관을 비롯한 전문대외봉사단위들은 외국인들이 외화를 화폐교환소에서 우리돈으로 바꾸어 쓸 때에만 봉사하라.
  - 2) 국가기관들이 외화로 받아들이던 각종 수수료와 운임, 요금 등을 우리돈으로 받으라.
  - 3) 모든 무역기관(합영, 합작단위 포함)들은 수입한 상품을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계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에게 수입상품을 넘겨주어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조장시키는 모리간상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4) 모든 공민들은 외화를 반드시 화폐교환소를 통하여 우리돈과 바꾸어 쓰는 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외화를 가지고 암거래, 자판장사, 고리대, 사기협잡, 거간, 밀수, 뇌물, 락취 등의 범죄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 5)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필요한 외화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보장받으라.
2. 국가가 승인해준 단위들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단위들의 국내수출지표를 모두 없애며 국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상호간 비법적인 외화무현금거래를 일체 하지 말라.
3. 해당 은행기관들은 외화와 우리돈의 교환체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환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라.
4.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비법적인 외화류통을 단속통제하는 감독통제기관과 일군들의 사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며 국내에서 비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보면 즉시 법기관에 신고하라.
5. 이 포고를 어진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경영활동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해산하고 거래한 돈과 물건은 몰수하며 외화로 물건을 팔고사는자, 외화암거래, 고리대, 거간, 뇌물행위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외화를 류통하거나 락취한자, 그러한 행위를 조직하거나 묵인조장시킨자에 대해서는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하고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6. 이 포고는 국가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무력 및 특수기관 포함)와 공민들, 외국인들에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8(2009)년 12월 28일

형법은 외화 매매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 부과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104조). 이 포고들이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포된 후 지속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포고 내용을 보면 한 번 공포되고 나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포고로 인해 사실상 형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sup>2</sup>

## 나. 공개처형

북한에서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공개처형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판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은 총살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2조). 이에 따라 공개처형은 보통 총살형으로 집행되고 있다. 총살을 통해 처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9발을 발사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즉각 처형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처형 절차는 뒤편에 공화국 휘장을 걸어놓고 검찰소, 보안서, 국가안전보위부, 재판소 등에서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재판한다. 재판소에서 죄목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낭독한다고 한다.<sup>3</sup>

북한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한 1건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시인한 바 있다. 1992년 10월 함흥에서 폭력행위 상습

2.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0), pp. 176~178.

3.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자로 자신의 친조부모 주중은(84)과 최연옥(72)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죄로 주수만에 대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한 경우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시인한 이 처형도 그 지역주민들의 균중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12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대표단은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다. 동 검토시 북한대표단은 “처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흉악범의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한두 건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답변하였다. 공개처형의 사실이 있음을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공론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 공개처형의 절차와 북한 형사법

<표 II-1>과 <표 II-2>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과 형법부칙(일반범죄)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형의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판결은 형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는데 사형의 집행을 위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9조). 법치의 관점에서 북한은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개처형을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sup>4</sup> 아래 문건들은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에도 북한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평양시 재판소는 리성철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판결하였다. 2010년 9월 최고재판소는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의 공개사형 집

4.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81~88 참조.

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림 II-2>. 또한 평안북도 재판소는 형법부칙(일반범죄) 제4조를 적용하여 김춘남에게 사형을 판결하였다. 최고재판소는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의 승인을 요청하였다<그림 II-3>.

### <그림 II-2>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1)

□ 리성철(40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 ● 피소자 리성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 건 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피 소 자: 리성철 남자  
 사 는 곳: 평양시 형제산구역  
 직장직위: 형제산구역 로동자  
 출신성분: 농장원  
 정당관계: 무소속

#### ● 범죄내용

피소자 리성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피소자 김정길(남자 44살, 대동군 농장원)외 2명과 공모하여 8차에 걸쳐 평양시 형제산구역을 비롯한 주변구역들에서 부림소 8마리(40만 1,410원분)를 훔쳐 밀도살하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파손범죄와 공모하여 7차에 걸쳐 부림소 6마리와 후보소 1마리(34만 1,900원분)를 훔쳐 밀매하는 범죄, 개인의 상적행위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 피소자 리성철의 추김을 받고 부산물이라도 얻어먹을 목적으로 부림소 8마리를 밀도살하는데 공모한 공동피소자 김정길은 형법 제97조 3항(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에 의한 무기로동교화형,

부림소 3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준 공동피소자 권영민은 형법 제89조 3항(국가재산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 9년, 부림소 2마리와 후보소 2마리를 훔쳐 피소자에게 넘겨준 김영식은 형법 제89조 2항(국가재산훔친죄)에 의한 로동교화형 6년에 처하였습니다.

#### ● 최고재판소 의견

평양시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리성철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 〈그림 11-3〉 최고재판소의 사형집행 승인 요청문건 (2)

□ 김춘남(36세,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 ● 피소자 김춘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 건 명: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형법부칙 제4조)

피 소 자: 김춘남 남자

사 는 곳: 평안북도 염주군

직장직위: 염주군 로동자

출신성분: 군인

정당관계: 로동당

### ● 범죄내용

피소자 김춘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12차에 걸쳐 단독 또는 공모하여 동림군 일대에서 3,300V 고압 동력선 1,100m(4mm와 5mm 동선, 7만 3,300원분)를 절단, 파괴하고 훔친 동선 191.5kg 100만 4,100원에 밀매하여 사생활에 소비하는 범죄를 감행하였습니다.

※ 피소자와 공모하여 4차에 걸쳐 동력선 80kg(5mm동선, 3만 5,300원분)을 훔치거나 밀매한 공동피소자 최영숙은 형법 제89조 제2항(국가재산훔친죄)을 주범조로 로동교화형 3년,

피소자가 동력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3차에 걸쳐 동선 71kg(1만 1,5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피소자 리기웅은 형법 제115조 1항(유색금속 밀수밀매죄)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2년,

4차에 걸쳐 피소자가 가져온 동선 73.5kg(1만 1,300원분)을 사서 밀매한 공동 피소자 한성윤은 4촌 한성구(남자 24살, 조선인민군군인)가 특수병종이므로, 사건 합의를 제기하였으나 내려오지 않아 사건을 분리하였습니다.

### ● 최고재판소 의견

평안북도 재판소가 사형 판결하여 확정된 피소자 김춘남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기합니다.

위의 문건들은 북한이 공개처형을 함에 있어서 형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들로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공개처형이 위의 문건에 나타나 있는 절차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 문건들만 보아서는 2심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되어 최고재판소가 승인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1심에서 재판이 끝났는데 1심 재판소인 평양시 재판소와 평안북도 재판소가 최

고재판소를 거쳐 사형 집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최고재판소가 승인을 요청한 기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 내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도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한 공개처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반체제 행위와 관련된 공개처형

#### 〈북한체제에 대한 저항 행위〉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조국반역과 연관된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하고 있다. 그리고 도강증개행위, 혁명사적지에 해당하는 물건 매매행위, 남한 국정원의 돈 매수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 전파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4월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던 ○○○이 가족의 ‘도강’을 도와줬다는 죄목으로 회령시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연사군에서 군이 당과 보안서를 끼고 개인을 내세워 북한에서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까지

5. NKHR2011000013 2010-06-08.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검열이 나와 발각되어 남녀 2명이 수남 장마당에서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sup>6</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7월 남강회사 사장 41살 ○○○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앙당 검열 이후 원산 신평 경기장에서 공개처형 당하였다고 증언.<sup>7</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 중화군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성경을 소지하였다는 죄목으로 2009년 초에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2009년 10월 평양 역포구역에서 들었다고 증언.<sup>8</sup>

### 〈보안원·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 살인 행위〉

인민보안부 소속의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지도원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의 사회통제강화에 불만을 품은 북한주민들이 단속 주체인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인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7월 ‘빙두’(북한에서 통용되는 마약의 일종)와 남한 CD-R 시청 등이 보안원에게 단속되자 그 보안원을 살해한 형제가 회령시 경기장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9</sup> 북한이탈주민 ○○○도 2010년 여름에 보안원을 살인한 죄목으로 회령시 망양동에 거주하던 형제가 회령시 경기장에서 공개처형된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10</sup>

6. NKHR2008000007 2008-07-30; NKHR2008000013 2008-08-19; NKHR2008000027 2008-12-02. 이 사건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유사한 증언은 2009년에도 이어졌다. NKHR2009000011 2009-03-03.

7. NKHR2009000070 2009-11-18.

8. NKHR2011000209 2011-09-20.

9. NKHR2011000099 2011-04-26.

10. NKHR2011000187 2011-08-16.

- 북한이탈주민 ○○○은 형제사이인 ○○○과 ○○○이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해하였다는 죄목으로 2010년 8월 함경북도 회령시 세천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1</sup> 북한이탈주민 ○○○은 남자 2명이 ‘손전화’(핸드폰을 지칭하는 북한어)를 사용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에게 발각되자 그를 살해하였고 그 이유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2011년 1월경에 함경북도 회령시 강안동에서 들었다고 증언.<sup>12</sup> 북한이탈주민 ○○○도 회령시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인한 죄목으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소문을 2011년 3월에 들었다고 증언.<sup>13</sup>

#### 〈외부정보 유통과 연관된 행위〉

남한 뼈라, 비디오 판매 등 외부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핸드폰 사용 등 정보 유통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처형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핸드폰 사용을 반공화국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경지역에서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왔다. 핸드폰 사용적발 시 보통 10만 원 정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핸드폰 몰수 또는 추방의 처벌을 해왔다. 많은 경우 핸드폰 몰수와 고액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추방을 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소식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주민들 사이에 정보유통이 커지면서 외부정보유통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모두 처형당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는 통화내용에 따라 다르며, 남한과 통화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11\_ NKHR2011000037 2011-01-11.

12\_ NKHR2011000151 2011-06-28.

13\_ NKHR2011000162 2011-07-12.

처벌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어 압수 및 벌금형을 받았는데 통화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고 증언.<sup>14</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10년 2월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어 ‘로동단련형’을 받았지만 자수자로 처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sup>15</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면 ‘로동교화형’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증언.<sup>16</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10년의 경우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각되면 강제추방 및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증언.<sup>17</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남한과 연락하다 발각되는 경우가 가장 처벌이 심하다고 증언.<sup>18</sup>

뿐만 아니라, 영상물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기도 한다. 최근 북한에 컴퓨터, 핸드폰, MP3, USB와 같이 기기들이 도입되면서 북한 주민들 상호간 소통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의식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간부와 중산층 가정들에서조차도 남한 영화,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편이다. 북한은 자본주의문화 유입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번진 민주화바람(소위 재스민혁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남한 CD-R을 판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여

14\_ NKHR2010000007 2010-03-16.

15\_ NKHR2010000007 2010-03-16.

16\_ NKHR2010000035 2010-11-09.

17\_ NKHR2010000044 2010-11-02.

18\_ NKHR2010000045 2010-09-07.

- 자 1명이 2008년 10월 강원도 원산시 신평동 신평경기장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9</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에서 CD-R 유통을 이유로 ○○○이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 당시 장마당은 열리지 않았으며 가두행사를 하면서 공개처형에 대해 알렸다고 함.<sup>20</sup>
  - 북한이탈주민 ○○○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남자가 남한 CD-R을 판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원산시 동명산동에서 2010년 5월 총살된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21</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 CD-R을 많이 보고 유포시킨 죄목으로 청진시에 거주하던 남자가 2010년 5월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22</sup>

전단이나 영상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하였다고 해서 모두 공개처형되는 것은 아니다. 2009년 1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교회소 이외에 노동단련대를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고 나오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sup>23</sup>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보통 뇌물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sup>24</sup> 그러나,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퇴폐물 보관행위, 퇴폐행위에 대한 처벌 등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통해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25</sup>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 영상물이 북한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9년 탈북한 북한

19\_ NKHR2011000158 2011-07-05.

20\_ NKHR2010000012 2010-09-14.

21\_ NKHR2011000094 2011-04-12.

22\_ NKHR2011000176 2011-08-02.

23\_ NKHR2010000018 2010-10-05.

24\_ NKHR2010000020 2010-06-01.

25\_ 이백규, “북한의 2009년 개정형법 개관” (북한법연구회 제157회 월례발표회, 2010.9.16).

이탈주민 ○○○은 남한의 기독교 방송과 한민족 방송을 청취하였는데 청취 이후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26</sup>

### 〈화폐개혁 실패 관련 행위〉

2009년 11월 말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에 그치자 실무책임자였던 박남기 전 조선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처형하고 화폐개혁 사전 누설행위, 구 화폐를 강에 뿌린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박남기에 대한 공개처형이 2010년 3월 평양의 ○○학교에서 있었다는 소문을 평양의 지하철 9501군부대에서 들었다고 증언.<sup>27</sup> 북한이탈주민 ○○○도 박남기가 화폐개혁을 주도하였다는 죄목으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 2010년 3월 평양 순안구역 내의 강건군관학교에서 처형되었다고 증언.<sup>28</sup>
- 북한이탈주민 ○○○은 화폐개혁을 미리 발설하였다는 죄목으로 여자 한 명이 2009년 12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2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화폐개혁 이후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구 화폐를 강에 뿌렸다는 죄목으로 남자 한명이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2010년 7월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30</sup>

26\_ NKHR2011000022 2010-06-24.

27\_ NKHR2011000070 2011-03-15.

28\_ NKHR2011000088 2011-04-05.

29\_ NKHR2011000221 2011-06-09.

30\_ NKHR2011000217 2011-10-04.

### 〈기타 반국가행위〉

수도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전기가 필수적이므로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를 반국가행위로 간주하여 중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탈주민 ○○○은 장진강발전소 간부 2명이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2010년 3월 함경남도의 장진강발전소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31</sup>

### ● 경제사범에 대한 공개처형

#### 〈정보통신선, 구리 절취, 개인착복행위〉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통신선, 전선 등의 국가기물에 대한 절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연사군의 ○○○이 통나무 가공 공장(서경회사)을 차려 통나무를 중국에 밀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연사군읍 공설운동장에서 2007년 여름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2</sup> 북한이탈주민 ○○○도 동일 인물이 전적지 나무를 베어 팔았다는 죄목으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3</sup>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주민 ○○○이 공장기계(발전기)를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2007년 10월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4</sup>
- 북한이탈주민 ○○○은 동을 밀수하였다는 죄목으로 북한주민

31\_ NKHR2011000133 2011-06-07.

32\_ NKHR2010000035 2010-11-09.

33\_ NKHR2010000035 2010-11-09. 북한이탈주민 ○○○은 동일 인물이 나무를 밀수한 죄목으로 연사군 학교 운동장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2009년 6월 들었다고 증언.  
NKHR2011000003 2010-03-16.

34\_ NKHR2010000093 2010-03-30.

○○○이 2008년 여름 함경북도 은덕군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5</sup>

- 북한이탈주민 ○○○은 ‘레루뭇’(철길의 뭇)을 절도한 혐의로 양강도 혜산시 금산동에 사는 ○○○이 2009년 1월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36</sup>

### 〈마약 밀수·밀매행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밀수행위가 증가하면서 밀수행위와 ‘빙두’ 밀매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형법 부칙(일반범죄) 제정에서 보듯이 마약 밀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3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월 30일 함흥 회상구역 호랑천에서 91훈련소 외화별이 기지장 ○○○ 외 6명이 ‘빙두’라는 마약을 제조해서 중국에 팔아 왔는데, 보위사령부 검열에서 발각되어 처형당했다고 증언.<sup>38</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함흥시에 거주하는 남자 2명이 ‘빙두’를 생산, 밀매하다가 적발되어 2008년 4월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흥시 도 감찰과장인 ○○○이 ‘빙두’ 거래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2008년 여름 함흥시 혜산구역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40</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던 ○○○이

35\_ NKHR2011000022 2010-06-24.

36\_ NKHR2010000018 2010-10-05.

37\_ 북한주민들이 처벌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마약(빙두)을 밀거래하는 이유는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04호 (2011.5.25).

38\_ NKHR2009000016 2009-03-19.

39\_ NKHR2011000104 2011-05-03.

40\_ NKHR2010000036 2010-11-02.

‘빙두’ 거래를 비롯, 자동차 밀수, 인신매매 등의 죄목으로 2009년 7월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예전 장마당)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41</sup>

### 〈국가재산 탕진 행위〉

국가재산을 탕진한 행위에 대해서 일부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형법부칙(일반범죄)은 국가재산 약취행위와 국가재산 강도행위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외화벌이 기지장이었던 남자가 국가 돈을 탕진하였다는 죄목으로 2008년 10월 강원도 원산시 신평동 신평경기장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42</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안남도 문덕군 용림리의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자 3명이 국가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죄목으로 2009년 7월 평안남도 평성시 평성경기장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43</sup>

### 〈소, 염소 등 절도행위〉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소나 염소 등을 절도하다 발각되어 공개처형을 당한 사례들에 대한 증언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이러한 행위로 인한 공개처형은 대폭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에 가축 밀수 및 밀매행위로 인해 공개처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소를 밀수한 죄목으로 남자 군인 1명이

41\_ NKHR2010000069 2010-10-26.

42\_ NKHR2011000158 2011-07-05.

43\_ NKHR2011000111 2011-05-17.

2009년 1월경에 양강도 김형직군 25여단 5대대 4중대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44</sup>

- 북한이탈주민 ○○○은 가축을 밀매하였다는 죄목으로 당시 36세의 남자를 비롯한 5명이 2010년 7월 함경북도 명간군 월포 강변 독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45</sup>

## ● 사회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인신매매, 살인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처형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간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사례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인육을 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된 사례도 증언되었다. 이밖에 사기와 절도행위로 인한 공개처형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신매매〉

국제사회가 인신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당국은 2000년 이후에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신매매는 점차 조직화·집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7월 ○○○이 인신매매 죄목으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처형당한 ○○○은 12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8명을 12,000위엔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증언.<sup>46</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0월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던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인신매매를 죄목으로 무산군에서 처형

44. NKHR2011000103 2011-05-03.

45. NKHR2011000213 2011-10-04.

46. NKHR2010000044 2010-11-02.

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그들은 38명을 인신매매하였는데 공개재판 후 총살되었다고 증언.<sup>47</sup>

- 북한이탈주민 ○○○도 2009년 가을 ○○○이 인신매매 죄목으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4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 인신매매 죄목으로 여자 1명이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2010년 5월에 들었다고 증언.<sup>49</sup>

### 〈살인〉

폭행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북한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살인죄에 대해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에도 여전하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여름 ○○○이 살인하였다는 죄목으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총살 되었다는 소문을 그의 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sup>5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여름 강원도 원산시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대학교 동료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목으로 강원도 천내군 강변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생활이 어려워던 그 대학생은 잘 사는 동료 여학생 어머니에게 돈과 두부 등의 음식을 빌려달라고 몇 차례 부탁했는데 거절당하자 돌발적으로 살해하였다고 증언.<sup>51</sup>

47\_ NKHR2011000160 2011-07-12.

48\_ NKHR2010000011 2010-09-14.

49\_ NKHR2011000070 2011-03-15.

50\_ NKHR2010000041 2010-10-26.

51\_ NKHR2011000196 2011-09-06.

- 북한이탈주민 ○○○은 살인을 죄목으로 남자 2명이 2009년 10월 함경북도 회령시 탄광기계공장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52</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월 살인을 죄목으로 남자 2명이 강원도 원산시 동명산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53</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당시 35세의 남자가 살인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처형된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5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3월 동거녀를 살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함경북도 무산군 강선구 양어장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55</sup>

### 〈강간〉

북한에는 여성, 심지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자행되고 있다.<sup>56</sup> 강간에 대한 처벌로 공개처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가을 함경북도 무산군 강변 쓰레기장에서 강간을 죄목으로 총살형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5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 살인 및 강간 3회를 죄목으로 당시 43세의 ○○○이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 장마당 미강뿔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58</sup>

52\_ NKHR2011000082 2011-03-29.

53\_ NKHR2011000158 2011-07-05.

54\_ NKHR2011000128 2011-05-31.

55\_ NKHR2010000024 2010-10-19.

56\_ 인민보안성의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강간에 대한 처벌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강간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pp. 465~473.

57\_ NKHR2010000011 2010-09-14.

58\_ NKHR2010000044 2010-11-02.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6월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는 남자가 강간으로 인해 무산군 장마당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5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 사동구역에 거주하던 남자 1명이 미성년자를 강간한 죄목으로 2010년 2월 평양의 통일거리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60</sup>

### 〈인육 먹은 행위〉

고난의 행군 시기 인육 판매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증언들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에 인육을 먹었다는 증언과 화폐개혁 직후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때문에 인육을 먹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1월경 부자(父子)관계인 남자 2명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죄목으로 함경남도 덕성군 수성천 옆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61</sup>
- 2011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혜산시 마산동에 거주하던 남자가 살인 후 인육을 먹었다는 죄목으로 2009년 12월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 화폐개혁 직후 너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10세 정도의 여자가 이를 잡아먹어서 공개처형 당한 것이라고 증언.<sup>62</sup>

### 〈기타 일탈행위〉

사기와 대량의 절도행위에 대한 처벌로 공개처형이 일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9\_ NKHR2011000155 2011-07-05.

60\_ NKHR2011000085 2011-04-05.

61\_ NKHR2011000091 2011-04-12.

62\_ NKHR2011000225 2011-10-19.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0월 당시 23세의 여자 1명이 사기협착을 죄목으로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 독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63</sup>
- 북한이탈주민 ○○○은 청진시에 거주하던 남자가 자전거 30대를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2010년 5월 청진시 수남 장마당에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64</sup>

### ● 교화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교화소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사리원시의 경우 공개처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리원 담배공장 뒤에 7교화소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비밀리에 처형한다고 한다.<sup>65</sup> 특히 도주 행위에 대해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7년 4월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자가 도주하다 총을 맞아 다리를 관통 당했다. 부소장이 “이제부터는 도주하면 무조건 죽인다”고 말하면서 2~3일 안으로 공개총살할 수 있도록 무조건 살리라고 하였는데 출혈이 심해 공개총살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sup>66</sup>

### ● 정치범수용소 내 공개처형 및 비밀처형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sup>67</sup>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

63\_ NKHR2011000118 2011-05-17.

64\_ NKHR2011000176 2011-08-02.

65\_ NKHR2009000012 2009-03-05.

66\_ NKHR2009000059 2009-09-29.

67\_ 북한이탈주민 ○○○,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면접.

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봄 함경북도 회령 공심이라는 곳으로 발갈이를 하러 갔었는데, 회령 제22호 관리소 안에서 어떤 여자가 탈출하기 위해 철조망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는 경비대가 그 여자를 잡아가서 처형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sup>68</sup>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봄 평안남도 개천관리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수용되어 있던 ○○○이 도주 기도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개천관리소에서 총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69</sup>

〈표 II-3〉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본 공개처형 사례

시기	장소	내용	증언일시
2006. 봄	평남 개천관리소	도주 기도 죄목으로 개천관리소 수감자 총살	NKHR2010000045 2010.9.7
2006. 봄	함경북도 회령 공심	회령 22호 관리소 수감 중인 여성이 도주 기도하다 경비대에 잡힘.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	NKHR2010000069 2010.10.26
2006.11.	함남 덕성군 수성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죄목으로 부자(父子)를 총살	NKHR2011000091 2011.4.12
2007.4.	전거리교화소	수감자(남성)가 도주하다 총을 맞아 다리 관통상 입음. 출혈이 심해 공개총살하기 전에 사망	NKHR2009000059 2009.9.29
2007.4.	회령시 장마당	가족의 '도강'을 도운 죄목으로 총살	NKHR2011000013 2010.6.8
2007.7.	원산 신평 경기장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강회사 사장(41세) 공개처형	NKHR2009000070 2009.11.18
2007. 여름	연사군·읍 공설운동장	통나무 가공공장을 차려 통나무를 중국에 밀매한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35 2010.11.9
2007.10.	평남 순천시	공장기계(발전기) 절도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93 2010.3.30

68. NKHR2010000069 2010-10-26.

69. NKHR2010000045 2010-09-07. 그는 개천교화소라고 하였으나 이는 개천관리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	장소	내용	증언일시
2007.	수남 장마당	북한의 혁명사적에 해당하는 구호나무를 중국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남녀 2명 공개처형	NKHR2008000007 2008.7.30
2008.1.	청진	시집 온 여자가 데리고 온 4살 아이를 시끄럽다고 죽인 죄로 공개처형	NKHR2008000023 2008.11.11
2008.1.30.	함흥 회상구역 호랑천	9훈련소 외화벌이 기지장 외 6명, '빙두' 제조해 중국에 매대한 혐의로 처형	NKHR2009000016 2009.3.19
2008.4.	함흥시	'빙두'를 생산, 밀매하였다는 죄목으로 남자 2명을 총살	NKHR2011000104 2011.5.3
2008.7.	청진 수성천	인신매매 죄목으로 남자 3명 처형	NKHR2009000063 2009.11.3
2008. 여름	함북 은덕군	동 밀수 죄목으로 총살	NKHR2011000022 2010.6.24
2008. 여름	함흥시 혜산구역 장마당	'빙두' 거래한 죄목으로 함흥시 도 감찰과장 총살	NKHR2010000036 2010.11.2
2008.10.	원산시 신흥경기장	남한 CD-R을 판매하였다는 죄목으로 여자 1명을 처형	NKHR2011000158 2011.7.5
2008.10.	원산시 신흥경기장	국가 돈을 탕진하였다는 죄목으로 외화벌이 기지장이었던 남자를 처형	NKHR2011000158 2011.7.5
2009.	청진시 수성천	녹화물 유통을 이유로 ○○○을 총살	NKHR2010000012 2010.9.14
2009.1.	장소 불명	'레루뭇'(철길의 뭇) 절도 혐의로 총살	NKHR2010000018 2010.10.5
2009.1.	양강도 김형직군	소를 밀수한 죄목으로 남자 군인 1명을 총살	NKHR2011000103 2011.5.3
2009. 초	평양 중화군	성경 소지를 죄목으로 처형	NKHR2011000209 2011.9.20
2009.5.	무산 장마당 미강별	살인 및 강간 3회를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44 2010.11.2
2009.6.	무산군 장마당	강간을 죄목으로 무산군에 거주하는 남자를 총살	NKHR2011000155 2011.7.5

시기	장소	내용	증언일시
2009.7.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	'빙두' 거래, 자동차 밀수 및 인신매매 등의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69 2010.10.26
2009.7.	무산군	인신매매(8명을 12,000위엔에 매매) 죄목으로 처형	NKHR2010000044 2010.11.2
2009.7.	평남 평성시 평성경기장	국가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죄목으로 평남 문덕군 용림리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자 3명을 처형	NKHR201000111 2011.5.17
2009. 여름	무산군	살인 죄목으로 총살	NKHR2010000041 2010.10.26
2009. 여름	강원도 천내군	동료 여학생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목으로 원산시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을 처형	NKHR201000196 2011.9.6
2009. 가을	무산군 강변 쓰레기장	강간 죄목으로 총살형	NKHR2010000011 2010.9.14
2009.10.	함북 무산군	38명을 인신매매한 죄목으로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총살	NKHR201000160 2011.7.12
2009.10.	회령시 관광기계공장	살인을 죄목으로 남자 2명을 총살	NKHR2010000082 2011.3.29
2009.10.	청진시 수성천	사기협착을 죄목으로 당시 23세의 여자 1명을 총살	NKHR201000118 2011.5.17
2009.11.	혜산시 연봉동	인신매매를 죄목으로 여자 1명을 총살	NKHR2010000070 2011.3.15
2009.12.	함북 경성군	화폐개혁을 사전에 발설하였다는 죄목으로 여자 한 명을 처형	NKHR201000221 2011.6.9
2009.12.	혜산시	화폐개혁 직후 먹을 것이 없으며 10세 정도의 여자아이를 잡아먹은 남자를 처형	NKHR201000225 2011.10.19
2010.1.	원산시 동명산	살인을 죄목으로 남자 2명을 총살	NKHR201000158 2011.7.5
2010.2.	함남 북청군	살인을 조목으로 당시 35세의 남자를 처형	NKHR201000128 2011.5.31
2010.2.	평양 통일거리	미성년자를 강간한 죄목으로 평양 사동구역에 거주하던 남자를 총살	NKHR201000085 2011.4.5
2010.3.	무산군 강서구 양어장	동거녀 살인하여 총살	NKHR2010000024 2010.10.19

시기	장소	내용	증언일시
2010.3.	평양 강건관관 학교	화폐개혁을 주도하였다는 죄목으로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를 처형	NKHR2011000070 2011.3.15 NKHR2011000088 2011.4.5
2010.3.	함남 장진강 발전소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장진강발전소 간부 2명을 처형	NKHR2011000133 2011.6.7
2010.5.	원산시 동명산동	남한 녹화물을 판매하였다는 죄목으로 남자를 처형	NKHR2011000094 2011.4.12
2010.5.	청진시 수남 장마당	남한 CD-R을 시청하고 유포한 죄목으로 남자를 처형	NKHR2011000176 2011.8.2
2010.5.	청진시 수남 장마당	자전거 300대를 절도하였다는 죄목으로 남자를 처형	NKHR2011000176 2011.8.2
2010.7.	회령시 경기장	'빙두'와 남한 녹화물 시청이 발각되자 단속한 보안원을 살해한 형제를 처형	NKHR2011000099 2011.4.26
2010.7.	청진시 수남구역	화폐개혁 이후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구 화폐를 강에 뿌렸다는 죄목으로 남자를 처형	NKHR2011000217 2011.10.4
2010.7.	함북 명간군 월포	가축을 밀매하였다는 죄목으로 5명을 총살	NKHR2011000213 2011.10.4
2010.8.	함북 회령시 세천	손전화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남자2명(형제사이)이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해하였다는 죄목으로 총살	NKHR2011000037 2011.1.11 NKHR2011000151 2011.6.28

### ● 공개처형 변화 양태

공개처형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는 양태를 보인다. 첫째, 2009년과 2010년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개처형이 대폭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 형법 개정 및 2010년 9월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지명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70</sup> 그런데 2011년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개처형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전체 면접 대상자 230명 가운데 2011년에 공개처형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2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지역이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한 공개처형을 목격한 북한 주민의 탈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11년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이 줄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1년 북한의 공개처형이 감소한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실시하거나 무기노동교화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1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처형이 ‘인권유린’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며 공개처형이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sup>71</sup> 2011년 1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공개처형하는 대신 교화소에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부 세계에서 공개처형 광경을 위성으로 촬영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sup>72</sup> 두 번째 이유는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북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공개처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북한 주민들은 마지못해 공개처형 현장에 동원되고 있지만 공개처형을 외면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의 전반적인 부패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사회에 뇌물수수가 만연하고 있다. 공개처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뇌물수수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0\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83-84.

71\_ NKHR2011000108 2011-05-11.

72\_ NKHR2012000009 2012-01-31.

한편,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김정일이 공개처형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 이후 공개처형이 줄었다고 증언하였다. 함경북도 무산군의 경우 2007년, 2008년에는 2~3달에 한 번 꼴로 공개처형이 있었지만 2011년에는 공개처형이 없었다고 한다.<sup>73</sup> 김정일이 사망한 상황에서 후계자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공개처형을 확대할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공개처형 대신 비밀처형이나 노동교화형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지속할 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둘째, 지역별로는 함경북도 지역에서의 공개처형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면접대상자들의 출신지역이 함경북도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이탈주민 495명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최종거주지는 함경북도가 25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51.5%), 다음으로 양강도가 89명(18%)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sup>74</sup> 또한 내륙지역보다는 국경지역이 그리고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공개처형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법 활동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공개처형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 및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북한 당국의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처형 사유로는 경제사범, 사회일탈, 마약 관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일탈 중에는 인신매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살인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난과 사회일탈행위 증가로 인해 공개처형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부록 1〉 참조).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화폐개혁 이후 생활이 곤란해짐에 따라

73. NKHR2012000014 2012-01-31.

74. 평안남도 31명(6.3%), 함경남도 30명(6%), 강원도 13명(2.6%), 평안북도 10명(2%), 평양 10명(2%), 기타지역 19명(3.8%)이다.

- 불법행위가 증가하였고 이는 공개처형 증가로 이어졌다고 증언.<sup>7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개처형이 빈번이 일어났다고 증언. 그 이유로 생활고 때문에 사람들의 분란이 많아졌는데 이를 억압,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증언.<sup>76</sup>
- 북한이탈주민 ○○○은 화폐개혁 이후 생활고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공개처형도 많아졌다고 증언.<sup>77</sup>

넷째, 밀수 및 밀매, 인신매매, 마약 관련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은 국경지역 및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남한 CD-R 시청 및 유포 등 정보유통에 대한 공개처형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공개처형을 시행하는 범죄행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다. 체제저항행위, 살인·강간·인신매매 등의 사회일탈행위, 외부 정보 유통, 마약 밀수 및 밀매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을 살인한 행위,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 국가재산 탕진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증언이 없었던 인육을 먹는 행위, 가축 절도 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및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통제강화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5\_ NKHR2011000166 2011-07-19.

76\_ NKHR2011000111 2011-05-17.

77\_ NKHR2011000128 2011-05-31.



## 2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가. 북한 형사법제와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제5조)과 자유권 규약(제7조, 제9조, 제10조)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도 비인도적·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s)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 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동 조약에 대한 조속한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북한주민의 구속과 체포를 금지해 오고 있다.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에서 개정된 현행 사회주의헌법도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79조). 특히 북한은 2009년 4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제8조). 이전까지는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 하위법에 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2006년 최종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 구속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77조). 그리고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0조). 구체적으로 예심원이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 할 경우 체포영장승인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81조).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3조).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색 및 압수를 할 경우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수색, 압수를 실시하려는 예심원은 압수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17조). 그리고 실제로 수색과 압수를 시작할 경우에는 압수결정서를 제시하고(제218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1조).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여러 조항에 걸쳐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관련하여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시인시

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7조). 또한 “증인은 심문하는 경우에도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9조). 북한형법은 ‘법일꾼’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심문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253조), 불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제252조)을 부과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원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 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자유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여전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 구금 및 교정시설

### ●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구분에 따른 구금

북한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되어 있다. 기본형벌은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으로 세분화된다(제28조). 무기노동교화형은 15년 이상, 유기노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되어 있다. 무기 및 유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화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통하여 교정을 실시하고 있다(제30조).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인 교정시설 이외에도 북한에는 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시설이 있다.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 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인민보안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은 ‘관리소’라고도 불린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우 범죄 형태에 따라 관할기관이 다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국가안전보위부),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인민보안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 범죄의 수사는 검찰기관(검찰소)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표 II-4〉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인민보안부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관리소

### ● 교화소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인민보안부가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sup>78</sup>

북한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구금형태를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78.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함경남도 함흥에는 사포구역에 여자교화소, 회산구역에 남자교화소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수성교화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표 II-5〉 범죄 유형별 구금시설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5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16개 범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1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6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10가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104가지)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83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76가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26가지)	역사유물 밀수·밀매죄, 마약 밀수·밀매죄 등 (3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25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16가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39가지)	-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20가지)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18가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26가지)	고의적중상인죄, 유괴죄 등(4가지)	고의적중상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 중상해죄 등(13가지)

〈전거리교화소 모습 및 실태〉

교화소 관련 증언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전거리교화소에 집중되고 있다. 전거리교화소는 남성 전용 교화소에서 여성도 수감되는 교화소로 변화하였다. 2006년도 7월경 여자 수용 교화소가 완공되어 수감되기 시작하였다.<sup>79</sup> 전거리교화소 내에는 1과부터 5과까지 있다고 한다. 1과와 3과는 교화소 본소에 있다. 2과와 5과는 본소에서 골 안으로 30분 정도 들어가서 있는데 건물 1개이며 단층으로 되어 있다. 4과는 산꼭대

79\_ NKHR2009000059 2009-09-26.

기에 있다. 전거리 교회소 본소에는 남여 모두 수감되어 있고, 2과와 5과에는 남자만 수감되어 있다. 2과와 5과의 건물 내부 모습은 <그림 II-4>와 같다.<sup>80</sup>

<그림 II-4> 전거리교회소 2과와 5과 건물 내부 모습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허약반)	
복 도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전거리교회소의 면회는 규정상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sup>81</sup> 그리고 2004년 전거리교회소에 수감되었을 때 교회소 준칙에 3인 공개감시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내가 세 명을 감시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어찌겠나? 그 사람도 나를 포함한 3명을 또 감시한다. 서로서로가 또 감시하게 만들어 놔다. 우리 반 60명 중에 한 명이 도망치면 나도 역시 처벌 받는다. 그리고 준칙 10개를 암송해야 한다. 준칙 10개도 1조에 1항, 2항 등이 있어 30개까지 암송해야 한다. 또 보안원에 대한 준칙이 6가지가 있고 해당 준칙마다 조항이 있어 20개 이상을 암송해야 한다”고 한다.<sup>82</sup>

북한이탈주민 ○○○은 전거리교회소의 모습 및 실태를 <그림 II-5> 및 <그림 II-6>과 같이 증언하였다.<sup>83</sup>

80\_ NKHR2011000180 2011-08-09.

81\_ NKHR2009000059 2009-09-26.

82\_ NKHR2009000067 2009-11-12.

83\_ NKHR2011000175 2011-07-26.

## 〈그림 11-5〉 전거리교회소의 운영 실태

**명 칭:** '전거리12교회소'

**위 치:**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수용인원:** 수용능력이 500명 정도이지만, 1,200명 정도가 구금(2010년 당시)

**수용형태:** 남녀 공동 수용

- \* 원래는 전거리교회소에는 남자만 구금되고 여자들은 함흥교회소에 구금. 구금인원이 많아져서 2006년부터 전거리교회소에 여자들도 구금
- \* 현재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건물을 더 짓는다고 함(기존 건물 3개).

**생활실태:** 남자는 광산에서 석회석, 동강(구리) 등을 캐는 노동, 여자는 가발 생산(수출 목적, 교회국에서 지시) 및 부업(농사) 등의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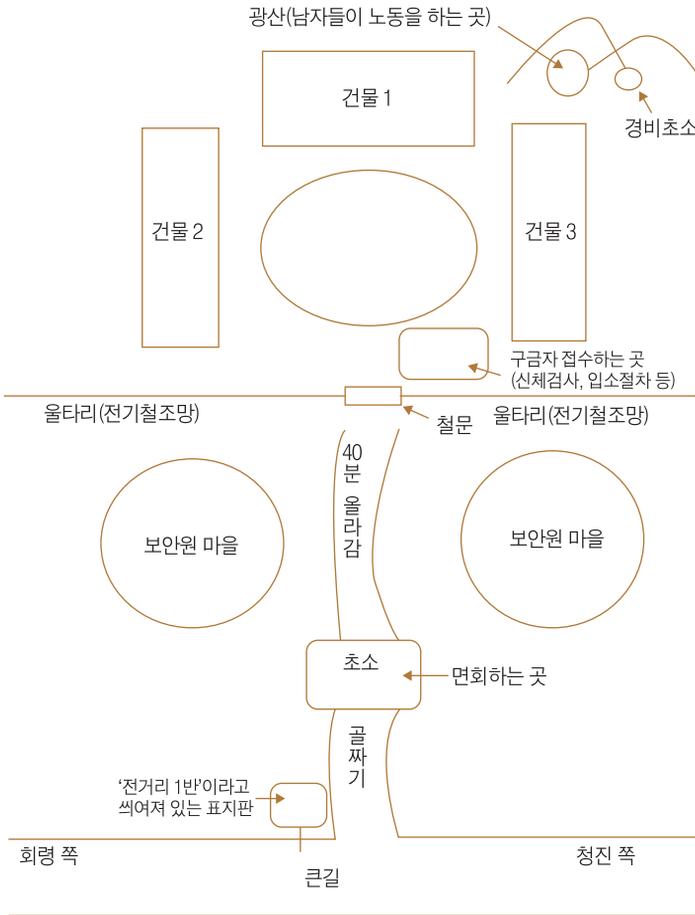
**형기감소:** 교회소 내에 '보안과'가 있음. 외부의 범법자를 진술하거나, 교회소 내에서 감시역할(스파이)을 하면 3개월 정도의 형기감소를 받음.

**제재조치:** 교회소 내에서 구금자가 잘못을 하면 감시역할(스파이)을 맡은 사람이 '보안과'에 밀고 →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독방에 구금되거나 6개월 동안 면회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짐.

**면 회:** 외부인은 '초소'(면회하는 곳)까지만 갈 수 있고, 교회소에 내로 들어가지 못함.

**안내표지판:** 전거리12교회소의 간판(안내표지판)은 따로 없음.

〈그림 II-6〉 전거리교화소 모습



북한이탈주민 ○○○ 증언에 의하면 전거리교화소에는 여성들의 노동반은 1반 감자반, 2반 ‘남새(채소)반’, 3반 강냉이반, 4반 콩반, 5반 돌축반(돌을 줍는 반), 6반 가밭반, 7반 구내반, 8반 화목반, 9반 축산반(소, 양, 염소, 돼지, 토끼, 닭, 오리 등), 10반 눈초리반(속눈썹 만드는 반), 허약자반으로 조직되어 있다. 4반은 현재 사라졌다. 8반 화목반은 퇴소 6개월 전에 있는 구금자들이(허약자는 제외) 들어가서 강도가 더 센 노동을 하는 반이다.<sup>84</sup>

### 〈교화소 신입반〉

교화소 구금시 한 달 동안은 신입반 생활을 하며, 이 기간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개천교화소에 구금되었는데 교화소 구금 후 한 달 동안 신입반 생활을 하였으며, 노동 없이 학습 및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sup>85</sup>
- 북한이탈주민 ○○○은 교화소에 입소하게 되면 1개월간 신입반에서 교육을 받고, 그 이후부터 강제노동을 시작한다고 증언.<sup>86</sup>
- 북한이탈주민 ○○○은 전거리교화소에 구금되면 한 달 동안 신입반 생활을 한다고 증언. 신입반에서 교화소 생활준칙, 위생준칙 등을 습득하고, 죄수 복장 준비를 하며, 사상교양 등을 한다고 증언.<sup>87</sup>

## ● 노동단련대

### 〈노동단련대 설치 경과 및 현황〉

노동단련대는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시설로

84\_ NKHR2011000248 2011-12-20.

85\_ NKHR2010000015 2010-10-05; NKHR2011000102 2011-05-03.

86\_ NKHR2011000241 2011-11-22.

87\_ NKHR2011000248 2011-12-20.

500~2,500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의 시·군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처음에는 ‘교양대’라는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나 ‘로동단련대’라는 상설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노동단련대는 군 보안서 감찰과 보안원 1명, 군당 3대혁명소조부 지도원 1명, 군 청년동맹 불량청소년 지도원 1명, 노동단련대 대장, 대열지도원 1명, ‘후방일꾼’ 1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의 현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함흥의 55호 노동단련대는 22호 교양소였는데, 2000년도에 바뀌었다고 한다. 함흥 노동단련대는 1과, 2과, 3과로 편제되어 있는데, 1과는 본과이고 2과는 농사과, 3과는 광석과라고 한다.<sup>88</sup> 노동단련대에는 보안서 소속 보안원, 단련대장 1명, 시 인민위원회 노동과 직원 1명, 식량통계 관리 여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sup>89</sup> 또한 소년교양단련대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3년 7월 학생 ○○○이 남한 CD-R 시청으로 남포 소년교양단련대에 구금되었다고 한다.<sup>90</sup> 그리고 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단천과 평안남도 해창에 군 단련대가 있다고 증언하였다.<sup>91</sup>

군대 내에서도 노동단련대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군부대 내에 노동단련대가 따로 있으며, 김책에도 있었다고 한다. 군부대 노동단련대는 인민군총참모부가 운영한다고 한다.<sup>92</sup>

88\_ NKHR2009000011 2009-03-03.

89\_ NKHR2009000030 2009-05-07.

90\_ NKHR2009000036 2009-06-03.

91\_ NKHR2009000017 2009-03-24.

92\_ NKHR2011000213 2011-10-04.

## 〈노동단련과 노동단련형 및 무보수노동〉

형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는 노동단련이 ‘처벌’의 하나로 들어 있다. 판결판정집행법 제18조 집행중지·정지 판정 사유 제1호는 노동단련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 집행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감시법 제40조 제3호도 노동단련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형벌’의 하나로 신설하였다. 현행 형법에도 노동단련형은 형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2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제31조). 형법에 규정된 ‘일정한 장소’는 노동단련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수감자들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한다.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하여 들어온 일반적 수감자가 있고, 노동단련형을 언도받은 수감자들이 있다. 노동단련형을 언도받고 수감된 수감자의 경우 일반 수감자와는 일도 따로 시킨다고 한다. 즉, 노동단련대에서도 형기를 받은 사람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단련대에는 노동단련형을 언도받은 수감자와 일반 수감자가 동시에 수감되지만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무보수노동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무보수노동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로서 법 위반자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서 노동시킬 수 있다. 무보수노동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다(제16조). 행정처벌로써의 무보수노동과 재판을

통해 신고하는 형법상의 노동단련형의 차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감시를 안 받고 일을 하고 노동단련형은 감시 하에 노동을 하며, 평소 다니던 직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무보수 노동이다. 기간에 있어 6개월 이하인 점,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는 점, 무보수라는 점은 무보수노동이나 노동단련이 동일하다. 그러나 무보수 노동은 직장에서 하는 반면 노동단련은 주로 노동단련대에서 한다는 점, 무보수노동은 출퇴근이 가능한 반면 노동단련은 수감된 상태에서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무엇보다 무보수노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단련과 차이가 난다.<sup>93</sup>

〈표 II-6〉 북한의 강제노동 처벌

	무보수노동	노동단련	노동단련형
장소	평소 다니던 직장	주로 노동단련대 기타 공장, 농장, 광산 등	노동단련대
출퇴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
기간	1~6개월	6개월 미만	6개월~2년
보수지급	무보수	무보수	무보수
직무연관성	필요	명확하지 않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처벌기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내각, 중재기관	검사	재판소

### 〈노동단련 부과 실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단련형을 신설하였는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에서

93. 한명섭, “북한 형사법률의 적용실태,” 대한변호사협회,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0), pp. 198~199;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92~93.

실제로 노동단련형이 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재판을 통해 부과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4월 2일 연길시에서 체포되어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온성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5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청진시 나남구역 농포동 도집결소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었다. 9월 8일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형 1년을 선고받았다.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증산교화소 3과에 수용되어 노동단련형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다. 노동단련형 1년형이었으나 무산군 출신의 경우 노동단련대 수용기간 1일당 형기 2일로 계산하고 강제송환일로부터 형기를 계산하여 증산교화소에서 4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이는 무산군 재판소에서 “단련형이 고되고 힘들어 오래 형을 받고 나오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수감자가 거의 죽게 되므로 무산군 사람을 살리려면 빨리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재판을 마친 후 판사가 이야기 했다고 한다. 판사 1명, 변호사 1명, 형선고에 참여한 나이 지긋한 남성 4명(○○○은 무슨 위원회 사람이라고 증언), 피고자 2인(○○○과 다른 대기자 1명), 보증인 1명, 계호원 2명(보안원 1명, 하전사 계급 1명) 등이 재판에 참여하였다. 재판장과 나이 지긋한 노인 4명 중 3명이 퇴장했다가 약 2~3분 지나 다시 입장하였다. 이후 재판장이 “피고 ○○○을 비법월경죄로 노동단련형 1년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무산사람을 살리기 위해 교화소 수용기간 1일을 형량 2일로 간주하겠다고 판사가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도 2005년에 예심받고 증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기 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sup>94</sup>

<sup>94</sup> NKHR2009000018 2009-03-26.

그렇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이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이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재판을 통해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도록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하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노동단련대는 공민증을 취득하는 조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재판이 없다. 인민보안부 개인기록에는 ‘어느 동 몇 반 누구 노동단련대 몇 개월 갔다 왔다’고 기록되지만 사회에 적용하는 문건에는 오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sup>95</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재판을 받지 않고 단련대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sup>96</sup>

형법에 규정된 총 245개의 범죄 조항 중 노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총 165개조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정상이 무거운 경우 노동교화형(일반교화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국가범죄에는 노동단련형이 없지만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과반수가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관리질서, 국토관리, 환경보호, 노동행정질서, 사회주의문화침해에 관련된 범죄는 거의 모든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두고 있다.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경미한 범죄의 대다수에 노동단련형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설된 구성요건에도 대폭 적용되고 있다. 특히 39개 범죄조항은 전적으로 노동단련형만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07년 12월 친구 3명과 ‘빙두’를 한 것이 발각되어 6개월 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sup>97</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2008년 6월에 한 달 동안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다고 증언.<sup>98</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08년 7월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 있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〇〇〇이 미신행위를 이유로 노동단

95\_ NKHR2009000058 2009-09-24.

96\_ NKHR2009000065 2009-11-10.

97\_ NKHR2008000029 2008-12-16.

98\_ NKHR2010000069 2010-10-26.

련대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99</sup>

## ● 집결소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이다. 이곳은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사건 계류자 및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재판과정 없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고 수용한다. 도 집결소에서는 사건계류자로부터 범행을 시인받기 위해 가혹행위를 한다고 한다.<sup>100</sup> 증명서 없이 다니다 붙잡히면 여행자 집결소로 보내진다.<sup>101</sup> 직장에서의 사고(무단결근 또는 총화학습에서 빠지는 등 도덕적 해이 사건), 의사나 운전기사 등의 업무 수행 중 과실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교화소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경미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 집결소로 보내진다.<sup>102</sup> 도마다 도보안국 관할의 ‘집결소’를 운영하고 있고, 탈주하다 잡히면 사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집결소 관련 증언은 청진 도 집결소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7월 당시 청진 집결소에는 수감실 2개(남자 수감실 1개, 여자 수감실 1개)가 있었는데 수감실의 크기는 20평 정도였으며 복식구조의 침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남녀 총 10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 수감실 1개에 70~80명 정도가 구금되어, 잠을 잘 때 쪼그려서 서로서로 붙은 자세로 잤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는 청진 집결소의 수감실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sup>103</sup>

99. NKHR2010000089 2010-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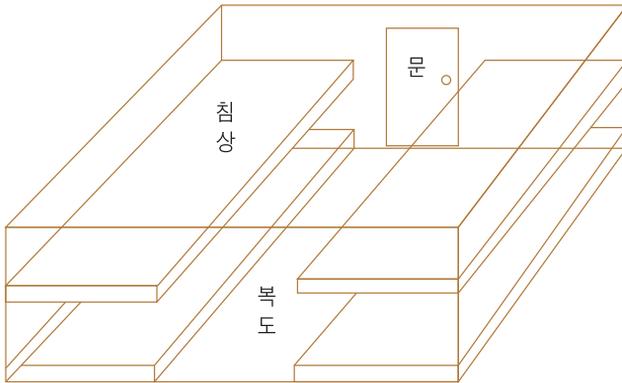
100.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101.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102. 북한이탈주민 ○○○, 2004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03. NKHR2010000069 2010-10-26.

〈그림 II-7〉 청진 도 집결소 모습



### ● 구류장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죄의 여부를 조사받는 장소다. 구류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부 구류장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조직은 중앙의 국가안전보위부와 각 도에 있는 도안전보위부, 각 시·군에 있는 시·군안전보위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보위부에는 별도의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인민보안부 조직은 중앙의 인민보안부, 각 도 단위의 인민보안국, 시·군 단위의 보안서, 동·리 단위의 보안소(과거의 분주소)로 구분된다. 각각의 인민보안부 조직에는 별도의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시 구류장에 대상자를 데려와 수사·예심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sup>104</sup>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지역별로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10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호실은 4~5평 정도의 크기로 한 방에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 정도씩을 수감한다. 구류장에는 예심실과 독방, 일반 감방이 있다. 2009년 6월에 함경북도 온성군 국가안

104.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계와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pp. 41~44 참조.

전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방이 5~6개 정도 있었는데 3평 정도 되는 한 방에 25명 정도를 수감하였다고 한다.<sup>105</sup> 대상자들을 수감할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과 형이 확정되어 교화소 수감을 대기 중인 피고인들을 구분하여 각 호실에 배정한다. 인민보안부 구류장도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비슷하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일체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심을 통해 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경우에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반면 인민보안부 구류장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달리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이상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고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부 구류장 외에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내에 별도의 ‘관리소 구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소 구류장은 관리소 내 규정 위반자, 지시 불복종자,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갖는 자, 감독이나 보위원의 눈 밖에 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용소 내의 또 다른 감옥이다.<sup>106</sup>

### ● 자의적 구금·고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실제로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 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정, 사법, 검찰 기관 일꾼들로 구성된 ‘비사회주의 그루뻬’라는 상설조직이 있어 각 지역에 나가 국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전반적

105. NKHR2011000040 2011-01-18.

106. 김윤태, “북한의 집단 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p. 51~56.

인 조사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들의 검열에 제기되면 돈이나 배정이 없이는 빠지기 힘들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노동교화까지 이르기 때문이다.<sup>107</sup>

노동단련대, 집결소는 형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니라는데 인권유린의 근본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 구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일차적으로 인민보안부 차원에서 결정하여 왔다. 또한 노동단련대의 경우 북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 재판절차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인권유린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노동단련형을 언도받고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2007년부터 노동단련대가 최장 2년까지 수감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증언하였다.<sup>108</sup>

북한은 교화소와 구류장에서 고문과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국의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이 고문이나 강압적인 방법의 진술 유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과 강압적 심문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응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집행 일꾼 양성 기관들은 강압적 진술과 진술 유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찰기관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각종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총회는 2011년 11월 21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sup>109</sup>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107.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108. NKHR2008000004 2008-07-17.

109. UN General Assembly Sixty-sixth session, Third Committe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C.3/66/L.54 (October 28, 2011).

중대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및 처벌의 존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다. 구금 및 교정시설 내 인권유린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의 구금 및 교정시설 내에서 강제노동, 고문 및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다. 강제노동과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구금 및 교정시설 내의 열악한 영양 및 위생상태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상황으로 구금자들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교화소의 감금조건은 교화사업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철저히 집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화소 내 고문과 구타 등 반인간적 처우가 일상화되어 있어 인권유린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 ● 강제노동 실태

#### 〈교화소〉

북한 노동법상 일반노동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이다(사회주의노동법 제16조, 노동보호법 제36조). 반면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이라고 한다.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1일 10시간의 작업 시간은 엄격히 준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가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 아침 5시 기상, 5시 30분 식사, 6시 30분 인원 점검, 7시부터 작업 시작, 1시에서 6시까지 오후 작업(영농기간 9시)을 하며, 15일마다 1회 휴식을 취하지만, 봄·가을 농번기에는 휴일이 없었다고 한다. 교화소는 노동단련대에 비해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지만 규율이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있었는데 노동의 강도는 보통이었지만 규율이 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110</sup>

한편, 강제노동을 하면 그 대가로 형기(刑期)를 감축시켜 준다는 증언도 제기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농사일과 가발 만들기를 하였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신의 형기가 20일 줄어들었다고 증언.<sup>111</sup>

###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는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증은 유지되지만 단기간에 육체적 부담을 주어 북한 주민들을 교양시킨다. 대부분의 북한이탈 주민들은 수감기간이 짧은 노동단련대가 교화소보다 노동강도가 훨씬 높아 힘들다고 증언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차라리 교화소에 가서 형을 받고 몇 년 있는 것이 낫다. 교화소는 급하게 단련하지 않는데 집결소와 단련대는 조금 있다가 나갈 사람이니까 무자비하게 개처럼 취급한다”고 증언<sup>112</sup>
-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평안남도 남포시 단련대에 구금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오전 4시 30분에 기상하여 밤 10시에 취침하였으며 식사 시간은 단지 5분을 주고 식사시간 외에는 노동을 하였다고 증언. 식사로는 삶은 통강냉이 반쪽과 간이 전혀 되지 않은 시래기 삶은 것을 지급하였다고 증언.<sup>113</sup>
- 북한이탈주민 ○○○도 2009년 2월 양강도 김형직군 노동단련대

110. NKHR2010000015 2010-10-05.

111. NKHR2011000080 2011-03-29.

112. NKHR2009000015 2009-03-17.

113. NKHR2010000031 2010-01-11.

에 있었는데 노동할 때는 쉬는 시간이 없었으며, 점심시간도 10분에 불과하였다고 증언.<sup>114</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아들이 2009년 6월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있었는데 노동단련대에서 아침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하고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증언. 아들이 노동단련대 갔다 오니까 매우 야위었다고 증언.<sup>11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월 김책시 노동단련대에서 터널 뚫는 공사, 노천 길 닦기 공사를 하였는데 5시 30분에 기상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노동을 하고 이후 10시까지는 생활총화 및 학습을 했으며, 대체로 밤 12시에 취침하였다고 증언.<sup>116</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에 양강도 김형직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밤 11시까지 노동을 하고 이후 사상교양을 받았다고 증언.<sup>117</sup>

일부 보안원들은 외화벌이 단위와 결탁하여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강제노동 대가를 챙긴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건설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서 인민보안서에 요청하고 인민보안서는 집결소에 있는 사람을 보내 일을 시킴. 그러면 회사에서 인민보안서에 대가로 돈을 준다고 증언.<sup>118</sup>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대에서의 주요 노동은 북한 내 일부 기업소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감찰과가 증개하여 단련대에 노동을 강제한다고 증언. 국제사회로부터 지

114\_ NKHR2010000017 2010-10-05.

115\_ NKHR2011000099 2011-04-26.

116\_ NKHR2011000213 2011-10-04.

117\_ NKHR2010000014 2010-10-05.

118\_ NKHR2009000024 2009-04-20.

원반은 어린이 영양을 위해 ‘콩우유 설비’ 공장 건설 작업을 위한 노동에도 동원되었다고 증언.<sup>119</sup>

### 〈집결소〉

집결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부 집결소는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거나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했다가 송환된 주민들은 강제노동을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09년 8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청진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새벽 4시에 기상하기도 했으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하였다고 증언.<sup>12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40일 동안 신의주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구금자 중 중국체류 기간이 길고 탈북이 잦은 강제송환자들을 모아서 작업조를 만들고 이들 작업조원들에게 강제노동을 심하게 시킨다고 증언.<sup>121</sup>

집결소에서는 개인별 과업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를 ‘도급제’라고 한다. 이로 인해 집결소에서의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신의주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을 경험했는데, 도급제라서 노동강도가 매우 세며 오랜 시간 일하였다고 증언.<sup>122</sup>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대가는 없다. 오히려 구금 기간 동안

119. NKHR2009000031 2009-05-12.

120. NKHR2011000040 2011-01-18.

121. NKHR2011000018 2011-01-18.

122. NKHR2011000018 2011-01-18.

먹고 생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례도 증언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7월 혜산시 여행자집결소에 있었는데 먹고 생활한 비용을 내야 했다고 증언.<sup>123</sup>

## ● 가혹행위 실태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가혹행위는 구금시설의 지도원이 직접 가하기도 하지만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반장이나 동료수감자들이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지도원이 직접 가혹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교화소>

교화소 내에서 구타 등 인권유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거리교화소에서의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4월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서 광산노동을 할 때 허약한 동료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맞았다고 증언.<sup>12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7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열병으로 일을 못했는데 그 이유로 보안원이 자신을 때려서 요통이 생겼다고 증언.<sup>12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0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123. NKHR2011000214 2011-10-04.

124. NKHR2011000172 2011-07-26.

125. NKHR2011000173 2011-07-26.

있었을 때 같이 수감된 사촌동생에게 강냉이를 전달하려다 발각되어 발과 손으로 맞았다고 증언.<sup>126</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3월 전거리교화소 수감시 교화소 소장에게 담당 지도원을 ‘신소’하려던 쪽지가 발견되어 ○○○이 지도원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은 담당 지도원과 말다툼을 많이 했었다고 증언.<sup>12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1월경 전거리교화소에서 한 여성 수감자가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이 여성은 사망 당시 입에서 검은 물이 나와 교화소 측에서는 구타가 아닌 오물을 먹고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sup>128</sup>

#### 〈노동단련대〉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노동단련대에서의 구타행위도 우려할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자신의 이모 ○○○이 무산군 노동단련대에서 일을 못하자 때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2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김책시 노동단련대 수감 중인 2010년 2월 16일 동료수감자가 염소에게 주는 여물(삶은 강냉이)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보안원에게 맞아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3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3월 함흥시 동흥산구역 노동단련대에 있었을 때 동료 수감자 ○○○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

126. NKHR2011000119 2011-05-24.

127. NKHR2011000242 2011-11-22.

128. NKHR2011000248 2011-12-20.

129. NKHR2011000160 2011-07-12.

130. NKHR2011000213 2011-10-04.

다고 증언. 보안원이 직접 구타를 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원이 동료수감자에게 구타를 지시한다고 증언.<sup>131</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5월에 이웃 여자 ○○○이 평안남도 덕천시 노동단련대에서 2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나왔는데 구타를 너무 많이 당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sup>132</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8월 북창군 노동단련대에서 지도원의 지시로 조명성이 동료수감자를 폭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sup>133</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9월 양강도 보천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장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동료 ○○○를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34</sup>

### 〈집결소〉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집결소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금시설로서 집결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도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마찬가지로 구타, 열악한 시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청진시 도집결소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 도집결소에는 국경을 넘었다가 잡혀들어 온 탈북자들만 모인다. 이곳에는 상시적으로 약 1,500여 명의 인원이 모여 있다. 이들은 출신 지역의 담당 주재원이 데리러 오기 전까지 이곳에 대기상태로 지내게 된다. 청진이나 회령 등 비교적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된다. 그러나 평안도, 황해도 등 먼 거리 지

131\_NKHR2011000088 2011-04-05.

132\_NKHR2011000197 2011-09-06.

133\_NKHR2011000166 2011-07-19.

134\_NKHR2011000076 2011-03-22.

역 출신자들은 1년 가까이 지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평안도, 황해도 등에서는 탈북자 인원수도 적고 교통사정도 열악하여 담당 주재원들이 연락을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p>13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황해북도 사리원시 집결소에 있었을 때 언니가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부르지 않자 보안원이 반장을 통해 모든 동료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명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36</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8월 청진 도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하전사 ○○○이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한다며 자신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증언.<sup>13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진 도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철룡(당시 21~25세, 하전사)이 일을 잘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며 몽둥이로 자신의 다리를 구타하였다고 증언.<sup>13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청진 도집결소에서 ○○○이 반장 역할을 맡았는데 동료 수감자들 앞에서 선생(계호)들을 모독했다가 ○○○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선생에게 밀고하여 보안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은 며칠 뒤 사망하였다고 증언.<sup>139</sup>

### 〈구류장〉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처벌 수단으로 구타와 고문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13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호 (2005.12.12).

136. NKHR2011000168 2011-07-19.

137. NKHR2011000045 2011-02-08.

138. NKHR2011000067 2011-03-15.

139. NKHR2011000067 2011-03-15.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4월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수사과 지도원 ○정철(당시 36~40세)이 ○○○을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피해자는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 구류장에 왔는데 거짓 진술했다는 이유로 ○정철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다고 함. 피해자는 노동단련대로 이송된 후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나와서 결국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였다고 증언.<sup>14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 혜산시 시안전부 구류장 수감시 집단처벌을 받을 때 동료수감자들과 같이 벌을 받았는데 고정자세 강요, 주먹질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sup>141</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7월 평양의 보통강구역 보안부 구류장에서 ○○○이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반나절동안 손바닥으로 주먹질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피해자는 보안부 간부에게 2,000달러를 꾸어주었는데 돈 대신 마약으로 받은 혐의로 구류장에 들어왔다고 증언.<sup>142</sup>

온성군 등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내에서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경지역 등의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이 탈북자들의 증가에 따른 질서 유지 명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제노동을 시키기보다는 오랜 시간 계속 앉아있기 등의 고정자세를 유지하는 가혹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에 15일 동안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2시간 정도 고정자세로 앉

140. NKHR2011000116 2011-05-17.

141. NKHR2010000018 2010-10-05.

142. NKHR2011000085 2011-04-05.

- 아 있다가 5분 정도 휴식을 주었다고 증언.<sup>143</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6월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부원 리정철(당시 31~35세)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한 사람을 진술하라고 3일 동안 구타하였다고 증언.<sup>14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수감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수감자 ○○○이 보위부원에게 맞아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증언.<sup>14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2월 신의주시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고자 할 때 “몇 호 감방 누구, 소변 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못하면 30분 동안 손을 든 채로 서 있다가 화장실에 가라고 해야 갈 수 있었다고 증언. 화장실 다녀온 후에도 감방에 앉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서 허락 받으면 앉고, 그렇지 않으면 30분 동안 선 채로 기다렸어야 했다고 증언.<sup>146</sup>

## ● 열악한 영양·의료 상황과 사망 실태

### 〈교화소〉

식사량, 위생, 의료 등 교화소 내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가혹행위와 마찬가지로 전거리교화소 내에서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수감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노동을 시키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배려는 하지만 약품 제공과 치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전거리교화소 내에서 열병이 돌아 많은 수감자가 사망하였다고 증언. 2009년에

143. NKHR2011000040 2011-01-18.

144. NKHR2011000040 2011-01-18.

145. NKHR2011000183 2011-08-09.

146. NKHR2011000244 2011-11-22.

300명 정도 사망하였으며, 2010년에는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들었다고 함. 여성수감자의 경우 여성전용수감자 건물이 증축되어 위생적으로 괜찮은 반면 남성수감자 건물은 오래되고 더러워 위생적으로 최악의 상태이고 이로 인해 남성수감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증언.<sup>147</sup>

- 북한이탈주민 ○○○은 전거리교회소 수감 중인 2009년 7월 10일 동료수감자 ○○○이 열병과 허약으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전거리교회소는 허약1도, 허약2도, 허약3도로 구분하여 허약반을 운영한다고 함. 허약3도반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부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지만 치료는 해주지 않는다고 함. ‘병(病)반’은 교회소 내 총 4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 복수와 결핵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을 격리시키는데 약과 치료비는 자체 부담이며, 식염수 정도를 맞춰 준다고 증언.<sup>14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2월 전거리교회소 수감시 동료수감자가 질병 및 과도한 노동으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증언자에 따르면 시체는 시체실에 보관하였다가 수레에 싣고 불망산에서 화장한다고 함. 또한 2009년부터는 전거리교회소 내 허약반이 따로 있으며, 이곳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증언.<sup>149</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 전거리교회소 수감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증언자가 전거리교회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시기에는 교회소 내에서 사망한 자를 수도 없이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5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7월 함경남도 영광군 함흥 교회소에 수감 중인 ○○○(여자, 36~40세)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

147. NKHR2011000184 2011-08-16.

148. NKHR2011000173 2011-07-26.

149. NKHR2011000242 2011-11-22.

150. NKHR2011000241 2011-11-22.

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함흥 교화소는 2010년에 사망자가 증가하였으며, 거의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증언.<sup>151</sup>

###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영양부족, 강도 높은 노동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증언들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타, 굶주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6월 동료수감자 ○○○(남자, 당시 43세)이 영양실조로 온성군 노동단련대에서 나간 뒤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고 증언.<sup>152</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8월 온성군 노동단련대 수감 중에 동료수감자가 설사가 심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노동단련대에 형식적으로는 의사가 있지만 돈을 주고 약을 사먹어야 한다고 증언.<sup>153</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0월 회령시 단련대에서 ○○○(남자, 당시 나이 27세)이 독풀을 먹었는데 단련대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sup>15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7월 13일 양강도 백암군 노동단련대 수감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55</sup>

151\_NKHR2011000066 2011-03-15.

152\_NKHR2011000081 2011-03-29.

153\_NKHR2011000045 2011-02-08.

154\_NKHR2011000089 2011-04-05.

155\_NKHR2011000232 2011-11-08.

### 〈집결소〉

집결소도 다른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영양실조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수감자들은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때로는 체력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2월 6일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 수감 중인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하루 먹는 양이 200~250g정도였으며, 허약으로 굶어 죽은 것이라고 증언.<sup>156</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청진 도집결소에서 동료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사망자는 함경북도 부령군 화목지에서 허약에 걸려 청진 집결소에서 사망하였다고 함.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임신부가 기침이 심하고 열이 높았는데 청진 집결소에서 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결핵 및 허약 등으로 병이 매우 심해졌을 때 병원으로 호송됐는데, 호송 도중 사망하였다고 증언.<sup>15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1월 3일 신의주 집결소에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시체를 이불에 싸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의사 보안원이 이튿날 부검하고 시신을 땅에 매장하였다고 증언.<sup>158</sup>

### 〈구류장〉

보안서 구류장에서도 보안원의 가혹행위나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56. NKHR2011000170 2011-07-26.

157. NKHR2011000067 2011-03-15.

158. NKHR2011000253 2011-12-20.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월 양강도 김형직군 보안서 구류장 수감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직전의 사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5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 중이던 2009년 12월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60</sup>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의 영양상태도 열악하다. 북한이탈주민 ○○○은 강제송환 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식사는 껍질까지 같이 분쇄한 옥수수 가루를 삶은 것으로 4~5 숟가락 정도 되는 양으로 하루 세끼 주었다고 한다.<sup>161</sup>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도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월 함경북도 경원군(은덕군)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수감시 경원군(새별군)에 살던 ○○○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소식을 경원군 고건원 노동자구 신흥동에 살던 ○○○(당시 43세 여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162</sup>

## 라.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

### ● 정치범수용소 현황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북한의 동북부 지역에 6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163</sup>

<sup>159</sup> NKHR2010000017 2010-10-05.

<sup>160</sup> NKHR2011000120 2011-05-24.

<sup>161</sup> NKHR2011000186 2011-08-16.

<sup>162</sup> NKHR2010000038 2010-11-02.

<sup>163</sup> 정치범수용소 설치 경과와 해체된 수용소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15~120 참조.

수용인원은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0월 16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보고서는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15만 4천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소 위치와 수용인원은 평남 개천 14호 관리소 1만 5천 명, 함남 요덕 15호 관리소 5만 명, 함북 명간 16호 관리소 1만 5천 명, 평남 북창 18호 관리소 1만 9천 명, 함북 회령 22호 관리소 5만 명, 함북 청진 25호 관리소 5천 명 등이다.<sup>164</sup>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65</sup>

〈그림 11-8〉 정치범 수용소 위치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sup>2</sup>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천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노

164\_ 『동아일보』, 2009년 10월 17일.

165\_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와 북한법·국제법적 평가』 (2009.11.24), p. 23.

동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국가안전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sup>166</sup>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국가안전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경비부이다.

### ●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sup>166</sup> 인민보안부 소속 경비대 산하에 제18호 관리소(평남 북창군 특장리 소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sup>167</sup>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북한이탈주민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호크는 18호 관리소에도 혁명화 구역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sup>168</sup> 또한 18호 북창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김혜숙은 자신의 수기에서 가축을 바쳐 2001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수용소에서 해제(석방)를 받았으며, 자신이 해제 받을 당시 7세대가 함께 해제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sup>169</sup>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15호 관리소와 18호 관리소에 혁명화 구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의 경우에는 혁명화구역에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북한체제에 순응하게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중신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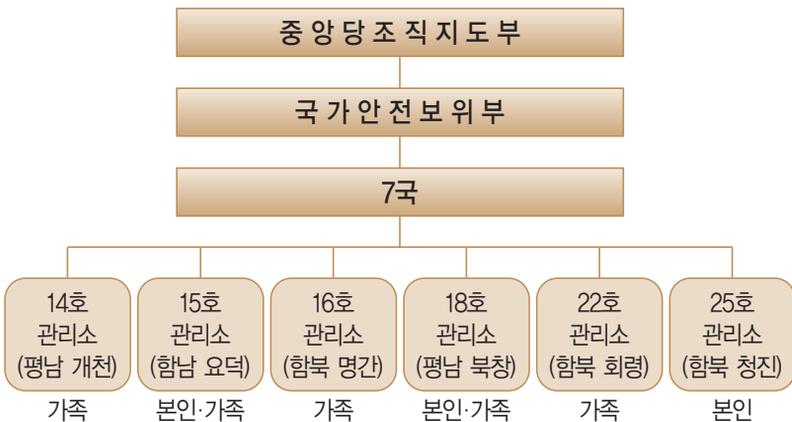
167.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인민무력부 외신국 통역관이던 ○○○은 1989년 러시아 유학생 사상검토과정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1989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요덕수용소에서 수감 후 청진제강소 노동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2년 11월 30일, 200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168. David Hawk, *The Hidden Gulag*, 2nd ed. (Washington: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p. 69.

169.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11), pp. 85~88.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이영국은 출신성분에 따라 그 수용 기간과 출소 가능성 등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극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현지도에서 언급된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일반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70</sup>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는 경우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II-9〉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 ● 정치범수용소 운영실태

정치범수용소에 근무했거나 수감되었다가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수용소 운영실태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0.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이탈주민 워크숍, 2006년 1월 20일.

### 〈개천 14호 관리소〉

개천관리소에는 유치원은 없고 인민학교(현재 소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있다. 인민학교는 5학년까지 있는데, 한반에 30~40명 정도 있었고 학년별로 3~4개 반이 있었다. 고등중학교(현재 중학교)는 6년 과정이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까지 합치면 1,000명 이상의 학생이 관리소 내에 있었다. 인민학교에는 학급당 한 명의 담임선생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고등중학교는 한 학년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고등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한 학년에 한 명씩만 담임선생을 배치하는 것이다. 고등중학교 담임선생은 가르치는 수업은 없고 작업을 나가고 들어올 때 인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나갈 때 학생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한다.

개천관리소 실상은 이곳에서 태어난 신동혁이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신 씨는 개천관리소에 10대 법과 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신 씨가 적고 있는 10대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주할 수 없다. 둘째,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셋째, 도둑질을 할 수 없다. 넷째,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다섯째,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 자를 보았을 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여섯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일곱째,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여덟째,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 아홉째,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 열 번째,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10대 규정을 어길 경우 총살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sup>171</sup> 신 씨의 수기를 통해 본 개천 14호 관리소의 실태는 〈표 II -7〉과 같다.<sup>172</sup>

171.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pp. 60~62.

172. 위의 책, pp. 21~185.

### 〈표 II-7〉 개천 14호 관리소의 운영 실태

개천 14호 관리소는 1965년경에 생겨났다. 개천교화소에는 대동강과 철조망을 경계로 학교, 마을, 5개 골안,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관리소는 본 마을, 1, 2, 3, 4, 5호 골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4호와 5호 골안은 가족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개별적으로 생활하며 결혼도 안 되고 가족단위 생활도 안 된다. 따라서 관리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본 마을과 1, 2, 3호 골안 아이들이다. 1, 2, 3호 골안 사람들도 4, 5호 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으며, 4, 5호 골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신 씨는 외동리 8작업반에서 태어났으며, 40채 정도로 구성된 작업반이 있었다. 집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 부엌이 붙은 방이 네 칸씩 있어서 각 가구마다 한 칸씩 사용하며 4세대가 생활한다. 관리소는 연로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들만 모여서 일하는 작업반에서 일해야 한다.

수용소 집은 시멘트로 지은 것으로 방바닥과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바닥엔 장판이 없으며 시멘트 위에서 그대로 잔다. 난방은 석탄을 사용해서 불을 댕다. 관리소 내에서 석탄을 생산하므로 매일 그날 쓸 수 있는 양을 배급한다.

관리소에서 작업반은 작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관리소 내 공장은 탄광, 공무직장, 건설작업반, 식료공장, 시멘트공장, 도자기공장, 고무공장, 종이공장, 피복공장, 농장이 있으며 각 공장은 여러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별 담당 보위지도원이 배치되어 있다. 14호 관리소 내 보위원 마을은 100세대 정도 되는데, 1세대에 2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보위원 200가구가 관리소 내에서 생활한다. 작업반 담당 보위원은 3개 작업반에 1명씩 있다.

신 씨가 있던 피복공장은 12~13개 정도 작업반이 있는데, 2,000~3,000명 정도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작업반은 보통 4~5분조로 나뉘는데, 한 분조당 20~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작업반에 100~150명이 배치되어 있다. 작업반장 위에 총 반장이 있는데, 각 지역 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선출한다. 하루 작업 생산량도 담당 보위지도원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지 않고 보위지도원의 지시를 받은 총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 작업반장을 무섭고 포악한 존재로 생각하며 어떤 때는 보위지도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느낀다. 작업반장은 담당지도원보다 더 독하다.

수용소 내에서는 비밀감옥이 운영되고 있다. 신 씨는 1996년 4월 어머니와 형이 탈출한 사건으로 인해 비밀감옥에 수감되었다. 방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대소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하나 있을 뿐이며 크기는 사방 1m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당시 다리를 펴고 누우면 딱 맞을 만큼 좁았다. 감방 선반에 있던 쇠사슬로 연결된 족쇄를 발목에 채우고 밧줄로 끌어당겨서 거꾸로 매달았다. 별도의 고문실이 있는데 여기서 불고문도 당한다.

### 〈북창 18호 관리소〉

북한이탈주민 김혜숙의 수기는 북창관리소의 실상을 부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sup>173</sup> 김혜숙은 1975년 13살의 나이에 18호 관리소에 수감되어 2002년 8월 13일까지 무려 27년을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보냈고, 2009년 3월 남한에 도착했다.

18호 관리소에는 이주민(수용소에 수감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단층 건물이며 한 학급에 남녀 28~32명 정도가 있다. 이주민 학교 교원들은 관리소의 ‘행정일꾼’이나 인민보안부 또는 국가안전보위의 자식들로 학생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학교를 지키는 숙직을 서야 한다. 숙직은 한 조에 4~5명으로 구성되는데 학교를 돌아보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직일기에 기록해야 한다. 이주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석탄을 캐는 광산노동자가 된다. 학교를 결석하면 온 학급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학교로 끌고 간다. 그리고는 교원한테 매를 맞고 학급 친구들이 달려붙어 때린다. 소학교 학생들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진흙을 파서 관리소 내의 탄광으로 옮겨 놓는 일을 한다.

18호 관리소 내에는 탄광들이 있다. 김혜숙은 심산갱이라고 하는 탄광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채탄공을 하였는데 한 작업반은 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작업반은 하루 3교대 작업(0시 교대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8시 교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 교대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그러나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심산갱의 노동강도는 여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탄광의 작업장 규율은 매우 엄격하다. 지각을 3번하면 하루치의 쌀 배급표를 지급하지 않는다.

18호 관리소에는 병원이 하나 있다. 영등갱이라는 광산에 있으며 이

173.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15~58.

름은 영등병원이다.

### 〈회령 22호 관리소〉

회령 22호 관리소는 ‘새천관리소’라고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2호 관리소 주변에는 가 보았는데, 22호 관리소는 한 개 군보다 작지만 함경북도 농사의 10%를 거기서 생산한다는 소리를 들었다.<sup>174</sup> 또한 회령 22호 관리소는 중심방향과 세천 쪽으로 해서 산 하나를 막았다고 한다. 애들은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함께 수감하지만 부인은 이혼하라고 한다.<sup>175</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22호 관리소에도 소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4학년까지 오후에 나가서 김을 맨다고 한다. 오전에 공부하고 아이들이 찢통을 매고 김매서 풀을 담는다고 한다.<sup>176</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관리소 아이들은 10시부터 노동을 시키는데 강도가 매우 세다. 엄마가 아이 일을 도와주면 벌을 서게 한다.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각자 일은 각자가 완수해야 한다.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밤과 낮에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고 한다. 관리소에 ‘수로’가 있었는데 이는 유사시 수용자를 사살할 경우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수로에 익사시킬 목적이었다. 식사로는 옥수수밥을 세끼 지급하는데 보안원의 지적을 받거나 아이 일을 도와주다가 발각되는 경우 이틀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감옥이 있다고 한다. 개인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자나 말반동자는 1m×1m 크기의 독방에 20~30일 구금되며, 식사량은 절반만 지급한다.<sup>177</sup>

울타리에는 3,300V의 고압전류가 흘러 도주할 수 없다. 아이들은 소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고 노동을 한다.<sup>178</sup>

174. NKHR2009000021 2009-04-13.

175. NKHR2009000024 2009-04-20.

176. NKHR2009000067 2009-11-12.

177. NKHR2011000134 2011-06-07.

178. NKHR2011000165 2011-07-19.

### 〈청진 25호 관리소〉

청진관리소는 ‘수성교화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라고 한다.<sup>179</sup> 또한 관리감독도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닌 인민보안부가 관할한다고 한다. 수성교화소는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화소 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수성교화소에 일반 경제범은 들어가지 못하고 정치범만 수감된다. 수성교화소는 기계를 가지고 수공업적으로 자전거를 생산한다.

### ● 정치범의 수용 및 처벌

북한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는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도·시·군 결재 후 중앙당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증언하였다.<sup>180</sup>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과 000에 의하면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 쪽이 정치범으로 처벌되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혼하여 자기 집으로 가고 여자 쪽 집안이 정치범으로 걸리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sup>181</sup> 북한이탈주민 000은 북한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경우 그 집에 사위가 있으면 딸과 이혼시키고, 며느리가 있으면 아들과 이혼 시켜

179.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80. NKHR2011000165 2011-07-19.

181. 북한이탈주민 000·000, 200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서 사위와 며느리는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sup>182</sup> 한편, 비밀재판에 의해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결정된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대외보험총국 초급당비서였던 큰오빠 ○○○이 당 자금을 횡령한 죄목으로 2005년 4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비밀재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sup>183</sup>

탈북증가와 맞물려 남한행 기도와 남한사람 접촉 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가족이 탈북한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월, 31살 가량의 중국에서 알게 되었던 남자 ○○○이 비밀 문건을 유출하여 판 혐의로 요덕수용소로 갔다고 증언. 본인이 아는 유력한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함.<sup>184</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에 있는 누나와 전화를 하고 탈북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이 회령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소식을 2008년 1월에 이웃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18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0월 이모 ○○○이 이산가족찾기 행사에서 남한사람과 돈거래를 했다는 죄목으로 요덕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증언.<sup>186</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구에 거주하던 가족 3명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182. NKHR2011000196 2011-09-06.

183. NKHR2011000085 2011-04-05.

184. NKHR2009000010 2009-02-26.

185. NKHR2010000053 2010-06-29.

186. NKHR2010000068 2010-04-27.

2010년 7월에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187</sup>

- 북한이탈주민 ○○○은 가족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갔다는 이유로 함경남도 신포시 포항동에 남아 있던 가족 4명(남자 2명, 여자 2명)이 2009년 9월 관리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증언.<sup>18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0월 무산군 보위부의 외사지도원을 하던 ○○○이라는 사람이 탈북을 하여 남한으로 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이 청진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18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회령시 동명동에 거주하던 ○○○이 2011년 회령 22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이웃에게 전해 들음. 수감자는 중국에 있는 남한 대사관에 들어가려다 체포되어 2010년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증언.<sup>190</sup>

사회일탈행위에 대한 처벌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신매매를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언되고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일부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외숙모 ○○○이 농업책을 반출하고 인신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에 개천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증언.<sup>191</sup>
- 북한이탈주민 ○○○은 외가쪽 친척 ○○○이 인신매매를 이유로 2009년에 관리소에 수감되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192</sup>

187\_ NKHR2011000196 2011-09-06.

188\_ NKHR2011000077 2011-03-22.

189\_ NKHR2011000058 2011-02-22.

190\_ NKHR2011000187 2011-08-16.

191\_ NKHR2011000068 2011-03-15.

192\_ NKHR2011000124 2011-05-24.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경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의 기름을 연유공급소 소장과 부기, 비서가 절도하고 사용 및 판매를 하여 2010년 2월경 그 가족들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 이 사건은 강원도 천내군에서는 유명한 ‘특대형 사건, 연유 사건’이라고 한다고 함.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연유창고는 김일성, 김정일이 비축 했던 비밀 창고라고 증언.<sup>193</sup>

## ● 수용자 생활실상

### 〈공민권, 가족권〉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한때는 입당이나 결혼, 출산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혜숙은 북창관리소에서 모범 ‘사로청’(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원이 되어 1984년 10월 초급당과 초급 사로청의 보증으로 입당하였고, 탄광 발파공과 결혼하여 출산도 하였다.<sup>194</sup>

관리소에서의 결혼 생활은 죄수 입장에서 보면 평생소원이다. 보위지도원이 결혼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며, 관리소 규정을 잘 지키고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래야만 최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표창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95</sup>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은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193. NKHR2011000196 2011-09-06.

194.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60~68.

195.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63~65.

## 〈강제노동〉

일상적으로 작업반의 수용자들은 동트기 전에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인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해질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옥수수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작업 종료 전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 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소 수감자들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5시에 출근한다. 일하러 가면 6시 정도 된다.<sup>196</sup> 관리소는 특별히 요일별 차이가 없고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휴일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소에도 보통 매월 초 한 달에 한 번씩 쉰다.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날, 설날에도 쉰다.<sup>197</sup>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된다.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쉬는 날에는 탄광 보위지도원이나 담당 보안부 지도원들에 집에 불려가 밭 갈기, 감자심기, 감매기, 석탄 실어다가 창고에 들이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sup>198</sup>

강제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내에서의 각종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 다반사라고 한다. 김혜숙의 남동생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sup>199</sup>

한편, 과거에는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강제노동 대가로 노임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혜숙은 탄광에서 받은 노임을 절약해 상점에서 파는 미역 80kg을 사서 식량에 보탤다.<sup>200</sup> 남편도 노임을 받

196.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 56.

197. 위의 책, p. 45.

198.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38.

199. 위의 책, pp. 42~44.

200. 위의 책, pp. 34~35.

았다. 또한 북창관리소 내 탄광에서는 월 노임 외에 한 달에 한 번 비누 1장과 장갑을 지급하였고, 신발은 6개월에 한 켤레씩 지급하였다.<sup>201</sup>

### 〈주거〉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 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 된다.

### 〈건강권〉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지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한이탈주민 김혜숙의 어머니는 북창관리소 수감시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에게 주기 위해 매일 산에 가서 지렁이를 한 양동이씩 바치는 일을 하다가 허약해졌다. 배에 복수가 차 불룩하게 불어났지만 변변한 약을 쓰지 못하였다. 김혜숙이 어머니를 위해 ‘알랑미’(중국에서 수입한 쌀)를 팔아 영양제를 샀는데 영양제를 먹으면 조금 괜찮다가 영양제가 떨어지면 병세가 악화되었다. 결국 집에서 6개월 동안 앓다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sup>202</sup> 김혜숙의 남편은 고난의 행군

201.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 66.

202. 위의 책, pp. 27-29.

시기 북창 18호 수용소에서 펠라그라 병에 걸렸다. 수용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펠라그라 병에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다.<sup>203</sup>

### 〈여성 위생 및 권리침해〉

김혜숙은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출산 이후 생리대로 쓸 천이 모자라 입던 내의를 찢어 사용했다고 한다. 출산 여성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위생도구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여성 위생 상태를 비판하고 있다.<sup>204</sup>

### 〈식량권〉

탄광과 농장의 1일 배급량은 원래 1인당 옥수수 쌀 900g인데 1990년대 중반 이후 200g은 절약미라고 해서 떼어놓고 700g만 주었다. 부식은로는 엽장 배추 3포기와 소금을 조금씩 받았다. 노동 강도는 세고 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파서 힘들다고 한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은 쥐를 잡아서 구워먹는 것인데, 농촌지원을 나가면 쥐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일주일 내내 쥐를 잡아먹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인민학교를 다니는 경우 1일 학생 배급량은 300g, 고등중학교 1~4학년은 1일 400g, 5~6학년은 1일 500g을 받는다.<sup>205</sup>

북한이탈주민 김혜숙의 경우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알량미가 한 달에 고작 8kg이었다고 한다. 쌀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는 것밖에는 허기를 채울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쉬는 날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식량으로 모아 놓았다고 한다.<sup>206</sup>

203.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27~29.

204. 위의 책, p. 68.

205.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46~48.

206.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73~76.

명절 때도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김혜숙의 경우 명절날만 큼은 나물을 섞지 않고 강냉이 쌀에다 알량미를 조금 넣어 지은 강냉이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 김혜숙의 어머니는 맷돌을 사가지고 와서 배급받은 강냉이 쌀을 모두 갈아서 끼니때마다 죽을 쑀었다고 한다. ‘허약(영양실조)에 걸리고 몸이 바짝 말라 친인척들이 봐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한다고 한다.<sup>207</sup>

### 〈교육권〉

수용소 인민학교의 하루 일과는 수업 후 노력동원을 제외하면 일반 인민학교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수업과목과 수업내용,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는 일반학교와 큰 차이가 있다. 인민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체육 3과목이 전부이다. 김일성과 관련된 것이나, 당 혁명, 북한 역사, 그리고 북한의 지리와 과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sup>208</sup>

중학교 기간에는 매일 공장이나 농장,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이처럼 수용소에서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업은 없고 노동만 하게 된다. 고등중학교 때에는 책은 없고 생활총화 노트만 있다.<sup>209</sup>

207.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pp. 25~26.

208.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pp. 80~98.

209. 위의 책, pp. 115~128.



# 3



##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가. 북한의 형사법과 인권

#### ● 북한형법

세계인권선언(제11조 제1항)과 자유권 규약(제14조 제2항)은 형사피의자들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형벌 종류의 재정비 및 법정형의 완화, 구성요건의 구체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형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북한형법은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죄자의 처리에 있어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있다(제2조). 둘째, 북한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 중살인범죄에 대해 형사소추 시효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57조). 셋째, 북한형법이 2004년 전면 개정되

면서 이전에 비해 구성요건이 명확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방적·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넷째,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및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하여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하고 있다.<sup>210</sup>

2007년 이후 북한형법의 개정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였는데 상당수 범죄에 사형을 부과하고 있고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2009년에는 내부 통제와 외부정보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였다.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탈북자의 처벌규정인 비법국경출입죄의 처벌도 강화되었다.

지속적인 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형법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반국가범죄 등 형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에 따라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법 규정보다는 최고지도자의 방침이 더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2011년 북한이탈주민 80명을 상대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결과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말씀과 지시가 곧 법이라는 사회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김정일 말씀·지시가 9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민보안부 포고문 86.5%, 사회주의헌법·형법 등의 국가법 79.7%, 국방위원회 명령 77%, 당의 방침 74.3%, 10대원칙 71.6%, 내각 결정문·지시서 56.8% 순이었다.

210.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16~19.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는 힘의 순서에는 김정일 말씀(지시) → 당의 명령 → 내각의 결정 → 당 간부 지시 → 사회주의헌법(일반법)의 순이라는 응답이 52.9%를 차지하였다.<sup>211</sup>

## ● 북한 형사소송법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4년 5월 6일 전면 개정되고, 2005년 7월 26일과 같은 해 10월 18일 각각 부분 개정된 것이다. 현행 북한 형사소송법은 2004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 비해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피심자’(피의자), ‘피소자’(피고인)를 구급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소 및 재판을 위한 구류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포영장제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강압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유도에 의한 진술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호라는 측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sup>212</sup> 첫째, 수사와 예심절차에서 여전히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고 체포·구속은 물론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검사의 지휘·감독만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되고,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71조). 셋째, 구속적부심제도 미 채택, 무죄추정 원칙과 전문(傳聞)법칙 배제 등 적법절차 원칙

211. 최봉대,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1), pp. 10~12.

212. 한명섭,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문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8) pp. 30~32;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서울: 법원행정처, 2006), pp. 25~26.

이 미비하다.

그밖에 편의적 관할제도, 재판의 독립, 상소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각각 해당되는 곳에서 설명한다.

## ● 북한의 재판제도

### 〈재판소 구성과 관할〉

북한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sup>213</sup> 최고재판소(구 중앙재판소)<sup>214</sup>는 도·직할시 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항의 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인민재판소나 도·직할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도·직할시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고, 관할 지역 내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로 보낼 수 있다(제127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 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제126조).

북한의 심급제도는 최고재판소가 1심으로 심리·재판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2심제로 되어 있

213. 특별재판과 관련하여 북한은 2011년 1월 19일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민사특별재판소로 해사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214. 현행 사회주의헌법은 최고재판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판소구성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들은 아직도 중앙재판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들도 사회주의헌법 규정에 맞게 곧 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관련 법령 인용시에는 현행 사회주의헌법 규정에 따라 최고재판소라고 한다.

는데 상급재판소의 권한이 넓고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상급 재판소는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하급재판소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심리·재판을 하거나 동급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3급2심제를 채택하면서도 심급제의 이익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인권보장과 권리의 구제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필요에 따라 범죄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두어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의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편의적 관할제도 도입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 후퇴라는 문제점이 있다.<sup>215</sup>

#### 〈재판소 구성원과 재판의 독립〉

재판소구성법에 따르면 판결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4조). 제1심 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되며(제9조), 제2심 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제14조). 그리고 판결 및 판정은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의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제17조). 재판심리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참석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북한은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 내지는 당적 영도의 일환으로 재판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 우위 및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김정일 또는 조선노동당이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출과 활동도 역시 조선노동당이 주관한다. 내각과 최고재판소 등은 형식상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고 그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자기사업에

215.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56~57.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인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사회주의헌법 제168조). 북한은 재판의 독립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회주의헌법 제166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그러나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판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sup>216</sup> 또한 검찰감시법 제11조는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소는 사건 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재판과 중재사건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사가 판사의 상위에 존재하는 사법체계라고 볼 수 있다.<sup>217</sup>

### 〈인민참심원제도〉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민참심원은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최고-도·직할시-지구로 구성된 재판소 체계의 각급 재판과정에서 심문권을 갖는 등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한다. 제1심 재판 및 판결에 1명의 판사와 2명의 인민참심원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참심원제도는 형식상 영·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인민참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북한주민은 인민참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재판소구성법 제6조) 구체적인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216.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특징과 실태』, pp. 49~53.

217.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형사재판절차

### 〈수사와 예심 및 기소〉

형사재판은 수사로부터 개시된다.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심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수사원은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심에 넘겨야 한다(제144조).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심을 종료해야 한다.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1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제151조).

예심절차가 끝나면 기소단계로 들어간다.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제262조). 피심자는 10일까지 구류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피심자는 3일까지 구류할 수 있다(제263조). 예심을 종료한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제265조).

### 〈제1심 재판〉

제1심 재판절차는 재판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재판준비는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하는데 사건기록을 통해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기소에 근거가 있는지,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며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제289조~제291조). 검토결과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

보내는 판정을 한다(제292조, 제293조). 이와 같은 재판준비절차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수사, 예심, 기소단계의 기록들을 검토하여 재판심리단계로 넘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단계로써, 재판심리단계에 들어가기 전 재판준비단계에서 재판소와 검사가 피소자의 형벌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18</sup>

제1심 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 변론, 피소자의 최후진술, 판결 선고 등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제301조). 제1심 재판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271조).

제1심 재판은 재판소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노동단련형을 부과할 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재판심리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제287조).

### 〈제2심 재판〉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검사의 불복신청은 항의라고 하여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의 상소와 구별하고 있다(제357조). 제2심 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제364조). 제2심 재판은 사실 심리가 아니다. 제2심 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 재판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각하게 위

218. 김상균, “북한의 사법제도,”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6)』 (서울: 법원행정처, 2007), p. 61.

반하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이 없는가를 검토할 뿐이다(제370조). 제2심 재판은 상소, 항의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제366조).

## ● 형사재판 실태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변호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재판절차의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절차에 대해 상이하게 증언하고 있다.

### 〈재판소 구성원〉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수사단계나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형벌이 결정된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는 재판준비 단계에서 재판소와 검사의 조율로 형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010년 1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예심단계에서 검찰소 검사와 예심원 2명이 교화를 결정하였다고 증언.<sup>219</sup>

그러나 재판소에서 재판을 거친다고 증언한 경우에도 증언자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1998년 1월 청진 포항구역 단련대 구금 중 탈출하다가 체포되어 예심 받고 재판에서 3년형을 언도받았는데 포항구역 재판소에서 검사와 재판장이 있는 곳에 혼자 세워놓고 재판을 받았다고 증언.<sup>220</sup>

219. NKHR2010000089 2010-06-08.

220.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 〈재판절차〉

북한이탈주민 증언 가운데는 북한의 형사재판절차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5월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두 달간 예심을 받았으며, 재판소 부소장, 인민참심원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 등 5명이 자신을 재판하였는데, 검찰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 재판소 부소장과 인민참심원의 판결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증언.<sup>221</sup>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 진입 실패로 2004년 3월 1일 체포되어 송환되었는데, 북창군 인민보안서에서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서류상 재판만 진행되었으며 변호사 등은 없었다고 증언.<sup>222</sup>
- 북한이탈주민 ○○○은 비법월경죄 및 한국행 시도로 증산교화소에 2003년 7월 12일부터 2004년 12월 24일까지 수감되었는데, 재판 없이 서류상으로 1년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 교화소 측으로부터 보안원들이 “너는 1년인데 나쁜 물이 든 사람들은 더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1년 5개월 12일이 지난 후 출소하였다고 증언.<sup>223</sup>
- 북한이탈주민 ○○○은 ‘도강’하려다 잡혀서 회령시 보위부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고 시보안서로 넘겨졌는데 탈북자 문제는 재판을 하지 않고 문건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다

221. NKHR2008000022 2008-11-05.

222.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7일, 서울에서 면접.

223.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 고 증언.224

### 〈재판기간〉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다수 증언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그녀의 오빠가 ‘도강’하여 남한사람을 만났다는 죄로 2005년부터 1년 동안 함북 도보위부 구류장에서 예심을 받았다고 증언.225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기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증언.226
- 북한이탈주민 ○○○도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예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증언.227

반면 북한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간이나 예심기간 또는 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사례들도 증언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북한의 법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수사기간은 준수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에서의 추가예심환송기간과 제1심 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증언.228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는 경우 최장 1개월로 되어있는 예심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229

224.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225. NKHR2009000066 2009-11-11.

226. NKHR2010000053 2010-06-29.

227. NKHR2010000102 2010-07-13.

228. NKHR2010000015 2010-10-05.

229. NKHR2010000030 2010-11-23.

- 북한이탈주민 ○○○도 노동단련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sup>230</sup>
- 북한이탈주민 ○○○도 노동단련형을 받는 동안 수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sup>231</sup>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형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간과 예심기간은 준수되지 않은 반면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증언.<sup>232</sup>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교화형을 받았는데 예심기간과 기소기간, 제1심 재판기간이 준수되었다고 증언.<sup>233</sup>
-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교화형을 받았는데 수사기간은 준수되지 않았지만 반면 예심기간과 기소기간,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되었다고 증언.<sup>234</sup>

위의 증언 사례를 보면 수사기간과 예심기간은 준수되지 않는 반면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은 준수된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의 준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북한에서 형사재판기간이 준수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기소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의 준수도 북한 형사법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 결과라기보다는 수사과 예심을 거치는 동안 범죄와 형벌을 대부분 확정짓고 기소와 제1심 재판은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30. NKHR201000043 2010-11-02.

231. NKHR201000053 2010-06-29.

232. NKHR201100020 2010-05-19.

233. NKHR201000059 2010-11-30.

234. NKHR201100021 2010-06-07.

## 〈인민참심원의 역할〉

인민참심원은 죄목만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sup>235</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당 간부를 구타한 후 3일 만에 당시 함흥시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 체포되었는데, 군당에서 인민참심원 2명을 임명하여 재판에서 죄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재판시 임명된 인민참심원들이 “사회적으로 놓고 볼 때 김일성을 보필하는 간부를 때렸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판사나 검사는 이러한 인민참심원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sup>236</sup> 물론 인민참심원들은 범죄자들의 감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인민참심원이 판사와 검사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알고 있어 그들의 역할과 인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sup>237</sup>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 중에서 인민참심원을 선발하며 이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명색이 인민참심원일 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238</sup> 한편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등은 공개재판인 경우에는 대부분 판사와 인민보안원 등이 참가하여 정확한 죄목이나 증인없이 처형이 이루어진다고 증언하였다.<sup>239</sup>

### ● 현지공개재판제도

북한 형사소송법은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현지공개재판을 규정하고 있다(제286조). 현지공개재판은 판사와 검사,

235.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236.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1년 5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237.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238.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239.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3년 11월 3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인민참심원도 참가하고 재판의 형식도 갖추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이탈주민 ○○○은 2008년 10월 무산군 장마당 옆에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고 증언하였다.<sup>240</sup> 그러나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공개재판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참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대상 범죄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sup>241</sup>

공개재판 시 주요 범죄 전과자를 참관하게 한다는 증언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하여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남한 돈을 받은 사람, 마약 거래를 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라고 하였다. 증언자 자신은 ‘도강’을 죄목으로 2007년에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된 바가 있었다. 교화소 출소 후 어느 날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소에서 참관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sup>242</sup>

###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

현지공개재판의 목적은 범죄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 규탄함으로써 일반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현지공개재판은 많은 경우 공개처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3월 말경 무산군 광산회관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무산군 재판소 소장, 검찰소 소장, 인민위원장 (또는 인민부위원장), 보안서 정치부장이 나왔다고 증언. 증언자는 재판소 소장이 “아무개는 사형에 처한다!”며 판결문을 낭독한 것 같다고 증언.<sup>243</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

<sup>240</sup> NKHR2011000058 2011-02-22.

<sup>241</sup>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30.

<sup>242</sup> NKHR2012000008 2012-01-31.

<sup>243</sup> NKHR2008000022 2008-11-05.

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자 2명, 여자 13명이 공개처형 되었다고 증언. 당국은 각 기관, 기업소, 인민 반들에 모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지한 데 이어 당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하였다고 증언.<sup>244</sup>

그러나 현지공개재판이 모두 공개처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3월 무산군 광산회관에서 공개 재판에서 재판소 소장이 “아무개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지만 “나머지 누구누구는 15년 징역, 누구는 10년, 누구는 5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였다고 증언.<sup>245</sup>
- 북한이탈주민 ○○○이 2008년 6월 12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있었던 현지공개재판에서 마약 밀수, 유색금속 밀수 혐의로 12명 중 3명은 무기징역형, 4명은 10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았다고 증언.<sup>246</sup>
- 북한이탈주민 ○○○도 공개재판에서 중범을 교화 보낸 적이 있다고 증언.<sup>247</sup>

### 〈현지공개재판과 판결〉

공개재판 이전에 재판소에서 형이 결정되고 공개재판에서는 단지 판결문을 낭독한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공개재판 이전에 형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공개재판 이후에 형이 결정되는지를 물었다. 59명이 응답하였는데 공개재판 이전에 형이 결정된다는 답변이 35명으로 60%를 차지하였지만 공개재판 이후에 형이 결정된다는 답변도 24명으로 40%에 달하였다.<sup>248</sup>

24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3.5).

245. NKHR2008000022 2008-11-05.

24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67호 (2008.7.1).

247. NKHR2011000131 2011-06-07.

248. 2011년 북한이탈주민 230명 면접조사 결과.

공개재판 이전에 재판소에서 형이 결정되고 공개재판에서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판결문을 낭독한 후 형을 집행한다는 증언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시 재판받는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기 바로 전인 사람들이라고 증언.<sup>249</sup>
- 북한이탈주민 ○○○은 동생 ○○○이 녹화물 시청으로 공개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소에서 형을 확정하고 공개재판에서는 선포만 하였다고 증언.<sup>250</sup>

현지공개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다는 증언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에 자신에게 쇠몽치로 피해를 입한 가해자를 상대로 재판이 있었는데 오전에는 회령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 오후에는 시 단련대에서 재판을 하였는데 회령시 재판소에서 판결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오후에 열렸던 단련대에서의 공개재판에서 판결이 있었다고 증언.<sup>251</sup>

#### 〈현지공개재판에 대한 상소 여부〉

현지공개재판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에서 중범의 경우에는 판사가 나와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총살에 처한다. 상기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증언.<sup>252</sup>
- 북한이탈주민 ○○○도 현지공개재판의 경우에는 상소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현지공개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sup>253</sup>

249. NKHR2011000055 2011-02-22.

250. NKHR2011000131 2011-06-07.

251. NKHR2011000137 2011-06-14.

252. NKHR2011000131 2011-06-07.

253. 북한이탈주민 송현욱,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1.8).

## 〈공개재판의 양태〉

공개재판 양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개재판 사유는 사회일탈에 따른 공개재판이 다수를 차지하며, 경제사범과 ‘도강’에 따른 공개재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사회일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인신매매에 대한 공개재판이 많기 때문이며, 살인과 성매매 등도 사회일탈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공개재판의 결과로는 유기노동교화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공개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sup>254</sup> 증언자들이 공개재판의 결과를 모르는 이유는 북한주민들이 공개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동원된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공개재판의 증감을 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최근 공개재판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255</sup>

### ● 동지심판제도

#### 〈동지심판의 법적 근거와 대상행위〉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군중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난 뒤 1972년경부터 각 지역단위별로 동지심판(회)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0조 제3호는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하려 할 경우에 검사가 범위반 행위를 바로잡거

254. 2011년 북한이탈주민 230명 면접조사 결과.

255. NKHR2011000045 2011-02-08.

나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심판 대상은 경제범 및 과오로 인한 손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기타 사범 등으로 동지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 탐오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제도, 행정적 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降職) 처분, 자아비판처분, 엄중경고, 경고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sup>256</sup>

### 〈동지심판 실태〉

동지심판제도는 주로 군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10월경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의 호위사령부에서 동지심판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증언자는 평양시로 들어오는 곳을 지키는 ‘10호 초소’ 분대장이 ‘중좌’(우리의 중령)가 단속에 응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여 군대 내의 단련대에 6개월 노동단련을 받았다고 증언.<sup>25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남한의 보복타격으로 부상당한 소대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3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소대장을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고 증언. 이에 화가 많이 난 김정은이 도주병들을 동지심판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고 증언.<sup>258</sup>

북한 식량난은 군대 내의 동지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군대 내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256.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257. NKHR2011000209 2011-09-20.

258. 『자유아시아방송』, “북한군 소대장 부상·일부 병사 도주” (2010.11.25).

인해 탈영하는 군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대 내의 경제상황이 2001~2003년까지는 좀 나은 편이었으나, 2004~2006년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으며, 2007~2010년까지는 겨우 겨우 버티는 정도였다고 한다.<sup>259</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08년 병사 〇〇〇이 황해북도 서흥군 기계화보병여단에서 탈영 후 도둑질 및 강간을 이유로 동지심판을 받았다고 증언. 증언자는 여단 병사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하고서 여단 보위지도원이 그 사람의 나이, 이름, 소속 등을 불러주고 죄를 이야기하였다고 증언.<sup>260</sup>

군인들의 불법월경도 증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지심판도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하전사 3명이 비법월경으로 인하여 동지심판을 받았다고 증언. 증언자는 심판시 계급장을 떼고 처형한다고 하고 데려갔는데 여단 보위소대에서 9일 동안 구류 후에 다시 나왔다고 증언.<sup>261</sup>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공개재판과 동지심판을 혼동하고 있으며, 동지심판을 여전히 군중심판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현지공개재판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동지재판’이라고 부른다는 증언이 있다.<sup>262</sup>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동지심판을 목격하였다고 한 증언도 실제로는 공개재판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북한 주민 〇〇〇이 강간 및 비법월경으로 동지심판을 받았는데 형벌의 일종인 교화 2년형을 선고받았다

259\_ NKHR2011000096 2011-04-19.

260\_ NKHR2011000096 2011-04-19.

261\_ NKHR2011000103 2011-05-03.

262\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고 증언.<sup>263</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3월 밤에 여자 선생님을 때려서 자전거를 빼앗은 학교 선배들이 심판 결과 단련대에 보내졌다고 증언. 이 때 학교선생님들과 학생들, 주민들이 참관했다고 증언.<sup>26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4월 평안남도 북창군 북창화력발전소 내 경기장에서 북창화력발전소의 자재 절도 혐의로 동지 심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 이 때 군 재판소 인원들(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군 보안서 감찰과 및 수사과 인원들(보안원 등)이 참석하여 심판하였다고 함. 심판받은 자는 발전소 자재 절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교화 1년 6개월~2년형의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sup>265</sup>

## 〈동지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동지심판은 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이탈주민 ○○○은 이미 재판받고 형벌 확정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사람들에게 경각심 주기 위해 동지심판이 열린다고 증언. 증언자는 2007년 여자 2명의 두만강 '도강'을 중개한 사람 28명이 심판을 받았는데 시보안서가 주체가 되어 군중심판 하였다고 증언.<sup>266</sup>
-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수사가 완결되고 판결이 당연시되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동지심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증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동지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동지심판이 아닌 군중규탄의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

263. NKHR2011000109 2011-05-03.

264. NKHR2011000147 2011-06-28.

265. NKHR2011000144 2011-06-14.

266. NKHR2011000137 2011-06-14.

## 다고 증언.<sup>267</sup>

반면에 동지심판이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조사결과와 동지심판 이후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증언들도 제기되고 있다.

- 법원행정처의 2006년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에 따르면, 동지심판은 주로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동료들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 심판결과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증언.<sup>26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6월초 무산군 장마당에서 ‘도강’을 이유로 군중심판을 받았다고 증언. 군중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군중심판 후 예심을 받았으며, 2009년 11월 무산군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화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sup>269</sup>

## ● 정치범재판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해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조선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여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24조). 그리고 정치범죄의 경우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 관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127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사과 예심상의 관할권은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 인민보안부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267. 북한이탈주민 송현옥,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인권조사실장 자문결과 (자문일자: 2011.11.8).

268.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p. 30.

269. NKHR2011000155 2011-07-05.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치범의 경우 수사·예심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할하지만 재판은 재판소가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위부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에 의하면 도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 보고한다. 그리고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지에서 재판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의 여부와 평생 수감 여부도 국가안전보위부가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sup>270</sup>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예심이 끝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남포시의 경우 남포 시보위부에서, 일반 시군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하고 도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내려와 판결한다는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sup>271</sup> 이는 자유권 규약에 반하는 것으로, 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형사상의 죄의 결정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270.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271.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 ● 특별형사재판

북한은 특별형사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3조). 군사재판소는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128조).

### 〈군사재판〉

군사재판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 ○○○은 호위총국 근무 탈영으로 체포되어 호위총국 내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예심 4개월을 받던 중 탈출하다 총알이 다리에 관통하였고 잡힌 후 고문을 당하였다. 호위총국 부대에서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와 검찰관이 동석하였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평양시 강동군 형제산 구역 제4교화소 분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증언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동교화소에는 1년에서 18년형을 언도받은 수감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형법 개정으로 최고형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어 모두 5년씩 줄어들었다. 그래서 10년형을 채우고 출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272</sup>

### 〈철도재판〉

북한의 철도는 여객수송의 경우 전체의 약 60%를 분담하고 있으며, 화물수송은 약 90%에 달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을 만큼 철도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북한의 철도운수 부문에 대한 강조는 2001년 신년 공동시설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후 4대 주공노선이라는 정형화된 틀로써 강조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07년과

<sup>272</sup>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008년의 북한 신년사설은 철도부문에서의 ‘강한 규율과 질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조는 그 이후 지속되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철도운수부문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기관에게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 경제강국 건설 추진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sup>273</sup> 이에 따라 철도재판도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3월 4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철도에서 비리온상이 많고 열차사고도 많기 때문에 철도재판이 많다고 증언하였다.<sup>274</sup>

## ● 상소

### 〈상소기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심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판정서 등본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제361조). 상소·항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판결·판정은 확정된다(제363조).

최고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과 제2심 재판, 비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은 상소나 항의를 할 수 없다(제359조). 이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 규약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다. 자유권 규약은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4조 제5항).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소에 대해 알려준다고 한다.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예심기간을 빼고 형기를 산정하였으며, 10일간의 상소 기

273. 이규창, “철도차량법 제정과 북한 주민의 인권”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11-29, 2011.11.7).

274. NKHR2011000131 2011-06-07.

간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sup>275</sup> 그리고 상소기간은 대체로 준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상소기간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모두 24명이 응답하였는데 2명을 제외한 22명이 상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답변하였다.

### 〈상소실태〉

북한에서는 상소제도의 목적이 1심 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재판관계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조선노동당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였는가를 감독하는 데 있다.<sup>276</sup>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1994년에 000이 재판을 받았는데 상소를 하여 교화 3년 6개월에서 2년형으로 감형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277</sup> 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북한에서 상소는 역으로 상소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이탈주민 000은 상소나 ‘신소’를 하는 경우 추가형량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sup>278</sup>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9년 7월 양강도 재판소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웃의 재판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상소를 하면 형을 더 많이 준다고 증언.<sup>279</sup>
- 북한이탈주민 000은 2007년 5월 자신의 딸이 고철을 밀수한 혐의로 양강도 혜산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상소를 하였

275. NKHR2009000018 2009-03-26; NKHR2009000067 2009-11-12.

276.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과천: 법무부, 1993), pp. 734-735.

277. NKHR2010000096 2010-06-22.

278. NKHR2011000021 2010-06-07.

279. NKHR2011000148 2011-06-28.

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sup>280</sup>

- 북한이탈주민 ○○○은 상소하면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증언.<sup>281</sup>

## ● 사면, 집행유예, 형집행정지, 보석 실태

### 〈사면〉

북한에도 사면제도가 존재하는데 특사(特赦)와 대사(大赦)의 2가지 형태가 있다. 특사란 개별 범죄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개별 범죄자들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sup>282</sup> 특사권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하고 대사권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행사한다(사회주의헌법 제103조 제5호, 제116조 제17호, 형법 제53조). 200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이전에는 특사와 대사를 실시하는 권한이 모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나 당 창건일 등의 기념일에 대사가 실시된다고 한다.<sup>283</sup>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대사는 공화국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 그리고 당창건, 공화국 창건일 등의 일정 주년마다 대사가 실시된다.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큰 대사인 경우는 절대 다수가 못 받고 한명이나 두 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한다.<sup>284</sup>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에 대사를 받아서 나왔는데, 이 때 300명(남자 200명, 여자 100명) 정도가 함께 나왔다고 증언하였다.<sup>285</sup>

280. NKHR2011000087 2011-04-05.

281. NKHR2010000038 2010-11-02.

282. 김근식, 『형법학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 181.

283. NKHR2008000029 2008-12-16.

284. NKHR2009000067 2009-11-12.

285. NKHR2008000025 2008-11-20.

### 〈집행유예, 형집행정지〉

북한에도 집행유예의 제도가 있다(형법 제51조, 제52조). 판결판정 집행법 제37조는 “집행유예를 적용할 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 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1조).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여성권리 보장법도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임신여성에 대한 형벌집행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제38조).

### 〈보석〉

우리의 보석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도는 ‘의료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중병에 걸린 자에 대한 의료처분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제46조).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한다(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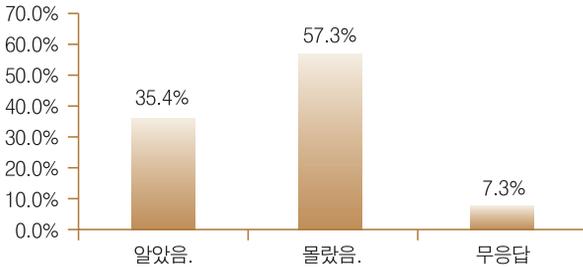
##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이와 같은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적으

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변호 받을 권리

재판의 공정성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해 변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3항d). 북한도 사회주의헌법 제164조에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106조). 형사소송법은 또한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8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심자를 기소하였을 경우 재판소는 해당 변호사회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제111조). 2010년 12월 22일 제정된 아동권리보장법에도 14세 이상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비율은 35.4%, 몰랐던 비율은 57.3%, 무응답은 7.3%로 나타났다.

〈그림 11-10〉 북한주민들의 변호 받을 권리 인지 정도<sup>286</sup>

### ● 변호인의 역할과 임무

변호사의 임무는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북한 형사소송법 제10조).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121조).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변호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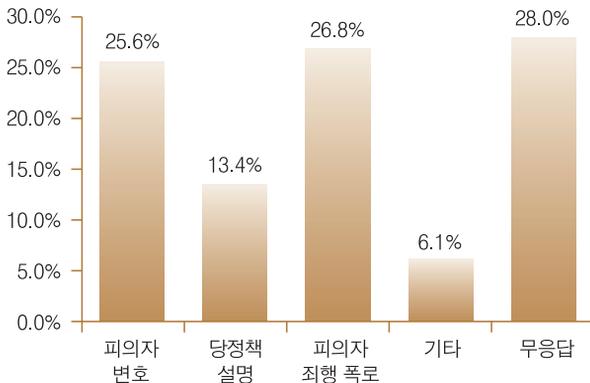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 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286.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79.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6조는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제8조는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밑에 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각급 변호사회는 하급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30조 제4호).

2010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을 ‘피의자 변호’로 생각하는 비율이 25.6%, ‘당 정책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3.4%, ‘피의자 죄행을 폭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6.8%, ‘기타’ 6.1%, ‘무응답’ 28.0%로 조사되었다. 변호사의 역할이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죄행을 폭로하거나 당 정책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0.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1〉 북한 내 변호인의 역할<sup>287</sup>



287.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p. 80.

## ● 변호권 실태

재판심리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참가해야 한다(북한 형사소송법 제276조).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을 하게 되면 대개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주민들은 변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물 유통 때문에 2007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sup>288</sup>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의 변호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다. 북한 변호사들은 재판관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말하지 죄수를 위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다. 또 그럴 수도 없다. 재판받는 것을 봤어도 변호사는 필요 없는 직업이다”라고 증언.<sup>289</sup>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증언도 제기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본인이 증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형기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발언을 했다고 증언. “전처가 여기서 생활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생활 한 사람인데 좀 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나?”고 변호해 주었다고 증언.<sup>29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8월 ‘도강’을 죄목으로 헤산시 인

288. NKHR2010000074 2010-04-20.

289. NKHR2011000148 2011-06-28.

290. NKHR2009000018 2009-03-26.

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피소자는 학생(당시 17세)이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변호하였다고 증언.<sup>291</sup>

## 다. 주민통제와 행정처벌

북한은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해 주민들을 통제, 단속하고 행정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범질서를 위반한 기관·기업소·단체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된다.

### ● 주민단속 및 통제

인민보안단속법은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단속대상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는 단속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다. 우선 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주목된다(제6조). 둘째, 인민보안원이 범질서 위반자의 신분을 확인할 경우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셋째, 범질서 위반자를 억류한 경우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넷째, 범질서 위반자 억류기간은 보안서에서는 3일, 시(구역)·군 보안서에서는 10일까지로 하되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 전염성질병환자는 억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0조). 다섯째, 인민보안원이 범질서 위반자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을 옷을 검신할 수 있되 2명의 입회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다(제52조).

<sup>291</sup> NKHR2011000018 2010-10-05.

인민보안단속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민보안단속법은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한 경우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억류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은 찾아 보기 힘들다.

한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검열기관과 검찰기관 등을 동원하여 법의 준수 여부와 집행상황을 검열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의 행위를 심사하여 징계 또는 형사처벌 방침을 결정하여 왔다. 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강직, 면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무보수노동에 처하는 처분 등이 있으며,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은 검찰에 이송하여 왔다.<sup>292</sup>

## ● 행정처벌

북한은 2004년 7월 14일 행정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현행 행정처벌법은 2008년 5월 20일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처벌의 종류, 구성요건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북한에 광범위한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법은 행정처벌의 종류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둘째, 이 법은 제3장 위법행위에서 행정처벌 대상 행위를 크게 경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제1절),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제2절), 일반행정질서를 어긴 행위(제3절),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제4절)로 구분하고 총 146개 조문을 두고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행정처벌 기관이 다양하다.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위원회와 내각, 검찰, 재판, 중재,

<sup>292</sup>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646~647.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이 부과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제175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는 무보수노동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다. 전체 146개 대상행위 가운데 31개를 제외한 125개 행위에 대해 무보수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징적인 점은 공동생활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로는 노동교양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동생활질서 33개 대상행위 가운데 24개 행위에 대해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II-8〉 북한 행정처벌법상 행정처벌의 종류와 대상행위

행정처벌	대상행위
경고, 엄중경고	계획수행미달·거짓보고행위를 비롯하여 104개
무보수노동	인민경제계획작성 질서위반행위를 비롯하여 125개
노동교양	전력낭비행위를 비롯하여 68개
강직, 해임	불법적인 경영활동행위를 비롯하여 77개
철직	예비물자관리질서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24개
벌금	상표권침해행위를 비롯하여 26개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경우	위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벌은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 II-9〉와 같다.

〈표 II-9〉 행정처벌 부과 기관 및 대상행위와 처벌 종류

기관	대상행위	행정처벌	부과 형태
사회주의법무 생활지도위원회	국가관리일군과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이 직무수행을 바로하지 못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	결정

기관	대상행위	행정처벌	부과 형태
내각	내각소속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이 내각결정이나 지시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였거나 행정규율을 위반 행위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필요한 경우 벌금, 중지, 변상, 몰수)	결정
검찰기관	검찰감시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	노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	결정
재판기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	노동교양, 벌금, 몰수	판정 또는 재결
중재기관	중재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	무보수노동, 벌금, 중지, 몰수	판정 또는 재결
인민보안기관	인민보안단속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	노동교양, 벌금, 중지, 변상, 몰수	결정
기관·기업소·단체	위법행위	변상	결정

## ● 주민통제 및 행정처벌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 해임, 강직, 무보수노동, 벌금 등의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핸드폰 사용, CD-R 유통, 장마당 단속 등과 관련하여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 형사처벌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사례들이 상당수 증언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산에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가족과 연락을 하다 발각되었지만 자수로 처리하여 북한돈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증언. 인민보안부가 처벌했다고 증언.<sup>293</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장마당 단속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찰대가 식량이나 담배 또는 중국산 물품을 1주일에 1회 정도 단속하며, 발각시 압수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증언.<sup>294</sup>

293\_NKHR2010000014 2010-10-05.

294\_NKHR2010000093 2010-03-30.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당국이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납한 물품을 많이 단속하는데 음식 장사로 단속되면 500원 또는 1,000원 정도 벌금을 낸다고 증언.<sup>295</sup>
- 북한이탈주민 ○○○은 여행증 발급과 관련하여 허락된 체류기간은 보통 10일이며, 연장을 할 경우 현장에서 해야 하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증언.<sup>296</sup>
- 북한이탈주민 ○○○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심하면 단련대를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정도라고 증언.<sup>297</sup>

최근에는 북한 후계구도와 맞물려 주민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북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폭풍군단<sup>298</sup>이라는 조직을 동원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에 나섰음을 보도하였다. 폭풍군단의 가택수사로 북한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sup>299</sup> 폭풍군단은 2011년 8월 초부터 국경지역 군부대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강’, 밀매·미수, 인신매매, 마약 등의 불법 활동을 집중 단속했다고 한다.<sup>300</sup>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즉결 처분권까지 주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sup>301</sup>

북한 당국은 무단숙박과 비위행위, 여행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公安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는 본 장 제5절에서 살펴본다.

295. NKHR2010000089 2010-06-08.

296. NKHR2010000061 2010-05-18.

297. NKHR2011000017 2010-06-08.

298. 인민군 보위총국, 국가안전보위부, 김일성 군사정치대학, 보위간부학교,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국방대학 학생 등으로 구성된 검열부대라고 한다.

299. 『자유아시아방송』, “북, 폭풍군단 검열에 주민들 공포” (보도일: 2011.8.18).

30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23호 (2011.10.5).

301. 『데일리NK』, “국경지역 파견 폭풍군단 즉결 처형 권한도” (보도일: 2011.8.9).

## ● '신소'

기관·기업소·단체와 국민은 행정처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기관·기업소·단체에 '신소'할 수 있다(행정처벌법 제198조). '신소'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제69조)에 규정된 권리로, 구체적인 절차는 신소청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관리일꾼'이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0조). 행정처벌법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소', 청원을 묵살하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우에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9조).

'신소'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성공 사례도 있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신소자'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주민등록에 '신소자'로 기록되어 자식들에게 까지 영향이 미친다. 또한 무서운 사람으로 규정되고, 일종의 불평불만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간부가 되려는 사람은 '신소'를 하지 않는다. '신소'에 실패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쁜 곳으로 철직되기도 한다. 심지어 '신소'를 잘못하면 3대가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302</sup> 2005년 북한이탈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소'가 받아들여져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평불만자, 문제를 만드는 자, 조직을 저해하는 자 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신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위에서 달갑게 보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신소'를 제기했다가 혹 가족이나 자식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쟀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303</sup> 부당 '신소'행위에

302.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pp. 135~138.

303. 윤대규,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pp. 56~57.

대해서는 노동교양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행정처벌법 제140조). 이는 북한주민들이 ‘신소’를 기피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소’가 효력을 보려면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그저 맨 입에 ‘신소’하면 그거는 휴지장이 된다. ‘신소’ 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며, 자신도 북한 돈으로 대략 2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sup>304</sup>

## 라. 부패와 인권

북한형법은 뇌물수수를 법적으로 제재해 오고 있다. ‘관리일꾼’이 아닌 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대량의 뇌물수수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관리일꾼’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관리일꾼’이 뇌물을 대량으로 또는 강요하여 받은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2009년 개정 형법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제242조, 제257조). 또한 행정처벌법은 뇌물 수수 및 중계행위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시킬 수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또는 강직, 해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그러나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뇌물수수는 정당한 법집행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

304. NKHR2009000021 2009-04-13.

### 〈북한주민 단속과정에서의 부패〉

후계체제 구축 및 경제난에 따른 비사회주의 현상 확산과 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당국이 규정하는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일탈행위의 양태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핸드폰 사용이나 CD-R 유통을 하다가 단속되어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에 대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며 법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000은 손전화를 사용하다 들켜도 남한과 연관이 없다고 인정되면 교화소에 가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바쳐야 한다고 증언.<sup>305</sup>

### 〈수사 및 예심에 있어서의 부패〉

보안서 구류장에서 예심을 하는 과정 중 면회 등에서 또 다른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예심기간 동안 가족들은 구류장에 갇힌 가족에게 도 시락이라도 건네주려면, 계호원, 예심 보안원, 아니면 최소한 보안서에 끈이 닿아 있는 아는 친구의 친구라도 찾아내 돈과 각종 뇌물을 바쳐야 한다.

- 2008년 10월에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보위부의 구류장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뇌물로 바쳐야하는 돈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보위부 내의 각 계층에 뇌물을 나눠먹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증언.<sup>306</sup>

305\_NKHR2009000064 2009-11-04.

306\_NKHR2009000006 2009-02-05.

##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에서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증언되고 있다.

- 2009년 4월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 녹화물 시청으로 교화 1년을 처벌받은 동료 수감자 ○○○이 뇌물을 주고 처벌을 경하게 받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07</sup>
- 2009년 8월 30일부터 12월까지 청진 도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청진 도 집결소에 도강자가 구금되어 있었는데 3,000위엔 정도의 뇌물을 주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0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청진 도 집결소에 있었는데 보안원들에게 1만 위엔을 뇌물로 주고서는 도주한 것으로 처리하고 집결소에서 나왔다고 증언.<sup>309</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 자신의 친구 ○○○이 남한 노래를 부르고 수첩에 남한노래가 있는 것이 ‘109상무’에 발각되어 평안남도 덕천시의 보안서 구류장에 있다가 노동단련대에 구금될 것이라고 했으나, 뇌물을 주고 10일 정도만 구류된 후 비관서를 작성한 후 풀려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sup>31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9월 단련대 6개월을 선고받고 무산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뇌물을 주고 실제로는 1개월 조금 넘게만 단련대 생활을 하였다고 증언. 문건 상에는 6개월 만기로 기재되었다고 증언.<sup>311</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1월 평성시 노동단련대에서 평성

307\_ NKHR2011000052 2011-02-15.

308\_ NKHR2011000045 2011-02-08.

309\_ NKHR2011000038 2011-01-11.

310\_ NKHR2011000197 2011-09-06.

311\_ NKHR2011000186 2011-08-16.

시내에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 파는 작업을 하였는데 60만 원 정도를 노동단련대 대장 등에게 주면 1개월씩 감형해 준다는 소식을 평성시 노동단련대에 구금된 ○○○에게서 들었다고 증언.<sup>312</sup>

#### 〈형사재판에서 있어서의 부패〉

뇌물수수를 통한 경한 형벌의 부과나 형기 단축 등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교양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증언도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빙두’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노동교화형에 처할 범죄라고 하더라도 돈으로 뇌물을 바치면 교화소를 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형의 경우에도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증언.<sup>313</sup>
- 북한이탈주민 ○○○은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어 노동교화형이나 노동단련형을 받지 않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되었다고 증언.<sup>314</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소장에게 3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쥐서 경한 형을 받았다고 증언.<sup>315</sup>
- 북한이탈주민 ○○○의 어머니는 2008년 5월 3일 강제 송환된 후 2008년 9월 말경 회령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화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북한돈 200만 원을 주고 집행유예를 받음.<sup>316</sup>
- 북한이탈주민 ○○○은 ‘도강’을 죄목으로 2009년 8월 혜산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받았는데 예심원과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사회적 교양으로 처리 받았다고 증언.<sup>317</sup>

312\_NKHR2011000115 2011-05-17.

313\_NKHR2008000023 2008-11-11.

314\_NKHR2010000018 2010-10-05.

315\_NKHR2011000020 2010-05-19.

316\_NKHR2011000187 2011-08-16.

317\_NKHR2011000018 2010-10-05.

### 〈이혼재판과 부패〉

부패와 인권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가 이혼문제이다. 북한에서는 남편의 폭력, 먹고 살기 위한 여성의 장사 활동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청구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판사 앞에서 예비재판을 한다. 가급적 예비재판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예비재판이 끝난 다음 재판소 소장을 만나게 된다.<sup>318</sup> 그런데 이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뇌물을 받쳐야 하며 그래도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 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늘고 있다.<sup>319</sup>

- 북한이탈주민 ○○○은 이혼재판을 할 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재판소 판사에게 돈을 바쳤다고 증언. 2008년 4월 재판소 판사가 조건은 되는데 좌우간 생각은 해 보자고 말하였다고 함. 증언자는 이 발언을 돈을 바치라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당시 북한돈 10만 원을 줬다고 증언.<sup>320</sup>

한편, 북한 당국은 2009년을 전후하여 이혼증가를 막기 위해 이혼 소송 제기시 노동단련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0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시가 이혼이 너무 많아서 2년 전부터 도 재판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증언. 또한 증언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혼 당사자 모두 노동단련대 6개월을 가야 한다고 증언.<sup>321</sup>

318.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319. NKHR2009000060 2009-10-06; NKHR2009000062 2009-10-20; NKHR2009000063 2009-11-03.

320. NKHR2009000054 2009-09-17.

321. NKHR2010000133 2010-10-12.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노동단련대를 갔지만 2010년부터는 이혼소송 당사자 모두 노동 단련대 6개월을 가게 되었다고 증언.<sup>322</sup>
- 2011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도 현재 북한 당국이 이혼을 못하게 하며, 이혼하면 벌칙으로 노동단련대를 간다고 증언.<sup>323</sup>
- 북한이탈주민 ○○○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자녀가 군대를 가지 못한다고 증언.<sup>324</sup>

북한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가족법 제20조). 그러나 배우자가 탈북자이거나 행방불명자인 경우에는 이혼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도강’을 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남편이 혼자서 재판소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여 이혼 상태라고 증언하였다.<sup>325</sup>

322\_ NKHR2012000014 2012-01-31.

323\_ NKHR2011000162 2011-07-12.

324\_ NKHR2011000116 2011-05-17.

325\_ NKHR2011000020 2010-05-18.



# 4

## 평등권

### ● 주민에 대한 계층 분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률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며,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와 제26조). 나아가 자유권 규약은 당사국 영토 내에 있으며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제65조).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sup>326</sup>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교육·주거·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 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 연좌제에 의한 신분차별의 세습

연좌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 관련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처벌과 수직적인 후세대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가족의 기록을 유지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sup>327</sup>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326. 북한의 출신성분 구분 작업과 성분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1』, pp. 168~173 참조.

327. Special Rapporteur, Vitit Muntarbhorn,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n Any Part of the Worl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nuary 10, 2005), p. 11.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6·25전쟁 때 있었던 과오 등을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족이 6·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이 있거나 국군포로인 경우에 오지로 추방되거나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확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차별이 대물림되고 있는 실정이다.<sup>328</sup>

북한당국은 성분정책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성분정책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 ●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제도적 차별: 입당과 간부 등용, 교육

북한당국은 그동안 “체제에 한을 품고 있는 자는 3대가 내려가도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조선노동당이나 사법기관 근무자 선발 시 출신성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여 왔다. 이같은 현상은 1997년 황장엽이 망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황장엽 망명 직후에 출신성분을 간부 등용과 각종 선발 등에 철저히 적용하였다고 한다.

조선노동당이나 사법기관 및 군관(장교) 임용 등에서 당국이 제시하는 출신성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임시키거나 다른 자리로 전보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당·사법기관의 운전자까지도

328. 북한이탈주민 000, 2000년 5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출신성분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임되기도 한다. 군대에서도 하전사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군관의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술부문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6·25전쟁 시 한국편에 가담한 사람들도 등용하는 등 출신성분을 크게 따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은 북한에서 직업은 태어나면서 이미 다 분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본인은 핵심계층으로 대학 졸업 후 국가안전보위부 군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sup>329</sup> 북한에서 성분과 인맥은 교육과 직업을 배정받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당일꾼’과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부 등 권력기구이다. 특히公安부서에 근무할 경우 성분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직업상의 사회적 차별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이 인민보안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6촌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촌 이내의 친인척 중 반역자, 교화소에서 복역한 자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경우 인민보안부보다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본인은 열사가족으로서 할아버지 형제들,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잘 됐다고 한다. 대체로 ‘당일꾼’ 등도 좋은 직업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교원이었지만 책임비서 못지않게 좋은 집을 주고, 전화를 놓아 주었다고 한다.<sup>330</sup>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할아버지가 반일 애국열사여서 본인은 할아버지 덕으로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유자녀대회를 하는 도당 책임비서가 “부모들이 이런 것을 잊지 말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331</sup>

329. 북한이탈주민 ○○○, 2004년 9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330. NKHR2009000011 2009-03-03.

331. NKHR2009000052 2009-08-27.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최룡해,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아들 오일정, 최영림 내각 총리의 딸 최선희,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의 조카 리용남 등 전·현직 고위간부 자녀들이 조선노동당과 외교, 무역 분야에서 고속승진을 하고 있다.<sup>332</sup> 이는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특정 계층에 세습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일꾼’이나 보위부원은 여전히 문건을 중요시 한다. 능력이 떨어져도 문건이 좋으면 선발된다고 한다.<sup>333</sup> 그런데 중앙당, 국가안전보위부, 호위총국 등은 문건을 중요시하지만 인민보안부에 대해서는 점차 완화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sup>334</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지금은 토대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남한과 연관이 되어 토대에 걸리는 사람은 당 기관에 갈 수 없다고 증언.<sup>335</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돈이 중요해졌지만 당 내부 사업에서 당 내부 문건은 확고하여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증언.<sup>336</sup>

성분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언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조선체육대학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조선체육대학은 일급대학으로 토대가 나쁘면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반면, 토대가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도 입학할

332. 『한국일보』, 2012년 1월 11일.

333.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334.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35.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336.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7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수 있다고 증언.<sup>337</sup>

- 시대의 토대가 공화국영웅세대라고 한 북한이탈주민 ○○○은 식량배급이 안 되어도 영웅세대는 식량배급을 받는다고 증언.<sup>338</sup>
- 북한이탈주민 ○○○은 돈(뇌물)이 중요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당 간부 등용에 있어서는 토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증언.<sup>339</sup>
- 2007년 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현재 성분관계를 더 따지는 것 같다고 증언.<sup>340</sup>
- 북한이탈주민 ○○○은 광폭정치를 내세워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 증언자는 “지난날의 과거는 따지지 않고 본인이 당에 충실하면 그걸 현행으로 보고 다 출세해주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당적으로 북한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실제 나를 간부로 등용하자면 신원조회라는 게 있다. 신원조회 들어가면 반드시 문건을 따진다”고 증언.<sup>341</sup>

그러나 대학배치나 직장배치, 승진(발전)에 있어 차별은 심하지 않다는 증언들도 제기되고 있다.

- 2009년 10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에 입당과 간부등용 및 승진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하였지만 대학진학과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은 보통이었다고 증언.<sup>342</sup>
- 2010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에 입당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하였지만 대학진학, 직장배치,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은 다소 약화되었다고 증언.<sup>343</sup>

337\_ NKHR2008000002 2008-07-04.

338\_ NKHR2008000010 2008-08-08.

339\_ NKHR2008000018 2008-09-11.

340\_ NKHR2008000019 2008-09-16.

341\_ NKHR2009000016 2009-03-19.

342\_ NKHR2010000034 2010-11-02.

343\_ NKHR2010000044 2010-11-02.

- 2011년 3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대학은 돈이 중요하다고 증언. 344

반면,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생활에서 토대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고난의 행군 때까지는 토대를 보았으나 그 이후는 돈이 지배하고 있으며, 토대도 돈으로 무마된다고 증언. 345
- 북한이탈주민 ○○○은 최근에는 돈만 있으면 토대는 크게 상관 없다고 증언. 346
- 북한이탈주민 ○○○은 영웅도 돈으로 가능할 정도로 토대보다 돈이 우선시된다고 증언. 347
- 북한이탈주민 ○○○은 기본적으로 토대가 좋아야 하나 이제 돈이면 전부 가능하다고 증언. 348
- 북한이탈주민 ○○○은 사법, 검찰, 보위부, 유급 ‘당일꾼’ 등이 되려면 토대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살아가는 데는 돈이 우선이라고 증언. 349
- 북한이탈주민 ○○○은 토대 및 출신성분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증언. “토대가 무슨 재산인가?”,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증언. 350
- 북한이탈주민 ○○○은 보위부나 법관 등 고위직 출세를 위해서는 토대가 중요하지만 일반직에서의 토대 중요성은 낮아졌으며, 돈이 곧 권력이라고 증언. 351

344\_NKHR2011000160 2011-07-12.

345\_NKHR2011000085 2011-04-05.

346\_NKHR2011000045 2011-02-08.

347\_NKHR2011000183 2011-08-09.

348\_NKHR2011000080 2011-03-29.

349\_NKHR2011000203 2011-09-06.

350\_NKHR2011000204 2011-09-20.

351\_NKHR2011000210 2011-09-20.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입당과 간부등용에 있어서조차도 뇌물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교화형을 받고 교화소에 다녀온 사람도 뇌물을 바치면 입당할 수 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뇌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맞물려 뇌물수수가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남편의 입당을 위해 뇌물 200달러를 바쳤다고 증언. 노동자에서 간부로 승진시 2010년에 500~600달러의 뇌물이 필요하였다고 함.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시 2010년에는 1,500달러, 2011년에는 3,000달러의 뇌물이 필요하였다고 증언. <sup>352</sup>
- 2009년 3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큰아버지의 남한행으로 토대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뇌물을 바쳐 입당할 수 있었다고 증언. <sup>353</sup>
- 2011년 3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입당에 있어 기본 토대가 중요하지만 북한돈 200~300만 원만 바치면 입당이 가능하였다고 증언. <sup>354</sup>
- 2011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간부등용에 있어서는 토대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입당의 경우에는 당관리위원회 책임자에게 200~300달러의 뇌물을 바친다고 증언. <sup>355</sup>
- 2011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토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적어졌으며, 북한돈 50만 원을 바치면 입당이 가능해졌다고 증언. <sup>356</sup>

352\_ NKHR2011000240 2011-11-22.

353\_ NKHR2011000174 2011-07-26.

354\_ NKHR2011000205 2011-09-20.

355\_ NKHR2011000164 2011-07-12.

356\_ NKHR2011000216 2011-10-04.

- 2011년 9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교화 다녀온 사람도 돈만 있으면 입당이 가능하다고 증언. 2,000~3,000달러 정도의 뇌물이 필요하다고 증언.<sup>357</sup>

뇌물수수료 토대까지 바꿀 수 있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 2010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뇌물을 바치면 문건을 위조하여 토대를 바꿀 수 있다고 증언.<sup>358</sup>
- 2011년 9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보안서 주민등록과 직원에게 뇌물사업을 하면 집안 내의 도강자를 사망처리로 바꿀 수 있다고 증언.<sup>359</sup>

그러나 남한으로의 탈출을 기도한 사람이나 정치범수용소 수용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입당이 불가능하다.

- 2011년 4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월남자와 치안대 가족,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는 입당하기 어렵다고 증언.<sup>360</sup>
- 2011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돈으로 입당이 가능하지만 남한 기도죄는 예외라고 증언.<sup>361</sup>

최근에는 입당의 이점이 없어 돈을 써가며 굳이 입당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sup>362</sup>

- 2011년 7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입당이나 당원의 가치가 하락했고, 당증의 가치 하락 때문에 당원

357. NKHR2011000246 2011-12-20.

358. NKHR2011000243 2011-11-22.

359. NKHR2011000245 2011-12-20.

360. NKHR2011000184 2011-08-16.

361. NKHR2011000185 2011-08-16.

362. NKHR2011000239 2011-11-22.

들도 당증을 반납하고 싶어 한다고 증언.<sup>363</sup>

### ● 출신성분과 형량, 결혼 등 사회적 차별

북한은 성분에 따라 범죄 형량까지도 달리하는 성분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 판결시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배경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반면 고아 등 출신성분이나 배경이 나쁜 사람들은 별도의 고려 없이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총살형을 계속 지켜보아 온 주민들은 “같은 범죄라도 뒷배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최종 형벌의 수준이 달라진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또는 “당국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시 출신성분에 따라 형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국가안전보위부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명확해지면 인민보안부에서 혐의자 가계기록부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부는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조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형벌 부과시 성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가족 중 당원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 교양·개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작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재판에 앞서 안전 회의를 한다. 이 사람을 죽이냐 마느냐 하는 ‘안전회의’를 할 때 본인 가족이 열사가족의 애국 열사증을 내놓음으로써 형기를 좀 봐주게 된다고 한다.<sup>364</sup>

출신성분이 결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예전만 같지 못하고, 경제력이 중시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 2009년 10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000은 탈북 시점에 토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약하였다고 증언.<sup>365</sup>

363. NKHR2011000233 2011-11-08.

364. NKHR2009000066 2009-11-11.

365. NKHR2010000034 2010-11-02.

- 2010년 5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발전하려는 사람은 결혼에 있어 토대를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토대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증언.<sup>366</sup>
- 2010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시점에 토대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하였다고 증언.<sup>367</sup>
- 2010년 12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비슷한 성분의 사람끼리 만나 결혼하는데 토대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증언.<sup>368</sup>

### ● 성분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출신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급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라는 뜻의 북한어)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sup>369</sup>

또한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과오로 인해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로 강제 이주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출신성분이 나빠 강제이주 당한 주민들은 유급 ‘당일꾼’이나 법무기관의 요원으로 발탁되지 못하며, 하급 ‘행정일꾼’ 정도로만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주자들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수

366. NKHR2010000045 2010-09-07.

367. NKHR2010000036 2010-11-02.

368. NKHR2011000074 2011-03-22.

369.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평양에서 출생하였으나 아버지가 남한출신이고, 직장생활 과정에서 불미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서 신의주로 이주하여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시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우리는 ‘쌍놈’들이라고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다.<sup>370</sup>

한편 북한당국은 범죄자, 탈북자, 성분 불량자 가족들을 산간오지 등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에 의하면 평양에서 추방 및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평양소개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추방된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sup>371</sup>

### ● 기타 사회적 차별

아래에서는 차별 사유 가운데 탈북행위 및 전과(前科) 경력에 대한 차별,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차별, 귀국자 및 화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 〈탈북행위 및 전과 경력에 따른 차별〉

탈북이나 정치범수용소 수용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사례들도 증언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탈북행위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북이나 탈북으로 인한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이나 교화소 수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대학원 진학, 승진, 군입대에 있어서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000은 작은 아버지가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대학진학과

370-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371-북한이탈주민 000, 2002년 8월 3일, 서울에서 면접.

- 직장배치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sup>372</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도강’했던 경력 때문에 군입대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sup>373</sup>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의 출당과 본인의 교화소 경험 때문에 2006년 자신이 평양 지하철 9501군부대에서 ‘발전’(승진)하지 못했다고 증언.<sup>374</sup>
  - 북한이탈주민 ○○○은 어머니가 교화소에 구금된 전과 경력 때문에 2007년 8월 자신의 입대가 거부당했다고 증언.<sup>375</sup>
  - 북한이탈주민 ○○○은 큰아버지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촌형의 행방불명으로 2008년 10월 ‘박사원’(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증언.<sup>376</sup>
  - 북한이탈주민 ○○○은 어머니가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 갔는데 귀국하지 않아 사망으로 처리됐고, 이로 인해 언니가 보안원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증언.<sup>37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2월 할머니, 고모,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입당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sup>378</sup>
  - 북한이탈주민 ○○○은 오빠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 본인의 교화소 수감 전력으로 인해 2011년 결혼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sup>379</sup>

372. NKHR2010000061 2010-05-18.

373. NKHR2010000041 2010-10-26.

374. NKHR2011000070 2011-03-15.

375. NKHR2011000068 2011-03-15.

376. NKHR2011000164 2011-07-12.

377. NKHR2011000060 2011-03-08.

378. NKHR2011000155 2011-07-05.

379. NKHR2011000244 2011-11-22.

##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국군포로와 남한출신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주로 입당과 군입대,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2009년 직장 동료가 입당에 있어 차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8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4월 친할아버지가 남한출신자이고 친할머니는 일본사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sup>381</sup>
- 북한이탈주민 ○○○은 외할아버지가 남한출신자였는데 이로 인해 영화대학을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고 증언.<sup>382</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의 직장동료가 국군포로 아들이었는데 군대에 10년 동안 복무했지만 입당하지 못했다고 증언.<sup>383</sup>
-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남한출신자의 아들이어서 군복무하면서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sup>384</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입당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남한출신자라서 입당하지 못했다고 증언.<sup>385</sup>

반면 최근에는 국군포로 출신도 입당이 가능하다는 증언이 있으며,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일반 북한 주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80\_ NKHR2010000040 2010-10-26.

381\_ NKHR2011000101 2011-04-26.

382\_ NKHR2011000196 2011-09-06.

383\_ NKHR2011000044 2011-02-08.

384\_ NKHR2011000053 2011-02-15.

385\_ NKHR2011000195 2011-08-23.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포로귀환병이었는데 남한의 임무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입당을 시키지 않다가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를 보라는 지시에 따라 입당하게 되었다고 증언.<sup>386</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출신자를 북한 당국에서는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일반 북한주민들은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증언.<sup>387</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 출신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은 딱히 없지만 생활상은 열악하다고 증언.<sup>388</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남한 출신자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상황은 능력에 따라 다르다고 증언.<sup>389</sup>
- 북한이탈주민 ○○○은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입당하지 못했지만 먹고 사는 것은 일반 북한주민과 차이가 없다고 증언.<sup>390</sup>

#### 〈월남자 가족에 대한 차별〉

월남자 가족들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고 한다. 특히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며 이밖에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이탈주민 ○○○은 월남자 가족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어디에서도 쓰일 수 없으며 입당도 하지 못한다고 증언.<sup>391</sup>
- 북한이탈주민 ○○○은 고모가 1950년 월남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입당과 대학진학, 결혼에 있어 차별을 당하였다고 증언.<sup>392</sup>

386. NKHR2011000178 2011-08-02.

387. NKHR2011000044 2011-02-08.

388. NKHR2011000139 2011-06-14.

389. NKHR2011000162 2011-07-12.

390. NKHR2011000176 2011-08-02.

391. NKHR2008000006 2008-07-24.

392. NKHR2010000013 2010-09-14.

- 북한이탈주민 ○○○은 1996년에 월남자 가족이 군입대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393</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할아버지의 친척이 월남자라는 이유로 2004년 1월 자신이 대학진학을 함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sup>394</sup>
- 북한이탈주민 ○○○은 가족 중에 월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아들이 1997년 7월에 입당과 간부등용, 대학진학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 증언자는 1990년대부터 토대보다 능력과 일을 중시하라는 방침이 수차례 있어 희망을 가졌지만 방침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증언.<sup>395</sup>
- 북한이탈주민 ○○○의 남편은 당고모가 월남자라는 이유로 입당을 못하고 '생활제대'하였다고 증언.<sup>396</sup>

월남자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차별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월남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증언하였다.<sup>397</sup> 한편, 2010년 6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월남자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증언하였다.<sup>398</sup>

#### 〈중국 내 친척 및 연고자가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차별〉

북한주민들은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부모가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입당이나 대학진학, 간부등용, 결혼 등에

393. NKHR2010000054 2010-06-22.

394. NKHR2010000097 2010-06-15.

395. NKHR2011000126 2011-05-31.

396. NKHR2011000112 2011-05-17.

397. NKHR2010000072 2010-10-19.

398. NKHR2010000014 2010-10-05.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친척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당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sup>399</sup>
- 북한이탈주민 ○○○은 부모가 중국 태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입당과 대학진학, 승진에 있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sup>400</sup>
- 북한이탈주민 ○○○은 간호원 양성소에 지망했으나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증언.<sup>401</sup>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의 토대는 좋았지만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승진에 있어 차별을 당하였다고 증언.<sup>402</sup>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중국 출신자라는 이유로 입당과 간부등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으며, 중국 연고자는 ‘당일꾼’, 군관 등의 ‘정치일꾼’과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증언.<sup>403</sup>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중국출신이라는 이유로 간부로 등용되지 못했으며, 본인은 2003년 대학진학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고 증언.<sup>404</sup>
- 북한이탈주민 ○○○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국 출생이고 중국에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결혼을 반대하였다고 증언. 중국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은 토대가 나쁘기 보다는 승진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증언.<sup>405</sup>

399\_ NKHR2010000105 2010-10-26.

400\_ NKHR2011000022 2010-06-24.

401\_ NKHR2010000008 2010-05-25.

402\_ NKHR2011000005 2010-08-10.

403\_ NKHR2011000055 2011-02-22.

404\_ NKHR2011000128 2011-05-31.

405\_ NKHR2011000215 2011-10-04.

### 〈'귀국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귀국자'(북송제일교포)를 우대한다는 증언이 있다. 200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귀국자를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증언하였다.<sup>406</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당국은 귀국자와 그 가족을 차별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1982년에 당시 20세였는데 부모가 귀국자라는 이유로 군관에게 시집을 가지 못했다고 증언.<sup>407</sup>
- 북한이탈주민 ○○○은 1999년에 아버지가 문덕군 경영위원회 축산과 지도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려고 했지만 귀국자 자식이라서 승진하지 못했다고 증언. 또한 귀국자 자식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sup>408</sup>
- 북한이탈주민 ○○○은 본인이 귀국자였는데 결혼과 대학진학에서 차별받았다고 증언. 군인과 결혼하지 못했다고 증언.<sup>409</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귀국자인데 귀국자는 보안원, '당 일꾼'이 될 수 없으며, 해외파견도 될 수 없다고 증언.<sup>410</sup>

북한당국은 귀국자들을 산간오지에 배치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귀국자 ○○○, ○○○, ○○○이 귀국 후 함경남도 리원군에 배정되었는데 후회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sup>411</sup>
- 북한이탈주민 ○○○은 어머니가 귀국자이어서 입당하지 못하고 세천탄광에 직장배치받았다고 증언.<sup>412</sup>

406\_ NKHR2011000046 2011-02-08.

407\_ NKHR2011000089 2011-04-05.

408\_ NKHR2011000115 2011-05-17.

409\_ NKHR2011000089 2011-04-05.

410\_ NKHR2011000113 2011-05-17.

411\_ NKHR2010000056 2010-11-16.

412\_ NKHR2011000099 2011-04-26.

반면, 북한이탈주민 ○○○은 재일교포, 즉 귀국자들에 대해서는 당 간부, 행정간부를 비롯하여 간부에 등용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는 행정간부는 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sup>413</sup>

### 〈화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차별〉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화교학교(중국학교)와 화교마을이 따로 있다고 한다.<sup>414</sup> 화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입당 외에 별다른 법제도적인 차별은 없다고 한다. 이는 화교들의 경제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화교들의 경제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 화교들은 입당 외에 차별이 없으며,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화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증언.<sup>415</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시어머니도 북한사람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중국사람이어서 남편이 공민증이 아닌 외국인증을 받았지만 사회적 인식 면에서 좋지 않은 시각을 받았을 뿐 특별한 차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증언.<sup>416</sup>
-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청진시에 있는 화교학교 교장이었는데 화교들은 전반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한다고 증언.<sup>417</sup>
- 북한이탈주민 ○○○은 회령에 화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매우 잘 살고 있었다고 증언. 그러나 입당과 승진은 어렵다고 증언.<sup>418</sup>
- 북한이탈주민 ○○○은 화교들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413.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414. NKHR2011000073 2011-03-22.

415. NKHR2011000072 2010-10-19.

416. NKHR2011000023 2010-06-08.

417. NKHR2010000072 2010-10-19.

418. NKHR2010000162 2011-07-12.

차별을 받지는 않지만 입당은 어렵다고 증언. 화교와 귀국자들은  
별로 입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증언.<sup>419</sup>

---

<sup>419</sup> NKHR2010000172 2011-07-26.



# 5



##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통치자의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제1조),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제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3조)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18조~제2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도 신체의 자유(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사상 및 종교의 자유(제18조),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제22조)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 가.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자유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는 공공질서와 공중보건 및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유엔 인권소위원회(후신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자 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사회주의헌법 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의 거주와 이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이 특정지역에 신분등록을 함으로써 배급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이 당국의 허가사항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외부의 위협요인이나 내부 동요요인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 〈국내여행 실태〉

북한주민은 국내이동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여행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여행규정’ 제6조에 따라 여행을 원하는 ‘공민’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유권 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북한은 “여행증은 외부의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안보목적으로 필요하며 주민들의 여행자유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행증 발급 목적은 북한이 처한 환경에서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의 준동을 막자는 것, 다시 말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 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접하고 비교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공민’은 원칙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sup>420</sup>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여행증을 발급받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이들의 경우 7살까지는 출생증, 소학교 학생부터는 부표가 있어야 동행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sup>421</sup> 일반주민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때 직계가족의 거주지역까지만 여행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대한 사적 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공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 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 일꾼이 소속단위에서 발급하는 출장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적 범위로 출장, 파견을 이유로 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진단서를 소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해당 거주지역 도 소재지나 간병을 해줄 직계가족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20\_NKHR2011000022 2010-06-24.

421\_NKHR2010000018 2010-10-05.

평양시민증<sup>422</sup> 및 평양 임시거주증<sup>423</sup>이 없는 사람들은 평양시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평양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 주민이 두만강, 압록강, 비무장지대(DMZ) 등의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도에서 발급하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도인민위원회 2부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일반 여행증과 더불어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양, 전연지대, 국경지역에 갈 때는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sup>424</sup> 실제로 내륙에 사는 사람들이 국경지대로 가기 위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한다.<sup>425</sup>

두만강, 압록강 국경지역을 행정구역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도에 거주하는 주민도 도의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여행증명서의 최종심사기관은 거주지역 도인민위원회 2부이다.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여행 약 2주전에 경리과를 통해 해당 단위의 직장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는 1차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지역 인민보안부 증명서 발급과에 여행신청서를 3일 전에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 비서를 통해 여행증이 교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을 거쳐 인민위원회 2부

422. 북한은 일반 공민이 갖는 공민증과 평양시민에게만 부여하는 평양시민증을 구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제7조 (1997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423. 평양 임시거주증은 지방 출신 대학생, 지방출신 평양 1중학교 학생, 평양에 주둔하는 군인, 평양에 파견되는 공무원 및 기업소 일꾼에게 발급되며 재학기간, 복무기간, 업무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다.

424. NKHR2011000236 2011-11-22.

425. NKHR2010000069 2010-10-26.

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증언하였다. 작업반장 → 직장통계원(생년월일, 목적지, 내용 등) → 기업소 ‘기요원’<sup>426</sup> → 인민위원회 2부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증언한다. 여행증의 발급은 각 지역단위로 일정한 숫자 내에서 행해진다. 담당 보안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행증 번호와 대조하여 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통해 여행증을 검사한다고 한다.<sup>427</sup>

직장에 다니지 않는 ‘공민’은 인민반을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보안서 분주소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보증이 필요하다고 한다.<sup>428</sup>

여행증의 경우 통제구역은 7일에서 15일 정도, 비통제구역인 경우 2일에서 3일 정도 기다려야 발급되는데, 모두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sup>429</sup> 특수지역은 일반 여행증과 달리 특수번호가 부여된다고 한다.<sup>430</sup> 중앙차원에서는 정형화된 절차가 있겠지만 실제 지역단위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소속단위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통행증에 그려지는 줄의 색깔이 다르도록 되어 있으며, 당국이 수시로 여행증에 포함된 줄의 색을 변경함으로써 위조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행증 제도로 인해 여행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것은 여행질서를 위반할 경우 집결소라는 수용시설에 구금된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사회안전단속의 대상 중 하나로 여행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여행증명서 없이 또는 여행증명서를 고쳐 여행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행정처벌법 제167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

426. NKHR2010000071 2010-11-09. ‘기요’는 중요한 기밀을 의미한다.

427. NKHR2010000069 2010-10-26.

428. NKHR2010000022 2010-06-24.

429. NKHR2010000062 2010-10-12.

430. NKHR2010000061 2010-05-18.

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부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반장은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를 담당보안원에게 신고한다.<sup>431</sup> 여행 지역에 도착하면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하므로 실제로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는데 보통 10일간이고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sup>432</sup>

그러나 여행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경제난이 실제 여행의 행태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한다. 법 규정과는 달리 북한의 현실로 인해 여행에 대한 규제는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증명서는 원칙상 무료발급이다. 그러나 ‘기요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기요원’이 발급신청서를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절차대로 여행증을 발급받을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사 등으로 인한 이동이 증가하면서 돈이나 담배 등을 주고 여행증을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sup>433</sup> 발급신청서를 갖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완성해주는 사람이 ‘기요원’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보통 ‘기요원’에게 뇌물을 준다. ‘기요원’에게 주는 뇌물은 접수자의 여행사유, 여행목적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sup>434</sup> 여행증을 발급해 주는 ‘기요원’들은 주민이 연줄을 활용해 돈을 주면 해당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여행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요원’들은 여행증 용지를 돈을 받고 파는 형식으로 돈벌이를 한다.<sup>435</sup>

실제로 절차를 밟으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요원’에게 뇌물을 주는데 북한이탈주민 ○○○은 일반 여행증의 경우 현금 5,000원

431\_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432\_NKHR2010000061 2010-05-18.

433\_NKHR2011000111 2011-05-17 외 다수의 증언.

434\_NKHR2011000169 2011-07-26 외 다수의 증언.

435\_NKHR2010000087 2010-08-03.

이나 쌀 3kg을 뇌물로 주었다고 증언하였다.<sup>436</sup>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에는 불법 여행증 발급 수수료가 약간 떨어진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sup>437</sup>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 가는 여행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2만 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sup>438</sup> 또한 여행증명서 청원자는 브로커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sup>439</sup>

2000년대 이후 주민의 이동이 기차보다는 버스나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행증 발급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의 발급절차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사로운 이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되면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어떤 북한이탈주민은 그 비율이 거의 50%로 육박한다고 증언하였다.<sup>440</sup> 이외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여행증과 관련된 불법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보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여행증 관련 불법사례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2-07	2010.	평남도 평성시	2010년 장사를 목적으로 회령으로 가는 여행증 발급 받음. 비법으로 그 자리에 15,000원(북한돈)을 지급 후 발급 받음.	NKHR2011000111 2011-05-17
○○○	2011-01-17	2010.	평남도 평성시	중학교를 졸업한 성인이었지만, 출생증을 빌려서 군관 등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보호자 행세를 해달라고 하여 청진 등으로 여행함.	NKHR2011000101 2011-04-26

436. NKHR2011000170 2011-07-26.

437. NKHR2011000106 2011-05-11; NKHR2011000115 2011-05-17.

438. NKHR2010000073 2010-10-19.

439. NKHR2011000238 2011-11-22.

440. NKHR2011000251 2011-12-20.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OO	2011-02-08	2011.01.	평남도 평성시	평성시 역전에서 브로커(비밀 개인 장사꾼)에게 1만 원을 주고 바로 다음날 위조 여행증 받음. 역전에 위조 여행증 해주는 브로커가 있음. 화폐개혁 이전에는 2만원 정도, 화폐개혁 이후 1만 원 정도 소요됨.	NKHR2011000115 2011-05-17
OOO	2011-03-31	2010.08.	함북도 연사군	2010년 8월 여행증을 발급 받을 때, 뇌물로 한 갑에 1,400원 하는 '고양이 담배' 2갑을 주었음.	NKHR2011000154 2011-07-05
OOO	2011-03-12	2011.03.	강원도 천내군	2011년 3월, '도강'을 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으로 이동할 때, 여행증 발급을 받지 않고, 기차 승무원과 보안원 등에게 1인당 1만 원씩 뇌물로 주면서 강원도 천내군에서 함경북도 어랑군까지 이동했다고 증언함.	NKHR2011000196 2011-09-06
OOO	2011-02-16	2010.	-	여행증 없는 것이 단속되면 벌금으로 500원씩 내면 된다고 증언함.	NKHR2011000197 2011-09-06
OOO	2011-03-06	-	-	2부(여행증 발급기관) 앞에 담배 등을 파는 장사꾼으로 위장한 여행증 판매자들 많이 있음(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사 행세). 2011년 현재 1만 원이라고 들음.	NKHR2011000158 2011-07-05
OOO	2010-10-30	2007.	함북도 사리원시	2005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 2007년에 발급 받음. 2년 소요됨. 발급비용으로 100만 원(북한돈) 지불함.	NKHR2011000168 2011-07-19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0-09-30	2010.	양강도 혜산시	거리에 따라 금액 다름. - 승인번호 필요한 구역: 5천 원 내지 고양이 담배 한 막 대기(보루) - 도내 구역: 담배 1~2갑 내지 1~2천 원	NKHR2011000169 2011-07-26
○○○	2009-08-22	-	함남도 북청군	일반 지역 여행증 발급에 드 는 비용은 시기마다 다르나, 보통 1~5천 원이 소요됨.	NKHR2011000170 2011-07-26
○○○	2006-03-15	-	자강도 만포시	여행증 발급 받아 여행하는 비용은 40~50% 정도이고 나 머지는 안면이나 돈으로 이 동함.	NKHR2011000251 2011-12-20
○○○	2011-02-25	2011.	평북도 신의주시	2011년 여행증 발급에 1만 원 정도 소요됨. 여행증 없이 공민증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며, '거마꾼'에 게 5천 원 정도 주면 평양까 지 이동시켜줌.	NKHR2011000238 2011-11-22

기차를 타는 경우 여행증이 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행질서를 관장하는 보안원들이 여행증 미소지자를 상대로 돈을 받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sup>441</sup> 평양행 열차의 철도 보안원들도 물건을 몰수하여 착복하거나 뇌물을 받고 살아간다. 철도 보안원들은 수시로 수상한 짐을 검열하는데 그 때마다 수십 명씩 단속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술이나 담배 등을 뇌물로 주면서 단속을 피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 주민들의 유동이 급증하고 기차를 통해 여행하려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압표를 사고파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441\_NKHR2011000005 2010-08-10.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경우 보안원들의 단속으로 여행증이 필요하지  
만 기차 이외의 이동수단으로 도내에서 육로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퇴색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990년  
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  
의 사회적 유동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와 비례하여 뇌물  
수수 등 하급관료들의 부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당국이 하급관료들의 경제난을 해  
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는 여전히 검열이 심  
하므로 육로를 통한 이동이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여행객들은 대체로  
여행증 없이 다닌다고 한다. 만일 여행 중 검문에 걸릴 경우 이들은 뇌  
물을 주고 해결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여행증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나 안보상 중요한 지  
역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을 통해 여행이 묵인됨으로써 사실상 여행통  
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전히 특수지역에 대한 여행은 엄  
격하게 제한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난과 간부들의 부패로 돈만 주면 평  
양과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증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주민이동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열차 이외에는 마땅한 공공 교통수  
단이 없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돈벌이 수단으로써 기관 소속의 트럭이  
나 자동차가 이용된다. 이러한 차는 일명 ‘씨비차’(씨비스차의 줄임말)  
라고 하며, 영업용으로 공인된 차가 아니라 각 직장 단위에 소속된 차  
량들이다. 기관의 운전사들은 차비를 받고 사람들을 대도시를 중심으  
로 특정지역까지 이동시켜 준다.<sup>442</sup> 심지어 군대, 인민보안부, 국가안  
전보위부 등도 씨비차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43</sup>

이러한 여행 풍속도로 일명 ‘몰이꾼’이라는 호객꾼들이 등장하고 있  
다고 한다. 함흥과 사리원을 왕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려다 보면 사람

442 『데일리NK』, 2010년 10월 26일.

443-북한이탈주민 OOO, 2010년 8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들을 차량에 데려다 태우는 일명 ‘몰이꾼’이 등장한다. 그는 한 차에 승객들을 다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다 태우면 5~8천 원의 현금을 받는다. 각 차량들은 승객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몰이꾼을 보통 1~3명 가량 고용한다. 저마다 자기 차에 더 태우려는 경쟁이 치열하다.<sup>444</sup>

식량구입 혹은 장사를 위해 이동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적당한 용무가 있는 사람과 동행할 경우 통행증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분보증이 되는 경우에 대해 동반자를 인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여행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여행객들은 이동 도중의 신분 단속뿐만 아니라, 여행지에서 숙박검열도 받게 된다. 숙박검열은 군 보안원들이, 대기숙박(민박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민증 혹은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다.<sup>445</sup> 이러한 검열은 특별 경비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이 기간에는 매일 검열이 이루어진다.<sup>446</sup> 특히 지역에서 도주자가 발생했거나 해당지역에 특별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검열이 이루어진다. 국경지역에는 수시로 숙박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47</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숙박검열은 당연히 하며, 지방마다 다른데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고 증언하였다.<sup>448</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숙박검열이 심하지 않지만 양강도 해산시와 같은 국경지역은 검열이 심하다고 증언했다.<sup>449</sup>

숙박등록질서를 위반한 자는 벌금이 부과되며, 돈 또는 물품을 받고 비법적으로 숙박을 시킨 경우에는 2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해지는

44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5호 (2006.8.30).

445. NKHR2011000017 2010-06-08. 그는 1일 숙박비용이 1,500원이라고 증언한다.

446. 양력설, 음력설, 김정일 생일(2.16), 김일성 생일(4.15), 정전협정체결일(7.27), 청년절(8.28), 정부수립일(9.9), 당창건일(10.10)이 특별경비주간이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좋은벗들, 2006), pp. 140~141.

447. NKHR2010000024 2010-10-19.

448. NKHR2011000215 2011-10-04.

449. NKHR2011000245 2011-12-20.

데(행정처벌법 제132조), 숙박등록질서 위반 행위 단속은 인민보안기관이 실시한다(인민보안단속법 제33조).

### 〈해외여행 실태〉

북한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취업 및 공무상 장기체류와 단기 여행 및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체류 등 2가지로 분류된다. 별목, 건설, 봉제, 요식업 등 해외취업이 확대되면서 장기체류 국외이동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기회는 사상적으로도 인정받은 일부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주어지며, 일반적인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중국의 친척방문 및 장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450</sup> 국외이동은 국경지역여행증명서나 여권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북한 출입국법(1999) 제2조는 “출입국 하는 공민과 외국인은 려권, 해외공민증, 선원증, 사증 같은 해당 출입국증명서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는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1998.7)〉를 체결하여 양국 주민들의 국경이동을 관할하여 왔다. 합의서 제3조 제3항은 “두 나라 국경지역의 시, 군, 현, 출입국 사업기관과公安기관 책임일꾼들은 친척방문으로 상대측 국경지역에 려행하려는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을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국경통행증(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을 내어주며, 이때 ... 주민국경통행증에는 각기 규정된 전용도장을

<sup>450</sup> NKHR2011000013 2010-06-08.

찍어준다. 국경지역 주민들의 친척방문을 엄격히 검토하여 비준함으로써 상대 측 지역에 가까운 친척이 있을 때에만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쌍방 국경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친척에 속하지 않는 친척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초청통지서>에 의하여 발급한다. 가까운 친척의 범위와 <초청통지서>의 양식, 사용방법은 쌍방 국경안전, 공안총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경안전, 공안총대표와 부총대표들은 국경지역에서 제기되는 사업처리를 위하여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최고 1년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국경통행증(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조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갑>)을 내어줄 수 있다. 조·중 국경지역을 드나드는 차량들은 <자동차 국경통행증>이 있어야 하며, 그에 지정된 통행지점으로만 드나들며 상대측 국경 내에서는 지정된 도로와 지역 안에서만 다닐 수 있다.

북한주민의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의 개인문건에 중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경우 만 45세 이상 범죄기록이 없는 공민증 소지자는 중국에 있는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 보위부 외사과는 70세 이상 여행금지, 직계가족 동반 여행금지를 내규로 정하고 있다.<sup>451</sup>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000은 남자는 49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이 되어야 여권이 발급된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기업소나 기관의 지배인, 담당 보안원과 보위부원 등의 확인을 거쳐 시 보위부 외사지도원이 최종 검토한다.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최종 결재하여 여권이 발급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공화국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 날짜에 돌아오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고 한다.<sup>452</sup> 최근에는 외화난이 가중됨에 따라

451.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 여행자 실태,” 비공개 내부문건 (2007).

452.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당국은 중국 여행자들에게 식량이나 중국 화폐를 많이 가져오도록 교육한다고 한다.<sup>453</sup>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도강증’을 받았는데, 담당 보위부원에게 신청하면 시 보위부 외사과에서 접수하여 시 보안서에서 중국에 친척이 있는지,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 후 도 보위부 외사과, 국가안전보위부 2국을 거쳐 승인이 나며 돈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증언하였다.<sup>454</sup>

그런데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여행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전에는 나이제한, 성분제한 등을 통해 숫자가 제한되었는데, 2003년 12월 김정일은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여행을 허가해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sup>455</sup>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경우 국경지역통행증이 발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내륙에 사는 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3개월 유효의 여권이 발급된다고 한다. ‘도강증’은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지역은 중국친척의 초청장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는 경우 명단을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친척이 있더라도 전산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측의 친척도 북한주민을 만날 수 없으며, 북한주민도 중국으로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단기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강증’이 발급된다. 대개 국경무역을 하는 경우 24시간 혹은 48시간 단위의 ‘도강증’이 발급된다. ‘도강증’은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56</sup>

45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49호 (2010.7.5).

454. NKHR2010000069 2010-10-26.

455.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45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77호 (2010.11.10).

중국 방문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실제로는 한 달 정도의 체류 도장밖에 찍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 달 연장을 원할 경우 중국 공안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상당한 돈이 소요된다고 한다.<sup>457</sup>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있는 친척의 초청장뿐만 아니라 북한돈 150만 원 정도를 바쳐야 한다고 증언하였다.<sup>458</sup> 방문 희망자는 공식적인 수수료뿐만 아니라 관련자에게 뇌물 혹은 급행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행증을 소지한 북한주민은 통행증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에 와서 이에 상응하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sup>459</sup> 중국의 친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돈을 마련할 다른 방도가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편 여권에는 외교여권, 공무여권, 그리고 여행자여권 등 3가지가 있는데, 외교관과 특수기관의 사람들이 외교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한다. 당 기관이나 공작부서에서 외국에 나갈 때 외교여권이 발급된다.

귀국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하고 당국에 반납해야 한다.<sup>460</sup> 원칙적으로 공무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자는 자녀를 한 명만 데려 갈 수 있으나, 2003년 7월에 능력이 있으면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방침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은 여전히 데리고 갈 수 없지만, 중학생은 2명 모두 데려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해외동반 자녀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반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57.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2일, 서울에서 면접.

458. NKHR2010000069 2010-10-26.

459. NKHR2011000013 2010-06-08.

460.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 〈거주실태 및 강제추방〉

북한에서는 여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허가 없이 주민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민이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2004년 개정형법 제149조(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은 죄)는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고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넘겨주었거나 받았거나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주이전이 묵인되고 있다.<sup>461</sup> 집값은 방칸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함경북도 명간군의 경우 방 1칸에 100만 원이다.<sup>462</sup>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력이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팔고 ‘꽃제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sup>463</sup>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 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당국은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한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 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1968년 푸에블로호 피납 사건 직후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고, 1976년 판문

461\_NKHR2011000167 2011-07-19 외 다수의 증언.

462\_NKHR2011000213 2011-10-04.

463\_NKHR2011000214 2011-10-04.

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1994년에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sup>464</sup>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들이 발생하면서 강제추방의 사유도 복잡해지고 있다. 먼저 탈북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중에 남한에 간 것이 발각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추방하기도 한다. 강제추방 사유는 가족의 탈북, 정보유통, 밀수 등 다양해지고 있다. 강제 추방에 관한 증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II-11>과 같다.

<표 II-11> 강제추방 사례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추방 사유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2-25	2010.10.	평북도 삭주군	탈북자 가족	시아주버니 탈북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평북도 삭주군에서 정주로 추방당함. 2010년 10월, 강제추방과 관련된 방침이 내려와 사소한 잘못도 추방하여 3개 군(평북 삭주, 벽동, 창성)에서 20집을 추방함.	NKHR 2011000105 2011-05-03
○○○	2011-02-25	2008.05. 2009.07.	양강도 혜산시		남편이 중국 가서 ‘도강증’의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가족이라는 이유로 2008년 5월에 강제추방 당함.	NKHR 2011000143 2011-06-14

464. 신일철,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 62.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추방 사유	세부내용	증언 No.
〇〇〇	2011-02-25	2008.05. 2009.07.	양강도 혜산시	탈북자 가족	남편과 이혼을 했음으로 남편 때문에 추방을 갈 이유가 없지만, 추방당함. 양강도 보천군 운남리로 추방을 갔다가 추방지에 집조차도 없는 상태이고,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라서 자의로 혜산시로 돌아옴. 책임비서에게 이혼했는데 왜 추방을 가야하느냐고 여러 번 청원했지만, 2009년 7월에 다시 추방당함.	NKHR 2011000143 2011-06-14
〇〇〇	2011-02-09	-	함북도		한 집에서 2명 이상의 '도강자'가 있으면 그 가족 강제추방함.	NKHR 2011000119 2011-05-24
〇〇〇	2011-03-01	-	함북도 회령시		2005~2006년 사이 가족 중 2명 이상 '도강' 시 가족 강제추방함. 국경연선 지역에 도강자 증가함에 따라 회령시 집중 단속함.	NKHR 2011000120 2011-05-24
〇〇〇	2011-01-12	2010.08.	양강도 혜산시		증언자 지인의 가족이 한국 입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양강도 혜산시에서 양강도 갑산군으로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231 2011-11-08
〇〇〇	2011-09-17	2004.03.	함북도 무산군		2004년 3월경에 대대적으로 '도강자' 가족들을 공개재판 하고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함경남도 홍원군, 허천군, 고원군 등으로 강제추방함. ( '도강자' 들은 교화를 갔다고 증언함.) 그 중, '도강자' 〇〇〇의 가족 4명 정도가 2004년 3월경에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함경남도 홍원군으로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250 2011-12-20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추방 사유	세부내용	증언 No.
〇〇〇	2010-09-30	-	양강도 혜산시	정보 유통	가족 중 행불자가 있을 경우 나머지 가족을 강제추방하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강제 추방이 늘어났음.	NKHR 2011000169 2011-07-26
〇〇〇	2011-06-07	2006.06.	양강도 혜산시		머느리가 몽골 CD-R을 판매하다가 발각이 되어 2006년 6월 교화 3년형을 받고서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한 '함흥교화소'에 구금됨. 머느리의 가족 즉, 증언자의 아들과 손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2006년 6월 양강도 혜산시 혜신동에서 양강도 삼수군 증평리로 강제추방을 당함. 머느리는 교화소 출소 후, 가족이 강제추방 당한 양강도 삼수군 증평리로 감.	NKHR 2011000219 2011-10-04
〇〇〇	2010-12-09	2009.	양강도 혜산시		2009년 겨울, CD-R 시청으로 인하여 양강도 혜산시에 서 보천군으로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	NKHR 2011000074 2011-03-22
〇〇〇	2011-05-03	2010.	함북도 회령시		직장 동료가 한국녹화물 시청으로 인하여 2010년 가을에 회령시에서 회령 세천으로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187 2011-08-16
〇〇〇	2010-09-10	2008.	평양시		2008년 컴퓨터 관련 죄로 평양시에서 평남도 북창군으로 강제추방되어 온 가족을 목격함	NKHR 2011000166 2011-07-19
〇〇〇	2010-11-06	2010.	함북도 회령시		2010년 함북도 회령시에서 손전화로 한국사람과 통화하다가 강제추방당한 것을 들음함.	NKHR 2011000056 2011-02-22
					밀수	2011년 증언 無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추방 사유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5-01	2008.	함북도 회령시	인신 매매	2008년, 부인이 인신매매를 해서 증언자도 함께 강제 추방을 당함.	NKHR 2011000165 2011-07-19
○○○	2011-08-13	2011.08.	양강도 혜산시		2011년 8월경 인신매매로 인하여 약 30명 정도가 양강도 혜산시에서 백암군, 삼수군, 갑산군, 운흥군 등으로 강제 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244 2011-11-22
○○○	-	-	-	이산 가족 찾기	2011년 증언 無	-
○○○	2011-01-05	2009.	함북도 회령시	'도강' 중개	2009년 '도강' 중개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강제 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093 2011-04-12
○○○	2009-10-16	2007.	함북도 무산군	기타 사유	증언자의 이웃이 무산광산 간부 3명 집 지하실에서 돈이 많이 발견되어 사촌까지 추방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098 2011-04-19
○○○	2011-01-21	2011.	양강도 혜산시		탈북 당시인 2011년 강제 추방 매우 증가 또는 확대됨. 사소한 잘못 발각 시 강제 추방 보냄.	NKHR 2011000100 2011-04-26
○○○	2011-02-03	2010.10.	평북도 정주시		2010년 10월, 평북도 정주에서 성대매로 인하여 강제 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105 2011-05-03
○○○	2010-10-20	2001.	평양시		평양시는 인구축소를 위해 노동교화소 등 수감 중인 자에 대해서도 강제 추방 문건 처리 함. 증언자의 둘째 언니가 현재 교화소 수감 중임에도 2001년에 추방 처리되었음.	NKHR 2011000085 2011-04-05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추방 사유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3-06	2010.	강원도 원산시	기타 사유	화폐개혁 실패 후 박남기의 12촌까지 약 40세대를 강제 추방 하는 것을 목격함. 부부사이느 이혼시켜 줌(‘박’가 아닌 배우자는 강제추방 시키지 않음). 강원도 원산에 사는 박씨들이 본인도 혹시나 박남기의 일가 일까봐 두려워 함.	NKHR 2011000158 2011-07-05
○○○	2011-08-13	-	양강도 혜산시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 군인들의 살 곳 마련을 위해 강제추방 사유가 늘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집을 제대 군인들에게 줌.	NKHR 2011000244 2011-11-22
○○○	2011-08-13	2009.09.	양강도 혜산시		증언자의 오빠가 브로커하다 남한 안기부와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증언자의 가족 양강도 혜산시에서 풍서군으로 강제추방 당함.	NKHR 2011000244 2011-11-22
○○○	2011-06-04	2011.	양강도 혜산시		‘10호 대상자’(열사자 가족 등)들의 집 배치를 위하여 국가에서 집이 필요하여 2011년 당시, 혜산에서의 강제추방이 증가하였다고 증언함.	NKHR 2011000216 2011-10-04
○○○	2011-08-05	2011.	평양시		평양시 재정돈 사업으로 인하여 평양 인구조절하고 있는 중임. 평양시 인구 계속 증가 추세라 조그만 비법행위가 발각 되더라도 추방을 보냄. 재정돈 사업은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위함.	NKHR 2011000240 2011-11-22
○○○	2011-02-12	2011.02.	함북도 회령시		부인이 ‘빙두’ 장사를 하여 교화를 가고, 그 남편은 2011년 2월 함북도 회령시 역전동에서 회령시 유선으로 강제추방 당한 것을 특문함.	NKHR 2011000112 2011-05-17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추방 사유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5-20	2010.	함남도 함흥시		2010년 '빙두' 거래로 인하여 함남도 함흥시에서 부천군으로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204 2011-09-20
○○○	2011-09-06	-	함남도 함흥시	기타 사유	함흥시 성천/회상구역이 '빙두' 생산지라서 '빙두' 관련 범죄 증가 범죄자 당사자는 총살, 가족들은 추방을 보낸다고 함.	NKHR 2011000245 2011-12-20
○○○	2010-10-12	2010.09.	함북도 회령시		한국 친척에게 돈 받아주는 일을 하다가 2010년 9월 함북도 회령시 새마을동에서 회령시 창태리로 강제추방 당하는 것을 목격함.	NKHR 2011000037 2011-01-11

## 나.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개인의 알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 및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9조). 또 자유권 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보추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제19조).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 의 자유를 가진다 (사회주의헌법 제67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주민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 할 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조선노동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언론은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 〈언론과 정보통제〉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1999년 형법은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와 주동자는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하였다(1999년 형법 제103조). 2004년 4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의 수집·보관·유포죄와 허위날조, 유포죄 등이 신설되었다. 반국가목적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빼라, 사진, CD-R,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보관·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2005년 형법 제195조). 반국가목적 없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을 꾸며내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하여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있다(2005년 형법 제222조). 또한 퇴폐적이고 추잡한 녹음, CD-R 등을 끌어들이거나, 복사, 유포한 자와 녹화기, 녹화 테이프, 컴퓨터, CD-R, 반도체라디오 등을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에 처하고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행정처벌법 제113조). 이와 같이 개인적인 의사표현 및 제3자에 대한 전달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 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밀리에 남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몰래 시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증언한다. 심지어 함경남도 북청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한국방송의 '직접 프로'를 시청했다고 증언하였다.<sup>465</sup> 남한 방송 청취나 텔레비전 및 CD-R 시청, MP3 사용이나 남한노래 청취와 관련한 내용 증언을 모아보면 <표 II-12>, <표 II-13>, <표 II-14>와 같다.

465\_NKHR2011000182 2011-08-09.

〈표 II-12〉 남한 방송 및 CD-R 시청 관련 내용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0-11-07	-	양강도 삼지연군	'깡패수업'과 '천생연분'이라는 한국영화를 시청하고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NKHR2011000086 2011-04-05
○○	2011-02-08	-	평남도	초기에 한국녹화물을 시청했을 때 (2003년경)는 한국이 북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이 좋아보이도록 영화 및 드라마를 제작한 것으로 인식함.	NKHR2011000115 2011-05-17
○○○	2011-02-25	2011.	양강도 해산시	2009년경, 한국녹화물 시청은 역적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이 내려 왔다고 함. 증언자 탈북 당시, 최근에는 CD-R이 아닌, 메모리로 시청한다고 증언함. 작아서 CD-R 보다 잘 발각되지 않음. 그래서 최근에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함.	NKHR2011000143 2011-06-14
○○○	2011-03-09	2011.	양강도 해산시	최근 (2011년)에는 한국 녹화물을 CD-R이 아닌, '메모리'로 많이 시청한다고 함.	NKHR2011000146 2011-06-21
○○○	2010-10-20	-	평양시	평양 내 한국 말씨 사용자 많음. 상류층 자녀들, 대학생들 중 남한 말씨 사용하는 사람들 많음.	NKHR2011000085 2011-04-05
○○○	2010-10-20	-	평양시	남한 CD-R 많이 보았는데, 정치와 무관하게 단순히 삶에 대한 자유로움 동경함. 조선(북한)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함. 스스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장사에 대한 통제가 심한 것에 대해서 남한과 비교의식이 형성되면서 불만을 가짐.	NKHR2011000085 2011-04-05
○○○	2011-05-03	2006~ 2011.	함북도 회령시	2006년부터 최종 탈북하기 이전인 2011년까지 한국녹화물 시청함. 한국드라마 '가을동화' 및 한국영화 '조폭마누라' 등을 시청함. '조폭마누라'를 시청했을 때는 한국에 진짜 그런 깡패가 많을까봐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함.	NKHR2011000187 2011-08-16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〇〇〇	2011-03-06	-	강원도 원산시	남조선은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으나, 녹화물 등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됨.	NKHR2011000158 2011-07-05
〇〇〇	2010-10-30	-	황북도 사리원시	젊은이들은 CD-R을 보고 남한 헤어스타일(긴 길이 및 염색)을 함. 규찰대가 단속, 그 자리에서 머리 잘라버리고 비판무대에 세움. 많은 젊은이들이 남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을 보면 남한 CD-R을 보고 따라한 것이라고 생각함.	NKHR2011000168 2011-07-19
〇〇〇	2010-09-30	-	양강도 혜산시	조선영화는 일정한 틀이 있어서 예상가능하고 재미가 없는 반면, 남한이나 미국 등의 것은 생활수준이 앞서 있고 재미있음.	NKHR2011000169 2011-07-26
〇〇〇	2011-05-27	-	양강도 혜산시	한국녹화물 시청 후 남한의 발전상과 자유로움이 부럽고, 반대로 북한의 심한 통제에 숨 막힘.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없어 보여 탈북했다고 증언함.	NKHR2011000210 2011-09-20
〇〇〇	2010-11-27	-	함북도 명간군	한국녹화물을 통해 내용 뒤에 비쳐지는 남한의 발전상, 생활수준 등에 대해 알게 됨. 이것이 영향을 미쳐 북한과의 비교 의식이 생겨남.	NKHR2011000213 2011-10-04

〈표 II-13〉 MP3 관련 증언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〇〇〇	2011-02-12	-	함북도 김책시	MP3 듣는 것은 허용되나, 한국 및 외국 팝은 못 들음. 발각시 압수함.	NKHR2011000108 2011-05-11
〇〇〇	2011-01-30	-	평양시	MP3를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노래는 대학생들이 돈을 받고 MP3에 다운로드 해줌. 거의 모든 젊은이들 한국 노래 많이 부름.	NKHR2011000103 2011-05-03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OO	2011-02-08	-	평남도 평성시	한국 노래를 MP3, CD복하기 등으로 접함. 개인적인 지인을 통해서 비밀리에 구입함. 최근 젊은 사람들은 한국노래 모르면 안 될 정도라고 함.	NKHR2011000115 2011-05-17
OOO	2011-02-25	-	양강도 해산시	MP3 없는 중학생이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한국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함.	NKHR2011000143 2011-06-14
OOO	2011-05-03	-	함북도 회령시	장마당에서 MP3를 구입하여 한국노래(현숙, 나훈아 등)를 들음. 장마당에 노래가 들어있는 MP3와 노래가 들어있지 않은 MP3를 모두 판매하고, 노래가 들어있지 않은 MP3를 구입하면 따로 컴퓨터를 통해서 노래를 다운로드 하는데, 다운로드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함.	NKHR2011000187 2011-08-16
OOO	2010-12-01	-	강원도 천내군	MP3는 이미 노래가 들어있는 채로 장마당에서 팔기도 하고, 노래가 들어있지 않은 MP3로 판다고 함. 노래가 들어있지 않은 MP3는 구입 후, 컴퓨터가 있는 사람에게서 노래를 다운 받는데,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노래는 CD-R을 통해서 컴퓨터로 옮긴 것이라고 함.	NKHR2011000200 2011-09-06
OOO	2011-07-25	2009.	양강도 백암군	2009년 (화폐개혁 이전) 장마당에 MP3의 가격은 7만 원(북한돈) 정도였다고 함.	NKHR2011000232 2011-11-08

〈표 II-14〉 한국노래(음악) 처벌 관련 증언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OOO	2009-03-25	2006.	함북도 무산군	2006년 함북도 무산군에서 한국노래를 들어서 단련대 6개월 처벌을 받음.	NKHR2011000174 2011-07-26
OOO	2011-08-13	2009.	양강도 해산시	2009년 양강도 해산에서 한국노래로 인하여 단련대 1개월 처벌을 받았으나, 뇌물을 주고 병보석 처리함.	NKHR2011000244 2011-11-22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OOO	2011-02-16	2010.06.	평남도 덕천시	2010년 6월 평남도 덕천시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수첩에 한국노래가 있는 것이 발각됨. 단련대에 구금 될 것이라고 했으나, 뇌물을 주고 10일 정도만 덕천시 보안서 구류장에 구류되고, 비판서를 작성한 후 풀려나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97 2011-09-06
OOO	2011-03-15	2011.	함북도 회령시	2011년 함북도 회령시에서 한국노래를 불러서 단련형 6개월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51 2011-06-28

한편 최근 들어 북한내부의 이동통신 사용이 일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나진·선봉지역에서 세계무선통신시스템(GSM)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2004년 4월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이동통신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런데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이 북한의 유선통신업체인 ‘조선우편통신공사’와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하여 2008년 12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WCDMA)를 북한에 도입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음성과 문자이고 국제통화나 로밍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오라스콤텔레콤의 2011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핸드폰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북한주민은 약 100만 명이다.<sup>466</sup> 평양·평성·안주·개천·남포·사리원·해주 등 7개 도시와 8개 공공도로에서 핸드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sup>467</sup> 이처럼 핸드폰의 사용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제 핸드폰을 통한 남한과의 통화가 많은<sup>468</sup> 국경지역 시·군·리들에 대한 단속 및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지고 있다. 보안서와 인민무력부가 핸드폰 사용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협동 작

466. 『조선일보』, 2012년 1월 21일.

467.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2월 10일.

468. NKHR201000011 2010-09-14. 북한이탈주민 OOO은 탐지기를 이용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서 딸이 보내준 핸드폰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통화하였다고 증언한다.

업에 들어갔다. 양 부서는 접견지역 주변의 각 리·동 담당 보안원을 기존의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전화 탐지기 50대를 투입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재투입시켰다고 한다.<sup>469</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노동단련대, 엄중한 경우 교화소에 가는데 대부분 돈을 바치고 풀려난다고 하는 점이다. 그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150만 원까지 바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먼저 불법핸드폰 사용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가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 <표 II-15>와 같다.

<표 II-15> 핸드폰 사용 처벌 사례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0-10-24	2010.08.	함북도 회령시	2010년 8월 함북도 회령시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단련대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048 2011-02-08
○○○	2010-11-07	2009.	양강도 삼지연군	2009년 가을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유기교회형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086 2011-04-05
○○○	2010-12-29	2010.12.	함북도 무산군	2010년 12월 함북도 무산군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벌금 50만 원(북한돈)을 냄.	NKHR2011000080 2011-03-29
○○○	2011-03-09	2011.02.	양강도 해산시	2011년 2월 양강도 해산시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벌금 2,000위엔을 내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50 2011-06-28
○○○	2011-05-01	2011.04.	함북도 무산군	2011년 4월 함북도 무산군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벌금(뇌물) 10만 원(북한돈) 내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73 2011-07-26
○○○	2011-07-28	2009.	함북도 온성군	2009년 함북도 온성군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단련형 1년 6개월 처벌을 받음. 2011년 한국 및 중국 1번 통화 발각시 단련형, 여러 번 통화 발각시 교회형 처벌을 받는다고 함.	NKHR2011000239 2011-11-22

46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4호 (2006.6.7).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000	2011-03-29	2008.06.	함북도 무산군	증언자 2008년 6월 단속 시, 벌금 30만 원을 '탐지국'에 냄. 벌금 확인서를 받음. 핸드폰 단속은 '탐지국'에서 하는데, '탐지국'은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지만, 따로 독립되어 활동 한다고 함.	NKHR2011000155 2011-07-05
000	2011-06-07	2009.06.	양강도 혜산시	증언자의 아들이 2009년 6월경, 한국에 입국한 여동생과 통화를 하려다가 보위부의 탐지기에 발각됨. 한국과 통화를 하려면 중국을 거쳐야 하는데, 발각 당시 중국과만 연결이 된 상태여서 큰 처벌을 면하고 벌금 50만 원(북한돈)을 냄. 벌금을 냈다는 확인 쪽지 같은 것을 받음.	NKHR2011000219 2011-10-04
000	2010-10-15	-	함북도 무산군	핸드폰 사용 발각 시, 벌금형일 경우 보통 50만 원(북한돈)을 냄.	NKHR2011000079 2011-03-29
000	2011-02-09	-	함북도 무산군	전화통화는 전파 탐지되므로 문자 메시지 사용함.	NKHR2011000119 2011-05-24
000	2011-02-21	-	-	'강타기'(도강) 한 집은 감시 불으므로 집에 핸드폰 들 수 없음. 그래서 사돈집에 맡기고 몰래몰래 사용함.	NKHR2011000125 2011-05-31
000	2011-09-17	2010.	함북도 무산군	핸드폰 단속은 '국가안전보위부 전파탐지국'이라는 곳에서 맡아서 한다고 함.	NKHR2011000250 2011-12-20
000	2010-07-01	-	-	핸드폰 1회 단속 시 단련대 처벌을 받고, 핸드폰 2회 이상 단속 시에는 교화 처벌을 받는다고 함.	NKHR2011000188 2011-08-16
000	2010-11-27	-	함북도 명간군	뇌물로 처벌면제 가능하나,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침. 한국과의 통화는 간첩죄에 해당하여 뇌물로 처벌면제 불가함.	NKHR2011000213 2011-10-04
000	2011-04-10	-	양강도 혜산시	중국 밀수·밀매 관련 통화 발각 시 뇌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남한 통화 발각시 뇌물로 해결되지 않으며, 기본 교화형 처벌 받음.	NKHR2011000163 2011-07-12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〇〇〇	2011-03-01	-	함북도 회령시	탐지기 차가 계속 다니면서 단속함. 한국과의 통화는 유기 교화형, 중국 과의 통화는 단련대임. 핸드폰 단속 시 뇌물로 처리 가능한 데 60만 원 정도라고 함. 핸드폰은 몰수함.	NKHR2011000120 2011-05-24
〇〇〇	2011-04-28	2011.03.	양강도 김정숙군	증언자의 형수가 중국으로 송금된 돈을 받아주는 일을 했는데, 중국 사 람에게 돈을 전달 받다가 핸드폰 사 용이 발각됨. 양강도 헤산시 보위사령부 구류장에 1개월간 구금됨. 많은 뇌물을 줘서 처벌을 받지 않 음(뇌물의 금액은 잘 모름).	NKHR2011000167 2011-07-19
〇〇〇	2011-04-22	2009.08.	함북도 회령시	핸드폰 단속은 '27국'(국가안전보위 부 소속)에서 탐지기를 이용하여 단 속함. 단속이 되면 '27국'이 해당 시보위부 에 단속문건을 넘김. 시보위부에서 단속문건 취급 후, 해 당 보안서로 넘김. 증언자 '27국'에 단속이 되었지만, 뇌물(500위엔)을 주고 처벌 받지 않음. 벌금을 내면 벌금회수증을 주고, 지 장을 찍는다고 함.	NKHR2011000175 2011-07-26
〇〇〇	2007-05-04	2009.	함북도 무산군	증언자의 제부가 2009년경 핸드폰 단속이 되었지만, 뇌물로 20만 원(북 한돈)을 주고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 을 중국에서 득문함.	NKHR2011000207 2011-09-20
〇〇〇	2010-09-30	-	양강도 헤산시	최근 핸드폰 단속 시 심하면 교화소, 보통 단련대 처벌을 받지만, 뇌물을 주면 처벌 면제 가능함.	NKHR2011000169 2011-07-26
〇〇〇	2011-08-13	2009.	양강도 헤산시	증언자 2009년 양강도 헤산시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뇌물로 50만 원을 주고 처벌 받지 않음. 핸드폰 발각 3번까지는 뇌물로 처벌 면제 가능함. 뇌물 금액은 보통 3,000위엔 정도임.	NKHR2011000244 2011-11-22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〇〇〇	2011-02-25	2010.12.	양강도 혜산시	2010년 12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었지만, 뇌물을 주고 처벌을 받지 않음.	NKHR2011000143 2011-06-14
〇〇〇	2011-03-09	2010.	양강도 혜산시	2010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갑자기 가택수색이 이루어져서 냉동기 안에 숨겨놓았던 손전화기가 발각됨. 뇌물 2,000위원을 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46 2011-06-21
〇〇〇	2009-01-05	2010.	함북도 회령시	증언자의 아버지가 함북도 회령시에서 2010년도에 손전화 사용이 발각되었는데, 뇌물로 200만 원(북한돈)을 주고도 혹시나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있었다고 함.	NKHR2011000230 2011-11-08
〇〇〇	2011-08-22	2010.	함북도 회령시	2010년 함북도 회령시에서 핸드폰 사용이 발각되어 단련대 처벌을 받았지만, 뇌물을 주고 석방되는 것을 목격함. 한국과 통화한 경우에는 교화 처벌을 받는다고 함.	NKHR2011000253 2011-12-20

### 〈체벌실태〉

북한당국은 불법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4년 형법 개정시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제193조)와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제194조)를 신설하여,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CD-R 등을 허가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한 행위와 이러한 매체를 여러번 시청, 청취 또는 매체상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대, 교양소, 교화소 등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고 있다. 녹화물에 대한 북한당국의 처벌실태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다음 <표 II-16>과 같다.

〈표 II-16〉 녹화물 처벌 사례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0-09-07	2010.	평남도 순천시	2010년 평남도 순천시에서 녹화물 로 인하여 교화 10년형 처벌을 받았 다는 것을 득문함.	NKHR2011000044 2011-02-08
○○○	2010-09-27	2010.05.	양강도 보천군	2010년 5월 양강도 보천군에서 증언 자의 사촌이 녹화물로 인하여 벌금 20만원(북한돈)을 내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076 2011-03-22
○○○	2010-09-22	2010.08.	함북도 온성군	2010년 8월 함북도 온성군에서 녹화 물로 인하여 교화 10년형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83 2011-08-09
○○○	2011-05-29	2010.	함북도 청진시	2010년 함북도 청진시에서 녹화물 로 인하여 교화 3년형 처벌 받는 것 을 목격함.	NKHR2011000203 2011-09-06
○○○	2011-05-19	2011.	양강도 혜산시	양강도 혜산시 '혜산시장'에서 '메모리 (USB)'를 팔다가 단속되어 2011년 교화형에 처해진 사례를 득문함.	NKHR2011000209 2011-09-20
○○○	2011-07-28	2010.	-	2010년 녹화물로 인하여 단련형 2년 형 처벌을 받고 함북도의 성단련대 에 구금된 사람 5명을 목격함.	NKHR2011000239 2011-11-22
○○○	2011-09-17	2010.10.	함북도 무산군	2010년 10월 함북도 무산군에서 녹 화물로 인하여 단련대 6개월 처벌 받 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250 2011-12-20
○○○	2011-02-12	2011.	함북도 김책시	중국, 인도, 홍콩 영화 시청 발각 시, 단련대 1개월 처벌, 한국, 미국 영화 시청 발각 시, 가족동반 무기징역 및 간부는 해임 철직한다는 포고문을 2011년 목격함.	NKHR2011000108 2011-05-11
○○○	2011-02-07	2010.	평남도 평성시	2010년 평남도 평성시에서 CD-R 을 복사해 주다가 발각되었지만, 뇌 물 200달러를 주고 처벌을 받지 않 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11 2011-05-17
○○○	2011-02-21	2010.	함북도 청진시	한국영화, 음란영화 시청 발각 시, 교화형 처벌함. 중국영화, 인도영화 시청 발각 시, 녹화물 몰수 및 비판서 작성함.	NKHR2011000122 2011-05-24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1-15	2011.01.	함북도 무산군	2011년 1월 함북도 무산군에서 한국 CD-R 한 장에 3,000원(북한돈) 정도, 러시아 등 타 국가 CD-R 한 장에 1,500원(북한돈) 정도임.	NKHR2011000116 2011-05-17
○○○	2011-02-03	2011.	함북도 청진시	녹화물 단속은 '109상무'에서 하는데 도검찰소, 도재판소, 도안전부, 도보위부, 구역당 등의 연합 조직임. 이외에 규찰대도 단속함. 규찰대는 뇌물로 처벌 면히 쉬우나, '109상무'는 연합조직이어서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야함으로 뇌물이 잘 통하지 않음.	NKHR2011000118 2011-05-17
○○○	2011-03-01	-	함북도 회령시	녹화물이나 TV 시청하던 사람이 1인 이면 뇌물처리 가능하나, 다수이면 뇌물처리 어려움. 마찬가지로 단속하는 사람이 1인이면 뇌물처리 가능, 다수의 단속원 있을 경우 뇌물처리 어려움. 보통 뇌물은 10~20만 원임.	NKHR2011000120 2011-05-24
○○○	2011-02-21	2010.	함북도 온성군	2010년 3월 함북도 온성군에서 녹화물 발각으로 인하여 단련대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녹화물 등을 접하다가 발각될 경우 토대에 따라 처벌 수위 다름. 심할 경우 관리소, 공개처형함.	NKHR2011000126 2011-05-31
○○○	2010-09-22	2008.	함북도 온성군	2008년경 함북도 온성군 산성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녹화물 시청으로 인해서 교화 2년형을 받고 전거리 교화소에 구금되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80 2011-08-09
○○○	2010-11-02	2009.	-	한국녹화물(CD-R) 밀수 및 복사, 유포죄로 교화 15년형을 받고 2009년 겨울, 전거리12교화소에 들어온 사람을 목격함.	NKHR2011000201 2011-09-06
○○○	2009-01-05	2009.	함경북 회령시	증언자의 남동생, 2009년 봄, 미국영화('미녀삼총사', CD-R) 시청이 발각되어 50만 원(북한돈)을 뇌물로 주고 처벌 받지 않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230 2011-11-08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1-17	2010.04.	강원도 원산시	2010년 4월 증언자의 시동생이 강원도 원산시에서 USB로 한국영화를 시청하다가 '109그루빠'에 단속이 되었는데, 뇌물 2,000달러를 주고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득문함.	NKHR2011000094 2011-04-12
○○○	2011-01-17	2010.06.	평남도 평성시	2010년 6월 평남도 평성시에서 증언자의 친구가 녹화물로 인하여 '109그루빠'에 단속이 되었는데, 뇌물 300달러를 주고 처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01 2011-04-26
○○○	2011-04-29	-	-	중국녹화물 발각 시, 단련대 처벌 한국녹화물 발각 시, 본인은 교화 이상의 처벌, 그리고 그 가족은 강제추방 당한다고 함.	NKHR2011000179 2011-08-02
○○○	2008-09-18	-	함남도 흥원군	녹화물 단속하여 받는 벌금(뇌물)이 법관들의 생활 원천이라고 증언함.	NKHR2011000189 2011-08-16
○○○	2011-05-13	2011.04.	-	2011년 4월 녹화물, 방송, 라디오 등에 대해 교화에 처한다는 내용의 김정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함.	NKHR2011000191 2011-08-23
○○○	2010-11-27	-	함북도 명간군	현재는 소련 및 홍콩 등의 것도 보지 못하게 함(일부 북한물도 금지: 임격정, 춘향전 등). 단속기관은 비사그루빠,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등 다양함(처음 단속을 시작한 기관은 보위부). 2005년경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시 가택수색도 함. 녹화물 단속 시, 처벌은 교화형 뇌물을 주면 처벌 면제 가능하나, 단속된 것 소문나면 뇌물로 면제받지 못함. 보위부원 등 단속자들과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야 뇌물을 통한 처벌면제가 가능함. 증언자의 경우 뇌물로 처벌 면제 받은 경우 많고, 심지어 단속자가 증언자 집에 와서 녹화물을 보고 가기도 함(욕심나는 CD-R은 빼앗아 가기도 함). 뇌물은 목숨이 달렸으므로 부르는 게 값임. 남한 CD-R의 가격은 중국의 재밌는 것에 비해 5배 정도 비쌈.	NKHR2011000213 2011-10-04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0-06-21	2010.	양강도 백암군	녹화물 판매 시에는 교화 처벌을 받고, 녹화물 시청 시에는 가족 모두 단련대 처벌을 받는다고 함.	NKHR2011000235 2011-11-08
○○○	2010-04-02	-	평남도 덕천시	녹화물 단속 시, 교화 처벌 대상이지만, 뇌물로 처벌 경감(노동단련대)된 사람들 많음.	NKHR2011000243 2011-11-22
○○○	2011-04-10	-	양강도 혜산시	학습, 강연회에서 “한국/외국 방송물 시청 발각 시 교양처리 한다”고 강연 하였음.	NKHR2011000163 2011-07-12
○○○	2011-05-05	-	-	‘109상무’ 조직 구성원(5명) - 인민위원회, 청년동맹, 보안서, 보위부, 인민반장 각 1명씩 구성	NKHR2011000185 2011-08-16
○○○	2009-03-01	-	평북도	녹화물 단속을 위해서 보안원들이 아이들에게 사탕으로 유인하여 녹화물 시청 여부 확인함.	NKHR2011000205 2011-09-20
○○○	2011-02-25	-	평북도	한국/외국 녹화물 시청 단속을 하는 단속기관은 ‘109그루뽀’임. ‘109그루뽀’는 보위부, 안전부, 규찰대 등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임. 녹화물 단속 시, 발각이 되어 뇌물을 주더라도 해당 기관이 많다 보니 뇌물 사업이 쉽지 않다고 함.	NKHR2011000238 2011-11-22
○○○	2011-07-28	-	함북도 온성군	한국녹화물 시청 발각 시 교화 처벌, 음란물 시청 발각 시 단련대 처벌 중국영화 <양상백과 축명대> 시청 시 ‘한국영화’ 시청으로 취급하여 처벌하겠다고 지시 내려옴. 이는, 주인공 ‘양상백’ 역을 맡은 배우가 한국인 배우였기 때문임.	NKHR2011000239 2011-11-22

그러나 위의 <표 II-15>와 <표 II-16>에서 보는 것처럼 뇌물을 주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처음에는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 조선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루빠가 합동 검열을 하였으나 녹화물에 대한 불법시청이 증가하자 ‘109소조’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상주하면서 검열을 한다고 증언하였다.<sup>470</sup> 북한이탈주민 ○○○은 이 조직의 기본목적은 CD-R을 회수하고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sup>471</sup>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탈북자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하여 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파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빌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분주소장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과 함께 한국 비디오를 본다는 증언도 있다.<sup>472</sup> 이와 같이 단속주체가 비디오를 보고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보안원과 함께 비디오를 본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sup>473</sup>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물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치적 성격을 갖는 내용의 녹화물에 대해 가장 경계하고 다음으로 성행위(섹스) 관련 내용이라고 증언하였다.<sup>474</sup>

그런데 국경지역과 달리 내륙지역에서는 단속이 심해 CD-R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증언도 있다.<sup>475</sup>

### 〈출판 자유 실태〉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써 조선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 있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출판물의 주된 내용은 김일성의 위상화, 유일

470. NKHR2008000023 2008-11-11.

471. NKHR2009000012 2009-03-05.

472. NKHR2008000006 2008-07-22; NKHR2008000027 2008-12-02.

473. NKHR2009000011 2009-03-03.

474. NKHR2009000035 2009-06-02.

475. NKHR2009000054 2009-09-17.

사상의 체계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립, ‘우리식대로 살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등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조선노동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1975년 출판법을 제정,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개정하였다. 이 법은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러나 출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자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에 등록해야 한다(제12조).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인쇄설비는 몰수된다(제49조). 또한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47조) 출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출판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처해진다(제50조). 행정처벌법은 타자, 복사, 인쇄, 등사, 출판물의 보급, 반출입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으며(제105조), 퇴폐적이고 추잡한 그림이나 사진, 도서를 끌어들이거나, 복사,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다(제113조). 북한형법도 출판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26조).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 기간에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형법 제61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서 조선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조선노동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하 문예총) 결성 이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수, ‘당성·계급성·인민성’ 원칙의 관철 등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이 결정됨에 따라 문예 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이 정립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고 김일성의 절대화·우상화를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북한 문예정책은 강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특히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조선노동당과 내각 문화성의 통제·감독 하에 검열인이 나와야 비로소 출판이나 공연이 가능하다. 이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녹화물과는 달리 한국서적을 보았다가는 간첩행위로 몰려 엄하게 처벌받게 되어 있다. 중국이나 한국서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sup>476</sup>

476.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2001년 자유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의 시 북한은 출판물의 출판, 배포를 금지시킨 사례는 최근 3년간 30여 건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북한은 금지 사례의 주된 내용이란 국가군사 기밀자료가 포함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출판과정에서 발견되어 인쇄중지·수정된 경우는 백과사전, 지도, 잡지 등에서 27~28건, 군사상식을 비롯한 도서들에서 3~4건 정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특정 간행물을 금지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 신문구독을 금지하는 조치를 삼가도록 하며 북한 기자들의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국가안보’ 개념을 악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제23항).

## 다.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표현의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0조). 또한 자유권 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와 제22조).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공민은 …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

선노동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집회와 중앙, 도·시·군 범위 및 일정한 부문별로 진행되는 집회는 매우 많지만 시위는 극히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는 북한의 집회와 시위가 조선노동당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2005년 형법은 반국가적 목적이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219조)”고 규정하고 있어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존의 강력한 억제 조치를 존속시키고 있다. 행정처벌법도 국가기관의 결정이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이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3조). 북한당국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ICESCR) 2차 정기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위를 하려면 그 주체는 집회 및 시위 보장 규율에 따라 3일 전에 지방인민위원회나 인민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요일 및 시간, 장소, 조직자 및 규모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통보를 받은 인민위원회나 인민안전기관은 집회 및 시위에 필요한 여건들을 보장하여야 하며,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건전한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집회나 시위는 사회안전단속법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민주적 공공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30일 전에 미리 내각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에는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학예술총동맹, 민주변호사협회, 그리스도교연맹, 불교도연맹, 반핵평화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 등 수십 개의 민주적 공공단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직업총동맹의 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고용자가 아니며, 국가 및 사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관, 공장, 기업소의 계획, 행정, 관리에 참여하는 공장 및 기업소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과 불만 이외에는 기업소 주인에 대한 집단협상, 노동분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기업소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노동여건 보장을 위한 외국기업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노동조합(직업총동맹)에 의존해야 한다. 아직까지 외국기업 내에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sup>477</sup> 그런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사회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사 후 제시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단일 직업총동맹이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며 직업총동맹의 권리가 국가보위기구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는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

477. 북한은 2002년 5월 사회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3b70e5a6e2df030c1256c5a0038d8f0?OpenDocument)> 참조.

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노동법(1999년)에도 근로자들의 근로조직에 관한 규정은 없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단체는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라 2010년에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주요 기능은 조선노동당을 보좌하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또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 기능 외에 북한당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운동,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동, 김일성·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집단시범, 행진 등에 있어서 주민동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생활에서 가장 싫어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직장을 포함한 각종 조직에 속해야 하고 일주일에 1~2회 정도의 생활총화 및 정치교육 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조직생활에 자주 빠지는 경우 추궁을 받고 심하면 지방으로 추방되는 등 조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 다만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돈을 주고 조직생활에 불참하는 경우나 전화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제기되

고 있다.<sup>478</sup>

조선노동당은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즉, 조선노동당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북한은 자유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 “정당조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 왜냐하면 기존 정당이 공화국 창건 전 형성된 이래 50년 이상 활동해 오고 있고 신생 정당의 형성을 요구하는 대중적 요구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정당에는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에 대한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북한은 인권단체와 관련하여 국가가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 설립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체 설립 절차는 행정 규정에 따른 일반 공공단체 설립과 같다. 현재 인권 연구협회,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민주법률가협회, 민주변호사회 등의 인권단체들이 있다.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문학예술총동맹, 아프리카-아시아 연대 위원회 등도 인권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의 비정부기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는 북한의 비정부 인권기구의 활동이 활동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번 토의내용을 비정부 인권기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토 의견서에서 북한 측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478. 북한이탈주민 000,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최근에는 여성동맹 생활총화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데일리NK』, 2010년 7월 9일.

불구하고 공공집회의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공공집회가 어떤 경우에 금지되며 공공집회가 금지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4항). 또한 정치적 참정권을 규정한 자유권 규약 25조의 정신에 비추어 새로운 정당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법적 절차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표단의 설명에 유의하면서 자유권 규약 제25조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일반 권고 제25호를 반드시 참조하도록 권고하였다(제25항).

## 라.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목적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유권 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7조).

2009년 4월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공민은 …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사회주의헌법 제79조)”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사회주의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체신법(2001년)은 “체신기관, 기업소는 …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비밀을 누설, 침해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제52조).

2004년 5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 북한은 과거의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999년 9월 개정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규정을 삭제하고 증거의 “압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제223조)”로 규정하여 과거보다 일보 후퇴한 감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2005년 형사소송법 제271조).

또한 예심원은 범죄나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편지나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기관과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입회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2005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18조, 제221조).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서신이 검열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편지는 철저한 검열을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sup>479</sup>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보낸 큰 이모의 편지가 뜯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sup>480</sup>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으로 ‘도강’한 것 때문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중국의 언니가 보낸 편지가 배달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sup>481</sup>

2003년 북한은 조선국제통신국이 전송속도와 서신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망 보호체계를 자체기술로 갖추고 e-메일(국제전자우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482</sup> 그러나 이러한 범조항과 e-메일 서비스 개시는 실생활과 거의 무관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사생활 보호권은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

479. NKHR2011000007 2010-04-06.

480. NKHR2011000005 2010-08-10.

481. NKHR2010000102 2010-07-13.

482. 『조선중앙통신』, 2003년 11월 28일.

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다.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당국은 엄격한 상호 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과 000도 북한당국이 반체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간부 주택과 공공장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도청은 국가안전보위부 13국에서 실시한다고 증언하였다.<sup>483</sup>

또한 북한은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북한은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 이색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하면서, 1995년경부터 별도의 동향감시 기록 카드를 제작, ‘긍정발언·부정발언’ 등으로 구분하여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상위조직부터 하위 인민반까지 실시하고 있다. 생활총화는 주 1회 정도 실시되며 자기 비판과 상호비판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형식적으로 생활총화는 하지만 상호비판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sup>484</sup> 사람들이 먹고사는 데에 더 정신을 쏟아 붓고 있어서 더욱 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하며 상호비판 같은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sup>485</sup>

북한당국은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 공안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인민보안부 소속 숙박 검열대는 무단숙박과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을 수행한다.

483. 북한이탈주민 000, 2006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484.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485.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무단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검열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숙박자는 수시로 숙박검열을 당한다고 한다.<sup>486</sup>

검열단은 도보위부원 2명에 보안원 1명이 한 조가 된다. 검열단은 먼저 각 인민반 반장 집을 검열한 다음, 인민반장과 함께 각 세대를 검열하고 있다. 매일 저녁 7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해서 하루 2회 진행된다. 대체로 인민반장들의 신고로 잡히는 무단숙박자 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sup>487</sup>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인민반장에게 집 열쇠를 맡겨야 된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부자와 관계된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 구역 간부들이 호구조사를 할 경우 집주인의 안내 없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15~25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인민반장에 의해서 통제되고 인민반장은 인민보안부 보안원과 함께 숙박검열 등을 통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인민반장은 사상동향이나 가정 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감시는 인민반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sup>488</sup> 한편 인민반에는 이미 보위부원, 보안원, 당 비서 등의 끈나풀이 있고, 이들이 이중 삼중으로 인민반장과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sup>489</sup>

북한이탈주민 ○○○도 인민반장이 모든 것을 감시하여 여전히 보고한다고 증언하였다.<sup>490</sup> 이와 같이 인민반장이 주민에 대한 동향보고

486. NKHR2011000005 2010-08-10.

48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6월 8일, 서울에서 면접.

488. 북한이탈주민 ○○○, 2010년 6월 8일, 서울에서 면접.

489.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490.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친구 〇〇〇이 CD-R을 보다 인민반장 아들한테 들켜 가택 수색을 당했고 함흥 오로 교양소에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다.<sup>491</sup> 최근에는 집 안에서 중국에 간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인민반장들이 그의 가족에 대한 동태를 강하게 살핀다고 한다.<sup>492</sup>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민반장을 무서워하는데 인민반장 아들이 와도 싫어할 정도라고 한다.<sup>493</sup> 인민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민반장과 다투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sup>494</sup> 그런데 반대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인민반장에 대해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심지어 어떤 인민반장은 보위부원들이 단속을 시작하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한다.<sup>495</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인민반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증언하였다.<sup>496</sup>

491. NKHR2009000053 2009-09-08.

492. NKHR2009000057 2009-09-22.

493. NKHR2009000042 2009-06-25.

494. NKHR2010000045 2010-09-07.

495. NKHR2009000026 2009-04-23.

496.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 6



## 종교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며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자유권 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수용할 권리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의식·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고,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북한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해방 직후 북한주민 916만 명 중 22.2%인 200만여 명이 종교인(천도교도 약 150만 명, 불교도 약 37만 5천 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 7천 명)이라고 밝혔다.<sup>497</sup>

497\_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 365.

북한당국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98</sup>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6·25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 이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62년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 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sup>499</sup>

498. 사회과학원,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50.

499.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서울: 민족문화사, 1989), p. 79.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북한당국은 대외적 선전을 위해 종교단체를 재조직하였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제54조)”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진보적인 면을 보였으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종교단체들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세 개의 종교단체로 재조직하고, 남한의 진보적인 종교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정투쟁과 통일방안을 선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당시 종교는 대남정치 선전에 동원되었다.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외부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이 증대되자 북한은 법률개정, 종교건물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등 종교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종교정책의 변화는 우선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1992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제68조)”고 규정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반종교선전의 자유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교의 자유와 관련,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법률적으로 진보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종교건물의 신축과 종교의식을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수단으로 종교가 활용될 수 있다는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제68조 중 ‘누구든지’가 빠졌고 이것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표 II-17>과 같다.

〈표 II-17〉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 변화

제정 및 개정 시기	종교 관련 조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1948년 9월 9일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4조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972년 12월 28일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수정) - 1992년 4월 9일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 헌법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1998년 9월 5일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 헌법 - 2009년 10월 7일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 헌법 - 2010년 4월 9일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 ● 종교시설 실태

북한당국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1989년 칠골교회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 순방

시 정교회를 방문한 이후 2003년 6월 러시아 정교회 사원 건립이 추진되어 2006년 8월 13일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에 ‘정백사원’이 완공되었다. 2003년 4월 북한인 4명이 러시아정교사제교육기관인 러시아 모스크바신학교에서 유학하였다.<sup>500</sup> 현재 이들 중 세례를 받고 보제신부가 된 2명이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종교시설 이외에 남한의 지원 아래 새로운 종교시설이 건립되거나 재건축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 종교계가 북한 내 종교시설을 복원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sup>501</sup>

그리고 북한은 신계사, 영통사 등 전통문화 보존 차원의 불교사찰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 12월부터 각지 59개 사찰에 대한 전면적 단청작업을 추진하였다.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기독교인은 평양 봉수교회 300명, 칠골교회 150명, 가정교회 500여 군데 등을 포함해 모두 14,000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sup>502</sup>

이러한 종교시설에 대해 평양주민들은 많은 경우 존재 자체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방주민들은 대부분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 교회와 성당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sup>503</sup>

평양에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신앙시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평양 주민도 이러한 종교시설의 존재

500. 『조선중앙방송』, 2003년 6월 25일; 『연합뉴스』, 2003년 6월 24일, 27일.

501. 예장통합의 지원으로 2005년 11월 평양제일교회가 건립되었으나 교회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2. 『노컷뉴스』, 2010년 11월 10일.

503.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를 알고는 있지만 접근이 제한된 구역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교회와 성당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평양에 종교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성당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sup>504</sup> 특히 절을 종교시설로 인식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스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sup>505</sup> 북한이탈주민 000은 스님이 머리를 깎지 않고 단순히 절을 지키고 역사 유적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증언하였다.<sup>506</sup> 북한이탈주민 000은 개성에 있는 절에 갔을 때 스님은 단순히 안내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507</sup> 종교시설과 관련한 증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II-18>과 같다.

<표 II-18> 종교시설 관련 증언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000	2007-09-04	-	양강도 해산시	양강도 해산시 염소목장에 조그만 절이 있음을 목격함. 그곳에 스님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함.	NKHR2011000237 2011-11-22
000	2011-09-17	-	함북도 무산군	북한에서 북한연극인 '성황당'을 보고서 종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성황당'은 스님, 목사 등이 나와서 서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그린 것이라고 함.	NKHR2011000250 2011-12-20
000	2010-11-11	-	평양시	군복무 시 평양에서 목격했지만, 교회인지 성당인지 잘 모르겠다고 함.	NKHR2011000070 2011-03-15
000	2010-08-30	-	평양시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성당을 목격함. 1989년 '13차 세계청년축제' 때 외국인에게 보여 주기 위한 종교인 목격함.	NKHR2011000088 2011-04-05

504. NKHR2009000031 2009-05-12.

505. NKHR2008000001 2008-07-01.

506. NKHR2009000031 2009-05-12.

507. NKHR2009000033 2009-05-26.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000	2006-07-02	-	함북도	경원군종교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고, '관상'이라는 단어만 들어봄.	NKHR2011000145 2011-06-21
000	2010-05-16	-	-	'종교'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 없음.	NKHR2011000157 2011-07-05
000	2011-01-30	2003.	평안도	2003년도에 묘향산에서 '보현사'라는 절을 목격함.	NKHR2011000103 2011-05-03

북한에도 종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부를 신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종교교육 기관이 있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는 평양 신학교를 운영하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학원,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중학교를 운영하며 조선카톨릭협회 중앙위원회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3년에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이 모스크바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sup>508</sup>

## ● 종교의식 실태

북한당국은 종교의식을 허용하고 있다. 석가탄신일, 성도절, 열반절에는 사찰별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조국통일기원법회 같은 정치성 법회도 개최되고 있다. 미국 측의 종교탄압국 지정에 대하여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하여 평양 ‘봉수교회’ 일요일예배에 매주 200~300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각지 500여 개의 가정예배소에서도 일요일마다 예배를 한다고 비난·반박한 바 있다.<sup>509</sup> 그리고 남북한 중

508. 『연합뉴스』, 2003년 3월 31일.

509.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69호 (통일부, 2001), pp. 9~10.

교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종교의식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 1997년부터 매년 남북불교도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 봉축 법요식과 발원문이 봉독되고 있다. 남북한 기독교계 교류는 1997년 부활절 공동 기도가 진행된 이래 꾸준하게 종교교류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8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방북하여 8·15 성모승천대축일 기념미사를 봉헌한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금강산 합동미사 등의 행사를 남북이 합동으로 개최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천도교 중앙총부 김철교령 일행방북을 계기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등 천도교 차원의 각종 기념식이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6·15 정상회담 이후 2003년에는 ‘3·1민족대회’에 남북 종교인들의 참석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종교의식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탈북자, 북한당국의 강연제강 등을 통하여 성경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sup>510</sup> 특히 북한당국은 성경책을 사상문화적 침투의 핵심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 소지를 가장 엄중하게 본다고 어느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하였다.<sup>511</sup>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다고 증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불경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sup>512</sup>

## ● 종교단체 실태

북한당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연계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는 “민주적 정당, 공공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는 사회주의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를 구성하고 종교활동을 하

510. NKHR2009000013 2009-03-11.

511. NKHR2009000017 2009-03-24.

512. NKHR2009000020 2009-04-07; NKHR2009000024 2009-04-20.

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결사의 자유에 따라 북한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종교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종교도 간섭이나 차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종교단체로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회’, ‘조선천도교 중앙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와 이들 종교단체의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차원의 종교단체가 지역 조직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교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중 지방조직을 알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sup>513</sup>

〈표 II-19〉 북한 종교단체 현황

단체	시기	현황
조선종교인 협의회	198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단체들의 협의체로 구성</li> <li>• 회장: 장재언</li> </ul>
조선불교도 연맹	1945.01.02.	• 북조선 불교도연맹으로 발족(1965~1971년: 비활동)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명칭으로 출현/위원장: 심상진</li> <li>• 사찰 60여 개, 승려(대처승) 300여 명, 신도 1만여 명</li> <li>• 교육기관: 불교학원(1989년 양강동 중흥사 → 1991년 평화광법사)</li> </ul>
조선그리스도 연맹	1946.11.	•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으로 발족 (1964~1973년: 비활동)
	1974.	•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출현
	1992.02.	• 현 명칭으로 개명/위원장: 강영섭(사망)

<sup>513</sup>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05), p. 88.

단체	시기	현황
조선카톨릭교협회	1988.06.	• 교회 2개(봉수교회: 1988년, 칠골교회: 1989년), 가정교회 520여 개, 신·구약성서 및 찬송가 출판(1983~1984년), 성경전서 및 찬송가 출판(1990년) 성도수 1만여 명(평양 800명)
	1999.06.	• 조선천주교인협의회로 출현 • 현 명칭으로 개명/ 회장: 장재언(장재철) • 성당 1개(장충성당: 1988년), 교구 4개, 신도 4천여 명, 신부·수녀 없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1952.02.	• 북조선 천도교종무원으로 발족(1952~1973년: 비활동)
	1974.02.	• 현 명칭으로 출현/위원장: 류미영 • 신도: 1만 4천여 명
조선정교위원회	2003.06.	• 위원장: 허일진 •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 준공(2006.8.24)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439.

북한당국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종교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종교단체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1995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가 하면, 북한의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가 이끈 대표단은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sup>514</sup> 조선불교도연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시아 불교도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sup>515</sup> 그런데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협회 등의 종교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식량난이 악화되어 사회통제가 어렵게되자 내부적으로 종교활동에 대한 억압을 견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종교단체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514. 김병로,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48.

515. 『조선중앙통신』, 2003년 2월 10일.

북한은 서방 특정종교의 영향을 견제하면서도 서방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시키는 일종의 ‘외화별이’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표 II-20>에서 처럼 종교관련 용어의 변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II-20> 북한 종교 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구분	현대조선말사전(1981)	조선말대사전(1992)	조선대백과사전(2000)
기독교	넓은 사회의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 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	교회의 주되는 이념은 평등과 박애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다고 설교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크리스트로 내세우고 그에 의한 인류의 구제를 설교하는 종교
교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예배, 세례, 성찬과 같은 의식을 진행하는 집합장소
성경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주로 기독교에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불교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	운갖 집착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억제하며 정신 수양을 통해 모든 것을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교

출처: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438.

## ● 종교 자유에 대한 증언 실태

주체사상 이외에는 다른 사상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종교는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는 문제이다.<sup>516</sup> 북한은 종교를 미신으로 규

516\_NKHR2008000016 2008-09-02.

정하고 마약과 같다고 교육하여 왔다. 종교활동이 발각되면 종교인은 관리소를 가게 된다.<sup>517</sup>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이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앙의 자유 허용, 종교시설 건립, 종교의식 허용, 종교교육기관 운영, 종교단체 설립 등 법·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 교회와 성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이 존재를 주장하는 가정예배처소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정예배처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sup>518</sup>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 자주 가지만 가정예배처소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였다.<sup>519</sup> 이와 같이 북한당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주민들은 가정예배처소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sup>520</sup>

북한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988년 9월에 세워진 평양 봉수교회의 경우를 보면, 평상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조선노동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많은 외국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517. NKHR2008000017 2008-09-04.

518.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519. NKHR2008000017 2008-09-04.

520. NKHR2009000013 2009-03-11.

셋째, 개인차원에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탄압한다는 것이 북한이 탈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요인은 사회주의헌법에 나와 있듯이 종교가 외세침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 해당 보위지도원들로부터 기독교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내용은 주로 기독교 전파자 색출의 필요성과 기독교인 식별요령 등이다. 그런데 해방 이전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 중 일부가 개인차원에서 은밀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 ● 신앙활동 처벌 실태

공인된 시설 및 활동 이외에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 관련 주민 및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목적으로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남한종교인 특히 기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sup>521</sup> 그렇지만 신앙과 관련된 모든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탈북자를 통한 신앙의 전파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종교에 대해 상당한 정도 인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sup>522</sup> 북한이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처벌한 실태는 다음 <표 II-21>과 같다.

521.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522. NKHR2009000011 2009-03-03.

〈표 II-21〉 종교 처벌 관련 증언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09-10-16	2006.	함북도 무산군	2006년 함북도 무산군에서 기도하는 모습 발각되어 교회형 처벌 받은 것을 특문함.	NKHR2011000098 2011-04-19
○○○	2011-02-09	-	-	회령시 전거리교회소에서 증언자와 함께 구금되었던 사람의 어머니가 지하종교에서 풍금치는 역할을 했는데 관리소에 갔다는 것을 특문함.	NKHR2011000119 2011-05-24
○○○	2009-09-10	2008.07.	-	증언자가 2008년 7월 강제송환 되어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 되었을 때, 함께 강제송환된 한 여성의 소지품에서 성경책이 발견됨. 강제송환 된 첫 날, 성경책이 발견되자마자 그 여성은 줄을 따로 서라고 하더니, 보위부 구류장에서 사라졌다고 함. 그 여성은 65세 정도였고, 원산시 사람이었다고 함. 그 후,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잘 모름.	NKHR2011000194 2011-08-23
○○○	2010-11-02	2008.	-	‘도강’을 했다가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교회를 다닌 것이 밝혀져서 관리소에 구금되어야 했지만, 정신이상자인 것으로 처리되어 교회 3년을 받고 2008년도에 전거리12교회소에 구금된 사람을 목격함.	NKHR2011000201 2011-09-06
○○○	2010-11-02	-	함북도 온성군	함북도 온성군 삼봉구에 거주하던 가족(남자, 부인, 아들 총 3명)이 가정예배를 보다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다는 것을 증언자의 어머니에게 특문함.	NKHR2011000201 2011-09-06
○○○	2011-05-19	2009.	황북도 중화군	2009년경 황해북도 중화군의 공군 사령부 변신참모의 부인이 성경소지로 발각되어 공개처형 당한 것을 특문함.	NKHR2011000209 2011-09-20

북한당국이 개인차원의 신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하교회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제약하면서, 지하에서 신앙활동을 추구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는 어느 도(지역)의 지하종교인들이 약 2,000명 정도 된다고 증언.<sup>523</sup>

한편 어느 집에 가면 점을 잘 봐준다는 소문이 도는 등 북한사회에서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간부들은 직접 점을 보지 않지만 부인들이 가서 점을 보고 이야기하여 준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점쟁이 등 미신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2004년 개정 형법 제268조(미신행위 조장죄)는 “리기적 목적 그 밖의 동기에서 여러 사람에게 미신행위를 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0대원칙에 따라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상이나 믿음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행위를 통제한다는 것이다.<sup>524</sup> 북한이탈주민 ○○○은 ‘점을 친다’, ‘신수를 본다’는 사실이 제기되면 조직에서 처벌받는다고 증언하였다.<sup>525</sup> 국가안전보위 부원, 당간부, 보안원들도 용하다고 하면 점을 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보안원들은 점쟁이가 돈을 바치지 않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거나, 소문이 크게 난 경우는 처벌한다고 한다.<sup>526</sup> 미신행위 처벌 사례를 보면 다음 <표 II-22>와 같다.

523. NKHR2011000086 2011-04-05.

524. NKHR2009000012 2009-03-05.

525. NKHR2008000006 2008-07-22.

526. NKHR2008000023 2008-11-11.

〈표 II-22〉 미신행위 처벌 관련 증언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11-02-12	2009.	함북도 김책시	2009년 함북도 김책시에서 미신행위로 인하여 단련대 3개월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08 2011-05-11
○○○	2011-02-07	2009.10.	평남도 평성시	2009년 10월 평남도 평성시에서 미신행위로 인하여 단련대 3개월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11 2011-05-17
○○○	2011-02-25	2010.	함북도 온성군	2010년 함북도 온성군에서 미신행위로 인하여 단련대 2개월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41 2011-06-14
○○○	2011-04-29	2010.	함북도 무산군	2010년 함북도 무산군에서 중국에 가려는(‘도강’) 사람에게 점을 봐주는 미신행위를 해서 교화 3년형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179 2011-08-02
○○○	2010-06-21	2010.03.	양강도 백암군	2010년 3월 양강도 백암군에서 당이 아닌 미신 믿어서 단련대 6개월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235 2011-11-08
○○○	2011-08-05	2010.	양강도 해산시	2010년 양강도 해산시에서 미신행위로 인하여 교화 7년형 처벌 받는 것을 목격함.	NKHR2011000240 2011-11-22
○○○	2010-10-29	2009.	-	2009년 미신행위로 인하여 교화 1년 6개월형 처벌을 받고서 전거리교화소에 구금된 사람을 목격함.	NKHR2011000052 2011-02-15
○○○	2010-10-29	2009.10.	-	2009년 10월 미신행위로 인하여 교화 2년형 처벌을 받고서 전거리교화소에 구금된 사람을 목격함.	NKHR2011000052 2011-02-15
○○○	2011-02-09	-	함북도 무산군	미신행위자는 점 보려는 사람으로부터 인민반에 절대 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전 약속을 받은 후 약속된 시간에 집에 몰래 들어와서 점을 봐줌.	NKHR2011000119 2011-05-24
○○○	2011-03-01	-	함북도 회령시	미신행위자만 처벌함. 미신행위자는 교화형 받는다고 함. 미신행위자는 사전에 비밀보장 다짐 받고 점 봐줌.	NKHR2011000120 2011-05-24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07-09-30	-	함북도 청진시	인민반장이나 기업소 등에서 “미신 보지 말라”는 내용의 강연회, 선전 있음.	NKHR2011000226 2011-10-19
○○○	2011-01-16	-	함북도 회령시	미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심할 경 우 교회형까지 받는다고 함.	NKHR2011000242 2011-11-22
○○○	2011-08-05	2011.	평양시	2011년 미신행위 발각 시 교회처벌 받는다고 함.	NKHR2011000240 2011-11-22

## ● 유일사상 10대원칙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이다.<sup>527</sup> 북한당국이 외세침탈 수단과 사회질서 문란의 요인으로 종교를 인식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수령유일지배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절대적인 존재인 김일성·김정일의 위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절대자를 섬기는 종교는 유일지배체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절대적 지도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10대원칙은 발표된 1974년부터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더불어 사회주의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과 규범보다도 북한사람들을 지배하는 실제상의 법 역할을 하고 있다.<sup>528</sup>

52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6월 8일, 서울에서 면접.

528. 10대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10대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활용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등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안창환 저)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 바쳐 지킨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 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싼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이 책은 그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다.

2007년 10월 11일 인민반 강연 회의에서는 수해라는 긴급 상황에서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도 아버지 초상화를 모시고 나온 사람들의 사상정신을 본받자는 내용이 나왔다. 강원도와 황해남도에서 갑자기 밀려든 홍수 때문에 집이 잠겨 물바다 상태가 됐는데도, 모든 물건을 버리면서도 초상화를 모시고 나온 주민들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초상화를 모시느라 떠나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린 딸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이들의 사상정신을 만민이 본받아야 하며 말로만 장군님을 모시지 말고, 실지 행동으로 할 것을 바라면서 모두 이들의 높은 정치사상 수준을 따라 배우라고 강조했다.<sup>529</sup>

2007년 5월 15일부터 중앙당 조직부로부터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에 대한 정성사업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검열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그날부터 평양을 비롯해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청진, 양강도 혜산, 자강도 강계,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등 전국도 소재지와 그 외 주요 도시들에서 조선노동당 조직부 성원들이 나서서 간부들의 사무실과 개인집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집까지 일일이 검열하였다. 그들은 초상화를 정중하게 모시지 않거나, 먼지가 발견되면 명단을 상부에 올렸다. 그러면 보안서는 이들을 불러 훈시하고, 심한 경우 2~3일 구류장에 넣기도 하였다.<sup>530</sup> 보안원들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한다.<sup>531</sup>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12월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있을 때 단련대에 불이 났고 여자 수감방에서 자기 짐을 들고 나오려는데 직선으로 초상화가 보여서 짐을 내려놓고 초상화 3개를 들고 나왔으나 자기 짐은 이미 불타버린 후였다. 그는 이 일로 모범 수감자가 되어 6개월에서 3개월 형량을 면제받고 퇴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532</sup> 북한이탈주민

52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94호 (2007.10.17).

530. 위의 글.

531. NKHR2010000062 2010-10-12.

532. NKHR2008000010 2008-08-08.

○○○은 유일사상 10대원칙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초상화가 떠오른다고 증언하였다.<sup>533</sup> 특히 북한이탈주민 ○○○은 2000년까지 초상화가 불에 탔거나 찢어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sup>534</sup> 북한이탈주민 ○○○은 동네 아주머니가 두부장사를 하여 집에 수분이 많았는데, 초상화가 누렇게 변색되었는데도 보고해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급당에서 열흘 동안 비판서를 썼다고 증언하였다.<sup>535</sup>

북한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일반주민들에게 생활총화를 통하여 10대원칙을 철저히 내재화시키고 있다. 조선노동당 생활총화시에 발표자는 꼭 10대원칙을 인용한다. 일반총화에서도 발표자는 10대원칙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인용한다.<sup>536</sup> 어떤 북한이탈주민은 10대원칙이 마치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다고 주장한다.<sup>537</sup>

다만,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반주민들의 경우 10대원칙을 어기지는 않지만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총화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증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II-23>과 같다.

533. NKHR2009000011 2009-03-03.

534. NKHR2009000013 2009-03-11.

535. NKHR2009000053 2009-09-08.

536.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53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3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표 II-23〉 10대원칙 및 생활총화 관련 증언

증언자	탈북일자	시기	지역	세부내용	증언 No.
○○○	2002-07-20	-	함북도 온성군	생활고로 인하여 10대원칙 암송을 귀찮아 함. 반동이라 처벌 받아도 상관없어 함. 인민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식 으로 반응함.	NKHR2011000114 2011-05-17
○○○	2011-01-17	-	평남도 평성시	최근 10대원칙을 아예 모르는 사람 이 절반임.	NKHR2011000101 2011-04-26
○○○	2002-12-27	-	-	작년에 쓴 비판 내용을 올해 다시 사용하며, 비판 내용을 서로서로 짜 고 함.	NKHR2011000092 2011-04-12
○○○	2011-07-30	-	양강도 혜산시	농사나 장마당 등과 겹치므로 늙은 이들은 생활총화 불참이 허용됨.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 에 대해서 서로 눈감아 주고, 당비서 도 이해하고서 처벌하지 않음. 뇌물 내는 경우 있으나, 내지 않아도 문제없음.	NKHR2011000233 2011-11-08
○○○	2005-04-09	-	함북도 무산군	장사 등으로 비어 있는 집이 많아 모 이기 어려움. 어려운 생활을 다 알기 때문에 주민 들의 입장을 이해함. 불참해도 처벌하지 않음.	NKHR2011000234 2011-11-08
○○○	2011-01-16	-	함북도 회령시	이유 있으면 생활총화 불참 가능하 며, 불참 했을 경우 다른 것으로 열 심히 하면 됨.	NKHR2011000242 2011-11-22
○○○	2011-05-05	-	-	여맹위원장에게 2~3만 원 뇌물 고 이면 생활총화 및 사업동원에서 제 외됨.	NKHR2011000185 2011-08-16



# 7



##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참정권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③ 국민의 의사가 정부권한의 기본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로 표현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의제도 원리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 등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 원리를 채택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도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대의제도 원리를 수용하여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최고 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분립 원칙을 거부하고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한 북한에서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제4조)”하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제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선거법도 최고인민회의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일반·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538</sup> 하지만 사회주의헌법은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제5조)”되며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제1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는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2003년 8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 및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선거자의 100%가 대의원후보들에게 찬성투표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6명과 지방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26,650명을 선출하였다.<sup>539</sup>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가운데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을 비롯한 당·정권기관·군부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3년 9월 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다.<sup>540</sup> 2009년 3월 8일 선거에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687명 중에는 군인들이 16.9% 포함되었다고 공개되었다.<sup>541</sup>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의

5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98.12.29.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1호로 수정보충).

539. 『로동신문』, 2003년 8월 5일.

540. 『로동신문』, 2003년 9월 4일.

541. 2009년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국태 대의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 『로동신문』, 2009년 4월 10일.

인적구성을 보면 최고인민회의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구라기 보다는 국가 입법기관의 외양을 갖춘 조선노동당의 분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도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통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사전에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조선노동당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선거 한 달 전부터 선거위원회가 조직되고 분구별 선거위원회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분구의 선거를 관할한다. 중앙 및 지방선거위원회는 당, 인민위원회, 보안기관, 각 동 대표로 구성된다.<sup>542</sup>

투표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가 실시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조선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주관 하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거행되며 투표절차는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sup>543</sup> 주민들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라고 생각한다.<sup>544</sup> 만일 선거를 거부할 경우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sup>545</sup> 북한당국은 투표율을 높여 당에 대한 지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로하거나 질병으

542.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2일.

543.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44.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545.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로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선거자들을 위하여 이동투표함 제도를 실시하여 왔다.<sup>546</sup>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다.<sup>547</sup> 2009년도 3월 8일에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99.98%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선전하였다.<sup>548</sup>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선거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 하에 치루며, 투표를 안 한다거나 거부할 경우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549</sup> 반장이 아침 일찍 선거에 가자고 선동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담당 보안원이 있어서 선거에 빠질 수 없다.<sup>550</sup> 북한의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64조는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에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긋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투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 북한이탈주민 ○○○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위에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표를 넣고 나온다고 증언. 또한 그는 투표소는 가려져 있어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만 반대투표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546. 『조선중앙통신』, 2009년 3월 8일;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54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48. 『로동신문』, 2009년 3월 10일.

549.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50.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 증언 551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선거일이 되면 학생들이 악대를 구성하여 북치고 팽과리를 두드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찬성투표하라고 선전선동을 한다고 증언. 그는 만일 반대투표를 하게 되면 김정일을 반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잡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증언. 552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반대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증언. 553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만일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점을 찍으면 보위부 구류장에 갇히고 재판결과에 따라 교화소(감옥)에 간다고 증언. 554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유권자 회의와 입후보자 지지반대 토론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는 한다고 증언. 555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 가능하며, 보안서에서 확인서 발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해야 한다고 증언. 빈방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반대할 경우 준비되어 있는 볼펜으로 “/” 표시를 하면 되지만, 반대할 생각은 꿈도 못 꾸다고 증언. 556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100%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반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증언. 그는 반대표가 있어도 북한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100% 찬성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

551.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52.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553.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554.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555. NKHR2011000053 2011-02-15.

556. NKHR2011000179 2011-08-02.

## 다고 증언<sup>557</sup>

북한은 2011년 7월 24일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대의원 28,116명을 선출하였다. 북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 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sup>558</sup> 북한 당국이 100% 찬성투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투표를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바치는 찬성의 한 표”라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 “아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갈 일심단결의 한 표”라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59</sup> 이러한 정치문화 풍토에서는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선거에서 반대투표가 나왔다 해도 선거위원회가 이를 사실대로 보도할 수 없을 것이다.

557\_ NKHR2011000213 2011-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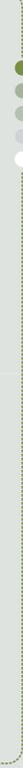
558\_ 『로동신문』, 2011년 7월 26일.

559\_ 함원식, “선거표에 대한 생각,” 『로동신문』, 2011년 7월 21일.



# III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건강권
  4. 근로권
  5. 직업선택의 자유
- 



# 1



## 식량권

### 가. 식량에 대한 접근권 차등 실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제2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다른 권리와 함께 식량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제11조 제2항)”고 식량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특별절차의 하나인 유엔 식량권특별보고관은 양적·질적으로 적절하며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정기적(regular)이고 상시적(permanent)이며 무제한적 접근을 가질 권리라고 식량권을 해석하고 있다.<sup>1</sup>

식량권의 경우 국가가 수행의 의무를 다할 때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

<sup>1</sup> 유엔인권고등판무관, <<http://www.ohchr.org/EN/Issues/Food/Pages/FoodIndex.aspx>> (검색일: 2012년 1월 5일).

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제70조)”고 식량의 분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당국은 중앙배급체계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불균등 요소를 안고 있지만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왔다. 배급에 의한 식량공급은 원칙적으로 연령과 직업을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지고 급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식량 배급 급수는 1등급(900g)~9등급(100g)까지 있으며, 1등급은 유해직종 및 중노동 종사자이고 일반노동자는 3급(700g) 배급제에 해당되며, 연로보장자나 가정주부 등은 7급(300g)에 속하고 9급(100g)은 1세 이하의 유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해 식량이 배분되는 중앙배급체계가 작동될 때는 상대적으로 식량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접근권도 보장되고 있었다. 다만 이 당시에도 성분정책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상대적으로 불균등하게 배정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해 이러한 중앙배급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994년 기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분적으로 배급을 중단하던 북한당국은 1996년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서 전면적인 배급중단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1996년 말부터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 공장, 기업소별로 외화벌이 사업 등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월 3~4일분의 식량만을 배급하기도 하였다. 2000년도에 들어서 외부지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에 곡물생산량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배급은 다소 호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절대적인 식량 부족상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배급체제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가운데 기형적으로 변형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에 차별을 낳게 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핵심 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국가에 의해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있다.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부, 보안성 등 핵심 체제 보위 계층에는 여전히 국정가격으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배급은 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sup>2</sup> 그런데 중하층 체제보위 계층의 경우에는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하층 체제보위 계층에는 배급의 급수와 1일 식량 공급량은 현재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식량부족으로 인해 정량이 지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5일마다 공급되던 시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배급체계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충분하게 식량을 배급받는 계층과 정량을 지급받지 못해 일부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계층으로 식량권에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요 기관·기업소에서 식량 자력 조달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의 경우 기업소의 성격에 따라 배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거나 형편이 나은 기업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배급이 많이 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여 배급하는 상황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은 직장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탈북 전까지 회령시 유선탄광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유선탄광에는 배급이 좀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다.<sup>3</sup> 그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벽돌은 채 한 달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선탄광에서 생산하는 용광로용 벽돌은 품질이 좋아 석 달은 견디기 때문에 생산독려 차원에서 설비, 자재 보장 등 지원이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곳보다 배급도 좀 나

2.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71 2010-11-09.

3. NKHR2008000016 2008-09-02.

았다고 한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공급이 좋았다고 한다. 이전보다 전기 그리고 원료도 부족해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간부들의 수완으로 어느 정도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 대략 450g 주는 배급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장마당에서 한 끼 정도는 해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sup>4</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담배공장은 인민군대를 위한 특별공장 이므로 가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에게 100% 배급이 나왔다고 증언하였다.<sup>5</sup> 또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도 자신이 근무한 수출기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급을 받았는데, 2011년 4월에는 쌀 15kg을 배급받았다고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쌀 20kg을 배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6</sup>

셋째,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 분배를 통해 배급을 받게 된다.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농민들은 나물을 채취하거나 텃밭 혹은 뜰밭에서 채소나 감자 등을 심거나, 돼지나 염소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민들의 식량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록평협동농장’에서 가을에 감자를 수확하면 정해진 몫의 30~40%, 많이 받을 때는 60~70% 정도를 분배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정해진 몫의 100%를 받으면 1톤 400kg 정도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받아야 1톤 정도를 분배 받았다고 증언하였다.<sup>7</sup> 그런데 협동농장의 경우에도 농민과 달리 세포비서, 반장 등 간부들은 더 많이 분배받아 식량에 대한 접근의 불균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장의 작업반에는 세포비서, 반장, 기술지도원 등의 간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살고, 감자를 일반 농장원들보다 더 많이 분배받아서 강냉이가 아닌 입쌀로 교환하여 먹는다

4. NKHR2008000015 2008-08-27.

5. NKHR2011000120 2011-05-24.

6. NKHR2011000210 2011-09-20.

7. NKHR2011000154 2011-07-05.

고 한다.<sup>8</sup> 농민들조차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일부 농민들의 경우 협동농장의 식량을 훔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장(평남 강서군)에서 옥수수를 훔친 농민의 경우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고, ○○○(함북 회령)는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훔친 죄로 주민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대 6개월 형에 처해졌다.<sup>9</sup>

넷째, 절대적인 식량의 부족 속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적으로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앙배급체계 아래 다양한 급수에 따라 혜택을 받던 노인과 자녀 등에 대한 배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즉, 배급체계가 기형적으로 작동되어 배급체계에서 소외된 가정의 경우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식량권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부를 활용한 체제 유지를 도모하면서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군인들 대부분이 넉넉히 배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군인 내부에서도 식량에 대한 접근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식량권의 차이는 군 복무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면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강원도와 평양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군복무 지역에 따라 식량사정이 달랐다고 증언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국경경비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공급이 양호하다고 증언하였다. 강원도에 복무할 때는 한 끼에 100~150g 밖에 주지 않아 배가 무척 고했고,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자들 몰래 군영 밖으로 나가 옥수수를 훔치거나 가정집에 들어가 쌀을 도둑질해 배를 채웠다고 한다. 이에 반해 평양에서 복무할 때는 입쌀이 배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적 양도 많이 줘서 강원도에서 복무할 때 보다는 다

8. NKHR2011000154 2011-07-05.

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1호 (2008.9.24).

10. NKHR2011000188 2011-08-16.

소 나왔다고 했다.<sup>11</sup>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근무한 부대의 중대 60여 명 중에 30%는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증언하였다.<sup>12</sup> 또한 군인이라고 해도 계급에 따라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부대에 공급된 식량은 장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되고, 사병에게 배급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식량에 대한 접근이 낮은 지역과 계급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22년간 군사복무를 하고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소좌’ (북한의 군사계급)였던 자신도 민들레를 캐어 넣은 옥수수죽으로 연명하곤 했다고 증언하였다.<sup>13</sup>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민간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지역별 식량접근권의 차등〉

이상에서 살펴본 계층별·직종별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 따른 차별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평양시민의 경우 특혜를 받고 있다. 물론 평양 지역 내에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식량사정이 낫다. 산간지역이나 농민 등 일부 계층은 텃밭, 폐기밭 등을 통해 식량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도시의 노동자들은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4</sup> 특히 곡물이 부족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산간지대인 함경도·양강도·자강도 등의 식량난은 더욱 극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중앙배급제의 붕괴와 국제지원의 일부 지역 편중, 에너지난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마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1\_ NKHR2008000014 2008-08-26.

12\_ NKHR2011000096 2011-04-19.

13\_ 북한이탈주민 ○○○, 2003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4\_ 북한이탈주민 ○○○, 2002년 5월 6일, 서울에서 면접.

### 〈식량구입 방식에 따른 식량권의 차등〉

중앙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배급이 중단되자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자체로 벌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차별적 배분정책에 따라 일반주민들의 경우 식량의 일부나 전부를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별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매력의 차이로 인해 식량에 대한 접근 차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형식적으로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과 장마당의 시장가격을 통해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주민들 사이에 엄청나게 식량에 대한 접근의 차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2년 7·1조치를 통해 식량의 국정가격을 44원으로 전환하면서 임금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국영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다.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장마당에서 비싼 시장 가격으로 쌀을 구입해야 한다. 국정가격과 장마당 가격에 따른 식량 구매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마당에서 쌀 가격은 2006년 900원, 2007년 1,700원까지 올랐으며,<sup>15</sup> 2007년 10월 경 쌀값은 4,000원을 넘어 한 때 4,5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sup>16</sup> 2008년 들어와서는 쌀값이 3,000원 정도로 떨어졌다가,<sup>17</sup> 2009년에는 다시 4,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보인다.<sup>18</sup> 화폐개혁이 단행된 2010년 쌀가격은 평가절하된 돈의 가치를 감안하면 오히려 개혁이전 보다 더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9</sup>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5월 탈북 당시 계산의 장마당에서 중국 쌀은 1,900원,

15.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6. NKHR2008000025 2008-11-20.

17. NKHR2009000024 2008-11-18.

18. 북한이탈주민 ○○○, 2010년 3월 22일, 서울에서 면접.

19. NKHR2010000002 2010-08-10; NKHR2010000066 2010-05-11.

북한쌀은 2,300원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sup>20</sup>

이와 같이 2009년 11월 말 전격 실시된 화폐개혁이 북한주민의 식량 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유화폐가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일반주민들의 구매력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화폐개혁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식량구매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는 화폐개혁 이후가 이전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더욱 식량난이 가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21</sup> 그나마 배급을 받아오던 광산노동자들에게도 2009년 화폐개혁 이후에는 끊어졌다고 한다.<sup>22</sup>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자강도 만포시 주민의 50~70% 정도는 이밥을 먹었는데, 화폐개혁 이후 만포시 주민의 50%도 이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3</sup>

2010년 이후 탈북자를 대상으로 아사자수와 영양상태를 5단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아사자수 및 영양상태**

최종 탈북연도	아사자수						영양상태					
	매우 증가	증가	보통	감소	매우 감소	합계	매우 호전	호전	보통	악화	매우 악화	합계
2010년	8	20	7	7	0	42	1	2	6	21	16	46
2011년	19	24	7	3	0	53	0	3	6	20	35	64
합계	27	44	14	10	0	95	1	5	12	41	51	110

<sup>20</sup>\_NKHR201000208 2011-09-20.

<sup>21</sup>\_NKHR2010000002 2010-08-10.

<sup>22</sup>\_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10 2010-09-14;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71 2010-11-09.

<sup>23</sup>\_NKHR201000156 2011-07-05.

그런데 화폐개혁 이후 일반주민들이 적응하면서 식량에 대한 최악의 접근 상황은 완화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화폐개혁 이후,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의 사람들 속에서는 아사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아사자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증언하였다.<sup>24</sup> 그러나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화폐개혁 이후 식량난으로 인해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sup>25</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주민들은 임금이 상승했어도 국정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특권계층에 비해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노동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고, 외부에서의 자본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식량구매력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반면 특권 계층은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하므로 일반주민과 비교하여 또 다른 혜택을 보고 있다.

#### 〈구매력에 따른 식생활의 양극화 심화와 취약계층의 생존권 위협〉

식량구입 방식과 구매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의 절대 양에 대한 접근의 차별과 더불어 식량의 질(종류)과 부식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어느 정도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평균적인 가정에서의 기본 식단은 쌀과 강냉이가 섞인 잡곡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북한주민의 식생활 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상류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

24. NKHR2011000175 2011-07-26.

25. NKHR2011000111 2011-05-17; NKHR2011000133 2011-06-07; NKHR2011000177 2011-08-02.

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며, 중류층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 데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하류층은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sup>26</sup> 그 구성비는 지역과 도시/농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화폐개혁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류층은 10~20%, 중류층이 15~30%, 하류층이 50~70% 수준이라고 한다.<sup>27</sup>

이러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구매능력이 없는 주민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최하류 계층의 식량사정은 전반적으로 한심한 실정이라고 증언하고 있다.<sup>28</sup> 특히 화폐개혁 이후에 아사자를 보거나, 아사자에 대해 들었다는 증언이 증가하고 있다.<sup>29</sup>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최하류층의 경우 극단적으로 헌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국가가 운영하는 평양 동대원구역 수혈소에 생계를 위해 피를 팔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증언하였다. 피를 뽑으면 돈과 사탕가루를 지급한다고 한다.<sup>30</sup>

## 나. 식량에 대한 접근권 저하와 처등의 요인

### 〈식량의 절대부족 현상의 지속〉

북한주민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이 저하된 근본 요인은 식량생산이

26. 이들을 소득수준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으나, 위의 기준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가격이 계속 크게 변동하고, 비공식 달러 환율도 시기마다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 증언을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27.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215.

28. NKHR2008000017 2008-09-04.

29. NKHR2010000029 2010-11-09; NKHR2010000058 2010-11-23; NKHR2010000074 2010-04-20; NKHR2010000097 2010-06-15; NKHR2011000017 2010-10-05.

30. NKHR2011000240 2011-11-22.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홍수피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북한에 덮친 구체적인 시기로, 이때부터 북한의 식량 생산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1994년 666만 톤이던 곡물생산이 1995년 337만 톤으로 급감한데 이어, 1996년과 1997년 각각 224만 톤과 258만 톤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결국 식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도입 하였으나,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기근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최소 58만 명, 최대 112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1</sup>

하지만 북한의 농업생산은 <표 Ⅲ-2>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곡물생산의 경우 2002년도에는 400만 톤을 넘어섰고, 2005년과 2006년도에는 450만 톤 내외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회복 기미는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료 지원을 포함한 농업기술 지원 및 연료 지원 증가에 따른 농기계 가동률의 향상, 그리고 양호한 기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도에 다시 찾아온 자연재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만 톤 정도 줄어든 401만 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고,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재차 악화되었다. 2008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30만 톤 늘어난 431만 톤이었지만, 한국농촌진흥청은 2009년도 곡물 총 생산량을 2008년도에 비해 20여만 톤 감소한 411만 톤으로 추정 발표했다.

<표 Ⅲ-2>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단위: 만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 생산량	359	395	413	425	431	454	448	401	431	411
수요량	518	524	536	542	548	545	560	543	540	548

출처: 농촌진흥청; 통일부, 『2010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 144.

31\_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75.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식량실사단의 특별보고서의 2011, 2012 양곡년도 곡물수급전망에 따르면 식량 생산량은 4,657천 톤, 총수요량은 5,396천 톤으로 수입요구량은 739천 톤, 수입예상량은 325천 톤으로 414천 톤이 순부족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가자원의 왜곡된 배분과 식량권의 저하〉

북한 자체적으로 식량생산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식량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매년 국제사회의 지원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북한당국이 이를 충당해야 한다. 2010년도 북한의 식량수요량은 540여만 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 곡물년도에 북한이 수입한 곡물의 양은 35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2</sup> 그런데 선군정치와 이에 따른 국방공업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제한된 예산의 분배 과정에서 식량 수입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정책이 식량권에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북지원에 대한 차별적 배분 정책〉

대북지원의 감소도 북한주민의 식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이래 남한의 대북식량지원은 중단되었으며, 국제식량가격의 상승으로 2009년과 2010년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009년 이래 남한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지 않은 점은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북지원은 전체 부족량의 해소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북지원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식량권과 관련한 북한 내 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은 전체 식량 공급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장

32.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26.

마당의 식량가격을 하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식량지원은 전체 규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시장가격의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전반적 식량권 접근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취약계층들의 직접적인 접근권은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외부로부터 식량이 지원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지원한 식량을 직접 배급받았다는 수혜자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대북지원 군부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외화별이 사업소 등에 배분된다고 증언하였다.<sup>33</sup> 일반주민들의 경우 모니터링을 의식하여 대북지원된 쌀을 일부 형식적으로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산광산에서 일하면서 배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혹은 유엔이라고 쓰여 있는 쌀 마대만 보았지 배급을 받아 먹어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sup>34</sup> 그리고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유엔기구에서 보낸 쇠고기를 타기 위해 주민들이 배급받는 장면을 유엔기구가 촬영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은 다시 배급소(상점)에 고기를 바쳤다고 증언하고 있다.<sup>35</sup> 인민반장을 지냈던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유엔감시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지원된 쌀로 밥을 해먹는 거짓행위를 2번 정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지원된 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sup>36</sup> 그런데 평양과 같은 특권도시에서는 일부 대북지원 쌀이 배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7</sup>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지원받은 쌀은 일반주민에게

33\_ NKHR2011000203 2011-09-06.

34\_ NKHR2010000011 2010-12-07.

35\_ NKHR2008000011 2008-12-16.

36\_ NKHR2009000061 2009-10-08.

37\_ NKHR2011000124 2011-05-24.

가지 않고 군부에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다시 장마당으로 유출된다고 인식하고 있다.<sup>38</sup> 북한이탈주민들이 군복무할 때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배급받아 먹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도 청취할 수 있다.<sup>39</sup> 북한이탈주민 ○○○은 흥남항 뒤쪽에서 군대 자동차의 번호를 사회 자동차 번호로 바꿔서 다는데, 사회 자동차로 둔갑한 차로 식량을 운반하고, 이는 군대 자동차이므로 식량은 모두 군대로 들어간다고 증언하였다.<sup>40</sup> 대북지원의 인지와 배급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군부대로 흘러들어가는 외부세계의 식량지원에 대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으며, 때론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라도 겉으로 불평을 하거나 내색을 하지 않아 왔다고 한다.

38\_ NKHR2008000027 2008-12-02.

39\_ NKHR2011000096 2011-04-19; NKHR2011000103 2011-05-03.

40\_ NKHR2011000213 2011-10-04.



# 2



##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제도의 측면에서 북한은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사회복지제도의 양축인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다. 둘째, 대표적인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식·주의 공급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급여로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이는 소득보장제도에 해당된다. 셋째, 이와 달리 건강의 위협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제도인 경우에는 무상치료제로 분류된다. 그리고 무상치료제의 경우 현물과 현금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위와 같은 제도들은 국가사회보장, 의·식·주 공급제와 같은 기능을 가지며, 무상치료제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써 가계 생활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경우는 2차적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1995년 보험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2002년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보험은 생명보험, 재해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등 인체보험과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보험법 제2조). 그리고 보험사업은 국가보험관리기관과 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이와 같이 북한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제도가 있는데, 「사회주의노동법」(1978년 4월 제정, 1986년, 1999년 개정)에 따르면 일정 근속연한을 채운 경우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에 이르면 연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74조). 또한 공적부조는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보호정책으로는 국가공로자,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가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북한의 사회보장정책이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필요한 재원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년퇴임자의 연금제도도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지만 경

제난으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상당부분이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제도와 실제운영간의 괴리는 더욱 악화되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제도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7·1조치로 인해 복지시스템의 운영원리와 복지급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즉 7·1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의·식·주 공급이 포기되다시피 되어버렸으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명시한 각종 복지급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일반 개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금·현물급여의 수준과 성격 그리고 기능이 7·1조치 이후 변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7·1조치로 인해 노동의무를 이행하면 공평하게 따라오게 되어있는 각종 복지급여가 노동자 개인의 노동 기술, 재정기여, 노동수입 등에 따라 차등화 되었다. 특히, 현물급여인 쌀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사회보장 대상자의 생활보장을 하는 국가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7·1조치로 인해 북한 사회복지이념은 인민복지를 책임지는 주체의 변화로 이어져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 되었고 개인과 가족의 책임은 극대화되었다. 즉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왜곡 내지는 마비되었던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를 북한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과도한 국가책임을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경제난과 배급체계의 와해가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적 권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연로연금을 지급받더라도 배급체계가 와해된 상황에서 시장의 구매에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 사실상 연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연로연금은 지역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 등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2011년 2월 탈북할 때까지 본인의 어머니가 한 달에 700원씩 연로

연금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41</sup>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아버지가 연로연금으로 8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한다.<sup>42</sup> 반면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한 달에 200원의 연금을 수령하였다고 한다.<sup>43</sup> 그런데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연금으로 장마당의 쌀 1kg도 구입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 ○○○은 “연로보장이라는게 무슨 배급도 안주고 돈은 한 달에 쌀 반 kg 값인 750원이라 전혀 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아들이 없으면 그저 굶거나 해서 늙은이들은 다 죽는다”고 증언하고 있다.<sup>44</sup> 이와 같이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 부양에 의존하는데,<sup>45</sup> 농사를 짓거나 장사에 나서기도 한다.

둘째, 경제난으로 연금수급자 대상에 포함이 되나 수급경험이 없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sup>46</sup>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연로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로연금에 해당되는 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기업소에 다녀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수령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sup>47</sup>

셋째, 산재의 경우에도 연로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한다.<sup>48</sup> 그런데 6개월마다 검진하여 노동능력이 회복되면 기업소에 복직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산재보장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돈을 바치고 자격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sup>49</sup>

또한 선군정치 표방 하에 군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듯해도

41\_ NKHR2011000119 2011-05-24; NKHR2011000143 2011-06-14; NKHR2011000184 2011-08-16.

42\_ NKHR2011000250 2011-12-20.

43\_ NKHR2011000116 2011-05-17.

44\_ NKHR2008000020 2008-09-17.

45\_ NKHR2011000111 2011-05-17.

46\_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0000056 2010-11-16; NKHR2011000209 2011-09-20; NKHR2011000230 2011-11-08.

47\_ NKHR2011000219 2011-10-04.

48\_ NKHR2011000120 2011-05-24.

49\_ NKHR2011000100 2011-04-26; NKHR2011000123 2011-05-24; NKHR2011000164 2011-07-12.

제대군인에게 주택도 배정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22년 동안이나 군복무를 하고 ‘소좌’로 제대한 ○○○의 증언에 의하면 제대 후에 주택배정도 못 받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여 대흥단군 누나 집에 기거하며 중국을 몇 번 다니다가 결국 남한으로 탈북하게 되었다고 한다.<sup>50</sup> 이러한 증언은 북한의 공적부조제도의 실상을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사회보장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의 악화로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병약자들의 희생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50\_ 북한이탈주민 ○○○, 2003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 3



## 건강권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사회주의헌법 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헌법 규정은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무상치료제도이다. 둘째, 의사담당구역제도와 예방의학 제도의 강화이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등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공중위생법(1998), 국경위생검역법(1996, 1998, 2007), 식료품위생법(1998, 2005), 의료법(1997, 1998, 2000), 의약품관리법(1997, 1998), 인민보건법(1980, 1999, 2001), 전염병예방법(1997, 1998, 2005), 장애인보호법(2003), 적십자회법(2007), 체육법(1997, 1998) 등 건강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가.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건강권의 전반적 저하

### 〈전반적 의료체계의 붕괴〉

북한의 의료보건체계의 문제는 첫째, 무엇보다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약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혈압계, 체온계 등의 기본 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은 김책에 거주하는 18세 청년이 소독이 안 된 주사를 맞고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례에 대해 증언하였다.<sup>51</sup>

둘째,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 기구 및 약물 처방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셋째, 병원시설의 낙후와 의료자원의 고갈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염성 질환’과 ‘영양부족’으로 주민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독과 방재 등 위생활동과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다섯째,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난방, 수도, 열악한 도로 및 통신시설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의약 물류와 환자이송의 병목 현상, 가뭄과 홍수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전반적으로 붕괴되었다. 전기 및 식수난으로 병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에너지난에 따른 전력사정이 의료실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술과정에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술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전을 걱정한다고 한다.

51\_ NKHR2011000108 2011-05-11.

또한 도로 및 운송, 통신시설의 부족으로 환자 후송, 보건인력 출장, 백신 이동, 병원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sup>52</sup>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북한의 일반주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 〈계층별 의료접근권의 불균등〉

북한에서 전반적 무상의료제의 붕괴는 계층별로 건강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주민과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각 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1개, 시·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1~2개의 인민병원, 리 및 노동자 구역에 리인민병원과 진료소 1개, 작은 리·동을 몇 개씩 묶어 종합진료소 1개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든 병원은 치료대상과 급수를 정해 놓고 진료대상이 아닌 주민들의 치료는 불허하고 있다. 간부들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며, 평양에서부터 시·군단위의 일반병원 내에서도 간부과와 일반주민과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특히 평양의 ‘봉화진료소(김일성·김정일 가계와 당·정 장관급 이상)’, ‘어은병원(군 장령)’, ‘남산진료소(차관급 이상, 일부 인민배우·북송교포)’ 등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은 일반주민의 치료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보통 동·리 진료소나 시·군·구역 병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수에 비해 병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 인민병원 이상 급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무상의료제도가 힘 있는 간부와 돈이 많은 상류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진

52. 이일학, “북한의료 현황과 지원방향,” 『KPI리포트』, 제4호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10.01); 최현주, “2010년 대북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 현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II』 (서울: 통일연구원, 2010).

료소, 시·군병원, 도병원, 평양의 고급 종합병원 등 의료전달체계에서 각 전달체계별로 의료체계의 서비스 붕괴 정도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진료소는 사실상 의료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리고 시·군병원, 도병원, 평양의 종합병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의료체계의 붕괴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의 기회는 계층별로 차등화되고 있다. 일반주민들의 접근기회가 높은 1차, 2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북청군 제1인민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과, 종양과, 구강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 15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최신 기계설비는 없다고 한다. 유일한 기계는 고장난 초음파 기계 1대밖에 없었다고 한다. 주사바늘만 교체하지만 매우 비위생적이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sup>53</sup> 그런데 중상층, 간부급의 접근기회가 높은 3, 4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의료체계의 상대적 붕괴 수준과 접근기회의 차이는 북한 내 계층별 의료 혜택 수혜 불균형의 핵심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sup>54</sup>

북한에서 1999년 7월부터 의료 활동을 하다가 2000년 12월 추방당한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Norbert Vollertsen)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sup>55</sup> 북한의 일반병원에는 항생제와 반창고와 같은 의약품은 물론 외과수술용 메스와 같은 간단한 수술기구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군고위층과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병원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기기, 심전도, X선 촬영기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독일의 현대식 병원 못지않은 병원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일반 병원과 고급간부 병원 간의 엄청난 불평등이 있음을 시사

53. NKHR2011000182 2011-08-09.

54.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pp. 137~138.

55. 노르베르트 폴러첸(Norbert Vollertsen), “형무소 국가,” *Wall Street Journal* (April 17, 2001).

하는 것이다.

### 〈예방의학과 의사담당구역제의 무용〉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질병 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정책의 목표를 위해 무상치료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담당구역 의사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일차적인 통합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 보건 시스템의 핵심인 의사담당구역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담당 의사들의 진료수준 및 자질이 미달되고 있다. 둘째, 호담당 의사들은 4~5개 인민반을 담당하고, 최고 4,000명까지 진료해야 하므로 할당이 과도하다. 셋째, 예방의학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결국 의사담당구역제(호담당제)는 사회주의 예방의학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형식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심층면접자 중 최종 탈북시점이 2010년, 2011년인 탈북자가 호담당의사제의 유용성을 묻는 항목에 응답한 수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호담당의사제의 유용성

최종 탈북날짜	호담당의사제의 유용성					
	매우 유용	유용	보통	유용하지 않음	매우 유용하지 않음	합계
2010	0	9	6	11	15	41
2011	0	1	6	10	28	45
합계	0	10	12	21	43	86

## 〈표 III-4〉 예방의학 실태

예방접종경험	건	비용여부	건	부담여부	건
있다	225	유	6	기관부담	3
없다	26	무	151	개인부담	0
무응답	130	무응답	224	무응답	378
합계	381	합계	381	합계	381

건강검진경험	건	비용여부	건	부담여부	건
있다	37	유	3	기관부담	0
없다	205	무	21	개인부담	2
무응답	139	무응답	357	무응답	379
합계	381	합계	381	합계	381

건강상담경험	건	비용여부	건	부담여부	건
있다	13	유	2	기관부담	0
없다	223	무	9	개인부담	1
무응답	145	무응답	370	무응답	380
합계	381	합계	381	합계	381

\* 2010년, 2011년 심층면접자 기준.

이러한 현실 여건 속에서 호담당의사들은 검열에서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담당하는 주민들의 혈압이 몇 월 며칠에 얼마였다는 식으로 마치 한 달에 한 번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sup>56</sup>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의사담당구역제의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제도 자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sup>57</sup>

56\_ NKHR2008000024 2008-11-18.

57\_ NKHR2011000203 2011-09-06; NKHR2011000251 2011-12-20.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자랑하는 예방의학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일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10년 겨울 자신이 거주하던 무산군에서 호담당 의사가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sup>58</sup> 또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자신이 다니던 북창 화력발전소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차가 오는데 건강검진의 내용은 란트젠, 피검사, 혈압검사, 시력검사 등으로 구성된다고 증언하였다.<sup>59</sup>

## 나. 무상치료제의 붕괴와 건강권의 불균등 심화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무상치료제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상치료제는 인민보건법에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보건법 제10조에서는 무상치료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인민보건법 <제10조> 무의료봉사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58\_ NKHR2011000186 2011-08-16.

59\_ NKHR2011000144 2011-06-14.

북한의 무상치료제라는 제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에 기인한 자원부족으로 무상치료제 역시 실현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북한주민들은 군병원, 도 병원 할 것 없이 간판만 국가병원일 뿐 개인병원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정도로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 〈의약품의 절대부족과 의약품 접근의 불균등〉

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 중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분야는 진단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은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인민보건법 제10조 제1항에서 의약품도 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법률상으로 무상치료제이지만 북한의 의료 상황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의약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 내려주며 의약품 구입은 환자에게 맡긴다.<sup>60</sup> 환자는 대부분 장마당이나 의사가 소개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에서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법을 지시해주는 정도이다.

둘째, 병원에 지급되는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품은 2가지 차원에서 건강권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특권 계층과 간부들은 제한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혜택을 보고 있다. 연줄과 권력에 의해 제한된 의약품이 제공됨으로써 건강권에 차등적 접근이 심각해지고 있다. 약품이 부족하여 병원에 얼마간 공급되는 약은 평소 의사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간부들에게만

60\_ NKHR2011000203 2011-09-06.

치료약품을 투여해주고 나머지는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홍역 예방약 타오는 것도 힘이 세야 한다. 또한 연줄이 닿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의사들도 생활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의사들이 병원에 지급되는 의약품마저 빼돌리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제한된 의약품을 의사들이 빼돌려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하거나 시장에 빼돌리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부는 투약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에 의해서도 장마당으로 약품이 유출된다고 한다.

셋째,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제약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진료소 차원에서 의사들이 풀뿌리 같은 것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대용약을 만들어 주지만 그것은 약으로서의 효능이 거의 없다. 즉, 연줄이나 간부가 아니면 무상으로 약을 받더라도 효능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건강권에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넷째,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건강권의 차등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부족현상 속에서도 그나마 평양은 지방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한다.<sup>61</sup>

이러한 연유로 북한당국은 민간요법을 장려하여 부족한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즉,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발휘와 ‘항일 유격대식 사업’ 전개를 통해 각 병원이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생산기지’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한방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약초재배 및 증식에 대한 ‘전군중적 운동’의 전개를 촉구하고 각종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장티푸스에 걸렸으나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다고 한다.<sup>62</sup>

61\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4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62\_ NKHR2010000032 2010-11-23; NKHR2011000213 2011-10-04.

### 〈약의 유상 구매에 따른 건강권의 불균등 심화〉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3가지 형태로 약을 구입하게 된다.

첫째, 병원에서 의사들이 빼돌린 의약품을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고 구입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자신의 아버지가 명천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병원의사에게 폐니실린 1개를 500원에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63</sup>

둘째, 장마당이나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또한 병원 앞에도 비공식적으로 약을 판매하는 개인들이 많다고 한다.<sup>64</sup> 북한의 의약품관리법 제38조에는 “의약품은 정해진 약국 또는 의약품 매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 일반판매지표 또는 치료예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다. 일반판매지표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은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의 의사들이 은퇴 혹은 퇴직 후 불법적으로 가정집에 약국을 차려서 약을 파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약을 파는 곳과 의사가 결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이〇〇은 2009년 어머니가 다리 수술 때문에 함흥 시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항생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시 병원 앞 아파트 단지에는 환자들에게 약 파는 장사들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집에서 약을 사라고 지정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약 판매하는 집은 의사선생님과 결탁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sup>65</sup> 이렇게 사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 의사가 결탁되어 있는데, 의사선생한테 말하면 의사선생들이 어디 가서 약을 사오라고 얘기해준다고 한다.<sup>66</sup> 그리고 장마당

63\_ NKHR2011000167 2011-07-19.

64\_ NKHR2011000123 2011-05-24.

65\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8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66\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6월 22일, 서울에서 면접.

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파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 경우 단속을 하지만 대부분 돈을 주면서 무마하고 있고 묵인하고 있다.<sup>67</sup> 병원에 의약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마당을 단속하여도 사적인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아픈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도 일정량의 뇌물을 받고 묵인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sup>68</sup>

이렇게 장마당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상인들이 중국 등에서 수입하여 오거나 병원에서 빼돌려지는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약품의 경우 도매상들이 들여와 장마당에 유통시키고 있다. 그리고 화교들이 중국에서 약을 들여오기도 하는데 개인들이 화교를 찾아가 약을 사서 장마당에서 유통시킨다고 한다.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은 병원 등에 배분되지만 빼돌려져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전직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 000의 증언에 의하면 의약품이 국제지원 단체를 통해서 00시 병원에도 일부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역 및 병원의 간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더기로 빼내어가서 장마당에 비싼 값으로 판다고 한다.<sup>69</sup> 따라서 의사들이 다 빼돌리기 때문에 병원에 약이 있다고 해도 유엔에서 지원한 약은 거의 없고,<sup>70</sup> 유엔에서 지원한 약이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조직적으로 조절해서 내다 파는 실정이라고 한다.<sup>71</sup>

이와 같이 환자들이 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약의 효능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구매력에 따라 이렇게 효능에 차이가 있는 약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이것이 건강권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7.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68.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69.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이탈주민 워크숍, 2006년 1월 20일.

70.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8000029 2008-12-16.

71. NKHR2008000027 2008-12-02.

첫째, 일반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구입하는 의약품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권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조제한 가짜약이 많다고 한다. 비록 의사가 처방을 해주더라도 환자들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약은 가짜가 많다고 한다. 2006년 겨울에 담당 지역에 홍역이 발생해 북한에서 만든 홍역 약을 주사했는데 맞은 사람이 계속 앓았었다. 그래서 그 약을 검사해 본 결과 그 약이 모두 '요제'(가짜)였다. 따라서 이 약을 중단하고 유엔에서 나온 약을 맞혔더니 홍역을 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는 인편이나 해외친척에게 의약품 구입을 가장 많이 부탁한다고 한다.

둘째, 가짜약과 더불어 약의 효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약의 효능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서 파는 약의 효능을 의심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약을 사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장마당과 개인약국은 2가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장마당의 약은 가짜가 많은 반면 개인집의 경우 효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sup>72</sup> 그리고 장마당에서는 할머니 등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파는 반면, 개인집에서는 대부분 의사들이 팔아 전문지식이 있다. 따라서 돈이 좀 더 있으면 장마당보다는 개인집에서 약을 사 먹으려 한다고 한다.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약을 사먹어야 한다는 인식은 비록 없지만 북한주민들은 그래도 의사를 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개인 약국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병에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전문지식이 있으므로 주민들은 의사가 파는 약을 더 신뢰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들은 약장사를 하면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73</sup>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은 상대적으로 약의 효능이 좋다.

72.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73.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평성시에 ‘정성약국’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돈을 받고 약을 판매하는데 가짜약은 없다고 증언하였다.<sup>74</sup>

셋째, 북한주민들 사이에 약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사서 먹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할머니들이 장마당에서 약통을 들고 약을 몰래 파는 경향이 많다. 장마당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은 중국 등에서 약을 들여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약인지 설명을 듣고 증상을 말하고 약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약을 팔게 된다. 밀수 등을 통해 개인 집에 창고를 두고 약을 도매하는데, 도매업자들은 중국 및 유엔 등으로부터 오는 약을 번역하여 간단한 효능, 용법, 용량에 대해 알고 있다. 이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약의 효능 및 용법, 용량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고 있다.<sup>75</sup>

넷째, 약의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다. 병원의 처방전이 없어도 장마당과 개인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일반적으로 장마당에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구입하여 먹는다.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들어가므로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싫어한다. 일단 약집에 가서 약부터 사먹으려고 한다. 이와 같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디가 아프다고 진단해서 장마당에서 약을 사먹는다.<sup>76</sup> 예를 들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소화제 사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시장에 가서 소화제를 사먹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약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가 진단에 따라 주민들은 필요 없는 약을 사서 먹기 때문에 약을 남용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sup>77</sup>

다섯째, 경제난에 따른 치료를 위한 마약 복용은 건강을 해치는 요

74. NKHR2011000115 2011-05-17.

75. NKHR2011000203 2011-09-06.

76.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 면접.

77.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8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아편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 도저히 안 되면 양귀비 같은 마약류에 손을 댄다고 한다. 마약류를 사용하면 당장의 통증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 조금만 아파도 마약을 찾게 되고 중독된 후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에야 병원을 찾아도 손도 못 쓰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한다.<sup>78</sup>

### 〈무상 환자치료의 불균등 심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민보건법 제10조 제2항에서 무상이 지켜지고 있는 부분은 '진단'에 불과하다. 북한주민들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단에 따라 처방전을 받거나 주사를 맞고 수술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현재 무상서비스는 진단과 수술, 입원에 따른 병실 비용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진단과 수술의 경우에도 경제력 수준에 따라 건강권에 다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입원하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병실에서 필요한 대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하고 입원하게 되면 본인이 먹을 식량과 침구류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가 너무 형편없어 개인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난방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땃감)를 가지고 가거나 전기곤로를 가져가야 한다.<sup>79</sup> 이러한 현상은 산원에도 해당되고 있다. 예전 산원은 국가가 출산관련 비용을 제공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모 미역을 포함하여 산모가 다 부담해야 한다.<sup>80</sup>

7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제419호 (2011.9.7); NKHR2011000173 2011-07-26.

79. NKHR2011000118 2011-05-17.

80. 북한이탈주민 OOO, 2011년 4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 북한이탈주민 ○○○은 무산 광산병원은 좀 낫지만 다른 병원들은 입원할 경우 자기 먹을 것을 별도로 다 가지고 가야하고, 약이나 주사가 있긴 있어도 그저 급할 때 한두 대씩 놔주고 그 다음에는 없다고 증언.<sup>81</sup>
- 북한이탈주민 ○○○은 회령산원에서는 진단만 내려줄 뿐 침대비만 안 내고 침대보, 소독수, 약값은 환자가 내야하고, 의사선생들에게 하다못해 한 끼는 접대해야 하며 요즘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증언.<sup>82</sup>
- 북한이탈주민 ○○○은 다쳐서 닷새 동안 유선병원에 입원했으나 식사, 반창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약은 장마당에서 구입했다면서 지금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증언.<sup>83</sup>
- 북한이탈주민 ○○○은 담석증에 걸려 2006년 신암구역 청진시 병원에 보름간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는 자체 제조한 담석증 약밖에 없어 장마당에서 약을 자체 구입했고, 식사도 직접 해먹었다고 증언.<sup>84</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산원에서 분만했을 때 약은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먹었고, 병원에서는 국과 밥이 나오지만 더 잘 먹려면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증언.<sup>85</sup>

둘째, 치료와 입원할 경우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현금이 나 현물을 제공해야 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의사들도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약을 빼돌리거나 환자들로부터 현물과 금품

81\_ NKHR2008000022 2008-11-05.  
 82\_ NKHR2008000027 2008-12-02.  
 83\_ NKHR2008000016 2008-09-02.  
 84\_ NKHR2008000017 2008-09-04.  
 85\_ NKHR2008000023 2008-11-11.

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병원비는 지불하지 않았으나 의사에게 술이나 식사 혹은 뇌물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공연히 병원비를 요구하는 의사들도 나타나고 있다.<sup>86</sup> 뿐만 아니라 입원하는 경우 병원의 시설을 단장하기 위한 비용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sup>87</sup>

셋째, 북한에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의료혜택의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은 수술과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우선 친척 등 연줄을 통해 수술을 주선 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큰 병에 대한 수술은 군과 도병원보다는 평양의 큰 병원에 가야 한다. 간부들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돈과 연줄이 없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줄을 대서 뇌물을 주거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의사보다 좀 강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연줄이 없다. 북한이탈주민 김○○은 수술하겠다고 한 달 동안 평양에 가 있다가 끝내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다고 증언하였다.<sup>88</sup> 수술이 필요한 경우 돈이 많이 들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혜산의 도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비용으로 15,000원을 의사에게 주었다고 증언하였다.<sup>89</sup> 수술에 따른 비용 이외에 사실상 수술이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무언가를 갖다 바쳐야 한다. 의사는 수술을 해서 돈을 번다. 담배나 옷 등을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부터 받아 팔아 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수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사들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암에 걸리면 평양적십자병원이나 김만유 병원 등에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6\_ NKHR2010000082 2010-06-22; NKHR2011000154 2011-07-05.

87\_ NKHR2011000154 2011-07-05.

88\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4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89\_ NKHR2011000231 2011-11-08.

돈이 없으면 그런 병원에 가지도 못하지만 설령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돈이 없으면 수술을 받지 못한다. 돈이 없는 일반주민들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먹고 싶은 걸 다 먹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은 임신중절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치료해 주지 않고 방치해 결국은 사망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증언.<sup>90</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장인어른(70세)이 간 질환으로 수술을 위해 2007년 10월 회령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치료비용은 약값 다해서 50만 원 들었다고 하면서 오직 수술만 병원에서 해 주고 약값을 비롯해 식사 등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고 증언.<sup>91</sup>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에서는 맹장수술은 5만 원, 외상수술(배를 찢는다거나)은 10만 원 등 수술 종류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고, 약은 100% 다 본인이 사도록 바뀌었다고 증언.<sup>92</sup>

넷째, 진료를 받는 순서도 뇌물 여부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돈의 제공 유무에 따라 진료 순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현금이나 현물의 제공 여부에 따라 진료 순서가 결정된다고 한다. 한 예로 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접수하여 순서대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이 현금과 담배를 찢러 주면 늦게 왔어도 바로 진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음파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순서를 가로채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90\_ NKHR2010000042 2010-10-26.

91\_ NKHR2008000013 2008-08-19.

92\_ NKHR2008000021 2008-09-23.

이탈주민 문○○은 자궁에 이상이 있어 평성에 있는 도병원에 갔는데 진료 안내해주는 선생한테 돈 만 원 주고 ‘나 좀 빨리 보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진료 순서에 관계없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93</sup>

### 〈‘의료일꾼’들의 생계와 부패〉

경제난으로 의사들도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여 받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환자들은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식사 제공 등을 부담해야 한다. 환자들은 좋은 약, 진료를 잘해 달라고 담당의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가정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하던 식품과 공산품을 은밀하게 구입해 선물로 주고 있다.<sup>94</sup> 북한이탈주민 한○○은 자신의 경우 아플 때 시병원에 가서 침 한 번 맞을 때마다 담배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sup>95</sup> 이렇게 받은 담배, 공산품 등을 팔아 의사들은 돈을 마련하게 된다고 한다. 전문직 의사들은 뇌물을 받은 환자들에게 유엔에서 지원하여 병원에 들어온 약을 자기 권한으로 몰래 환자에게 준다.<sup>96</sup> 해산할 때 군병원까지 가기에는 멀기 때문에 진료소 소장이 왕진 와서 해산을 도와주게 되는데, 쌀이나 물품을 감사표시로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진료소 의사들은 좀 더 잘 사는 집으로 왕진을 나가려고 한다. 그런 집에서는 천 원 정도 수고비로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도 달걀이라도 주면서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고 한다.<sup>97</sup>

또한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들도 많다고 한다.

93\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94\_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의료실태』(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p. 15.

95\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13일, 서울에서 면접.

96\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97\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9일, 서울에서 면접.

이렇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은 직장출근을 면제받아서 장사를 하는 시간을 얻는데 활용한다고 한다. 심지어 군복무 중인 군인조차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제대한 사례도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2~2006년까지 4년간 군 복무하다가(해상경비대, 무전수) 병을 꾸며 입원을 한 다음 35만 원을 내고 진단서를 조작하여 6년 정도 복무 기간이 남았음에도 제대했다고 한다.<sup>98</sup>

둘째,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가정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진료를 해주면 무료이기 때문에 야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한○○은 본인이 아플 때 “개인의사(전문의의를 하다가 먹고살기 힘들어 의사직을 그만두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았다”고 증언하였다.<sup>99</sup> 특히 진료소나 인민병원에서 환자가 주는 것에 따라 진료를 다르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차라리 개인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려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낙태도 개인의사를 찾아가게 된다고 한다. 어떤 여자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하려고 해도 병원에서 해주지 않으므로 돈을 갖고 개인집으로 의사한테 찾아가면 드러나지 않게 해준다고 한다.<sup>100</sup>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사들이 부족한 의약품마저 병원에서 빼돌리면서 하층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8. NKHR2008000030 2008-12-23.

99. NKHR2011000213 2011-10-04.

100.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 4



## 근로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사회권 규약 제3조도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조는 그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비교하여 동등한 노동을 하게 되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 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휴식·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권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사회권 규약은 명시하고 있다(제7조와 제8조).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근로권을 살펴보면 “국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제70조)”라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16세 노동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 금지(제31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로동법」에서도 사회주의헌법이 규정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모든 북한주민은 조선노동당이 정해주는 직장에서 법이 정한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까지 노동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법률조항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즉, 북한에서의 노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결국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은 단체조직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은 조선노동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도 북한은 조선노동당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직업동맹은 단지 노동동원을 위한 통치조직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상의 괴리는 휴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1조와 사회주의노동법 제62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노동법에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

휴가와 직중에 따라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제65조)”라고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휴가제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0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는 규정(사회주의노동법 제33조) 때문에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8시간 휴식은 명목상의 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정해 놓은 일별·월별·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90년대 속도창조운동’, ‘2009년도 150일 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에 동원되어 왔다. 결국 노동자들은 기본 일과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사회주의노동법 제2장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현재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할 직장이 없는 셈이다.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은 원료가 없는데 노동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부분 근무시간에 사회동원을 나간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01</sup> 이들의 대부분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장사에 나서고 있다.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자들의 개인노동 현상을 없애고 집체적으로 공장, 기업소, 단위 등에 출근하도록 하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인노동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sup>102</sup>

그리고 북한 내에서 노동정량 평가와 이에 따른 보수 지급은 상반된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직장이던 연

101\_ NKHR2009000018 2009-03-26.

102\_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56호 (2007.1.24).

사군 대흥관리부에서는 노동정량을 평가하고 노동정량 평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103</sup>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회령 탄광에서 채탄공으로 일할 당시 한 달 목표량은 1톤 500kg이었는데 한 달 기준으로 노동정량 목표를 수립하며 달성할 경우 추가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sup>104</sup>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정량 평가는 매일 해야 하지만 자신이 다닌 ‘록평협동농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실시했다고 증언하였다.<sup>105</sup> 반면 노동정량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sup>106</sup>

또한 기업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는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진에는 김책제철소를 비롯해 유명한 기업소들이 많은데 이들 공장과 기업소들의 상당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공장과 기업소 문 앞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쪼그려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sup>107</sup> 2008년 김책제철소(함북 청진)에서는 1월부터 배급을 주지 못함에 따라 무단결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이에 제철소 초급당과 직업동맹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무조건 노동자들을 다시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sup>108</sup>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는 “노동관련 규정이나 권리는 의미가 없다. 직장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만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다.<sup>109</sup>

일부 근로환경은 지켜진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103. NKHR2011000123 2011-05-24.

104. NKHR2011000177 2011-08-02.

105. NKHR2011000154 2011-07-05.

106. NKHR2011000105 2011-05-03.

107. NKHR2008000011 2008-08-12.

10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39호 (2008.6.5).

109. NKHR2011000013 2010-06-08.

세 자녀 이상의 어머니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 1명당 500원씩 지급되고 부모 부양을 독려하기 위해 부모 1명당 생활비 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sup>110</sup>

---

<sup>110</sup> NKHR2011000133 2011-06-07; NKHR2011000156 2011-07-05.



# 5



##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또한 사회권 규약에는 체약국의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공민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그러나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직업 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조선노동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할당을 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한 직장배치를 집행하기 때문에, 직장배치를 하는데 개인의 희망·소질·능력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직장배치는 조선노동당이 독점하고 있으며, 인사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직장배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부, 도당조

직부, 군당 조직부로 달라진다. 예컨대, 핵심직위인 중앙당의 모든 간부와, 도당 및 군당의 책임비서 등은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직장배치를 집행하나, 군행정위원회의 과장과 지도원 이하의 일꾼들에 대하여는 군당간부부에서 인사를 담당한다. 한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도 및 시·군 인민위원회의 노동과가 담당하고 있다.

### 〈차별과 선택의 불균형〉

직장배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 크게 좌우한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25전쟁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그리고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장, 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해야만 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반면에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일단 직장에 배치된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능력보다는 성분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선노동당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근래에 들어 직장배치를 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경제력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즉 뇌물을 주고 직장을 배치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있다.<sup>111</sup>

### 〈무리배치와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란 공장, 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과 작업장 등 인원이 부족한 곳에 조선노동당의 지시에 의해 집단적으로 필요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

<sup>111</sup> NKHR2010000001 2010-05-25; NKHR2010000004 2010-05-25; NKHR2010000061 2010-05-18.

근 북한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친필서한’을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갖게 한 후, 탄광, 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9월 제대군인들과 중학교 학생들이 ‘나남의 봉화’의 발원지인 함북 청진시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통나무 산지인 자강도 랑림군, 평양방직공장에 집단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2002년에는 대홍단군종합농장에 천여 명의 청년제대군인들이 집단배치 되었다고 한다.<sup>112</sup> 북한당국은 이들 진출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환송행사도 크게 열어 축하해주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무리배치 혹은 집단배치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는 강제적인 배치”라고 증언하고 있다.<sup>113</sup>

무리배치는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비준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더구나 통제도 엄격해 일단 여기에 포함되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집안의 자녀라고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없다. 간부들이 무리배치에 속한 자신들의 자녀를 빼돌린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간부들에게는 처벌이 가해질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은 집단배치지로 복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배치지에 가지 않는 현상을 미연에 막기 위해 북한당국은 식량배급증명서, 공민증, 노동당원증 같은 신원서류 공문을 배치직장에 일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물론, 퇴거 전입수속까지 집단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직장에 배치된 후에는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일 집단배치를 당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거나 무단이탈을 하게 되면 식량배급 및 생필품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하

112.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113. 『연합뉴스』, 2001년 12월 13일.

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이 직장이동을 불허하는 이유는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통해 제도적으로 주민들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강제적으로 배치하거나 직장이동을 막는 것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복종과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최근에도 이러한 무리배치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함북 김책 흥평 탄광에 1,000명, 경성지구 탄광에 1,000명, 혜산 광산에 200명 등 탄광 지역에 제대군인들이 무리배치 되고 있다.<sup>114</sup>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배급이 보장되지 않고 부패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무리배치에서 이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제대군인 1,000명을 대홍단에 무리배치 하였으나 다수가 도주했다고 증언하였다.<sup>115</sup> 예전에는 제대군인들을 탄광, 광산 등지에 몇 백 명씩 배치하였지만 이런 곳에 배치를 하면 많이들 도망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근처나 고향에 보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sup>116</sup>

### 〈뇌물과 직업선택〉

엄격한 노동법령이나 배급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존의 직업구조 및 직업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장배치와 직장이동을 위해 뇌물이 오가고 있으며 직장이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직장배치의 경우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뇌물을 상납하여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무역기관과 같은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돈을 힘들지 않게 벌 수 있는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노동과에 담배와 같은 뇌물을 바치고, 바친 돈

114. NKHR2011000100 2011-04-26; NKHR2011000108 2011-05-11; NKHR2011000129 2011-05-31; NKHR2011000164 2011-07-12.

115.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16. NKHR2008000024 2008-11-18.

이상을 벌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sup>117</sup>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노동강도가 심한 북창화력발전소 운탄직장(연료직장)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북창 화력발전소 소방대로 이직하기 위해 당 비서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sup>118</sup> 이렇게 돈으로 원하는 직장에 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도 직장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권력을 들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연구사로 연구원에 배치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에 배치받을 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부모의 힘(권력)이었다고 한다.<sup>119</sup> 대학 졸업자들도 힘이 없는 학생들은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서 정해주는 데로 가고,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선을 하여 직장배치를 한 다음 거꾸로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라고 한다.<sup>120</sup>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안면배치, 뇌물배치와 같은 간부사업 때문에 북한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sup>121</sup>

돈이나 권력 혹은 능력은 직장 내 규율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즉 돈(자본금)과 능력만 있으면 외화벌이 회사에 등록만 하고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 외화벌이 회사가 조선노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 통행이나 사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력 기관 소속 외화벌이 회사가 돈벌이에 유리하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기업소라든가 외화를 다루는 곳은 그런대로 돈을 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치받기를 원한다.<sup>122</sup> 외화벌이 회사에 근무하다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일인당 한 달에 100달러씩을 회사에 상납하였다고 한다.<sup>123</sup> 그러나 외화벌이 회사 지

117. NKHR2009000011 2009-03-03.

118. NKHR2011000144 2011-06-14.

119. NKHR2008000023 2008-11-11.

120. NKHR2008000001 2008-07-01.

121.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3년 2월 3일, 서울에서 면접.

122. NKHR2008000021 2008-09-23.

123.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배인들이나 일꾼들은 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교회소에 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외화별이는 ‘교화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sup>124</sup>

### 〈뇌물과 직장이탈〉

자본과 능력이 부족하여 외화별이 회사에 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적만 걸어놓은 채 뇌물을 주고 장사를 한다. 의사에게 약간의 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고 아픈 걸로 허위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sup>125</sup>

직장에 무단결근을 하면 노동단련대에 보내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뇌물을 주고 해결한다. 이와 같이 직장에 적만 걸어놓은 채 나가지 않으며 장사하는 사람을 ‘8·3 노동자’라고 부르는데,<sup>126</sup> 한 북한 이탈주민은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여 이 중 20만 원을 직장에 뇌물로 주었다고 한다.<sup>127</sup>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다니던 직장(교사)에서 집안사정을 이유로 해임을 요청한 후 기업소에 적을 걸어둔 채 통일거리에서 장사를 하여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를 벌였으며, 이 중 4~5만 원을 한 달에 한 번 직장에 바쳤다고 하였다.<sup>128</sup> 고창탄광에서는 2003년경에는 5천 원씩 내고, 지금은 3만 원 정도 내면 ‘8·3 노동자’로 갈 수 있다고 한다.<sup>129</sup> 종이공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하기 4년 전부터 ‘8·3 노동자’로 살았고,<sup>130</sup>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04년부터 교장한테 돈을 주고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 교원신분을 유지한 채 장사를 했다고 한다.<sup>131</sup>

124.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25. NKHR2008000025 2008-11-20; NKHR2011000175 2011-07-26.

126. NKHR2011000169 2011-07-26.

127.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28.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129. NKHR2008000025 2008-11-20.

130. NKHR2008000027 2008-12-02.

131. NKHR2008000011 2008-08-12.

이렇게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의를 걸어놓고 ‘8·3 노동’에 나서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심지어 직장에 “8·3 하겠습니다”라고 제기하고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직장에 들여놓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sup>132</sup> 북한에서는 직장에 출근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고 직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8·3 노동자’는 직장에서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생활총화 등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직장과는 거의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다. 일부는 뇌물을 제공하여 아프다는 핑계 등으로 아예 퇴직하여 장사에 뛰어들기도 한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직업의 선택과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으며,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직장에 돈을 내고 밖에서 장사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단결근이 많아지자 노동단련대형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 상화탄광(함북 온성)에서 ○○○은 무단결근하면서 소토지 농사에만 열중한다는 이유로 노동단련대 3개월 형을 받았고, ○○○은 가짜 의료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이유로 역시 3개월 형을 받았다.<sup>133</sup> 이렇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노동단련대형과 같은 법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노동자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먹지 못해서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화소에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대체로 눈감아 준다고 한다.<sup>134</sup>

### 〈직장이동〉

자의적 직장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나 직장에서 해임되는

132. NKHR2008000021 2008-09-23.

13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56호 (2008.6.30).

134. NKHR2008000006 2008-07-24.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로 전락하여야 하며, 조직이동은 국가파견장을 받아 당적, 식량, 군사, 거주 관련 이동 문건을 해당 이동지에 제출하고 이동할 도시에서 승인번호를 받아야 한다.<sup>135</sup> 하지만 이직하기 위해서는 지배인, 당비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비서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우며,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해결된다고 한다.<sup>136</sup>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옮겨 갈 직장의 채용증이 있어야 한다. 나를 받아주겠다는 직장에서 채용증을 받아서 원래 다니던 직장에 제출하면 퇴직서를 떼어준다. 채용증과 퇴직서를 가지고 직장 내 노동부에 가면 노동수첩, 사로청 이동증 등을 준다. 그 다음에는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채용증을 보고 그곳으로 파견장을 떼어준다.<sup>137</sup>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채용증은 살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직장은 100달러, 괜찮다 싶은 직장은 500~1,000달러 정도라고 한다.<sup>138</sup>

한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을 수없이 많이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돈을 지불하고 배를 빌려서 어업을 하는 틈을 타 그 배를 몰고 남한으로 오기까지 하였다.<sup>139</sup> 이와 같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돈을 들여서 문건을 지우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 국가에 의한 직업배치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40</sup>

135. 북한이탈주민 000, 2004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36. 북한이탈주민 000, 2003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군 노동과에 TV나 담배 등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3년 1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37. NKHR2008000022 2008-11-05.

138. NKHR2008000023 2008-11-11.

139. 북한이탈주민 000, 2003년 2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40. NKHR2008000009 2008-08-07.



# IV

##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3. 장애인의 권리





# 1



## 여성권

### 가.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자유권 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권을 강조하고 있다(제3조).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당사국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발전과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현행 여성 관련 법·제도<sup>1</sup>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공화국에

1.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정과 정권 창립 이후 사회주의헌법, 어린 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등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으며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서처럼 여성들을 위한 법령과 법규가 많고 사회적 시책들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며, 북한이야말로 “자식 키울 걱정, 가정생활에 대한 걱정은 나라가 다 맡아 풀어주고 여성들은 자기의 일터와 사회에서 눈부시게 활약할 수 있는 여성들의 천국”<sup>2</sup>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2001년 2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 협약이행을 위한 민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sup>3</sup>를 통해 북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취를 감춘지 이미 오래”<sup>4</sup>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성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실태와 관련하여 2011년에 실시한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83%<sup>5</sup>가 북한여성의 지위는 불평등(매우 불평등 34%)하다고 답하였다.

정권 창립 초기에 가사노동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과 외연적 성장 추구를 위한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래 북한당국은 후계문제 등 정치적 고려에서 가정의 중요성 및 가부장적 위계질서,

2.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평양: 평양출판사, 2006), p. 240.

3.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는 2006년 3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 1월 현재 미제출 상태이다.

4.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p. 239.

5. NKHR2011000042 2011-02-08 외 71건.

가부장적 국가관 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목상의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과 실제적인 여성의 삶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1970년대 이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 내외가 여성의원들이었으며,<sup>6</sup>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30%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여성 의원 비율은 다른 선진국가 못지않은 정치참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 선출은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의 결과이기보다는 조선노동당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성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의 의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석비율만큼 높지 않다. 정치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에 등용된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sup>7</sup>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 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고양 문제와 관련해 “중앙기관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단지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녀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sup>8</sup>

또한 북한은 2002년 9월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적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재판관 비율이 10%, 외무성 직원의

6. 최고인민회의 제10기(1998.7)와 제11기(2003.8) 대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였으나 제12기(2009.4)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비율이 15.6%로 낮아졌다.

7.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는 여성 정위원이 4.2%(5/120), 여성 후보위원이 2.9%(3/104)에 불과했다. 통일연구원, 『2010 북한기관별 주요 인물정보』(서울: 통일연구원, 2010) 참조.

8. 이원웅,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 심의참관 결과보고서”(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학술토론회, 2001.10.3) 참조.

15%가 여성”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치, 사법, 공직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9년 8월 제64차 유엔 총회에 회부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문타폰의 보고서에서도 사회주의헌법에서 남녀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은 중요 정책결정 직위에의 접근이 남성들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고 지적되었다.

여성들은 주로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에서 간부로 등용되며, 이 외에 인민위원회 여성관리부, 시·군당 문건관리 부문 등에서 간부로 등용되어 일한다.<sup>9</sup>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당당한 근로자’로서 연령(만 16~55세)에 관계없이 국가계획위원회의 노동수급계획에 따라 조선노동당과 정권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장에 배치되었고,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남자와 동일하게 유해노동과 중노동에 동원되었다.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 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 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보건·상업·보육·교양·교육·체신·문화 등 상대적으로 ‘여성특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2001년 보건·아동·보육·상업 부문의 행정직 여성의 비율이 70%이며<sup>10</sup>

9.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10.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최초보고서 참조. <<http://daccess-dds-ny.un.org/>>

간호사의 100%, 교사의 86%가 여성이다.<sup>11</sup> 또한 2007년 12월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이하 제3·4차 통합보고서)’<sup>12</sup>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교원의 57%가 여성이며 유치원은 100%, 소학교는 86%, 중학교는 58%, 대학(college)은 23%, 대학교(university)는 19%가 여성 교원이다. 그러나 2009년에 발표된 ‘2008 북한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6세 이상 근로인구의 직업별 분포 조사에서 교원 중 여성의 비중은 55.6%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의 지원 등으로 수행한 ‘2008 북한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6세 이상 주민의 일상적 활동상태 조사에서 ‘일한다(Working)’는 인구의 48%가 여성이었으나 ‘가사노동(Doing housework)’을 포함하면 여성의 비중이 51.4%를 차지한다. 즉 16세 이상 북한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관료나 관리자 직업 부분에서 남성의 비중이 83.6%인데 반하여, 봉사원, 판매원 직업 부분에서는 여성이 93.4%를 차지한다. 농림수산업 부분에서도 여성이 54.8%로 남성보다 높다.<sup>14</sup>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들에게 차별적이고 특히 교육, 취업 및 기타 생활영역에서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전통적이고 틀에 박힌 억설과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현

[doc/UNDOC/GEN/N02/596/58/PDF/N0259658.pdf?OpenElement](http://www.unhcr.org/refugees/doc/UNDOC/GEN/N02/596/58/PDF/N0259658.pdf?OpenElement).

- <sup>11</sup> 2003년 11월 북한의 2차 사회권 규약 이행보고서 심의에서 북한대표단이 밝힌 수치이다.  
<sup>12</sup>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ember 2007, Pyongyang, DPRK.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AdvanceVersions/CRC.C.PRK.4.pdf>>.  
<sup>13</sup>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DPR Korea, 2009, p. 200 <Table 37>에서 계산.  
<sup>14</sup>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02 <Table 38>에서 계산.

재 상황과 같은 경제위기 시에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기대와 기대보다 적은 수혜권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결국 다중차별이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여성단체인 여맹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맹은 조선노동당 정책 관철 및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여성들을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에 불과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사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여맹조직은 규율이 강한 편이며 최근 들어서는 사상교양, 여성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단속 등 기능 및 활동이 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여맹의 주된 활동은 여맹원들을 노력동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여맹이 날아다닌다’고 말할 만큼 영농, 석탄생산, 비료생산, 철길공사, 도로 공사 등의 현장에서 여맹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5</sup> 북한당국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여맹원들을 건설현장, 농촌 등지에 노력동원하고 군대원호사업에도 여맹원들을 동원하며 이와 같은 노력동원의 명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부인들의 사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16</sup>

15. NKHR2009000006 2009-02-05; NKHR2009000058 2009-09-24; NKHR2009000070 2009-11-18; NKHR2009000073 2009-12-02.

16. 북한이탈주민 OOO, 2010년 4월 7일, 서울에서 면접.

## 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북한 사회주의헌법이나 제도가 표방하는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에 기존의 남성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래 김일성 유일체제와 부자세습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강조되었다. 또한 1990년 제정·공포된 「가족법」은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을 법조문화 하였다.

북한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사나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잔존해 왔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은 “녀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차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 주는 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다. 아들 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 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sup>17</sup>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에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제6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개정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제77조)”라고 명시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 내지 약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제18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대주’라고 불리는 남편은 자녀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가정에서 세대주(남편)의 위상이 달라지고

17.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 제3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9), p. 15.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6%<sup>18</sup>가 남편의 위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위자’라고 답하였으며, 51%<sup>19</sup>는 ‘형식적인 권위자’라고 답하였다. 유의미한 수치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의 가정에서 세대주의 권위 및 지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반해 여성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62%<sup>20</sup>가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후 지위 및 가치관에 있어 변화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가부장권이 강하며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적인 편이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권을 손에 쥔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편에 대해 저항, 반발하며 특히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폭력행사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매우 혼함 19%)<sup>21</sup>가 이혼사례가 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혼사유는 경제력(58%),<sup>22</sup> 폭력(17%),<sup>23</sup> 가정불화(14%)<sup>24</su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의 발언권 강화 및 위상 제고는 가정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북한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며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부정 내지 저항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

18\_ NKHR2011000044 2011-02-08 외 47건.

19\_ NKHR2011000042 2011-01-25 외 53건.

20\_ NKHR2011000042 2011-01-25 외 63건.

21\_ NKHR2011000049 2011-02-08 외 79건.

22\_ NKHR2011000042 2011-01-25 외 68건.

23\_ NKHR2011000073 2011-03-22 외 16건.

24\_ NKHR2011000059 2011-02-22 외 19건.

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음은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룬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이며,<sup>25</sup>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상류층의 생활을 했던 30대의 북한이탈주민 남성에게 따르면 40대 이상의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남존여비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남자들은 봉건적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어 여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내는 남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은 가정교육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을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으로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난이 지속되고 여성들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존여비사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2010년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2010년의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남존여비사상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답하거나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sup>27</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

25.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26.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7.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06 2010-05-25; NKHR2010000014 2010-10-05; NKHR2010000019 2010-10-12; NKHR2010000031 2010-11-09; NKHR2010000035 2010-11-09; NKHR2010000038 2010-11-02; NKHR2010000042 2010-10-26; NKHR2010000043 2010-11-02; NKHR2010000058 2010-11-23;

답자의 다수가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대해 ‘불만이다’(28%)<sup>28</sup>라고 답하거나, 또는 ‘개선해야 한다’(35%)<sup>29</sup>라고 답하였다.

## 다. 성폭력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직된 순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에도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 체육교원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중학교의 여학생 실습과목에서 재봉, 재단, 요리 등을 가르치며 성교육은 생리시기를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sup>30</sup>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면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자유권 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서 여성매매는 철저히 철폐되었으며, 지난 50여 년 동안 여성매매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여성 인신매매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인신매매란 북한의 법, 제도와 전혀 일치할 수 없는 현상이며 “국경지대에서 무슨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라고 답변함으로써 북한당국도 인신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NKHR2010000093 2010-03-30; NKHR2010000099 2010-07-13; NKHR2011000003 2010-03-16.

28. NKHR2011000042 2011-01-25 외 20건.

29. NKHR2011000046 2011-02-08 외 25건.

30. 북한이탈주민 ○○○, 2010년 5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 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sup>31</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1건의 인신매매 사례가 있다.<sup>32</sup> 또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농촌에 사는 여성들에게 “돈벌이 잘 하는 데로 데려다 주겠다” 하고 유인하여 중국에 인신매매한 사례가 있음을 증언하였다.<sup>33</sup>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범’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중국에 가기를 원한 여성들의 요청에 따라 ‘알선료’를 받고 ‘도강’을 도와주며 ‘길안내’를 한 사람(길잡이)들까지 북한당국이 인신매매로 몰아서 공개처형, 본보기 처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up>34</sup> 사실상 북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국경을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보다는 ‘밀입국매매’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sup>35</sup> 강제 납치, 또는 유인에 의한 인신매매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원해서 ‘도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의 조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북한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으니 자

31\_ NKHR2010000005 2010-03-16; NKHR2010000002 2010-08-10;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0000054 2010-06-22; NKHR2010000075 2010-04-20.

32\_ NKHR2011000179 2011-08-02.

33\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4\_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08000029 2008-12-16; NKHR2008000017 2008-09-04; NKHR2008000018 2008-09-11; NKHR2008000020 2008-09-17.

35\_ NKHR2010000006 2010-05-25.

신을 “팔아 달라”는 여성들이 많은 편이며, “팔려서라도” 중국에 가야겠다고 하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젊은층의 여성, 또는 이혼한 여성들이고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증언.<sup>36</sup>

- 북한이탈주민 ○○○은 “팔려가는” 여성들 대부분은 본인이 원해서 팔려가며,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으로 가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택하는 것이라고 증언.<sup>3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2월, 함경북도 회령에서 증언자 본인이 인신매매 당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중국에 넘겨진다고 증언.<sup>38</sup>

종래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주로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 개선을 미끼로 하여 발생하였다.<sup>39</sup> 여성들 사이에는 입당하기 위해 당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편한 자리를 얻고 승진하기 위해 직장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sup>40</sup> 군부대 내에서 남자 군관들에 의해 여자군인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여군들을 대상으로 입당을 미끼로 한 군관들의 성폭행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sup>41</sup>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여성들을 낮게 대우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수모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여성 스스로가 침묵

36\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37\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9일, 서울에서 면접.

38\_ NKHR2011000178 2011-08-02.

39\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5월 26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9000053 2009-09-08.

40\_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41\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하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2009년과 201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보면 성폭력에 대해서는 형법대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sup>42</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9%<sup>43</sup>가 ‘형법대로 처벌된다’라고 답하였으며 ‘형법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41%<sup>44</sup>에 달하였다.

2009년 개정된 북한형법은 폭행, 협박,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제293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과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9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95조는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보안원, 열차 승무원, 보안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주요 길목에 있는 ‘초소 구류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sup>45</sup> ‘도강’할 것 같은 의심이 들면 초소 구류장에 며칠씩 가두고 심문하는데 특히 젊은 여성들은 별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며,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약 운반이 의심될 때는 여성들도 단속실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검사하는 등 여성들의 수치심을

42. NKHR2010000014 2010-10-05 외 10건.

43. NKHR2011000047 2011-02-08 외 23건.

44. NKHR2011000042 2011-01-25 외 23건.

4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17호 (2011.8.24).

자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행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중국에서 강제송환 되어 온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다. 강제송환 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자궁검사를 하기도 하며, 심문이라는 구실 아래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의 특정 부위에 전기형을 가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sup>46</sup> 최근에도 이와 같이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7</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집결소 부장이 증언자에게 여성 수감자 자궁 안에 돈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일을 시킨바 있다고 증언.<sup>4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1년 12월, 함경북도 온성 단련대에서 산모가 해산할 때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끼고 여성 수감자들 자궁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목격한 바 있으며, 단련대에서는 자궁에 숨겨 놓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킨다고 증언.<sup>49</sup>
- 북한이탈주민 ○○○은 여성 수감자들의 자궁을 검사하는 것은 여자 보안원이 하며 일반적인 몸수색(속옷 검사 등)은 남성들도 한다고 증언.<sup>50</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에서 여자 보안원이 고무장갑을 끼고 자궁에 손을 넣어 자궁검사를 했으며, 대야에

46\_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pp. 102~105;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월 21일, 서울에서 면접.

47\_ NKHR2008000022 2008-11-05; NKHR2008000021 2008-09-23; NKHR2008000008 2008-08-01;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9000073 2009-12-02.

48\_ NKHR2011000072 2011-03-22.

49\_ NKHR2011000117 2011-05-17.

50\_ NKHR2011000201 2011-09-06.

받아 놓은 물에 장갑을 헹구기는 하지만 한 개의 장갑으로 여러 명을 검사한다고 증언.<sup>51</sup>

또한 2011년 조사결과에서는 구금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9명,<sup>52</sup> 성폭행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12명,<sup>53</sup> 성폭행 피해 사례를 전해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7명<sup>54</sup>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1998년과 2004년,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와 회령 보위부에서 5회 성폭행 당했으며, 안마를 빙자하여 신체 접촉을 유도하였다고 증언.<sup>5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8월,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sup>56</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5월,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부원이 성폭행을 하였다고 증언.<sup>57</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부원이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하였다고 증언.<sup>58</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6월, 양강도 김형직(후창)군 김형직군 노동단련대에서 보안원이 성폭행을 하였다고 증언.<sup>59</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8월과 2009년 6월, 함경북도 청진의 도 집결소에서 보안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 피해를 목격하였으며 집결소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가장 심하다고 증언.<sup>60</sup>

51\_ NKHR2011000253 2011-12-20

52\_ NKHR2011000082 2011-03-29 외 8건.

53\_ NKHR2011000045 2011-02-08 외 11건.

54\_ NKHR2011000050 2011-02-15 외 6건.

55\_ NKHR2011000082 2011-03-29

56\_ NKHR2011000094 2011-04-12

57\_ NKHR2011000018 2011-01-18.

58\_ NKHR2011000253 2011-12-20.

59\_ NKHR2010000014 2010-10-05.

60\_ NKHR2011000190 2011-08-23.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 사무실에서 보안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 피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sup>61</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3월, 함경남도 함흥 동흥산구역 노동단련대에서 여성 수감자에 대해 편의 보장을 조건으로 한 성폭행 피해를 목격함.<sup>62</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8월,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안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 피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sup>63</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안서 구류장에서 계호원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 피해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6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함경북도 청진 집결소에서 보안원(집결소소장)의 여성 수감자 성폭행 피해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증언.<sup>65</sup>
- 북한이탈주민 ○○○은 집결소 안전원이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증언.<sup>66</sup>
- 북한이탈주민 ○○○은 시·군·구역 소속의 ‘교양대’에서는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이 잦다고 증언.<sup>67</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48%(매우 흔함 23%)<sup>68</sup>가 구금 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이 흔하다고 답하였

61\_ NKHR2011000170 2011-07-26.

62\_ NKHR2011000088 2011-04-05.

63\_ NKHR2011000253 2011-12-20.

64\_ NKHR2011000201 2011-09-06.

65\_ NKHR2011000068 2011-03-15.

66\_ NKHR2011000092 2011-04-12.

67\_ NKHR2011000213 2011-10-04.

68\_ NKHR2011000048 2011-02-08 외 20건.

으며, 구금시설에서의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행은 단지 성적 만족을 위해서이거나, 또는 구금시설에서의 편의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대가성의 성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타, 곧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여전히 북한의 가정에서 남편들의 가정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얼음’(마약을 지칭하는 북한어)을 한 남편들이 아내와 딸들을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sup>69</sup> 또한 아내가 장사를 못하는 집들에서도 가정폭력이 많은 편이며, 이는 아내가 여자구실(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sup>70</sup>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사회에는 여전히 남존여비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젊은층도 예외가 아닌바, 젊은 남편들도 아내를 구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sup>71</sup> 2011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매우 흔함 39%)<sup>72</sup>가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답하였다.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여맹도 개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화’(간통을 지칭하는 북한어)사건이나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73</sup>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의 일이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며,<sup>74</sup> 당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충고 내지 비판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sup>75</sup>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남편이 상습적

69.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70.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11000125 2011-05-31.

71.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72. NKHR2011000044 2011-02-08 외 94건.

73.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74. NKHR2010000069 2010-10-26; NKHR2010000049 2010-11-30; NKHR2011000002 2010-03-16.

75.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으로 심하게 구타하여 국가안전보위부와 군당에 ‘신소’하였으나 가정 일이라고 하여 비판서를 쓰는 정도로 일이 끝났다고 한다.<sup>76</sup> 평양에서 온 30대 초반의 북한이탈주민 역시 여성들이 당기관이나 법기관에 가정폭력을 ‘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에서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sup>77</sup>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문제는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도 한다.<sup>78</sup>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매 맞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신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sup>79</sup>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가정폭력은 일상적이지만 가정폭력을 ‘신소’하는 것은 “가족 망신”이라고 생각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80</sup>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sup>81</sup> 드물게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남편이 구금되고 단련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sup>82</sup>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의하면 주부들이 장사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정들이 적지 않으며,<sup>83</sup>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인

76\_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77\_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78\_ NKHR2011000092 2011-04-12.

79\_ 북한이탈주민 000, 2010년 5월 7일, 서울에서 면접.

80\_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81\_ NKHR2008000027 2008-12-02; NKHR2009000065 2009-11-10.

82\_ NKHR2010000014 2010-10-05.

83\_ NKHR2009000053 2009-09-08; NKHR2009000057 2009-09-22; NKHR2009000058 2009-09-24.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결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하고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며, 폭력의 피해여성들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 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9년 개정 형법 제261조(매음죄)에 따르면 매춘행위를 여러 번 한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매춘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매춘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62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295조).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 사이에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4</sup>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매매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며,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sup>85</sup>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생계유

8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29호 (2008.5.2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45호 (2008.6.13); 성매매 실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는 남포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으며 “직업화”된 사례들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NKHR2008000021 2008-09-23.

85.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94호 (2007.10.17).

지를 위한 성매매가 많아졌으며,<sup>86</sup> 부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딸을 성매매로 내모는 사례도 있다.<sup>87</sup> 또한 조직적인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지만, 성매매 알선 브로커가 있고 브로커는 보안원을 끼고 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2011년 12월, 제66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 밀입국, 강제 낙태, 경제 분야 등에서의 성차별, 성폭력과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불처벌”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라. 건강악화

기근으로 인한 북한 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sup>88</sup>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신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아동권협약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아동과 여성, 특히 어머니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략(2006~2010년): The Strategy of the DPRK for the Promotion of Reproductive Health(2006~2010년)’을 수립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략은 모성·아동사망률 감소,

86.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06호 (2011.6.8).

87. NKHR2011000244 2011-11-22.

88.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 사이에 생리불순이거나 아예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여성의 영양 관리 개선, 모성 사망원인 질병 퇴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과 목표달성 방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북한의 산모 사망비(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아 10만 명 당 사망하는 산모의 수)는 67명으로 세계 60위를 나타내고 있다.<sup>89</sup>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한 ‘2011년 세계 보건 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11)에서는 북한의 산모사망비가 250명이다.<sup>90</sup>

산모의 영양실조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도 높다. 『200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생후 1년 미만 영유아 1,000명 당 사망 수)은 42명이다.<sup>91</sup> 2011년 대한민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2005~2010년)은 27.4%이며 남한의 영아 사망률(2005~2010년)은 3.8%이다.<sup>92</sup>

또한 북한은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면서 출산율은 낮다. 『2007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합계출산(여자 1명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은 1.94명으로 세계 전체 평균 2.56명보다 낮다.<sup>93</sup>

2011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합계 출산율(2005~2010년)은 2.05명이다.<sup>94</sup>

기근으로 인한 북한 여성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악화이다.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질병은 자궁질환을 비롯한 부인병

89\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icators/e\\_indicator1.pdf](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icators/e_indicator1.pdf)>.

90\_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1,” <[http://www.who.int/whosis/indicators/WHS2011\\_IndicatorCompenium\\_20110530.pdf](http://www.who.int/whosis/indicators/WHS2011_IndicatorCompenium_20110530.pdf)>.

91\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92\_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써 보통 1,000분비로 나타낸다.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2.1.17), p. 52.

93\_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94\_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1』, (서울: 통계청, 2012.1.17), p. 52.

이며 발병의 주요 원인은 영양실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당국은 주장하기를 북한의 모든 여성들은 건강증진을 꾸준히 도와줄 호(戶)담당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 있는 보살핌을 받으며, 98%가 넘는 임신여성들이 출산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sup>95</sup>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출산하며 출산 및 산후조리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매우 유용하지 않다 59%)<sup>96</sup>가 ‘호담당의사제’가 ‘유용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유용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1%<sup>97</sup>에 불과하다.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제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혼전·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혼외 임신, 또는 매춘에 의한 임신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혼전·혼외 또는 매춘에 의한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불법 낙태수술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수

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 보고서,”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 2010.3), pp. 18~19.

96. NKHR2011000042 2011-01-25 외 82건.

97. NKHR2011000047 2011-02-08 외 10건.

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관련 자료<sup>98</sup>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중학교에서 여성의 생리와 임신에 관한 교육을 아주 간단하게 받으며 피임방법, 성위생과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수의 경우에 단순히 낙태를 택하며 낙태는 의사들에 의해 마취 없이 집에서 시술된다. 집에서 시술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북한에서 낙태는 불법이며, 경제난 이후로 북한의 지방이나 소도시의 병원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유산을 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아이를 없애준다고 소문이 난 약을 구해 과다복용하거나 안면이 있는 의사에게 돈을 주고 몰래 수술을 받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sup>99</sup>

또한 구금시설에서의 강제 낙태로 인해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복송된 북한여성들 가운데 임신한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낙태를 시키며, 이를 위해 복부 구타와 심한 강제 노동, 수술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sup>100</sup>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따르면 2002년 신의주에 위치한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 함께 있던 임신 6개월의 동료수감자가 중국인의 아이라는 이유로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여 강제 낙태를 당하였으며 수

98. (사)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Newsletter 북한인권』, 제144호 (2010.5), p. 9.

9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00호 (2011.4.27).

100. 이해경, “탈북자가 본 북한인권과 탈북여성 인권문제,” 『제1차 사이버 북한인권 포럼: 북한인권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12), p. 92.

술 후에는 심한 구타를 당하였다고 한다.<sup>101</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는 강제낙태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17명<sup>102</sup>, 강제낙태 피해를 전해 들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14명<sup>103</sup>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5월, 평안북도 신의주 노동단련대에서 단련대 군의관이 임신 8개월 정도 된 여성에게 약을 투여하여 출산시킨 후, 살아있는 아기를 엮어 놓아 사망케 하고 사체를 단련대 소장이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0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5월,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에서 중국인 아이를 임신한 임신 3개월의 여성 수감자에 대해 강제 낙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입원기간 없이 다시 집결소에 수감되었다고 증언.<sup>105</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2011년 사이에 구금시설에서 강제 낙태 피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06</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구타로 인해 유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sup>107</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 등은 중국 변방 집결소에서 이루어지며 임신여성은 뇌물(돈)을 주고 석방되거나, 또는 남자측에서 아이를 원할 경우에는 낳아서 중국측 부모에게 넘겨주고 여성은 강제송환 되거나, 아니면 낙태수술 후 여성을 강제 송환하였다고 증언.<sup>108</sup>

101\_ NKHR2011000018 2011-01-18.

102\_ NKHR2011000045 2011-02-08 외 16건.

103\_ NKHR2011000050 2011-02-15 외 13건.

104\_ NKHR2011000201 2011-09-06.

105\_ NKHR2011000223 2011-10-19.

106\_ NKHR2011000068 2011-03-15; NKHR2011000253 2011-12-20.

107\_ NKHR2011000213 2011-10-04.

108\_ NKHR2011000224 2011-10-19.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95%(매우 배려하지 않는다 79%)<sup>109</sup>는 구금시설에서 임신한 여성 수감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일부는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배려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온성의 보위부 구류장에서는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없기는 했지만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증언.<sup>11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4월, 강제송환 당할 때에 임신해 있었는데 형벌을 당하지 않고 분주소에서 ‘산전산후’로 풀려났다고 증언.<sup>111</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0월, 함경북도 무산군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된 임신 여성이 재판을 받은 후 임신 8개월 때에 ‘병보석’(산전)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 여성은 출산 후에 다시 구금되었을 것이라고 증언.<sup>112</sup>

북한 여성의 건강문제는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수단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 환경 내지는 조건(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장마당 보안원 및 군인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가족 부양의 책임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up>109</sup>\_NKHR2011000043 2011-01-25 외 35건.

<sup>110</sup>\_NKHR2011000102 2011-05-03.

<sup>111</sup>\_NKHR2011000190 2011-08-16.

<sup>112</sup>\_NKHR2011000155 2011-07-05.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 마약 복용이 확산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유지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은 일시적이거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며 이로 인해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들 사이에 자궁질환을 비롯해 결핵, 유방암 등을 앓는 환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나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위생적인 생리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북송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국에서 입고 온 청바지를 압수하여 그 가운데 일부를 조각내어 생리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다.<sup>113</sup>

2011년 조사에서는 구금시설내 여성 수감자들의 생리 처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60%<sup>114</sup>가 ‘현옷’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가제천’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sup>115</sup>에 불과했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거의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는바,<sup>116</sup> 이는 허약, 질병, 아주 높은 정도의 긴장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1회용 생리대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제천, 또는 현옷을 생리대로 사용한다. 북한제품인 ‘대동강 위생대’, 또는 중국산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평양, 또는 국경지역에 사는 경제적으로

113. NKHR2008000021 2008-09-23.

114. NKHR2011000043 2011-01-25 외 23건.

115. NKHR2011000056 2011-02-22 외 6건.

116. NKHR2011000188 2011-08-16.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다.<sup>117</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3%<sup>118</sup>가 ‘가제천’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헌옷’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sup>119</sup>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sup>120</sup>에 불과했다. 여성의 생리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관리소’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관련 사례이다. 관리소에서는 못 쓰는 형짚 조각, 또는 못 신는 양말 짝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비닐을 덧대어서 새지 않도록 하며, 밤에는 바닥에 비닐만 깔고 잠을 자야하고 비누가 없어 빨래를 할 수도 없다고 한다.<sup>121</sup>

2010년 12월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이하 여성권보장법)을 채택, 발표하였으며, 여성권보장법의 제정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히었다.<sup>122</sup> 여성권보장법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선행 관련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였으며, 이는 북한여성 인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당국이 보다 적극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 인권 규탄 및 개선 촉구를 의식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의도성 있는 법제정일 개연성도 낮지 않다고 할 때, 법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

117.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18. NKHR2011000042 2011-01-25 외 52건.

119. NKHR2100000047 2011-02-08 외 5건.

120. NKHR2011000099 2011-04-26 외 4건.

121.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4월 22일, 서울에서 면접.

122. 『민주조선』, 2011년 1월 26일.



# 2



## 아동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은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협약) 전문에서는 아동은<sup>123</sup>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고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에서도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주의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안전법, 장애인보호법, 가족법

123. 아동권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의 채택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24</sup> 한 예로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제1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2년에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1992~2000년)을 수립, 시행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NCRC)를 설립하였다. 또한 북한은 아동복지를 위한 제2차 국가행동계획(2001~2010년)을 채택, 시행하였다. 북한은 1996년 2월 제1차 아동권이행보고서 제출에 이어 2002년 5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을 명시한 제2차 아동권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 유엔 아동권위원회(이하 아동권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였다.

제2차 아동권협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권협약 이행에 장애가 있으나 보고기간(1995~2000년) 동안 공중위생, 복지, 교육 등 아동 관련 부문에 많은 돈을 충당하였으며 아동의 생존 및 발전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1997년), 전염병예방법(1997년), 교육법(1999년) 등 국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식량 공급과 무상치료제 시행을 주장하였다. 2007년 12월 북한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을 밝힌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행해진 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들이 아동권협약의 원칙 및 요구와 일치함을 주장하고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상속법(2002년), 장애

1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 보고서,” p. 19.

자보호법(2003년),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담배통제법(2005년), 조선적십자회법(2007년) 등이 각각 채택되었고, 형법(2004년), 가족법(2004년) 등이 각각 수정·보완되었다. 또한 북한은 2005년에 이루어진 교육법, 마약관리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형사소송법, 환경보호법 등의 수정·보완에 있어 아동권협약의 원칙 및 요구를 충분히 참작하였으며 이로써 아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은 2002년 아동의 교육권 증진과 동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교육에 관한 국가행동계획(2003~2015년: National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수립하였으며 아동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략(2006~2010년)’을 수립(2006년)하였음을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9년 설립된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며, 2005년부터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도입된 ‘사회주의 도덕’ 및 ‘사회주의 도덕과 법’ 등의 교과목 수업을 통해 아동권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2002년 4월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은 “국가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서 자라는 세대를 총명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법, 교육법, 의료법, 가족법, 민법 등에 다양한 어린이 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2007년 12월에 제출한 아동권협약 조항 이행 노력에 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아동권위원회의 심의가 2009년 1월 23일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1월 29일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채택되었다.<sup>125</sup>

<sup>125</sup>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50th Session,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RC/C/PRK/CO/4 (March 27, 2009).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이 아동권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정적 조치와 기타 조치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신보건장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2006~2010년), 2002~2007 에이즈 예방전략, 모성과 아동 보건의료에 중점을 둔 2008~2012년을 위한 1차 보건의료전략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 관한 전략,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통합 행동 계획, 2008년 10월의 인구조사,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설립 등이 그것이다(제3항). 그러나 아동권위원회는 2002년 북한이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아동권위원회가 채택한 많은 권고사항들이 불충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조치되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들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제3·4차 통합보고서 심의 후 채택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제5항, 제6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협약 이행을 감시할 독립적 기구의 부재와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북한 내 국제비정부기구의 자율성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11항, 제13항).

## 가. 식량권 및 건강권

대다수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2002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북한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영양실태 조사에서 조사 표본 6,000명의 아동들 가운데 20.15%가 저체중, 39.22%가 만성 영양장애, 그리고 8.12%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표본 6세 미만 어린이 4,800여 명 가운데 23%가 저체중, 37%가 만성영양장애, 7%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19.5%가 저체중, 34.0%가 만성영양장애, 6.1%가 급성영양장애인이며 2000년 이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12월에 발간된 유니세프 보고서는, 2003~2008년 기간에 6세 미만 어린이 23%가 저체중, 9%가 급성영양장애, 45%가 만성영양장애로 고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26</sup>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1년 세계 보건 통계’<sup>127</sup>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의 20.6%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대부분은 영양실조이며 이로 인해 성장발육에 있어 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2010년 탈북한 해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30~40%가 영양실조이며 오히려 얻어먹거나 훔쳐 먹는 꽃제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편이나, 꽃제비들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육아원’이나 ‘중등학원’에 보내면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한다.<sup>128</sup>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교육 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이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제6조 제2항)”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제27조)”는 아동권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권협약 제24조는 아동의 건강권 이행과 이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로서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보고기간에 공공의료권을 침해당한

126. UNICEF, *The State of World's Children*, special edition (November 2009), Table 2. Nutrition.

127.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1,” p. 23, <www.who.int>.

128.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9일, 서울에서 면접.

아동은 없었으며 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아동건강서비스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이 악화되고 일부 아동건강지표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자연재해의 여파를 없애기 위한 정부 및 주민들의 노력과 국제적 협력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건강서비스 수준도 1990년대 초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등의 수정·보완과 약초법, 마약관리법, 담배통제법 등의 채택을 통해 아동 건강 증진 및 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보증을 확보하였으며 ‘재생산 건강 전략(2006~2010년)’과 ‘에이즈 방지 전략(2002~2007년)’도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가 붕괴됨으로써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기초적인 의료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위생적인 식수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하여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어린이 질병은 설사와 급성 호흡기 계통 전염병이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빈곤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와 식량, 안전한 식수, 위생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북한당국에 권고하였다(제50항, 제51항).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2000년 이래 아동사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2005년 현재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1,000명당 5세 이하 사망 아동의 수)은 4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7년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남자 56명, 여자 49명으로 한국의 남자(5명), 여자(5명)에 비해 10배 웃도는 수치

이다.<sup>129</sup> 유엔아동기금이 발표한 ‘2009 세계 아동현황’ 연례보고서에도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55명이며 세계 189개국 가운데 62위를 나타내고 있다.<sup>130</sup> ‘2010년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는 영유아 사망률(신생아 1,000명당 영유아 사망률)이 47명,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2005~2010년)은 63명으로 나타나 있다.<sup>131</sup>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1년 세계 보건 통계’<sup>132</sup>에서는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비가 33명(정상출산 1,000명당)이며, 유니세프가 발표한 ‘세계아동현황’<sup>133</sup>에서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비는 33명으로 77위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들어서 아동 사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다.

2002년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이 북한당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영양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머니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영양실조가 어린이 영양실조의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4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의 국제적십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중반에 실시된 전국 영양 평가는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자 보건이 여전히 주요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겨울철에 질병 발생률이 매우 심각하며, 난방 부족에 따라서 보건 기관의 침상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개월 미만의 유아들 중 폐렴 등 급성 호흡기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9.8%에 달하였으며,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sup>134</sup> 이와 관련하여

129.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91.

130.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9,” p. 117.

131. UNFPA, “The State of World Population 2010,” pp. 96, 102.

132.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1,” p. 24, <www.who.int>.

133.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1,” (February 2011), p. 87.

13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MAAKP002) – Country Plan 2010–2011” (October 20, 2009).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육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특히 아동의 심각한 영양부족으로 인한 성장발육 부진, 체력 저하, 또는 사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제23항). 위원회는 특히 아동들의 만성적·지속적 영양실조와 급성 호흡기 감염, 설사와 같은 유아 질병, 임산부의 높은 빈혈증과 영양부족 등의 모성건강이 유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수의 나쁜 질과 위생, 모든 아동에게 가능하지 않은 무료 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44항). 또한 위원회는 미혼의 청소년 임산부들이 충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식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특히 청소년 임산부가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였다(제46항).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마약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 복용 및 거래가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35</sup> 마약 복용 및 거래 사례는 주로 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sup>136</sup> 14~18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정도라고도 한다.<sup>137</sup>

이와 관련해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 아동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감정적·심리적 발달 및 복지에 대한 유해한 영향, 아동의 약물 남용에 의한 사고 증가, 국가의 양귀비 농장 노동에 아동 동원 등의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61항).

13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6호 (2010.1.19).

136. 『뉴시스』, 2011년 1월 5일.

137. 『데일리NK』, 2011년 5월 23일.

## 나. 신체적·정신적 보호권

아동권협약 제19조와 제20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가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은 국가적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차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린이 보육에 대해 가족 및 사회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6년 이래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어린이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들 거리의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은 2007년 8월과 9월의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아동보호 시설들이 파괴, 침수되어 재정적·물질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정부는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피해아동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정상생활로 복귀시키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2002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회원국이 제출한 제2차 보고서’에서 국가는 가정환경을 상실하거나 나쁜 조건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 특별보호를 제공하는 바, 사회주의헌법 제72조에 따라 생계수단이 없는 어린이들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8조에는 국가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육원과 ‘애육원’(고아원)에서 돌본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아동보호시설의 많은 아동들이 실제로는 고아가 아니며 이들 중 상당

수가 그러한 시설들에 관례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정보와 부모가 수감 중인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함을 표하였다(제34항).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식량난을 겪으면서 부모에 의한 자녀유기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부모가 사망해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아동들은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다.

꽃제비들은 주로 시장(장마당)이나 역 앞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이며 낮에는 시장이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이 되면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주로 10~20대들로 구성된 꽃제비 무리가 낮에는 ‘수남시장’이나 역 주위를 돌며 먹을 것을 구하고 밤에는 김책제철소 ‘재무지’(재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더미)에서 생활한다.<sup>138</sup> 제철소에서 버리는 석탄재에 남아있는 온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는 구제소에 가지 않고 재무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평안남도 북창군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꽃제비 되어 역이나 철길에서 지낸다고 한다.<sup>139</sup> 2009년 탈북한 평양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여행 중에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두 다리가 절단된 꽃제비를 보았으며, 그 아이는 무릎 밑이 잘려 있었고 상처가 낫지 않아 무릎에서 고름이 나고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도 한다.<sup>140</sup>

북한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등의 수용시설로 보낸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알려진 ‘중등

13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88호 (2011.2.2).

139.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40.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학원'에는 부모가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꽃제비 등이 수용되며,<sup>141</sup>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꽃제비들을 데려다 '상무'(여관, 합숙소 등을 이용한 시설)에서 돌보다가 자기 지역으로 보내기도 한다.<sup>142</sup> 한 예로 함경북도 경성군에 위치한 2층 건물의 '9·27상무'에는 70~80명의 꽃제비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sup>143</sup>

그러나 아이들은 수용시설에서의 통제와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를 못해 수용시설을 몰래 빠져나와 거리를 떠돌며,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추운 겨울에 동사하는 꽃제비들이 많다고 한다. 고아원에 수용된 아이들의 생활도 다른 수용시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밥일 등을 시키기 때문에 고아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며, 고아원에 가기보다는 꽃제비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sup>144</sup> 2008년 5월, 구호소에 수용된 아이들에게 구호소 외부에 있는 소토지 일을 시키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산나물을 캐오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다.<sup>145</sup> 또한 수용된 아이들은 구호소 밖으로 잠시 나갈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나갈 때 책임자(인민위원회 지도원)가 아이들에게 물품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며, 아이들은 훔쳐서라도 구해다가 지도원에게 바친다고도 한다.

꽃제비는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매우 증가 43%)<sup>146</sup>가 화폐개혁 이후 주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꽃제비가 다시

141\_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42\_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43\_NKHR201000067 2010-04-27.

144\_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4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45\_NKHR2011000187 2011-08-16.

146\_NKHR2011000044 2011-02-08 외 60건.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하였다.

한편 북한당국은 각 가정에서 꽃제비 아동들을 데려다 기르는 것을 사회적 미풍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2,528개 가정에서 부모를 잃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입양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생활이 더 힘들어짐에 따라 입양하는 가정이 드물다고 한다.<sup>147</sup>

아동권협약 제22조에 따르면 협약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보고기간에 난민 지위를 얻으려하거나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난민으로 간주된 아동은 없었으며, 실제로 난민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으며 북한에는 인종분쟁, 또는 사회·정치적 모순이나 대결이 없으므로 난민과 난민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체류 탈북자들 가운데는 다수의 18세 미만 아동이 체포 및 북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구걸과 노숙을 하며 꽃제비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심한 영양실조와 피부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설, 구타 등의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고 일부는 폭력, 절도, 인신매매 등에 연루되기도 한다.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매춘이나 불법 성행위는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바 아동권협약의 관련 조항(제35조)을 이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는 아동이 성착취에 이용된 사례가 없으며 아동매매 및 유괴 관련 사건도 없다고 주장

147.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하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식량난 이후 북한과 중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많아졌으며 1990년대 말 이래에는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4~5세 되는 아이들을 중국에 '양자'로 보내기 위해 인신매매를 통해 넘기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sup>148</sup>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성매매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에서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매춘의 정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한 조사와 예방 대책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65항, 제66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아동을 포함한 북한주민의 중국으로의 인신매매와 북한에는 인신매매 관련법이 없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제67항).

## 다. 사법권 및 국적취득권

아동권협약 제37조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법권과 관련해서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와 제3·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도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와 제190조에 의거하여 검사의 승인 하에 방과 후 집이나 특정구역에 아동을 감금하며 그러한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법률은 국제인권협약, 특히 아동권협약의 기준에 역행하지 않게 개정되어 왔는바, 한 예로 아동의 사형적용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에 아동이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sup>148</sup> NKHR2011000223 2011-10-19.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도 보고기간 동안(2001~2007년)에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런 대우, 처벌을 받은 아동이 없었다고 북한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에서 송환되는 아동들은 취조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며 수용소 생활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동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이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에 아동이 수용되어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례들도 적지 않다.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동에 동원된 15세 남자 아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sup>14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22호 관리소’ (새천관리소)에 부모와 함께 수용된 아이들에게도 오전 10시부터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며, 부모가 아이 일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였다고 증언.<sup>15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 평안남도 평성시 ‘620상무’에서 어른과 아이들을 한 방에 수용한다고 증언.<sup>151</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14세 남학생이 컴퓨터에 USB를 사용했다고 체포되어 여관에 감금되어 구타 당하였으며 또래 학생 40여 명이 유사한 피해자였다고 증언.<sup>152</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2월, 부모가 중국에서 송금한 것이 발각되어 16세 된 아들이 함경북도 무산 보위부 구류장에 15일 동안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리다 도망 나온다고 증언.<sup>153</sup>

149\_NKHR2011000247 2011-12-20.

150\_NKHR2011000134 2011-06-07.

151\_NKHR2011000101 2011-04-26.

152\_NKHR2011000105 2011-05-03.

153\_NKHR2011000134 2011-06-07.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어 양강도 혜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으며 16세 나이였지만 성인 구금 시설에 수용되었다고 증언.<sup>154</sup>

위의 사례들과 관련하여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꽃제비, 당국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은 아동, 경찰 또는 다른 국가 기관에 구금된 아동들이 구금기간에 가혹하게 다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는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제31항). 또한 북한당국은 난민 아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권위원회는 근접 국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이 되돌아오거나 송환될 경우 가혹하게 다루어진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였다(제55항). 아동권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 아동들이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송환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인신매매된 아동들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적절한 회복과 사회적 통합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의 제공을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제67항, 제68항).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이 아동권협약과 그 밖의 관련된 유엔 기준들에 부합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만한 청소년사법체계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데에 유감을 표하고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유엔 기준에 따라 14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에 적용할 수 있는 청소년사법정의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제72항).

아동권위원회는 장애아동, 시설내 아동, 법적 분쟁중인 아동들과 관련하여 비차별 원칙이 사실상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동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든 부모의 것이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출신,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위에 근거한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한층 더 우려하였으며(제19항),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고 있는 현행 법

<sup>154</sup> NKHR2011000142 2011-06-14.

물들의 이행을 감시, 보장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제20항). 201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북한 아동의 자유 침해, 특히 많은 아동들이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으로 돌아오거나 송환된 아동, 거리의 아동, 장애아동,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아동, 구금시설 내에 살고 있는 아동, 불법적 상황에 처한 아동 등이 겪는 특별히 취약한 상황을 주목한다고 밝히었다.

아동권협약 제7조 아동의 국적취득권과 관련해 북한은 “어린이는 무국적자일 수 없으며 국가의 보호 없이 방치될 수 없는 바, 부모 중 하나가 조선인이면 시민권은 자동 부여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족, 또는 조선족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 등이므로 출산한 아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라. 교육권

아동권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등을 지향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이를 구현하는 학교의 사명, 그리고 교육 목표 관련 법조문 등이 시사하고 있는바,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며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1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sup>155</sup> 제40조에서도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해 “정치사

155. ‘보통교육법’은 총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교육법의 기본’, ‘무료의무교육의

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그 외의 일반과목 및 기초과학기술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이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상화와 관련해서는 소학교 4년 동안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어린시절’을 배우고, 중학교 6년 동안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혁명활동’, ‘혁명력사’ 등을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를 답사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며(사회권 규약 제13조 제1항),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지향해야 한다(아동권협약 제29조 제1항). 그러나 ‘조선소년단’ 생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 등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은 교육에 의한 보편적 인격의 완성을 방해받으며,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은 집단화· 획일화 되어있으며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는 특정학습을 강요당하는 바, 이는 곧 북한청소년들이 교육내용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동권 협약에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제32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은 16세 노동연령과 노동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청소년

---

실시’,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농촌, 또는 사회주의건설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실천의 결합 원칙 구현, 노동애호정신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법제화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은 그와 같은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된다.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따르면 북한 청소년들은 중등반이 봄에 한 차례 약 4주 동안, 고등반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약 8주 동안 의무노동을 하며, 이 때에 농촌지원이나 사회건설에 동원되어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게 하는바, 이러한 노동수행은 교육에 방해가 되는 정도였다고 한다.<sup>156</sup> 관련 소식지에 따르면 하루 보통 8시간 이상 노동을 말하는 ‘일공노동’은 아이들에게는 시키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평안북도 신의주의 중학생들이 야산 과수밭 조성에 노력동원되어 ‘일공노동’을 하였다고 한다.<sup>157</sup>

이와 같은 사례는 2010년 이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증언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의 아동들은 연 2~3회씩 농촌지원과 사회건설에 동원되었다고 증언.<sup>158</sup>
- 북한이탈주민 ○○○은 농사철에는 소학교 3학년 이상부터 매일 1~2시간씩 농촌에 노력동원 되었다고 증언.<sup>159</sup>
- 북한이탈주민 ○○○은 중학교 재학중에 노력동원, 농촌지원 등 “셀 수 없을 만큼 지겹도록” 거의 매일 노력동원을 나갔으며 공부에 “상당히 많이 방해”를 받았다고 증언.<sup>160</sup>
- 북한이탈주민 ○○○은 4월에 강냉이 심을 때부터 시작해서 10월 말,

156. 북한이탈주민 ○○○, 2005년 7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157.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8호 (2010.3.30).

158. NKHR2010000021 2010-10-12 외 8건.

159. NKHR2010000075 2010-04-20.

160.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또는 11월 초까지 동원되어 작업하며, 대략 1년에 7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 오후마다 동원되어 작업하고, 한 달 동안은 농촌지원을 나가 합숙생활을 하며 농촌지원이 없을 때에는 공사장에서 돌 나르기, 거리 청소 등의 작업에 동원된다고 증언.<sup>161</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소학교 학생들은 작업장에 동원되어 돌 나르기, 흙 담아 나르기 등을 함.<sup>162</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중학교 때에 농촌 지원하는 것은 농업 관련 학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달씩 하고, 매일 과제를 받아 무조건 해내야 하므로 건강을 해칠 정도의 노동을 하게 된다고 증언.<sup>163</sup>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중학교 4~6학년생은 봄, 가을에 한 번씩 학업을 중단하고 한 달씩 농촌지원을 나간다고 증언.<sup>164</sup>

아동권위원회는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상 아동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북한 아동들은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고 육체적 부담이 크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동임을 지적하였다(제59항).<sup>165</sup> 또한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의 노동 관련 법률들이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착취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해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60항, 제61항).

161\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4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62\_ 북한이탈주민 〇〇,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63\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64\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165\_ UNCRIC, "Concluding Observations: Democratic People's of Korea (unedited version)" (2009.1.31).

한편 북한의 아동교육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5학년 때에 2주 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나가 군사 훈련을 받으며, 2~3일 동안은 사격장에서 총쏘기 실습도 한다.<sup>166</sup> 이와 관련해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무기를 조립·분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여름방학 동안 군사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다(제56항)”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중학교 5학년생들은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1주일씩 강행군을 하기도 한다.<sup>167</sup>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학생들은 3~4주 합숙 훈련을 하면서 총 쏘기, 군인의 기본자세, 공격 자세, 방어 자세 등을 배우며 끝 무렵에는 실탄을 쏘기도 한다. 또한 훈련은 남녀 학생들이 함께 군부대가 아닌 자체 ‘교도대’(군사 교육기관)에 가서 받으며 교육·훈련은 제대군인들이 한다.<sup>168</sup>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협약 제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의 군사적인 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아동의 초기 군사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제57항).

아동권협약(제28조 제1항)에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북한은 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제4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의 공교육에의 접근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1980년

166.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167. NKHR2010000011 2010-09-14.

168. 북한이탈주민 000,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3월부터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국가판정시험)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실력 경쟁보다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조직생활평가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중학교에서 추천할 때에 학생의 당성과 출신성분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은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교사를 양성, 배출해 내는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핵심 엘리트들을 양성, 배출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출신성분이나 당성과는 무관하게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sup>169</sup> 대학진학 대상자들 가운데 김일성 친·인척과 항일투사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중학교 4·5학년 때 중앙당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어 국가에서 기용하기로 예정된 학생들, 예를 들면 명예위병대(사열·영접), 6과,<sup>170</sup> 김정일친위대 등은 국가수요에 따라 대학을 배정 받는다.<sup>171</sup>

1990년대 이래 대학진학에 있어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는 공부실력, 부모의 권력배경, 경제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에서는 실력을 우선으로 하며, 좋은 성분이 아니더라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이·공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경제난 악화 이후로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뇌물을 주고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169.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70. 중학교 여자 졸업생들 가운데 출신성분, 외모, 재능, 가족배경,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이전에는 '5과'라고 하였으나 '6과'로 바뀌었으며, '6과'에 선발되면 금수산 기념궁전 안내원, 당중앙위원회 건물관리원, 호텔 접대원, 중국 내 북한식당 접대원 등으로 배출되므로 여학생들이 '6과'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1월 8일, 서울에서 면접.

171.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8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성분보다 기본이 돈”이며 “대학은 돈 없으면 갈 엄두를 못 낸다”<sup>172</sup>고도 한다. 특히 외국어대학, 음악무용대학은 간부 자녀들이 현금을 뇌물로 주고 입학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sup>173</sup> 최근에도 북한사회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경제력이며 토대(출신성분), 권력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74</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경제력(뇌물)’(53%),<sup>175</sup> ‘학습능력’(22%),<sup>176</sup> ‘토대’(19%),<sup>177</sup> ‘권력’(6%)<sup>178</su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 예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려면 2010년에는 1,500달러를 주었으나, 2011년에는 3,000달러의 뇌물을 주어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sup>179</sup>

북한은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에서 소학교·중등학교 및 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각각 48.7%, 34.4%라고 밝혔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여자아동도 남자아동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에 입학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제55항b)”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아동교육에 있어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1975년 9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경제난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부족

172. 북한이탈주민 000, 2005년 1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173.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9일, 서울에서 면접.

174. NKHR201000017 2010-10-05 외 11건.

175. NKHR2011000042 2011-01-25 외 40건.

176. NKHR2011000047 2011-02-08 외 16건.

177. NKHR2011000046 2011-02-08 외 14건.

178. NKHR2011000096 2011-04-19 외 4건.

179. NKHR2011000240 2011-11-22.

하나마 매 학기마다 주던 학용품 공급 주기가 3~5년으로 길어졌고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로는 아예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정에 있어 평양의 특수학교는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특수학교를 다닌 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교과서 공급도 차질 없이 잘되었고, 학용품만은 개인이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썼다고 한다.<sup>180</sup> 경제난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와 학用品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방, 학습장, 공책, 연필, 필통 등은 거의 모두가 중국제품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가 지급하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지면서 2002년 이후부터는 교육부담의 70% 정도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는데, 연필, 종이 등 학用品은 물론이고 학교 건축, 학교 건물 관리, 그리고 겨울철 땀감용 나무까지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지웠다고 한다.<sup>181</sup>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학교(교실) 꾸리기, 연구실 꾸리기, 위생문화 사업, 교원생일, 학교졸업, 인민군대 지원, 건설장 지원, 화목비(火木費) 등 각종 명목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sup>182</sup> 한 예로 각 학교에서 거두는 화목비 실태를 보면 소학교에서는 화목비를 현금으로 거두며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산에 가서 땀나무를 마련해 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단 등교 거부 사태도 몇 차례나 발생했다고 한다.<sup>183</sup>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담금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sup>184</sup>

180.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5년 8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81.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p. 111.

182. NKHR2008000009 2008-08-07;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8000012 2008-08-14.

183.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1호 (2008.2.13).

184. NKHR2008000022 2008-11-05; NKHR2008000028 2008-12-12; NKHR2008000006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화목비 등 세부담 때문에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한 학급에서 약 40% 정도라고 증언.<sup>185</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의 학교에서도 세부담이 많은바, 학교 꾸리기, 운동장 꾸리기, 봄철나무심기, 분토 외에도 선생님 생일, 또는 결혼 등 선생님 가족 행사에도 돈을 내야하며 이를 책임 맡아 하는 학부모가 따로 있다고 증언.<sup>186</sup>
-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혜산에서는 주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세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바, 학생들에게 학교 시설물 교체 및 수선, 교실 집기 마련 및 수선, 교과서 구입 등의 비용을 부담 지우기 때문이라고 증언.<sup>187</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학교에서 내라는 것이 많아 학생 스스로가 학교를 결석하거나,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sup>188</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내야 하는 것이 많아 아이들을 학교에 잘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증언.<sup>189</sup>
- 북한이탈주민 ○○○은 돈을 내지 않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맞기도 하므로, 아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집들이 많다고 증언.<sup>190</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8%(매우 부담 55%)<sup>191</sup>가 학부

2008-07-24; NKHR2008000010 2008-08-08; NKHR2009000032 2009-05-19; NKHR2009000044 2009-07-0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51호 (2010.7.9).

185. 북한이탈주민 ○○○, 2011년 4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86. 북한이탈주민 ○○○, 2011년 4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187.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188.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89. NKHR2011000179 2011-08-02.

190.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91. NKHR2011000049 2011-02-08 외 49건.

모의 비공식적 부담(세부담) 여부와 관련하여 부담스럽다고 답하였으며, 비공식적 부담은 교원식사 대접, 학교 외 시설지원, 촌지,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교육의 질도 크게 저하되었음을 학교 출·결석 상황에서 엿볼 수 있다. 북한 청소년의 결석을 급증과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권위 위원회는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장기결석 및 계절적으로 60~80%의 낮은 출석률을 우려한다(제54항a)”라고 지적하고, “장기결석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제55항a)”을 권고한 바 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급 학교의 출석률이 점차 높아졌으며 최근 함경북도의 경우에는 70~8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sup>192</sup> 그러나 평양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속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장사를 다니거나 산밭에 나가 텃밭 농사를 짓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93</sup> 관련 소식지에 따르면 평안남도, 함경북도 등지의 소학교와 중학교들에서는 굶주림과 이로 인한 질병 등으로 출석률이 낮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세외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아예 포기하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한다.<sup>194</sup> 그러나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소학교의 출석률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정상출석 72%)<sup>195</sup>가 학생의 80% 이상이 출석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중학교의

192.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8000016 2008-09-02.

193.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1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NKHR2008000005 2008-07-22; NKHR2009000044 2009-07-02; NKHR2009000070 2009-11-18.

19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1호 (2010.2.1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59호 (2010.8.4).

195. NKHR2011000042 2011-01-25 외 41건.

경우도 응답자의 64%<sup>196</sup>가 학생의 80% 이상이 출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함경북도 무산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 16세가 되었어도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며,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이후로는 학생의 절반 정도가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고도 한다.<sup>197</sup>

북한의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로는 보급은 물론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사회권 규약 이행보고서(제2차)를 통해 북한은 1995년 자연재해로 많은 학교 시설의 파괴와 교육기자재 유실, 그리고 교육기자재 및 관련부품 생산단위의 손실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sup>198</sup> 그러나 학부모들의 부담금으로 학교 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도 한다.<sup>199</sup> 하지만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학교들은 시설 및 교육기자재가 여전히 매우 낙후된 상태이며 2007년 8월과 9월에는 홍수로 인해 많은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가 유실, 또는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7년 12월 제출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서 316개 학교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그 결과 35,0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에도 6월의 태풍과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건물이 파손되거나 교실이 진흙과 물에 잠겨 4~5일씩 수업을 중단하고 농장 건물 등 다른 건물에서 임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00</sup>

북한당국은 여전히 모든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11년제 무상의무교

196. NKHR2011000047 2011-02-08 외 33건.

197. 북한이탈주민 OOO, 2011년 4월 28일, 서울에서 면접.

1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제2차)』, 2002년 4월 9일.

199.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1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0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16호(2011.8.17).

육제 아래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완전한 기회가 주어지는 무상의무교육을 받으며 소학교 입학률은 100%이고, 진학률은 99.7%, 졸업률은 100%라고 주장한다.<sup>201</sup> 그러나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북한의 아동들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2월 22일,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이하 아동권보장법)을 채택, 발표하고, 이로써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우리 국가의 일관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sup>202</sup>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아동권보장법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를 다수 반영하고는 있다. 그러나 선언적 규정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상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민권과 자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법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 보고서(2009.8.27),” p. 19.

202\_『민주조선』, 2011년 1월 26일.



# 3



## 장애인의 권리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장애인 규모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세계밀알연합회가 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부터 북한의 장애인실태 조사 결과(1999년 기준)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천 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29만 6천 51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 장애인 16만 8천 141명, 시각장애인 16만 5천 88명, 중증장애인 6만 8천 997명, 정신장애인 3만 7천 780명 등이다. 평양에는 1.75% 가량이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은 농촌지역(35.4%)보다 도시(64%)에 더 많이 살았다.<sup>203</sup>

또한 2009년 북한당국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5년에 수행된 선별조사에 따르면 3,639명의 아동들이 기동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2,176명은 소년들이고 1,463명은 소녀들이라고 밝혔다.<sup>204</sup>

203. 『연합뉴스』, 2006년 4월 9일; 2006년 11월 23일.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 보고서(2009.8.27),” p. 20.

〈표 IV-1〉 연령별 장애아동

(단위: %)

0~4	5~6	7~10	11~17	연령
11.6	11.2	30.2	47.0	100

북한은 사회권 규약 2차 보고서에서 장애인은 그들의 헌법적 권리와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장애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취학 전 장애인은 누구나 특별병원에서 의료치료를 하고, 취학연령의 경우 의료치료를 지속하면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3개 맹아학교와 9개 농아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에서 1,80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소학교 및 고등중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특별 전문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들 어린이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특별히 건립된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3년 사회권 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 심사 후 제시한 최종 검토 의견서에서 장애아동들이 정규 교육체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권 규약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장애인 권익 보호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장애인들이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sup>205</sup>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장애인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보면 장애인

2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 보고서(2009.8.27),” p. 20.

차별대우는 다음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장애인 차별대우의 대표적 사례는 난쟁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정관수술의 시행과 격리시설의 운영이다.

-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
- 북한이탈주민 ○○○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난쟁이 수용소가 존재하였다고 증언.<sup>206</sup>
- 북한이탈주민 ○○○은 1993년 증언자가 근무한 병원에 난쟁이 2명이 입원하였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비뇨기과에 입원하였으며 정관수술을 했다고 증언.<sup>207</sup>
- 북한이탈주민 ○○○은 사돈관계인 ○○○이 1980년대 말 난쟁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강요에 의해 정관절제수술을 받았다고 증언.<sup>208</sup>
-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남도 부전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있으며 정관수술을 시켰다고 증언.<sup>209</sup>
- 북한이탈주민 ○○○은 1998년 경 증언자의 친언니가 남자 난쟁이 1명을 목격하였으며, 그 사람이 사는 곳까지 갔었는데, 난쟁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관리위원장었다고 증언.<sup>21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7년 7월 삼석발전소 부근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난쟁이들이 삼수군 관생이라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sup>211</sup>

206.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31일, 서울에서 면접.

207.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208.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09. 북한이탈주민 ○○○, 2006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210. NKHR2009000029 2009-05-01.

211. NKHR2009000028 2009-04-28.

-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 격리수용 및 강제불임을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sup>212</sup>
-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 상창리에서 난쟁이촌을 목격했다고 증언.<sup>213</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들은 격리수용하며, 양강도 김형직군(후창군)에 ‘난쟁이촌’이 있다고 증언.<sup>214</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에 평남 평성시에서 난쟁이촌을 목격했다고 증언.<sup>215</sup>
-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풍산에 집단적으로 난쟁이들이 거주하며 결혼은 못하게 한다고 들었다고 증언.<sup>216</sup>
- 북한이탈주민 ○○○은 1980년대 말, 아버지가 친구들과 얘기한 내용을 전하면서, 난쟁이는 ‘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데려가 생체실험을 하였던 바, 난쟁이들이 개발 중인 화학물질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 실험을 했으며 기형아들도 실험대상이었다고 증언.<sup>217</sup>
-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대학 재학(2000~2005년) 중에 난쟁이를 격리 수용한 난쟁이 마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sup>218</sup>
-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1990년경에 후창군에 난쟁이를 격리 수용한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sup>219</sup>
-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는 결혼은 할 수

212. NKHR201000007 2010-03-16.

213. NKHR2011000005 2010-08-10.

214.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1000001 2010-03-23; NKHR2011000018 2011-01-18.

215. NKHR2010000097 2010-06-15.

216. NKHR2010000071 2010-11-09.

21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18.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219.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있는데 아이는 낳을 수 없는바, 불임수술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증언.<sup>220</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0월, 함경북도 북청군에서 증언자가 근무했던 북청군 제1인민병원에서 당시 북청군에 사는 난쟁이 6명을 강제로 불임수술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sup>221</sup>
-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12월경까지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구 중동리에서 난쟁이촌을 목격했다고 증언.<sup>222</sup>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0%<sup>223</sup>가 난쟁이를 ‘격리 수용한다’고 답하였으며 난쟁이 강제불임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7%<sup>224</sup>가 ‘한다’라고 답하였으나, 목격, 또는 전해들은 때는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한편 난쟁이를 격리에서 풀어주었다는 증언과 난쟁이 격리시설이 해체되었다는 증언들도 제기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는 수용소에 격리 수감시키며, 남자 난쟁이 경우에는 불임수술을 시켰으나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1998년, 1999년경 석방시켰다고 증언.<sup>225</sup>
-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에 후창군(김형직군)에 난쟁이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고 증언.<sup>226</sup>
-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의 경우 양강도 후창군 9리(월탄리) 부근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으로 만들어진 ‘난쟁골’에서 나오려면 일정 금액이 필요하며, 지금은 시내에 많이 올라온

220.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221. NKHR2011000182 2011-08-09.

222. NKHR2011000103 2011-05-03.

223. NKHR2011000043 2011-01-25 외 85건.

224. NKHR2011000048 2011-02-08 외 38건.

225. 북한이탈주민 ○○○, 2003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226. NKHR2009000023 2009-04-16.

다고 증언.<sup>227</sup>

- 북한이탈주민 ○○○은 어렸을 때 난쟁이들을 모아서 외딴 곳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다고 증언.<sup>228</sup>
- 북한에서 직업이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를 격리 수용하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sup>229</sup>
- 북한이탈주민 ○○○은 몇 명의 난쟁이들을 연사군에서 보았다고 증언.<sup>230</sup>
- 북한이탈주민 ○○○은 무산군 남산구에서 여자 난쟁이를 보았는 바, 옛날에는 격리수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를 낳았다고 증언.<sup>231</sup>
- 북한이탈주민 ○○○은 1980년대에 신장 150cm 이하를 조사하여 등록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피임수술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고 증언.<sup>232</sup>

둘째,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한다. 북한당국은 장애인들이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특기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평양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은 주기적으로 이주를 실시하기보다는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이주시킨다고 증언.<sup>233</sup>

227\_ NKHR2009000030 2009-05-07.

228\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229\_ NKHR2008000024 2008-11-18.

230\_ NKHR2009000011 2009-03-03.

231\_ NKHR2009000009 2009-02-19.

232\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1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233\_ 북한이탈주민 ○○○, 1999년 5월 18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00년 5월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방으로 이주시킨다고 증언.<sup>234</sup>
- 북한이탈주민 ○○○은 1980년경 지적장애 자녀 때문에 평양에서 살 수 없었다고 증언.<sup>235</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살 수 없게 하고 평양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sup>236</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후천적 장애인은 지방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라다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며, 이는 성인이 되면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증언.<sup>237</sup>
- 북한이탈주민 ○○○은 장애인들은 방침 건(방침대상)으로 분류되며 장애인들은 평양거주를 하지 못하는바, 북한당국은 평양은 조선의 얼굴이므로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내세웠다고 증언.<sup>238</sup>

그러나 최근 평양 방문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시골로 보냈는데, 평양에도 장애인들이 거주한다고 증언.<sup>239</sup>
-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장애인들을 보았고, 자신이 아는 간부 집 자식이 소아마비인데 북한을 탈출할 때까지 보았다고 증언.<sup>240</sup>

23일, 서울에서 면접.

234. 북한이탈주민 ○○○, 2003년 2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235.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36. NKHR2009000013 2009-03-11.

237.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38. 북한이탈주민 ○○○, 2010년 7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39. 북한이탈주민 ○○○, 2007년 1월 24일, 서울에서 면접.

240. 북한이탈주민 ○○○, 2007년 2월 9일, 서울에서 면접.

- 평양에서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은 원칙적으로 난쟁이, 꼬추, 눈먼 사람 등 장애인들은 1970년대, 1980년대에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평양에서 살지 못하게 했다고 하며, 난쟁이들은 평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잠시 올라 온 사람들이라고 증언.<sup>241</sup>
- 북한 선교단체인 ‘등대복지회’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평양에 건립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북한당국의 편견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고 증언.<sup>242</sup>
- 평양이 고향인 북한이탈주민 ○○○은 예전에는 귀머거리, 꼬추, 난쟁이 같은 장애인들을 평양에서 추방시켰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며 평양 거리를 가다가 한 명씩 볼 수 있다고 증언.<sup>243</sup>
- 1998년과 1999년에 평양을 다녀왔다고 한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장애인을 많이 봤다고 증언.<sup>244</sup>
- 평양에 살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은 외국기관과 외국인들이 평양에 가장 많기 때문에 평양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관습이 국제 사회에 알려진 이후로는 평양에 사는 장애인의 숫자가 늘었다고 증언.<sup>245</sup>
- 2009년 탈북한 평양출신의 30대 초반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서 두 다리가 절단 된 사람, 두 팔이 절단된 사람 등을 목격하였으며 이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증언.<sup>246</sup>

또한 평양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

241\_ 북한이탈주민 ○○○, 2008년 1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242\_ 등대복지회 관계자와의 면담시 증언, 2008년 2월 20일.

243\_ NKHR2008000023 2008-11-11.

244\_ NKHR2008000029 2008-12-16.

245\_ (사)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Newsletter 북한인권』, 제144호 (2010.5), p. 9.

246\_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 200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난쟁이들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sup>247</sup>
- 200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는 눈에 띄지 않으나 꼽추는 많이 보았으며 이들은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한다고 증언.<sup>248</sup>
- 북한이탈주민 ○○○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을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목격했다고 증언.<sup>249</sup>
- 200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에 옆집에 놀러 온 난쟁이를 목격했다고 증언.<sup>250</sup>
- 201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며칠 전 양강도 운흥군 생장구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난쟁이 2명(남자)을 목격했다고 증언.<sup>251</sup>
- 북한이탈주민 ○○○은 꼽추를 많이 보았으며 이들은 격리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산다고 증언.<sup>252</sup>
- 2009년 탈북한 10대 후반의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 때 옆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증언자와 같은 또래의 지적·지체장애 여자를 어려서부터 탈북 직전까지 목격했으며, 2007년에는 증언자의 할머니 집 앞집에 무릎 아래가 없는 남자가 동생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 또한 2006년, 아니면 2007년에 동네 길에서 난쟁이를 목격한 적이 있고, 숙모의 외삼촌이 난쟁이며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고 증언.<sup>253</sup>
- 2010년 탈북한 평안남도 북창군 출신의 20대 후반 북한이탈주민

247. NKHR2010000102 2010-07-13.

248.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249. NKHR2011000023 2010-06-08.

250. NKHR2010000018 2010-10-05.

251. NKHR2010000055 2010-11-30.

252. 북한이탈주민 ○○○, 2010년 4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253. 북한이탈주민 ○○○, 2011년 4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은 제대하고 사회에 나간 2006년 이후 북한에서 다리 한 쪽이 없는 불구, 또는 맹인들이 거리에 다니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았다고 증언.<sup>254</sup>

- 2010년 탈북한 헤산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은 난쟁이, 꼽추 등 장애인을 보았으며 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다고 증언.<sup>255</sup>
- 2010년 탈북한 헤산 출신의 20대 중반 북한이탈주민 ○○○은 헤산 거리에서 꼽추, 소아마비, 맹인, 난쟁이 등을 많이 목격한 편이었으며 평성에 난쟁이촌이 있으나 격리수용이라기보다는 난쟁이들이 모여 한 개 마을을 만든 것이고 난쟁이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다닌다고 증언.<sup>256</sup>

2011년의 조사에서는 장애인 목격 사례와 관련하여 ‘지체장애’(61%),<sup>257</sup> ‘시각장애’(14%),<sup>258</sup> ‘언어장애’(13%),<sup>259</sup> ‘정신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4%)<sup>260</su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말하는 지체장애는 소아마비, 난쟁이, 꼽추, 신체일부 상실 등의 장애를 뜻한다.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북한당국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54개조)’을 채택하였으며, 이로써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 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노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254.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55.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256.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257. NKHR2011000028 2011-01-25 외 365건.

258. NKHR2011000043 2011-01-25 외 84건.

259. NKHR2011000049 2011-01-25 외 75건.

260. 정신장애인 목격 응답자 NKHR2011000053 2011-02-15 외 26건, 청각장애인 목격 응답자 NKHR2011000043 2011-01-25 외 22건, 지적장애인 목격 응답자 NKHR2011000043 2011-01-25 외 21건.

세워 장애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데 이바지(제1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자를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보호법’에는 장애자의 회복치료(제2장), 장애자의 교육(제3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제4장), 장애자의 노동(제5장)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자에 대한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혜택 보장(제9조), 소학교 및 중등일반의무교육 보장(제17조), 장애자의 지망에 따라 실력을 위주로 한 전문학교 및 대학 입학 보장(제18조), 장애자의 육체적·정신적 특성 및 장애 유형에 따라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조직, 운영(제19조), 당사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장애자를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 적재적소 배치(제32조), 장애인보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연맹의 실무사업 담당(제45조) 등이 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조성위원회가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통계국, 보건성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성이 장애아동의 재활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김만휴 병원에 재활센터를 건립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도 결성하였다. 1998년 7월 비정부 단체로 ‘조선장애인지원협회’가 발족되었으며 2005년 7월 ‘조선장애인보호연맹’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연맹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수행, 보건과 생활조건 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와 관심도의 제고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도와 시·군에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 조직과 관련하여, “20여 명의 ‘전임일꾼’과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가진 연맹은 각 도와 시·군 산하 위원회와 필요한 기구들을 두고 활동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맹은 장애인 문화연맹을 설립하였고, 장애인 예술 연맹, 장애아동기금, 장애인 지원 무역회사 등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2008~2010 장애인 위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sup>261</sup>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한의 월간 화보 ‘조선’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 연맹이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연맹은 상이군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함경남도 함흥정형외과병원과 강원도 통천 시중호요양소 등의 시설을 개진·현대화했으며 함흥교정기구공장에 수지(폴리프로필렌) 교정기구 공정을 추가해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맹에서는 특히 평양시에 장애인을 위한 ‘회복센터’(재활센터)를 짓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 외에도 연맹이 원산농아학교 개보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국의 농아학교와 관련 기관에 ‘손말(수화) 사전’과 ‘손말참고서’ 등의 책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장애자보호연맹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sup>262</sup>

북한당국은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차원에서의 남북한 협력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 남북 장애인 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남한에서는 대구대 대표단, 북한에서는 조선적십자병원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2월 19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재활 치료, 특수교육 부문 등에 대한 상호간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남북 간의 재활과학 분야 첫 토론

261\_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제3·4차 국가보고서,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ember 2007, Pyongyang, DPRK (CRC/C/PRK/4).

262\_ 『민중의 소리』, 2006년 4월 5일.

### 회가 개최<sup>263</sup>

- 2007년 2월 26일 북한 선교단체인 등대복지회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평양 대동강구역 대추섬에 노인·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합의
- 등대복지회의 지원 아래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에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로서 종합복지관인 ‘보통강 종합편의’를 건립
- 등대복지회가 북한 각지의 농아학교(8곳, 총 학생 수 1,035명)와 맹아학교(3곳, 84명)에 생필품, 학용품, 특수교육기자재, 농기구 등을 지원<sup>264</sup>
- 등대복지회의 주선으로 북한의 장애인 기관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대표 3명이 2006년 11월 25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FESPIC Games)에 참관단 자격으로 참여<sup>265</sup>

또한 북한당국은 2007년 12월 1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Pyongyang Times’에 ‘For more rights of the disabled’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는 장애인과 관련한 최초의 대외홍보였다. 2009년 북한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sup>266</sup>에 따르면 맹인어린이와 농아어린이들을 특수학교들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그 밖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보통학급에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예군인 공장들과 복지편의 봉사소들이 세워졌고 그들에게는 강장제와 보행보조기

263. 『연합뉴스』, 2006년 12월 22일.

264. 『연합뉴스』, 2006년 10월 23일; 2007년 2월 26일.

265. 『연합뉴스』, 2006년 11월 23일.

2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 보고서(2009.8.27),” p. 20.

구들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유급휴가와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당국은 장애자들의 사회 내 통합을 돕고 일반대중이 장애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로 장애자의 날인 6월 18일에 매년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며 이 행사에서는 2005년 7월에 활동을 시작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밝혔다.

위와 같이 북한당국은 ‘장애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와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모색,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애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매우 심함 46%)<sup>267</sup>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답하였다.

북한에서는 소아마비, 맹인, 병어리, 꼽추, 앓은뱅이, 난쟁이, 신체 일부 상실자 등의 장애인이 드물게 눈에 띄는 편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2011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sup>268</sup>만이 장애인 단체를 ‘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9%<sup>269</sup>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품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장애인 시설로 농아(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와 맹인(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와 재활센터가 있으며, 영예군인 공장을 비롯하여 맹인과 농아 등 일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공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꼽추, 소아마비 등의 장애인들은 지역 편의봉사시설(편의봉사관리소)에서 도장 만드는 일,

267\_NKHR2011000043 2011-01-25 외 95건.

268\_NKHR2011000042 2011-01-25 외 7건.

269\_NKHR2011000042 2011-01-25 외 65건.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 등을 수리하는 일 등의 경노동을 하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타를 연주하여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대우 내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영예군인’에 한해서이다. 일반 장애인들은 보조 기구 및 용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장애인 스스로가 마련하지만 영예군인에 대해서는 물품을 비롯한 생활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단적인 예가 영예군인 공장 설립·운영이다.

북한이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대한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권위원회는 장애아동에게 아동권협약 제2조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이 실제에 있어 완전하게 존중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제19항).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를 수집하여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 및 계획된 국가 장애인 조사 등 장애아동을 보조하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하나 장애아동이 사실상 겪는 차별과 이들과 가족을 위한 공동체 기반 서비스가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제42항). 아동권위원회는 2008~2010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 집중을 포함시킬 것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당국이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도 권고하였다(제43항). 201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인권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그들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수용소와 강제 조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12





V

##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2. 국군포로
3. 탈북자





# 1



## 납북억류자

### 가. 6·25전쟁 납북억류자

6·25전쟁기간 납북된 남한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의 관련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 공보처 통계국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2,438명),<sup>1</sup> 1951년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의 6·25사변 피납치인사 명부(2,514명),<sup>2</sup> 1952년 10월 정부에서 간행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82,959명),<sup>3</sup> 1953년 통계연감(84,532명), 1954년 내무부 치안국 납치자

1. 본 자료에는 피살(총 976명, 남 796명, 여 180명) 납치(총 2,438명, 남 2,345명, 여 93명), 행불(총 1,202명, 남 1,149명, 여 53명)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연월일, 피해유형, 피해장소, 약력, 주소 등 10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2. 전쟁 중인 1951년 결성된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작성한 명부로 대부분 서울지역출신 납북자의 인적사항(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연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작성된 다른 명부와는 달리, 총 17종의 직업(기타 포함)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문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납북된 주요 직업군은 반공단체인 청년단 및 민보단 442명, 실업계 391명, 정부요인 및 관공리 328명, 경찰관 및 형무관 209명, 은행가 및 회사원 209명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p. 963.

3.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개한 본 자료에 의하면 피납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명부(17,940명),<sup>4</sup> 1956년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 명단(7,034명),<sup>5</sup> 1963년 국방부가 작성한 실향사민명부(11,700명)<sup>6</sup>들이 부분적으로 전쟁 납북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명부에 수록되어 있어, 전쟁 시기 납북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표 V-1〉 전쟁 시기 납북자 규모<sup>7</sup>

구분	작성주체	시기	인원	존재 여부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
6·25사변 피납치자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6,325명)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4,532명)	×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1956년	7,034명	○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1권○ 2권×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역 별로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내무부 치안국이 작성한 명부로 납치주체를 포함한 개별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납치상황, 6·25당시 주소)이 총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 명부에서 납북자의 수가 대폭 축소된 원인은 강제 징집된 의용군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1952년 명단에 없던 사람이 본 명부에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6·25납북자의 규모가 1952년 명부에 나타난 82,959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6·25전쟁 납북자 가족으로부터 실향사민신고서를 접수받아 피랍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출생지, 최종 현주소, 최종직업(본직, 공직), 가족대표자(주소, 성명, 관계), 납치당한 장소 및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적십자사로부터 6·25전쟁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목적으로 가족들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았으나, 홍보부족으로 1952년 명부에 비해 규모가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6. 1963년 1월 1일 국방부가 발간한 실향사민 명부(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 4개 항목)는 군 차원에서 작성한 사실상 납북자 명부로, 다른 명부에 비해 납북자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의용군 등 군사적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2만 명이 넘는 납북자가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이 현재까지 1권만을 발굴하여 수록된 인원은 11,700명이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p. 959.
7.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이미 발견된 명부를 기준으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중복자를 제외한 납북자 명단 96,013명의 명단을 분석하였으며, 납북당시 연령분포는 <표 V-2>와 같다.

<표 V-2> 전시 납북자 연령분포

(단위: 명)

연령 구분	10세 이하	11~15	16~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연령 미상	계
인원	338	376	20,409	51,436	14,773	5,456	1,675	746	804	96,013
비율	0.4	0.4	21.2	53.6	15.4	5.7	1.7	0.8	0.8	100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sup>8</sup>에 따르면, 북한은 1946년 김일성 담화(7.31)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초기인 1950년 7월, 8월, 9월의 3개월 동안 대규모(88.2%)로 대한민국 국민을 납북하였다는 것이다.<sup>9</sup>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인근(4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인구수에 비해서 납북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협의회는 ‘서울의 식량상황에 관하여(1950.7.17)(북한 7인군사위원회 제18호 결정서)’<sup>10</sup>와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강원 내 제3440호(1950.9.5)’<sup>11</sup>라는 문건을 근거로 1950년 7월 초부터 서울시

8.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http://www.kwafu.org>> 참조.

9. 김일성, 『김일성전집』, 4권 (1946.7~1946.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66~69;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1』, pp. 1114~1149에서 재인용.

10. “해방된 서울시민(로동자)들로서 공산, 광산, 기업소에 취직을 알선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전출하는 사업이 각 관계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중략) 모집자 중 도주자가 있을 시 체포하라,” 『북한관계 자료집-1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3),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 <<http://www.kwari.org>>.

11. 일본 기무라 미쓰히코 교수가 구소련 기밀문서에서 발견한 북한의 제18호 결정서 제3에는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과 기관의 필요 수량 신청에 응하여 북조선의 광공업

민남북사건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치유형은 당시 북한군이 납북자들의 개인별 인적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택에 직접 찾아와 납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납치장소는 자택(72.1%)과 자택인근(8.2%)에서 발생한 비율이 80.3%로 나타나, 당시 납북행위가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 납북자<sup>12</sup>의 대부분은 남성(98.1%)이었고, 납북자의 직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경찰, 공무원, 군인, 변호사, 검찰간부, 국회의원, 언론인, 학생, 교수, 교원 등 지식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납북자 중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되었고, 이들 중 남자는 19명, 국적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었으며 6명이 성직자들이었다. 2007년 4월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해제 문서도 납북자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중요 인사들은 중국에 넘겨지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sup>13</sup>

전쟁납북자들 중 귀환자는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규모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 납북자 중 전쟁 이후 귀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북한체제에 불가피하게 적응하여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식량난 이후 탈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 귀환 납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고연령이며 납북자 본인들이 북측가족들에게 전쟁납북자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951년 9월 1일 부산에서 결성된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납

기업과 농촌에 50만 명의 주민을 시로부터 조직적으로 후송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최고 권력기구인 7인 군사위원회가 서울시 임시 민민위원회 위원장(이승엽)에게 보낸 문건이다.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 <<http://www.kwari.org>>.

12. 전쟁당시 납북자 유형은 월간조선사, 『6·25 납북자 82959명』(서울: 월간조선사, 2003).

13. 1951년 8월 8일자 ‘만포진 포로에 대한 북한인들의 취급’ 보고서는 독립운동가인 박모씨가 1950년 9월 남측의 주요 인사 4,600명을 북한으로 집단 납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납북자가 10월 19일 만포진에 도착한 이후 대다수는 이곳 수용소에 수감됐으나 중요 인사들은 압록강너머로 이승태 만주공안경찰에게 넘겨졌다고 기록했다. 『연합뉴스』, 2007년 4월 13일.

북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1954년 3월 1일 휴전협정에 따라 실향민 교환이 있었으나, 북한은 외국인 19명만을 송환하고 납북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는 국제적십자사와 유엔을 통한 가족송환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1956년 대한적십자사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7,034명의 납북자 신고를 접수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접수된 명단을 국제적십자사에 전달하고 북한적십자사와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57년 2월 26일 북한적십자사의 남북회담제거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11월 7일 북한적십자사가 337명의 납북자 생존사실과 주소와 직업을 ‘실향사민소식조사회답서’라는 제목으로 회신하여 왔다. 같은 해 12월 3일 북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월남 인사 14,132명의 행방 조사를 요청하여 왔다.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회원들이 당시 납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던 휴전협정위원회를 3차례 방문하여 정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1960년 6월 30일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전쟁납북자들의 문제는 2000년 11월 30일 ‘6·25사변납북자가족회’가 창립되고, 2001년 9월 6일 동 단체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로 개칭되면서 활발하게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02년 3월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발굴하여, 이를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94,700명의 명부를 발간하였다. 또한 2005년 6월 납북자 명부를 수정·보완하여 동 단체 산하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을 설립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납북사건목격자 증언을 채록하고, 이를 웹상으로도 공개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활동을 통해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쟁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이 보다 빠른

14.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 <<http://www.kwari.org>> 참조.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08년 8월 19일 납북자문제가 “한국사회에서조차 여론화하기 어렵고 목격자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UCC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한국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은 2006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권을 발간하고, 2009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권을 출판하였다.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사회담에서 남북한은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2005.6.24)에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공동보도문 제3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6차 적십자사회담(2005.8.23~2005.8.25)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2005.9.13~2005.9.16)에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22일 제13차 이산가족 상봉시 처음으로 전쟁납북자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4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납북당사자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이들 중 1명(이경찬)이 납북자(이경찬의 숙부)가 북한에서 형성한 가족들(숙모와 사촌동생)을 상봉하였다. 2006년 6월 제14차 이산가족 상봉 시에도 8명의 전쟁납북자 가족이 상봉신청을 하였으며, 북측이 1명(유정옥)의 부친(이봉우) 생존을 확인해 주었으나 2주일 후 다른 사람이라고 번복함으로써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상봉을 신청한 8명 가족 모두 납북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7년 5월 제15차 이산가족 상봉시 전시 납북자 4명의 생사확인이 의뢰되었고, 1명 사망 확인, 3명 확인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사망 확인된 1가족이 북측가족을 상봉하였다. 201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어 6·25전쟁 납북역류자 가족의 5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sup>15</sup>

전쟁 시기 납북억류자 문제는 남북 간 체제경쟁시기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발생한 실종사유에 대해 월북과 납북여부를 명확히 구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납북자의 ‘행방불명’이 가족 전체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에 이어 2008년 7월 23일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2월 13일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정부위원(5명)과 전신납북자가족(3명), 민간위원(6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4년간 전국 시군구단위에서 납북피해신청을 접수하여 정부차원에서 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강제 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sup>16</sup> 동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국장급 공무원과 전문가, 납북자가족단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납북자 결정 예비심사, 신고 홍보방안 구상 등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11년 12월까지 총 4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납북피해 신고 접수된 총 1,034건 중 319건에 대해 납북자 여부를 심사하고 이 중 272건을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하였다.

15. 『내일신문』, 2010년 11월 4일.

16. 『매일경제』, 2010년 12월 13일.

〈표 V-3〉 6·25전쟁 납북자 결정 현황

(단위: 명)

결정건수	결정내용		
	납북자 결정	납북자 비결정	납북 판단불능
319	272	28	19

출처: 통일부 6·25 납북진상규명사무국

## 나. 전후 납북역류자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835명이고, 이들 납북자 중 일부가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7</sup>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귀환하였고, 최근 탈북하여 귀환한 8명을 제외하면 현재 총 517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V-4〉 납북 및 억류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납북	3,835	3,729	50	30	6	20
귀환	3,318	3,271	39	-	-	8
억류	517	458	11	30	6	12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17. 귀환 납북자 1000에 따르면, 봉산 21호와 22호 선원 27명은 해주에서 평양으로 이관되어 어선이 간첩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건강하고 일정수준(고교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부 7인을 선발하여 청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어부들은 귀환 조치하였다.

〈표 V-5〉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억류자 수	누계	연도	억류자 수	누계
1955	10	10	1973	8	430
1957	2	12	1974	30	460
1958	23	35	1975	28	488
1962	4	39	1977	4	492
1964	16	55	1978	4	496
1965	20	75	1980	1	497
1966	19	94	1985	3	500
1967	52	146	1987	13	513
1968	133	279	1992	1	514
1969	20	299	1995	1	515
1970	36	335	1999	1	516
1971	20	355	2000	1	517
1972	67	422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표 V-6〉 귀환 납북자 현황

성명	납북일자	직업	귀환일자
이OO	1970.04.29.	봉산22호 선원	2000.07.26.
진OO	1967.04.12.	천대11호 선원	2001.10.30.
김OO	1973.11.24.	대영호 기관장	2003.06.23.
고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5.07.12.
최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1.16.
이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9.10.
윤OO	1968.07.02.	금융호 선원	2008.01.09.
윤OO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9.02.26.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북한당국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의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이후 총 3,729명의 어부를 납북하였다가 3,263명을 돌려보내고, 8명이 자력으로 탈북 귀환하여 현재까지 458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납북어부들 중에는 선장이 주도하여 위장 납북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월북자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또한 1974년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여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수원 32호의 선원 14명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북한이 구조하여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납북어선들의 경우 일부 어부들이 기록 없이 승선하거나 승선자의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는 월북으로 처리되었던 군무원의 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납북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7급 군무원이던 조병옥은 1977년 10월 21일 경남 진해시 육군 제3정비창에서 정비반장으로 일하다 2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조종사와 함께 월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민원제기로 인해 통일부가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군검찰 수사 기록 검토에 따라 월북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정 승무원 2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1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옌지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목사 안승운을 강제 억류하고 있다.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함북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4~5명과 중국 조선족 류○○ 등 4명 등 모두 8~9명의 납치전문 공작조에 의해 납북된 김동식 목사가 회령시 곡산공장(담배공장) 보위부장 ○○○에게 인계되었다. 피납탈북인권연대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0년 11월 평양 만경대 초대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전향 및 협조

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다 각종 고문을 받았고, 폐쇄공포증과 영양실조 등으로 탈진상태에서 직장암 등이 악화되어 2001년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8</sup> 피납탈북인권연대 도희운 사무총장은 “외국의 정보소식통을 통해 김 목사의 시신이 평양 상원리 소재 91훈련소 위 수구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97년에 남파간첩 신문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납북억류자 김영남, 홍진표, 이명우, 이민교, 최승민 등 5명은 이전까지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김영남(당시 군산공고 재학)은 1978년 8월 5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홍진표(당시 천안상고 재학), 이명우(당시 천안농고 재학)는 1978년 8월 10일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이민교, 최승민(당시 평택태광고 재학)은 1977년 8월 전남 흥도 해수욕장에서 각각 실종되었다. 이들 모두는 당시 고교생으로서 방학 동안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북한으로 귀환하던 남파간첩에 의해 납북되었다.

귀환 납북자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의 납북자관리카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생환 납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추가 명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피해위로금 심의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또한 동 단체는 2005년 2월 1일, 1971년과 1972년에 납북된 36명이 1974년 묘향산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으며, 2003년 귀환한 납북자 김○○는 1981년 원산에서의 3개월 재교육 시 정형래(오대양 62호), 김옥률, 박영중, 박양수(오대양 61호) 등을 만났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9</sup> 2007년 12월 2일 납북자가족모임은

18. 『연합뉴스』, 2005년 1월 6일.

19. 『중앙일보』, 2005년 2월 3일; 원산시 송도원 소재 ‘장덕산 여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외사업부 62연락소)은 3층 규모의 본관 건물과 별도 건물(식당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북억류자들은 여기서 중앙당 파견 강사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납북자 ○○○은 62 연락소 사상교육 기간 동안 평양 등 북한유적지 견학(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만수대, 전승기념관, 만경대 고향집, 문화궁전, 지하철 등 시설문 견학, 집단체조 관람)을 3회 42일간 참여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1972년 납북되었던 유풍호 선원 5명이 납북 5개월 뒤인 1972년 11월 9일 북한 모처에서 찍은 사진 등 사진 2점과 편지 2통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사진 뒷면에는 ‘1972.11.9 사회주의어로 진출하는 기념사진’이란 글과 ‘남정렬, 배민호, 리수석, 리원제, 김길정’이라고 쓰여 있다. 2008년에도 가족모임은 납북억류자들의 사진을 입수하여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1985년 강원도 원산에서 집단교육 기간 동안 함북 ‘나진혁명전적지’ 참관 기념사진에는 북한지도원 2명을 제외한 31명의 납북어부가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어부는 박시동(천왕호 선원)을 포함 23명(박영석, 정복식, 김용봉, 정철규, 최효길, 탁채용, 최영철, 윤종수, 이병기, 김의준, 김일만, 홍복동)인 것으로 알려졌다.<sup>20</sup> 귀환납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그림 V-1>과 <그림 V-2>에서와 같이 북한억류 납북어부들을 정기적으로 집단 소집하여 사상교육과 평양 등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월 출범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기존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길용호 선원 14명(1966.1.22)과 남풍호 선원 6명(1967.12.21), 파월장병 2명, 무동력선 5명(1967.8.5), 육군 2사단(1962.7.14) 4명, 대한호(1968.1.11) 6명, 진북호(1992.8.27), 덕성호(1968.7.12), 육군제3정비창(1967.10.12), 오대양 61호(1972.12.28) 각 1명을 포함 총 41명이 납북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1994년 7월 30일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 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국제앰네스티의 발표가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1994.8.10)과 유성근(1994.8.11)을 북한 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진월북’을 밝히게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파간첩에 의해 납치된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20. 『조선일보』, 2008년 5월 19일.

〈그림 V-1〉 납북자 사진



출처: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중앙일보』, 2005년 2월 1일.

〈그림 V-2〉 납북자 사진



출처: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조선일보』, 2008년 5월 19일.

〈표 V-7〉 추가 확인된 납북억류자 명단

납북사건	납북연도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직책
육군2사단	1962.07.14.	최제하	1939.03.04.	경북 영양	육군 상병
육군제3정비창	1977.10.12.	조병욱	1940.01.31.	경남 진해	군무원
길용호	1966.01.22.	박성만	1917.02.23.	경남 통영	선장
"	"	김광섭	1918.10.09.	"	기관장
"	"	양호근	1925.03.05.	전남 완도	선원
"	"	정복식	1941.08.28.	"	"
"	"	이덕환	1911.10.23.	경남 통영	"
"	"	김두석	1931.01.19.	경남 거제	"
"	"	남정식	1928.02.15.	경남 산청	"
"	"	이생기	1919.12.	경남 남해	"
"	"	김경남	1935.	경남 통영	"
"	"	이수태	1935.	"	"
"	"	정의도	1938.08.10.	부산 서구	"
"	"	서일용	1937.07.23.	경북 영일	"
"	"	박장운	1937.07.18.	경남 통영	"
"	"	박복금	1926.11.17.	부산 영도	"
남풍호	1967.12.21.	김영필	1935.05.18.	강원 고성	기관장, 선주
"	"	백동현	1942.03.14.	"	선원
"	"	김승욱	1919.07.09.	"	"
"	"	이영준	1945.05.16.	강원 양양	"
"	"	김봉래	1928.12.07.	강원 고성	선장
"	"	최성문	1936.	"	선원
파월장병	1966.09.09.	안학수	1943.09.23.	경북 포항	육군 하사
무동력선	1967.08.05.	배승운	1929.02.10.	인천 옹진	선주
"	"	배승구		"	선원
"	"	정철규	1943.05.05.	"	"
"	"	안흥호	1967.06.04.	"	"

납북사건	납북연도	성명	생년월일	당시주소	직책
무동력선	1967.08.05.	황정순	1947.02.09.	인천 옹진	선원
파월장병	1965.11.03.	박성렬	1943.10.19.	충북 진천	병장
진복호	1992.08.27.	이철진	1947.02.05.	전남 신안	선주, 선장
덕성호	1968.07.12.	이양진	1945.05.20.	전남 신안	선원
오대양 6호	1972.12.28.	전옥표	1946.11.18.	경남 거제	"
대한호	1968.01.11.	장영찬	1938.02.23.	강원 고성	선장
"	"	김구양	1933.	불상	기관장
"	"	김태순	1945.	불상	선원
"	"	윤영주	1933.10.20.	강원 고성	"
"	"	이상기	1918.	불상	"
"	"	이국현	1943.12.29.	광주 광산구	"
육군2사단	1962.07.14.	우지원	1930.10.05.	경남 창원	중위
"	"	이금섭	1934.07.19.	충북 청원	상사
"	"	박기찬	1939.01.19.	서울 영등포	병장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텔어디스였던 성경희, 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억류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3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억류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 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또한 북한은 납북억류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남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2000년 6월에 탈북, 귀환한 납북어부 이○○의 증언에 따

르면, 납북어부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대남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도 대남간첩교육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sup>21</sup>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앰네스티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표 V-8〉 정치범수용소 수용 추정 납북자 명단(22명)

성명	입북연도	직업
이영훈	1992.04.	변호사 사무장
정락호	1991.07.	조광해운 선원
이재관	1989.12.	삼성전자 대리점 근무
조흥래	1992.08.	운동기구점 운영
최희창	1991.10.	조광해운 선원
이대식	1988.09.	파라과이 이민
신원식	1991.06.	美교량설계원
강광석	1992.12.	부동산 중개업
김성배	1983.05.	건설회사 임원
김순성	연도미상	서독 광부
이재환	1987.07.	재미유학생, 前민정당 이영욱의원 아들
최종석	1987.01.	동진 27호 납북선원
김원석	1990.02.	관광사 대표
양철성	1988.09.	부동산 중개업
김성진	1984.09.	군인 이병

21\_ 북한이탈주민 OOO, 2004년 1월 7일, 서울에서 면접.

성 명	입북연도	직 업
권오문		신원 미확인
조생구		신원 미확인
서학식		신원 미확인
박충신		신원 미확인
이찬수		신원 미확인
유재원		신원 미확인
김춘길		신원 미확인

출처: 『연합뉴스』, 1991년 1월 31일.

한편 북한당국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에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강제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 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금 및 불법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안 목사 사건이 북한 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 측에 안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직도 안 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제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000.11.30~2000.12.2)때 평양에서 남측의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1987.1.15) 동진호 선원 강희근과 제3차 상봉(2001.2.26~2001.2.28)때 역시 평양에서 남측의 어머니와 상봉한 납북(1969.12.11) KAL기 스튜어디스 성경희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거입북자’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납북역류자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2001년 초 북한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남측 후보자 200명의 재북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서에서 1987년 납북된 이재환의 사망사실을 알렸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납북

자 가족단체는 북한당국에 대해 이재환의 사망 시기와 사망 원인을 밝히고 유해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002.9.13~2002.9.18)을 통해 남북(1968.4.17) 창영호 선원 정장백이 금강산에서 남측 어머니를 상봉하였다. 2003년에는 제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20~2.25),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6.27~7.2),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9.20~9.25)시 남북(1972.12) 오대양 61호 선원 김태준, 남북(1967.5.23) 창성호 선원 윤경구, 남북(1987.1.15) 동진호 선원 김상섭이 각각 남측의 어머니를 상봉하였다.<sup>22</sup> 2004년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3.29~4.3)시에 남북자 유성근이 남측의 형 유형근을 만났으며, 유성근은 남북 이후 “통일연구소에서 20여 년간 연구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2004.7.11~2004.7.16)에서도 남북자 3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제12차 상봉(11.5~11.10)시 남북자 정일남이 가족들을 상봉하였다.

남북자가족모임이 1977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의 남편 김철준이 1977~1978년에 납치된 한국인 고교생 5명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에 신원확인을 요청하였다. 일본 정부는 DNA 조사결과를 토대로 메구미의 딸 김혜경이 1978년 선유도에서 납북된 김영남과의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고, 메구미 가족과 김영남 가족이 상봉하였다. 북한이 제1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김영남을 포함시킴으로써 김영남 모친과 누나가 김영남과 메구미의 딸을 상봉하게 되었다. 2006년 6월 29일 김영남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납치도 자진월북도 아닌 대결시대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돌발 입북’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당시 선유도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뒤 이를 피해 바닷가에서

22.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협상의 경과와 성과,”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국가인권위원회주최 공청회, 2003.12.19).

나무쪽배를 탔다가 망망대해로 흘러간 뒤 북측선박의 구조를 받아 북으로 가게 되었다고 입북과정을 설명하였다. 2000년 이래 17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측에 전후 납북억류자 97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한 결과 15명 생존, 19명 사망, 63명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생존자 15명 중 14명이 남측가족과 상봉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있어 상봉행사에 16가족 73명이 동반 참여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06년 7월 31일 남북 동진호선원(1987.1) 입국 재가 세 차례 탈북을 시도하다, 청진 수성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납북억류자 문제에 대해 북한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북한에 입국한 ‘의거입북자’ 혹은 북한체류를 희망한 자라는 이유로, 납북억류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논의를 거부하여 왔다. 납북자문제는 ‘자국민 보호’ 의무뿐만 아니라, 관련 가족들의 인권침해문제로서도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이다. 이러한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남북당국 간 협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북한당국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용어와 관련하여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실종자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2002년 9월에 열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지난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2005.6.24)에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공동 보도문 제3항)”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6차 적십자회담(2005.8.23~2005.8.25)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2005.9.13~2005.9.16)에서 남측은 시범생사확인사업 등 납북자문제와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지

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생사확인 대상을 군인, 민간인 구분 없이 '전쟁 시기 행불자'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일반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사확인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방식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2006.2.21~2006.2.23)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전후 남북자문제가 남북 간 공식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 간 남북자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북자가족모임이 남북자의 명단을 대북전단에 담아 보내는 사업을 추진하자 북한당국은 크게 반발하였다.<sup>23</sup> 2009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정부는 남북자문제 등 남북 간 인도주의사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전후 남북자 11명의 생사확인이 북측에 의뢰되었으나, 전원 확인 불가능 통보를 받았다.<sup>24</sup>

2007년 4월 2일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남북피해자가 귀환하는 경우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인과 가족이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법률 시행령이 2007년 10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07년 11월 30일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11년 12월까지 총 40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위로 금 및 보상금 심의를 결정하여 왔다.

23. 『로동신문』(2008년 11월 29일)은 <빠라살포사태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라는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이 북한에 대한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였다.

24. 『내일신문』, 2010년 11월 4일.

〈표 V-9〉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및 인정 현황

(단위: 건)

구분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보상금	합계
	어부	KAL	군·경	기타	소계			
신청건수	377	11	20	20	428	8	12	448
인정건수	370	11	20	15	416	8	1	425
불인정건수	7	0	0	5	12	0	11	23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표 V-10〉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구분	신청(건)	지원 결정(건)	지원액(천 원)	비고
합계	448	425	14,510,497	지원액은 지급 결정액 기준임.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573	
정착금· 주거지원금	8	8	1,528,320	정착금 1,017,767천 원 주거지원금 510,553천 원
보상금· 의료지원금	12	1	67,604	보상금 51,491천 원 의료지원금 16,113천 원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한편, 1985년 독일에서 가족을 동반하여 자진 월북 후 1년 뒤 홀로 탈출에 성공한 오길남씨의 부인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영의 딸’ 신숙자씨와 두 딸의 생사확인 및 송환 운동이 2011년 5월 신숙자씨의 고향 통영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1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길남씨를 면담하고 12월에는 캐나다 의회가 신숙자씨 모녀 관련 결의를 채택하는 등 국제 사회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 2



## 국군포로

국군포로는 적국 등에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인을 의미한다. 6·25전쟁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만 2,000여 명이었으나,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전쟁포로 상호 교환에 의해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전투 중 행방불명자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모든 미귀환 국군포로는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기준으로 귀환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고 있다.

〈표 V-11〉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연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귀환포로	1	1	4	2	9	6	6	5	14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귀환포로	11	7	4	6	3	1	-	-	80

출처: 국방부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전쟁 시기 인민군으로 재편입되거나, 휴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부분 탄광, 기업소, 농촌지역에 집단배치되어 전후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 12일 발표된 미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sup>25</sup> 수천 명의 국군포로들이 1951년 11월~1952년 4월 오희츠크 등 소련 극동항구로 이송된 뒤 야쿠츠크 주변의 콜리마 수용소 등으로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6</sup> 추크치해 지역으로 이송된 포로들은 최소 1만 2천 명에 달하고, 도로 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7년 12월 18일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 문서 작성자를 비롯해 국군포로 소련이송을 주장한 구소련 장성 강상호의 아들, 카자흐스탄 거주 한국전 참전 고려인 10여 명, 귀환 국군포로, 러시아 체류 탈북자 100여 명의 증언,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국군포로 이송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sup>27</sup>

25.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후 6·25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러시아 생존 여부 확인 및 유해 발굴,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만든 '미·러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위원회'가 조사활동 결과의 하나로 1993년 8월 26일 작성한 것이다.

26. 『연합뉴스』, 2007년 4월 13일.

27.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박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을 발주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사실규명을 위해 구소련 강제수용소가 위치했던 시베리아 마가단 지역을 방문조사하고, 6·25전쟁 중 미군 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미·러 합동연구조사 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용역에서 국군포로 소련 이송 관련 사실에 부합하는 탈북자의 증언을 일부 수집하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국군포로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안화식, 우광운, 장○○,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sup>28</sup> 무산탄광(리갑도, 강영호, 리희근),<sup>29</sup>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장용연, 류태인, 오○○, 이증호, 정수환)<sup>30</sup> 등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공민증을 받고 집단수용소에서 사회로 배치되었으나, 대부분이 집단수용소 시절 생활하였던 탄광에 배치받음으로써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군포로들은 출신성분 때문에 북한 생활과정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거주지역과 직장 선택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의 출신성분이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군포로들의 자녀들도 입당과 진학, 직장 선택에 차별을 받게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국군포로들을 ‘괴뢰군’(포로병)이라고 호칭하였다.<sup>31</sup>

1990년대 이후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연로보장자에 해당

28\_ NKHR2008000021 2008-09-23.

29\_ NKHR2008000016 2008-09-02.

30\_ NKHR2008000011 2008-08-12.

31\_ 위의 증언.

하나, 2002년 7·1조치 이후 사회서비스의 유료화 및 실질물가 폭등으로 인해 연료보장에 의존해서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경지역 거주자들의 탈북 증가 및 한국의 국군포로 귀환정책 등을 포함한 외부정보유입으로 일부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또한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송환활동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 입국한 국군포로 가족은 국군포로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재북가족이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국군포로 한OO이 탈북하여 한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중국에 체포되어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8월에도 탈북 국군포로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그 해 9월 북송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국군포로들의 탈북 증개에 관여하다가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sup>32</sup>

이제까지 2~18차 남북적십자 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국군포로 126명의 생사확인 의뢰가 이루어져, 19명 생존확인, 14명 사망확인, 93명 확인불가, 17명 상봉이 성사되었다.<sup>33</sup>

귀환한 국군포로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거 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32. 세별군 안원리 거주 고OO과 군보위부 원천지도원 황OO이 단속되어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6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2006년 7월 온성군 삼봉구 엄OO이 국군포로를 넘겨주다 체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9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33. 2010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서필환(82세)의 사망확인이 이루어졌고, 전사로 처리되었던 4명(이원직 77세, 이종렬 90세, 윤태영 79세, 방영원 81세)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 3



## 탈북자

### 가. 재외 탈북자 현황

자유권 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제2항).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등 실태 파악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이동경로인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합법적인 해외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sup>34</sup>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2005년 2월 미 국무부는 탈북자의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었으며, 2000년 경에는 7만 5천 명~12만 5천 명 선으로 추

<sup>34</sup> 러시아 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 등을 이탈하여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탈북주민의 규모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나, 정확한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응답자 중 러시아에서 입국한 사례가 NKHR2011000410 외 11건 확인되고 있다.

산되었다고 밝혔다.<sup>35</sup> 좋은벗들은 2005년 6~7월 국경에서 500km 반경에 있는 동북3성 농촌지역에 대한 중국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탈북자 규모가 5만 명 선인 것으로 발표하였다.<sup>36</sup> 2006년에는 동북3성 서북쪽 오지 한족마을(약 2만 명)과 선양, 따렌, 칭따오 등 대도시 근교지역(약 3만 명)을 조사하여 탈북자 10만 명, 탈북자가 출산한 어린이들이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재추정하였다.<sup>37</sup>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도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와 중국 조선족과의 현지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자의 규모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8</sup> 2008년에는 중국 내 탈북자가 크게 감소되어 2~4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되었다.<sup>39</sup> 존스 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원 코트랜드 로빈슨(Courtland Robinson) 교수는 2009년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탈북여성,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를 각각 5,688명(최소 3,305~최대 9,109명), 4,737명(최소 2,741~최대 7,599명), 6,913명(최소 3,606~최대 11,063명) 선으로 추정하였다.<sup>40</sup>

35\_ 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 Government Policy Toward Them*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February, 2005).

36\_ 『연합뉴스』, 2005년 8월 21일.

37\_ 좋은벗들은 2006년 1월 국경주변 135개 마을을 표본조사하였고, 이들 마을에서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267명으로 파악되었다. 1999년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북한 여성의 수를 토대로 아동 출생률을 22%로 계산하고, 당시 북한 여성 탈북자 규모 225,000명을 감안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가 49,500명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산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들이 있다. 탈북여성들이 강제송환 이후 재탈북 혹은 중국내 이동을 통해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도 파악되고 있다.

38\_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Policy Report* (October, 2006).

39\_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rch, 2008).

40\_ Courtland Robinson, "Population Estim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Migrants and Children Born to North Korean Women in Northeast China" (May, 2010),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0.12.7). 본 조사는 동북3성의 무작위로 선정한 108개 지역에서 324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에는 탈북자들이 주로 동북3성지역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국 측의 단속이 강화되고 탈북자들의 현지어 습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족마을 및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sup>41</sup> 지속적인 강제송환,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증 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sup>42</sup>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 당국에 의한 국경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2009년 이래 국가안전보위부 차원에서 탈북자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2010년에도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sup>43</sup> 사상교양 강화,<sup>44</sup>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 검열,<sup>45</sup>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에도 탈북자 단속 강화 경향은 계속되었는데,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 차원에서 국경경비대의 탈북자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헤산시의 국경초소에는 인민무력부 산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 배치되었으며, 10월 25일에는

41.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0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는 내용의 ‘0082지침’을 변경지역 군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42. 국경지역통행증 발급을 위해 뇌물을 지급해야 하기는 하지만, 발급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77호 (2010.11.17).
43. ‘법일꾼’(보위부, 보안서, 검찰 등)도 친인척 중 탈북자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 해임, 철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1호 (2010.1.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4호 (2010.3.2);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2010년 5월 호구 조사와 함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집중검열’을 실시한 이후 탈북자 가족들을 오지에 ‘추방촌’을 조성하여 강제 추방하였다. 열린북한방송은 북한인민보안부가 전국 시군구역단위별로 ‘타격대’를 조직하여 탈북자 및 행불자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2010.8.16)하였다. NK지식인연대도 2010년 4월 지시에 따라 6월에 조직된 타격대가 2010년 무산군에서 열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2010.7.7)하였다.
44. 중앙당은 2010년 1월 27일에 2월을 국경연선 집중숙박 검열기간으로 지정하였다 (2010.1.27). 또한 탈북자 발생시 기업소 당비서와 행정책임자 등 상급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32호 (2010.2.18).
45. 좋은벗들에 따르면 2010년 초 국경연선지역에서는 친인척도 무단숙박이 신고되면 처벌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6호 (2010.1.19).

해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측 도로에 올라섰던 한 탈북자가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고 12월 31일에도 40대 북한 남성 3명이 역시 해산에서 압록강을 건너다 북한 경비병들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적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해상탈북을 막기 위해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sup>46</sup>

〈표 V-12〉 탈북과정 중 사살 사례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장소	사건내용
NKHR2010000040 2010-10-26	특문	2010.	함북 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경비대</li> <li>• 사전경고: 했음.</li> </ul>
NKHR2012000003 2012-01-10	특문	2011.11.	양강도 해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5명</li> <li>• 증언자는 2011년 11월 탈북과정 중 5명이 사살되었다고 특문함.</li> </ul>

외부소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탈북자를 ‘적대계급’으로 규정한 북한 당국은 1천 가구 이상의 탈북자 가족을 산골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으며,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탈북자 가족에 대한 박해가 한층 심해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47</sup> 이와 같이 탈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 등 탈북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sup>48</sup> 또한 탈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국경수비대들이 탈북자로부터 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sup>49</sup> 또한 탈북을 도와주는 군인 등 중개인들이 금품을 받고 사후 밀고하는 경우가

46. 『연합뉴스』, 2011년 11월 7일; 『YTN』, 2012년 1월 3일. 2011년 한 해 동안 서해를 통해 4건, 동해를 통해 2건 등 총 6건의 해상탈북사례가 있었다. 『연합뉴스』, 2011년 11월 6일.

47.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4월 5일.

48. 윤○○, “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료회의(2010.6.14).

4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53호 (2010.7.14).

발생함에 따라<sup>50</sup> 사전에 국경지역 경비상황 등을 숙지한 후 단독으로 탈북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51</sup>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단속될 위험도 커지게 되면서, 단순히 중국에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탈북주민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조선족, 한족 등 중국인들의 불법이주지역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 이스라엘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여 왔다. 2004년 이후 한국이나 미국 등에 정착하기 위해 태국에 밀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6명, 2005년 115명, 2006년 752명, 2007년 1,785명, 2009년 1,838명, 2010년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sup>52</sup> 이에 따라 태국에 불법입국하다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이민국 감호소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단식농성도 이루어짐에 따라, 입국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영국 등 유럽연합국가에 정치적 망명(난민 지위)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 등 중국인이거나 한국에 이미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로 망명신청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근무지를 이탈한 북한주민, 자금력을 보유한 극소수 등을 제외하고는 서방국가 망명신청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0. 국경경비총국사령부가 2010년 2월부터 비법월경단속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면서, 도강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상급단위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제366호 (2010.9.15).

51. 황해남도 출신인 북한이탈주민 ○○○은 국경경비대 출신 제대군인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후 2008년 단독으로 탈북하였다. NKHR2011000028 2011-01-25.

52. 『자유아시아방송』, 2011년 5월 7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을 속이고 제3국에 위장 망명을 신청한 경우 한국 정부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재외 탈북자 체류 유형

탈북사태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짧지 않은 기간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체류실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에는 국경지역 북한주민들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아서 곧바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친척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에 친척을 두고 있지 않은 북한주민들도 생존을 위해 무작정 국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이들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인 중국 조선족들로부터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거나 그들의 집에서 일을 해 주고 약간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 중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러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미혼 여성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성들은 소개로 만나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도 있으나,<sup>53</sup>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려 강제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54</sup>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sup>55</sup>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53. NKHR2010000027 2010-11-26; NKHR2010000084 2010-03-30; NKHR2012000007 2012-01-10.

54. NKHR2010000001 2010-05-25 외 45건; NKHR2011000014 2011-01-04 외 85건.

55. 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1000052 2011-02-15; NKHR2011000057

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한 여성이 매매형태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들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강을 넘은 북한 여성이 중국 내에서 남성과의 동거생활 이외의 다른 체류방식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중국 내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강을 넘은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체포위험성 등 자신들의 불가피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sup>56</sup> 중국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호구를 취득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sup>57</sup> 또한 중국 남성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sup>58</sup> 일부 탈북여성들이 출산한 아동들은 중국호구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sup>59</sup> 그러나 탈북여성들이 강제 송환되는 경우 상당수의 자녀들이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또 대다수의 탈북여성 자녀들은 중국호구가 없어 적절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만 명에 달하는 이들 탈북 고아 문제가 최근 중요한 인권 문제로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up>60</sup>

탈북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체류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탈북주민들은 친척이나 조선족들 집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한족 등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탈북주민들이 중국어를 익히고, 취업을 하는 등 중국 내에서의

2011-02-22; NKHR2011000073 2011-03-22; NKHR2011000109 2011-05-11; NKHR2011000138 2011-06-14; NKHR2011000212 2011-10-04; NKHR2011000224 2011-10-19.

56\_ NKHR2010000007 2010-03-16; NKHR2010000015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57\_ NKHR2010000060 2010-05-18; NKHR2010000063 2010-05-18; NKHR2010000095 2010-03-23; NKHR2011000005 2010-08-10; NKHR2011000072 2011-03-22; NKHR2011000109 2011-05-11.

58\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28건; NKHR2011000014 2011-01-04 외 31건.

59\_ NKHR2010000001 2010-05-25 외 19건; NKHR2011000014 2011-01-04 외 21건.

60\_ 『미국의 소리 방송』, 2011년 11월 5일.

적응능력을 높이게 되는 경우에는 셋집을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일부는 중국 체류과정에서 마련한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등 나름대로 체류방식을 체득하게 되었다.<sup>61</sup>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탈북여성이 중국 체류 중인 한국 남성과 동거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동거남성이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혜택을 알고 중국체류 탈북여성에게 한국입국을 권유하여 브로커를 통해 입국하기도 한다. 또한 조선족 동거남성과 위조 중국여권으로 한국 취업비자를 받아 동시에 입국하였다가 정착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sup>62</sup>

200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던 탈북자들이 한국입국을 서두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 국내입국자 중 일부는 중국체류 10년 이상을 근거로 비보호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와 탈북자들의 농성으로 인해 2009년 1월 관련 법률 일부 개정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sup>63</sup> 이에 따라 중국 내 장기체류자들이 중국 출산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sup>64</sup>

61\_ NKHR2011000030 2011-01-04.

62\_ NKHR2011000127 2011-05-31; NKHR 2011000192 2011-08-23.

63\_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009년 1월 30일 신설.

64\_ NKHR2010000065 2010-10-12. 일부는 중국 내 출산아동 친부의 동의 없이 아이와 함께 입국하기도 하며, 특히 아동이 여아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남아인 경우 중국 부친 혹은 조부모의 양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으나, 여아인 경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다. 인신매매 유형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반인권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이 인신매매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인신매매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하고 있다. 여기서 착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착취는 “매춘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준하는 행태 및 노예제, 장기절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밀입국 알선(human smuggling)과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sup>65</sup>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국제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보고서들은 이들 여성들의 강제결혼 혹은 매춘 등을 부각시키면서, 심각한 인신매매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을 알제리, 오만, 카타르 등 16개국과 같이 제3군으로 분류하면서, 상업적 성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성인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및 인신매매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범죄와 기타 다른 형태의 불법밀입국 범죄

65.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3.

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6</sup>

탈북자의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기별 유형변화와 더불어 북한당국의 처벌양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도강 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외모가 좋은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유인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 1997~1998년에는 가족 중 한 명의 입이라도 터는 것이 급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강력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북한주민의 불법국경이동과 관련 알선행위가 실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단순 밀입국 알선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즉 중국으로의 불법이동을 주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북한주민들 자신이나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되며, 이러한 경우에 북한알선자가 북한주민을 중국 조선족에게 인계하면서 금품을 거래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 내에서의 도강중개인들은 중국 조선족과의 밀접한 연계를 갖고, 북한주민들의 불법 국경이동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의 불법 국경이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상당수가 전문안내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하였다. 당시 단신으로 강을 건너왔으나 중국에서 별다른 친척이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북한주민들은 강변에서 이들의 불법 국경이동을 목격한 중국 조선족들이 호의를 보일 경우 이들을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주민을 다른 조선족들에게 인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66. US Department of State,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June, 2007). <<http://korean.seoul.usembassy.gov/uploads/images/KvT6tA2qzNuoSxuRtB5Qpw/TraffickingInPersonsReportNK.pdf>>.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개 국경지역에서의 장기체류는 위험하니, 단속의 위험이 덜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북한주민이 이에 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북한주민의 불법 국경이동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조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시장에서 북한주민을 붙잡아 넘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빈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인신매매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에서 여자를 모아서 넘기는 사람과 중국 국경 강변에서 인계받는 사람, 그리고 일정 장소에서 북한 여성들을 은신시켜 두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 등이 관여하며, 단계별로 거래 비용은 상승하게 되었다. 인신매매 조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여성을 납치하여 거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3성의 내지까지 북한주민들이 거래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도 노동력이 귀한 오지지역으로의 거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당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인신매매사태는 크게 근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중국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북한주민들이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북한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인신매매에 관련된 조선족 등 중국 남성과 동거하는 북한 여성이 다른 북한 여성들을 다른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선족 등 중개인들은 탈북여성들을 한족남성들에게 넘기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연락하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다시 연계시키면

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여성들은 도시로 혹은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결혼대상자 혹은 단순히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잠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국경을 넘는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서 거래되게 된다. 일부 여성들은 본인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도강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강’을 의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67</sup> 탈북여성들이 국경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소개되는 과정에서 중국 중개인들의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68</sup>

인신매매는 중국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북한 여성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으로부터 인신매매자로 경계대상이 된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한 변방대대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 중국 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성적 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 동거남성을 찾지 않게 된다. 중국 남성과 장기간 동거하게 되는 경우 임신하게 되면, 유산 혹은 출산을 동거남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거남성이 북한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수록 출산을 선호하게 되며, 북한 여성에게

67. NKHR2010000031 2010-11-09.

68. NKHR2011000003 2010-03-16. 중개인 성폭력의 결과로 임신한 상태에서 입국하였다.

호구를 구입해줘 불법적인 신분을 면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호구 구입에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sup>69</sup>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제결혼의 경우에도 북한 여성과의 동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 여성 본인 및 가족들에게 도강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여성 본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난 이후 스스로 생활방편으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실제 강제결혼과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중국에서 현지어를 못하는 북한 여성이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체류를 위해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능력이 향상되면서 강제결혼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즉 강제결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남성과 동거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족 남성과의 강제결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상당 비율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당 비율의 한족 남성들은 북한 여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출산을 중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 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출산아동을 둔 탈북여성들도 중국 내 혹은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지 남성들이 동거를 제의하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동거를 수용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즉 현지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중국 조선족 혹은 한국 남성들이 동거

69. NKHR2011000067 2011-03-15. 증언자는 2000년경에 호구를 취득하는데 2,000위엔을 지급하였다.

를 제외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증언된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송금 혹은 북한 내 가족들의 국경이동 주선 등 적극적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북한 여성이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어도, 재탈북하여 동거남성을 찾게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대부분 재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sup>70</sup> 일부에서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업주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명분하에 착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sup>71</sup> 북한 여성들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음란 화상채팅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72</sup> 또한 한국인 대상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sup>73</sup>

## 라.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1987년 북한형법 제47조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는 것을 반역행위로 규정하여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117조에서는 단순월경행위 즉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탈북행위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1999년 형법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제47조에서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 밑에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

70. NKHR2011000030 2011-01-04.

71. 북한이탈주민 ○○○, 2007년 4월 6일, 서울에서 면접.

72. NKHR2010000006 2010-05-25; NKHR2010000017 2010-10-05; NKHR2010000018 2010-10-05; NKHR2010000080 2010-06-15; NKHR2010000082 2010-06-22.

73. NKHR2011000029 2011-01-18.

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약간의 내용 수정이 있었다. 2004년 형법은 구형법의 단순월경행위에서 규정한 국경을 ‘넘는’ 자의 규정을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법국경출입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하였다. 형법 제62조는 ‘조국반역죄’를 “국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도 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이외에도 인민보안단속법(1992년 12월 28일 채택, 2005년 7월 26일 수정보충)과 행정처벌법(2004년 7월 14일 채택, 2008년 5월 20일 수정보충)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제 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련행질서, 걸어나가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에는 위반자에 대해 직접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민보안단속법은 직접적으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되게 된다. 행정처벌법 제123조는 국경검사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해 3개월 이하 무보수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 <련행질서를 어긴 행위>는 “련행질서를 어겼거나 비법적으로 통제지역에 출입하였거나 국경을 넘나든 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엄중경고를 주거나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노동교양을 시킨다. 정상이 부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로동, 노동교양을 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sup>74</sup>

74. 행정처벌법 제17조는 노동교양, 무보수 교양을 5일 이상 6개월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를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것은 행정처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의 처리원칙)는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2004년 7월 동남아체류 탈북자 집단입국 이후 조국전선편지에서 남한입국 탈북자들이 납치유인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sup>75</sup> 국경관리부 ‘일꾼’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 준 국경출입협조죄(1999년 형법 제118조)를 ‘2년 이상 7년 이하 로동교화형’에서 2004년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제234조 비법국경출입협조죄)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는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국경수비대 등이 북한주민의 ‘도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sup>76</sup> 탈북자들은 비법월경죄 이외에도 외국화폐매매죄(제104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106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제107조), ‘력사유적 밀수, 밀매죄’(제198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1996년 제정, 1999년 개정)은 공민이 국경지역여행증명서 없이 “출입국을 한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출입국법 제45조)”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단속된 북한주민들은 변방부대를 거쳐 송환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사례에 따라 송환지역 노동단련대, 도집결소를 거쳐 지역기관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곧바로 지역기관(인민보안부)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지역기관으로 넘겨

75.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및 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해 ‘남조선당국자와 사이버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사주에 의해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인하여 납치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였다.

76. 탈북 초기와는 달리 북한과 중국 양측의 국경경비대 등 간에 사전 약속을 통해 연계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도강’하여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게 되면,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면 처벌 없이 곧바로 석방되거나, 가정으로 보내져 매일 인민보안부에 출두하여 비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송환 이후 처벌절차는 최초 구금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최초 구금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경우 혹은 근거리인 경우에는 보다 단기간에 형이 결정되며, 형량도 본인의 가족들의 영향력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크게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77</sup> 그러나 본인의 거주지가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와 거리가 먼 경우, 지역 인민보안부에 신변인수를 위해 출석하여야 하고, 이송과정에서의 도주우려, 운송수단의 확보, 가족에 대한 연락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구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처벌의 수위도 2000년 이후에는 정치범수용소로 이관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노동단련대에서 1~6개월 정도의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송환 이후 최종 석방까지 구금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한국인 접촉 등을 근거로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었던 사례들도 보고된다.<sup>78</sup>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강제추방도 국경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주민들의 1차 수용기관에서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송환지역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은 주로 온성, 무산, 회령, 신의주가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알몸수색,<sup>79</sup>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를 거친 후 수용하게 된다. 구류장에서

77\_ NKHR2009000023 2009-04-16.

78\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2001년 강제송환 이후 '안기부사람 접촉'이라고 기재하면 조기 석방해준다는 회유에 요덕 혁명화구역에 수감되어 2004년부터는 여자 소대장을 맡았다. 2004년 입소한 3년형의 수감자로는 조〇〇(단천), 김〇〇(은덕), 최〇〇(혜산), 강〇〇(무산)이 있었으며, 요덕 혁명화구역은 제〇〇〇〇군부대로 표시되었다. 탈북자를 수감하던 혁명화구역은 1999년에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08년 8월 20일, 서울에서 면접.

79\_ NKHR2009000023 2009-04-16.

남녀는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송환규모에 따라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몸수색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증언된다. 그러나 북한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자궁검사를 하거나, 발가벗긴 채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시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개인 신상품들을 압수하였으나, 일정 시점부터는 소지했던 물건을 석방 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소지한 돈으로 조사과정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노동단련대 등에서의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담당 보위원을 설득하여 국경 지역으로 동반 이동하여 중국에서 동거하던 남성과 전화연락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관련 ‘법일꾼’들에게 뇌물을 주고 조사문건을 조작하여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에서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 시기 및 회수, ‘도강’ 이후의 행적(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한국 행 여부, 인신매매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국경지역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뒤 ‘안전부 구류장’이나 국경지역의 ‘도집결소’로 보내진다.

북한의 형사소추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범죄행위를 밝혀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을 위한 예심절차를 거쳐야 한다.<sup>80</sup> 예심은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확정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불법국경이동에 대해서는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소지품 등이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르면,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검증 및 검진할 경우 “2명의

80. 북한법연구회 편,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집』(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p. 180.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을 검진할 경우에는 녀성을 림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강’의 목적과 중국 내에서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다른 송환자를 통해 정보를 캐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타 및 언어폭력,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형 감면을 명분으로 다른 송환자의 중국 내 행적을 증언하도록 유도한다. 예심기간은 2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4년 형법에서 노동단련형이 신설됨에 따라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내로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경우 검사의 승인에 따라 구류를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의 예심은 취조하여 넘긴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종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탈북죄로 체포구금 되더라도, 형기 없이 풀려나거나 ‘515상무’로 넘겨지는 것으로 보인다.<sup>81</sup>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106조)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결과를 살펴보면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류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강제낙태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sup>82</sup>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시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3년 10월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송환여성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낙

81. 북한이탈주민 장○○은 강제송환 이후 2006년 미성년자로 형기 없이 풀려났다. NKHR 2011000003 2010-03-16.

82. NKHR2009000010 2009-02-26; NKHR2009000048 2009-07-30; NKHR2009000078 2009-12-10.

태유도 및 영아방치 사망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강제송환자에 대한 처벌기록을 보면 1999년 이후에는 대부분 노동 단련형을 선고받아 왔다. 이러한 노동단련형은 1999년 형법에는 규정 되지 않고, 2004년 형법에 명문화되었다. 2004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동단련형은 행정처벌법 등에 명시된 노동단련 및 무보수 노동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V-1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장소	사건내용
NKHR2011000068 2011-03-15	목격	2009.	온성군 단련대	• 낙태 피해자: 여자 1명(21세)
NKHR2010000097 2010-06-22	목격	2009.01.	신의주 도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자 1명 (21세, 함흥 거주) • 낙태 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0000031 2010-11-19	특문	2009.09.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 영아살해 피해자: 여자 1명 • 영아살해 방법: 태아방치 또는 질식사망
NKHR2011000068 2011-03-15	목격	2010.	청진시 청진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자 1명 (22세, 연사군 거주) • 낙태이유: 중국인아이 • 낙태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1000231 2011-11-08	특문	2010.12.	해산시 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자 1명
NKHR2011000253 2011-12-20	목격	2010.12.	신의주시 신의주 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자 1명(20세) • 낙태시점: 임신24주 이전 • 낙태이유: 중국인아이 • 낙태방법: 병원에서 수술
NKHR2011000253 2011-12-20	목격	2010.12.	신의주시 신의주 집결소	• 낙태 피해자: 여자 1명(22세) • 낙태시점: 임신24주 이전 • 낙태이유: 중국인아이 • 낙태방법: 병원에서 수술

1차 조사를 통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주지역 노동단련대에서 노동단련형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대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노동단련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엄격한 생활관리를 실시하고 노동의 강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기는 최초 구류시점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송환자들은 노동단련형이 선고된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의 정확한 죄목과 형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지역 국기안전보위부와 인근 노동단련대에 이감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출신지역 안전원이 신속한 호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집결소의 수감자가 많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집결소의 수감기간도 지역호송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황해도 및 강원도 등 내륙지역 출신 탈북자의 경우 도집결소 수감이 장기화되면서 영양부족이나 불결한 수감시설로 인한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하기도 한다.<sup>83</sup>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가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판결판정집행법 제18조 3항)”를 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면담결과를 보면,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중병(결핵, 탈수증, 허약 등) 혹은 전염병인 경우에는 형이 중지되고,<sup>84</sup> 거주지역의 안전원에게 호송해 가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7개월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경우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85</sup> 오히려 형 집행과정에서 임신여성에게 노

83\_ NKHR2009000011 2009-03-03.

84\_ NKHR2011000019 2011-01-18.

85\_ 북한이탈주민 ○○○은 2004년 4월 임신상태에서 강제 송환되었으며, 보위부에서 6일 동안 조사 후 기정으로 풀려났다. 이는 예외적인 것으로 당시 김정일 방침이 하달되어 소지한 물품도 압수하지 않고 다만 돈만 뺐은 것으로 증언하였다. NKHR2008000003 2008-07-09.

동을 시키거나<sup>86</sup> 구타하여 유산을 유도하는 경우,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여 낙태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출산한 여성들의 아이를 돌보지 않음으로써 사망하도록 유기하는 조치들을 안전원들이 직접하거나 혹은 조기석방을 명분으로 동료 수감자가 영아유기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강제송환 탈북여성이 임신한 상태인 경우에도 탈북 이전에 임신한 것이 입증되거나 남편이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와 다르게 낙태 혹은 영아살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sup>87</sup> 극히 드문 경우로 2006년 강제 송환된 임신여성이 뇌물을 주고 혜산집결소에서 석방되기도 하였다.<sup>88</sup>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를 데리고 송환되었을 경우 혹은 국가안전보위부, 도집결소 등 구류시설에서 출산한 경우 중국의 남성 가족에게 연락하여 아이를 데려가도록 한다는 증언도 있다.<sup>89</sup>

노동단련형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해명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장기간 구금이 필요한 경우, 도단위 집결소에 재수용된다.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후, 해당 지역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로 넘겨져 처벌을 받는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지역 노동단련대 혹은 인민보안부에 이관되어 수용되게 된다.

북한당국이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왔으나,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0</sup> 2004년 이후 탈북하다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86\_ NKHR2009000025 2009-03-30.

87\_ 북한이탈주민 ○○○은 임신 8개월로 강제 송환되었으나, 탈북이전 임신 사실이 입증되어 낙태조치를 면할 수 있었다. NKHR2008000003 2008-07-09; 북한 남성의 아이인 경우에는 낙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NKHR2009000032 2009-05-19.

88\_ NKHR2009000023 2009-04-16.

89\_ 북한이탈주민 ○○○, 2007년 3월 7일, 서울에서 면접.

90\_ 2007년 3월 1일부터 탈북하려다 붙잡혔거나,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형기가 최고 5~7년까지 높아졌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3.5).

특히 가족단위로 탈북하려다 단속된 경우에는 한국행 기도협회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2004년 이후에도 지역 및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sup>91</sup> 2008년 2월 20일에는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에서 탈북자 본인 및 ‘도강’ 알선자 15명(남자 2명, 여자 13명)을 공개처형하였던 것으로 보고된다.<sup>92</sup> 탈북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문건에 기재된 형기보다 연장되는 사례도 발견된다.<sup>93</sup> 반면 실제 형기가 노동단련형에서 노동교화형으로 강화되었으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병보석으로 석방되거나 대사령으로 형기 집행 도중에 석방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된다.<sup>94</sup> 식량난으로 인해 국경지역 주민들의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완화되었던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새로운 추세이다. 즉 국경지역에 거주하던 탈북자 가족을 국경과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된다.<sup>95</sup> 아주 드물게는 공개재판으로 결정된 가족추

91. 이는 송환즉시 가족들이 담당기관에 뇌물을 공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형이 크게 경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8월 김○○ 등 4명은 탈북 재범이라는 명목으로 교화 3년형을 받아 함흥9교화소에 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9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3.5).

93. 북한이탈주민 ○○○은 2003년 10월 초 비법월경죄로 노동단련대 1년형을 선고받고 사회안 전성(현 인민보안부) 11호(증산) 단련대에서 1년 4개월간 수감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에도 본인과 자매가 2004년 3월 평북 의주군을 에서 도강죄로 11호 교양소 1년형을 구형받았으나, 실제로는 1년 이상 수감되었다. 북한이탈 주민 ○○○, 2008년 6월 15일, 서울에서 면접.

94. 북한이탈주민 ○○○은 2005년 청도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개인(탈북자 출신 한국적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13명이 집단송환 되었으며, 교화 3년형을 받고 전거리교화소에서 대사로 1년 반 만에 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8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부인과 탈북하여 부인이 체포되자 자진귀환하였으나, 가족 탈북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오로단련대에서 수감되었다가 6개월 만에 대사로 석방되었다. 먼저 송환된 부인 ○○○은 1년 6개월 형을 받고 증산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대사로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9월 6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은 귀국자 출신으로 한국기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하여 기본조사 문건을 태우고 노동단련형(4개월)을 받아, 택간 업무(단련대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업무)를 맡았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7월 26일, 서울에서 면접.

95. 2004년 4월 온성군 온탄구에서 강○○ ‘도강’으로 가족추방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회령시 계림동 한○○·김○○ 가족추방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 2008년 7월 8일,

방이 ‘신소’로 추방이 취소되기도 하나,<sup>96</sup> 대부분은 추방지역으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전(前)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증언된다. 지역주민의 탈북으로 지역책임일꾼들이 철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sup>97</sup> 따라서 지역책임자가 초기에 탈북자 가족이 뇌물을 공여하고 처벌완화를 요구할 경우 문건을 폐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본인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4〉 탈북자 처벌 사례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구금 장소	처벌내용	기타
NKHR2010000017 2010-10-05	경험	2009.02.	김형직군 읍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6개월	-
NKHR2010000043 2010-11-02	경험	2009.02.	양강도 구류장	노동단련대 5개월	2차 송환
NKHR2010000021 2010-10-12	경험	2009.07.	백암군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6개월	구금 중 도주 (실제 20일 구금)
NKHR2010000067 2010-04-27	경험	2009.08.	청진시 농포집결소	도집결소 1개월	2차 송환
NKHR2010000097 2010-06-15	경험	2009.08.	해산시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2개월	-
NKHR2011000018 2011-01-18	경험	2010.05.	신의주 집결소	도집결소 구류 1개월 10일	2차 송환
허OO	-	2010.03.	-	구금 중 조기퇴소(뇌물)	6차 송환

서울에서 면접; 2007년 11월 김OO의 한국행 기도로 본인은 교화형에 처해지고 가족은 온성에서 함남 장진으로 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7월 2일, 서울에서 면접; 2004년 무산읍에서 20~30세대의 ‘도강자’ 가족이 강원도로 추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6월 25일, 서울에서 면접; 2004년 8월 김OO의 ‘도강’으로 가족이 함북 회령시 세천군에서 함남 농촌지역으로 추방되었다. NKHR2008000011 2008-08-12.

96\_ 2005년 1월 탈북을 시도하다 신의주에서 공개재판을 받아, 가족추방이 내려졌으나 ‘신소’로 추방을 면하였다. 북한이탈주민 OOO, 2008년 10월 21일, 서울에서 면접.

97\_ NKHR2008000011 2008-08-12.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구금 장소	처벌내용	기타
NKHR2011000144 2011-06-14	특문	2011.	함북 무산	현장사살	2011년 강제송환 되어 함북도 무산군으로 온 탈북자(가족 4명)를 보위부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현장 사살했다고 특문함.
NKHR2011000187 2011-08-16	특문	2011.	함북 회령	정치범수용소	• 처벌 피해자: 김○○ (남, 26~30세, 회령 거주) 2010년에 강제송환 되어 이후, 도강(한국기도) 죄로 '함북 회령 제22호 관리소'에 구금됨.
NKHR2011000232 2011-11-08	경험	2011.01.	백암군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6개월	증언자는 도강(한국기도) 죄로 노동단련대 6개월 선고 받음.
NKHR2011000143 2011-06-14	특문	2011.02.	양강도 혜산시	노동교화형 처벌	-
NKHR2011000244 2011-11-22	경험	2011.02.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	구류장 구금	증언자는 '도강'으로 구류장에 구금되었으나, 구금중 도주함.

〈표 V-1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장소	처벌내용
NKHR2011000109 2011-05-11	목격	2009.	함북 회령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피해자: 여자 1명(증언자 어머니)
NKHR2010000089 2010-06-08	목격	2009.01.	양강도 혜산시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이유: 도강자 가족 • 처벌피해자: 남자 1명, 여자 2명
NKHR2010000041 2010-10-26	목격	2009.07.	함북 무산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이유: 도강자 가족 • 처벌피해자: 여자 1명
NKHR2010000101 2011-06-15	목격	2009.07.	함북 회령	• 처벌내용: 강제추방 • 처벌피해자: 남자 2명, 여자 2명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장소	처벌내용
NKHR2011000077 2011-03-22	목격	2009.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정치범수용소</li> <li>• 처벌피해자: 남자 2명, 여자 2명</li> <li>• 한국입국한 가족으로 인하여 관리소 구금됨.</li> </ul>
NKHR2011000231 2011-11-08	목격	2010.08.	양강도 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강제추방</li> <li>• 처벌이유: 탈북자(남한입국) 가족</li> <li>• 처벌피해자: 남자 1명, 여자 4명</li> </ul>
NKHR2011000105 2011-05-03	경험	2010.10.	평안북도 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강제추방</li> <li>• 처벌이유: 탈북자 가족</li> <li>• 처벌피해자: 남자 2명, 여자 1명</li> <li>• 증언자의 시형 탈북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 강제추방 당함.</li> </ul>
NKHR2011000209 2011-09-20	경험	2011.	평양 대동강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환경제대' 처벌</li> <li>• 처벌이유: 탈북자(한국기도) 가족</li> <li>* 환경제대: 본민주변 환경의 잘못으로 군 제대됨.</li> </ul>
NKHR2012000002 2012-01-10	특문	2011.09.	양강도 혜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30 가구 강제 추방</li> <li>• 2011년 9월 혜산시 내 탈북자 가족 30세대 강제추방을 특문함.</li> </ul>

## 마.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북한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였다. 북한 여성을 중국에 매매한 개인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함으로써,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지속하였다.

〈표 V-16〉 인신매매 관련 처벌 사례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장소	처벌내용
NKHR2010000069 2010-10-26	목격	2008.06.	함북 회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공개처형</li> <li>• 처형장소: 회령시 산업동 시경기장</li> <li>• 처형자: 남자 5명, 여자 3명</li> </ul>

증언자	구분	사건시기	사건장소	처벌내용
NKHR201000011 2010-09-14	득문	2009.01.	함북 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공개처형</li> <li>• 처형장소: 무산군 강변쓰레기장</li> <li>• 처형자: 남자 1명</li> </ul>
NKHR2011000186 2011-08-16	득문	2009.01.	함북 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li> <li>• 처형자: 남자 2명, 여자 2명</li> </ul>
NKHR2011000209 2011-09-20	득문	2009.01.	양강도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교화 8년형</li> <li>• 처벌피해자: 1명</li> </ul>
NKHR2011000034 2011-01-04	목격	2009.03.	함북 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교화 6년</li> <li>• 처벌피해자: 11명</li> </ul>
NKHR2011000231 2011-11-08	득문	2009.07.	양강도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li> <li>• 처형자: 남자 1명(해산 거주)</li> </ul>
NKHR2011000155 2011-07-05	득문	2009.09.	함북 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li> <li>• 처형자: 남자 2명, 여자 2명(강OO, 최OO)</li> <li>• 인신매매 중개 총인원수: 55명 정도</li> <li>• 14명의 인신매매 단 중 14명 중, 2009년 9월, 무산군 장마당에서 4명은 공개처형 됨. 4명은 무기교화형을 받음. 나머지 6명은 교화 13~15년형을 받음.</li> </ul>
NKHR2011000070 2011-03-15	득문	2009.11.	양강도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li> <li>• 처형자: 여자 1명(해산 거주)</li> </ul>
NKHR2011000129 2011-05-31	목격	201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교화 13년</li> <li>• 처벌피해자: 남자 1명(이OO, 30세)</li> </ul>
NKHR2011000052 2011-02-15	득문	2010.06.	양강도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공개처형(총살)</li> <li>• 처형자: 여자 1명</li> </ul>
NKHR2011000183 2011-08-09	경험	2010.08.	함북 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교화 13년 (인신매매 및 도강죄로 처벌받음.)</li> <li>• 처벌피해자: 남자 1명 (남OO, 36세, 온성 거주)</li> </ul>
NKHR2011000103 2011-05-03	목격	2011.01.	양강도 김형직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모름</li> <li>• 처벌피해자: 남자 1명(소대 정치지도원), 남자 1명(군인)</li> </ul>
NKHR2011000191 2011-08-23	득문	2011.01.	함북 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교화 15년형</li> <li>• 처벌피해자: 남자 1명(리OO)</li> </ul>
NKHR2011000195 2011-08-23	목격	2011.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내용: 교화 15년형</li> <li>• 처벌피해자: 남자 1명 (장OO, 45세, 연사군 거주)</li> </ul>

〈표 V-16〉에서와 같이, 북한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해 공개처형과 같은 극형을 실시하였다. 물론 단순 도강안내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와 국경지역에서 마약 및 골동품 밀매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공개처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무산, 회령, 청진, 온성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도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나름대로 대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처형의 빈도로 볼 때, 1998년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인신매매 관여자는 공개처형의 대상으로 규정될 만큼 북한당국은 중국과 함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과 2008년도에는 탈북자에 대한 대대적인 중앙검열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행불자로 취급하던 경우도 적발하여 가족들(부모 및 형제자매)을 인신매매범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sup>98</sup> 2010년도에도 탈북자의 가족을 인신매매범으로 규정하여 강제 추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2011년도도 탈북자 가족의 대규모 강제이주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바.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을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38명,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에는 1,894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1,383명이 입국하여 2004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는 탈

<sup>98</sup> 2007년 12월 27일 헤산시 비사그루빠 총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는 행불자와 인신매매 관련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도 국내입국한 딸을 ‘팔아먹었다’는 사유로 2008년 1월 양강도 갑산군 탄광지역으로 추방되었다. NKHR2008000020 2008-09-17.

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등 현지국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들의 국내입국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활동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6년 2,018명,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 2009년 2,927명이 입국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입국자가 다소 감소하여 2,379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2,737명이 입국하여(잠정) 현재까지 총 입국인원이 23,100명을 기록하였다. 최근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중국 혹은 북한에 체류하던 가족이 입국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99</sup> 중국 내 외교공관 및 관련시설을 활용한 기획입국 시도는 2004년 이후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중국을 통한 국내입국 대기시간이 최대 2년여까지 장기화되면서, 태국 등 동남아국가를 통한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탈북자의 한국 입국 소요시간이 점차 짧아져, 탈북 후 1년 이내에 국내 입국한 경우가 2009년의 30% 수준과 2010년 39%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V-17〉 최종탈북 - 남한입국 기간 별 탈북자 통계

최종탈북 - 남한입국 기간			
전체	230명(100%)		
	구분	건수(명)	비율(%)
응답 219명(95%)	1개월 미만	1	0
	1~6개월	124	57
	6~12개월	16	7
	1~2년	15	7
	2~3년	9	4

99. 통일부에 따르면, 가족동반 입국자의 비율은 2009년 12%에서 2010년 39%, 2011년 상반기 4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한국에 정착한 가족이 있는 비율도 2009년 23%에서 2010년 33.4%, 2011년 상반기 47%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분	건수(명)	비율(%)
응답 219명(95%)	3~4년	8	4
	4~5년	14	6
	5~6년	6	3
	6~7년	5	2
	7~8년	2	1
	8~9년	8	4
	9~10년	1	0
	10년 이상	10	5
	소계	219	100
무응답 11명(5%)	-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0년에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추세와 동일하게 여성 단독 입국비율(75%)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지역은 대부분 함경도(85%)이고, 출신계층은 노동자·농장원(95%)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에도 해상으로 입국하는 사례들이 동해 및 서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등 체류지에서의 단속강화로 인한 신변위협,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이미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가족 입국을 위한 경제적 지원, 관련 전문브로커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에 기인한다. 2009년 이래의 지속적인 특성으로는 한국에 이미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중개인 역할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 출신 입국 중개인의 상당수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입국 중개인 수수료는 대개 한화 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입국 중개인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개인 간의 유치경쟁 등이 나타나 일부 중개인은 탈북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한족 마을을 방문하여 한국입국을 설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00</sup>

가족단위의 탈북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20~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출 시킨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에 남겨둔 자녀와 부모를 데려오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도 매우 다양해졌다. 고위 간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 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과 정착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국, 영국 등 제3국으로 재이동하여 정치적 망명 내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 망명’ 사실이 드러나 국내로 귀환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sup>101</sup>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밀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하다 재탈출하여 국내입국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돕는 시설인 제2하나원 착공식이 2011년 7월 7일 진행되었다. 2012년 말 제2하나원이 완공되면 1년에 최대 5,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받을 수 있고 고학력·전문직 탈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sup>100</sup> 중국 오지에 위치한 한족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한국입국관련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러한 지역에서는 중국 내 탈북여성 보호 역할을 하는 교회 관계자들과 입국중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된다. 윤○○, “중국 내 탈북자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비공개 자문회의 (2010.6.14).

<sup>101</sup> 『연합뉴스』, 2011년 10월 6일.

## 2011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 01.01 국제오픈도어선교회, 북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선정
- 01.02 정부, 전시납북피해 신고 접수
- 01.04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4시간 콜센터’ 운영 방침
- 01.07 러시아, 대북식량지원 사업에 300만 달러 기부
- 01.11 북한 김정은, 탈북자에 사살명령
- 01.12 남북 판문점 적십자 채널, 8개월 만에 정상화
- 01.14 유럽연합, 8백만 달러 규모 대북지원 사업 시행
- 01.18 “북한정치범 15만 명 6개 수용소에 수감”
- 01.19 탈북자, 국내전문가 중심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설립
- 01.19 유엔, 상반기 긴급구호기금 500만 달러 대북 지원
- 01.21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 개최
- 01.23 굿피플, 탈북자 편의점 7호점 개업 완료
- 01.25 탈북자 5명 미국 입국
- 01.25 탈북 여의사 김경희·이자인씨 한국서 의사고시 합격
- 01.25 통일부, 대북인도지원단체 간담회 개최
- 01.27 캐나다 의회, 내달 1, 3일 북한인권청문회 개최
- 01.28 한동대학교선교단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전시회”
- .....
- 02.01 캐나다, 작년 탈북자 42명 난민 인정
- 02.06 킹 미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방한
- 02.07 북한민주화위원회 첫 ‘북한 인권세미나’ 개최
- 02.07 새터민, 인천 남동구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 02.09 대구지법, 보험사기 탈북자출신 40대 집행유예
- 02.14 전시 남북 피해 신고, 한 달 새 125건 접수
- 02.16 탈북자연내 정착지원금 100만 원 증액
- 02.18 “황장업 동태 파악” 재포섭 간첩에 항소심도 실행
- 02.20 2010년 탈북자 취업 두 배로 늘어
- 02.20 법원, 탈북자 도운 조선족 첫 난민 인정
- 02.21 스위스, 평양국제경영학교 지원 9월 중단
- 02.24 이회창, 탈북 국군포로 만나
- .....
- 03.03 인천시, 대북협력사업 확정
- 03.06 탈북자 2명, 난민 자격 미국 입국
- 03.09 기독교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설립
- 03.11 북한인권시민연합, 캐나다 정부 인권상 수상
- 03.14 북한인권침해 센터 개소
- 03.15 ‘무산일기’, 도발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 03.18 충남도의회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문 채택
- 03.18 북한, 한국연고자·탈북자 가족 등 대대적인 추방
- 03.21 숙대 북한인권동아리 하나(HANA)와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북한인권사진전 개최
- 03.22 북한인권단체 미국서 ‘천안함 1주기’ 추모행사
- 03.24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 마르  
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
- 03.25 법원 “귀순사실 알려져 피해, 국가책임 없다” 판결
- 03.28 군산경찰서, 탈북자 15명에 가구·생필품 전달
- 03.30 유엔, 북한 소행 의심 실종사건 조사 착수
- 03.31 탈북자단체, 김포에서 대북전단 20만 장 날려보내
- 03.31 영국대사관, 탈북자 영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 03.31 정부, 북한 취약계층 민간 지원 재개 허용

- 04.02 프랑스, 북한에 21만 달러 식량지원
- 04.03 탈북여성 2명 일본입국
- 04.03 귀환 국군포로 지원금 월액으로 지급
- 04.04 숙대 북한인권동아리 하나(HANA)와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북한인권사진전 관객수 4만 명 돌파
- 04.07 3월 탈북자 2명 난민자격 미국 추가입국
- 04.11 국회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인권사진전
- 04.18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지식인 200인 선언
- 04.20 경기청, 탈북자 정착 위한 ‘취업설명회’ 개최
- 04.20 통일부, 민간단체 북한취약계층 지원 2건 추가허용
- 04.22 탈북자 남북통합 역군화 아카데미 개강
- 04.22 ‘우리민족서로돕기’ 임창순상 수상
- 04.24 북한인권개선 촉구 ‘북한자유주간’ 개막
- 04.25 동아대서 2주일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전시회 개최
- 04.26 서울 강서경찰서-대사·청산학원 탈북자 자녀 무료 수강 협약  
체결
- 04.26 통일부, ‘취약 계층 지원 협의’ 종교인 방북 승인
- 04.27 민주평통, 탈북자 합동 결혼식
- 04.27 탈북자 52%, 햇별정책이 북한세습 가져와 주장
- 04.27 경남 ‘통일딸기’ 사업 중단 위기…통일부 ‘불허’
- 04.27 통일부, 말라리아 지원 민간단체 물품 지원 승인
- 04.28 인천시,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 04.28 북한 정찰국 재포섭 ‘전향간첩’ 징역 3년 6개월 확정
- 04.29 ‘무산일기’, 트라이베카영화제 신인감독상
- 04.29 “UNICEF 대북지원 예산 70% 늘려”
- 04.30 중국, 일본영사관 탈북자 3명 출국 허가

- 05.04 대만서 북한인권 캠페인 첫 행사
- 05.05 주한 캐나다대사관,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인권상 수상 기념 행사
- 05.06 김황식 총리, 하나원 방문…역대 총리 중 처음
- 05.07 태국 불법입국 탈북자 6년만에 53배 증가
- 05.07 일본 도착 탈북자 3명… “도쿄-오사카에 정착”
- 05.09 통일부, 민간단체 북한취약계층 지원 5건 추가허용
- 05.12 여수시, 16일부터 시청현관서 북한인권사진전 열려
- 05.13 국내 입국 탈북자, 2만 1천 명대 진입, 68%가 함경북도 출신
- 05.13 평양외곽 납북자 거주지 인공위성 사진 공개
- 05.16 화성서부경찰서-중앙병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약
- 05.16 연평 도발 이후 첫 대북 지원, 말라리아 예방약과 방충망 등 방역물품 2억 원 어치
- 05.17 탈북자 오세혁씨 영국석사과정 첫 장학생에 뽑혀
- 05.17 기독교 단체, 북한 밀가루 지원 문제로 당국과 마찰
- 05.18 중국 주재 일본 공관, 탈북자 보호 중단
- 05.19 NK지식인연대, 인터넷 방송국 개국
- 05.21 로버트 킹 미국인권특사 24~28일 방북
- 05.21 북한 다룬 다큐 ‘김정일리아’ 내달 개봉
- 05.23 경기 인천,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전달
- 05.24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의료협약 체결
- 05.26 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인도적지원차 오늘 개성 방문
- 05.26 수출은행 새터민 고용 기업에 후원금 2,000만 원 전달
- 05.27 북한이탈주민 전용 콜센터 개소
- 05.27 북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석방

- 06.02 프리덤하우스 ‘북한, 최악 중 최악’ 인권탄압국 선정
- 06.07 통일교육원장에 탈북자 출신 조명철 박사 임명
- 06.10 당정, 북한인권법·민생법 분리처리 합의
- 06.14 북한, “북한인권법 제정엔 남북관계 완전 격폐” 위협
- 06.14 인천시, 대북 지원사업 사진전·개성공단 물품전시회 개최
- 06.15 양천구, 탈북자 초등생 자녀 공부방 운영
- 06.15 미국 메릴랜드주, 5월 10일 ‘한국 이산가족 날’로 지정
- 06.16 아일랜드, “대북 식량지원에 35만 달러 기부”
- 06.17 기아대책, ‘연평도 포격’ 후 첫 대북 민간지원
- 06.21 UNHCR, “해외 탈북 난민 1천 명 돌파” 발표
- 06.22 부산역에서 “그곳엔 사랑이 없다”...북한인권 사진전 열림
- 06.23 탈북자단체장들 6·25 앞두고 현충원 참배
- 06.23 탈북자송환 중국인사 입국금지법 미국하원서 발의
- 06.24 북한인권단체들 ‘탈북자 복송저지’ 유럽순례 마쳐
- 06.24 탈북 국군포로 2세 인권위 집단 진정서 제출  
“북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남한에 와서도 어떠한  
예우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
- 06.28 미국, 북한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
- 06.29 ‘무산일기’, 이탈리아 페사로 영화제 대상
- .....
- 07.02 “EU, 2008년부터 북한에 3천만 달러 상당 지원”  
유럽연합 원조 협력청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2천240만 유로(미화 약 3천254만461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일 보도
- 07.05 미국의 소리(VOA) ‘탈북자 2명 지난달 미국 입국’ 보도
- 07.05 황장엽 안가 리모델링, 탈북단체 반발

- 07.07 탈북 난민→미국 시민권자, 1호 나옴.
- 07.07 화천 제2하나원 착공…고학력자 맞춤형교육 실시
- 07.08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 돕기’ 자원봉사 캠프
- 07.08 인도 대북지원 식량 남포항 도착  
인도 외교부가 5일 100만 달러로 사들인 콩 900톤과 밀 373톤 등 총 1천 273톤의 긴급 대북지원 식량이 남포항에서 하역을 마쳤다는 성명을 발표
- 07.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 동포사랑 TV 개국
- 07.12 북한주민 상속 소송 “유산일부 지급” 판결
- 07.13 스웨덴·중국, WFP대북지원에 260만 달러 기부
- 07.15 북한, ‘북한인권백서 2011’ 발간 비난
- 07.15 탈북 난민들 “영국이 좋아”  
난민신분 탈북자 917명의 63.3%인 581명이 영국에 거주
- 07.18 ‘무산일기’ 예레반영화제서 감독상
- 07.20 영국의회, 북한인권 조사 촉구 동의안 제출
- 07.22 호주, 유엔 대북식량 지원에 524만 달러 지원
- 07.25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정부차원 첫 전수조사착수
- 07.26 민화협, 북한 사리원에 밀가루 300톤 전달
- 07.27 전일에 서울서 ‘전시납북자 기억의 날’ 행사 개최
- 07.28 한국카리타스, 북한에 밀가루 100톤 전달
- .....
- 08.02 정부, 6·25전쟁 납북자 55명 첫 공식 인정  
정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55명에 대해 6·25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로 인정
- 08.02 민화협, 대북 밀가루 2차 전달
- 08.09 북-미 이산가족 서신교환 참가자 명단 작성

- 08.09 “국군포로 탈북자에 일시금 대신 월정액 지원” 결정
- 08.10 라면 등 50억 규모 수해지원 품목 북측에 전달
- 08.11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
- 08.16 북한 김정일, “평북도 자본주의 날라리판”…통제강화
- 08.18 북한 법적절차 밟아 공개처형…판결문 첫 공개
- 08.18 탈북자들, 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
- 08.18 한국정부의 강화된 ‘밀가루 모니터링’ 북한이 사실상 수용
- 08.19 러시아 무상지원 밀가루 5만 톤 북한에 도착
- 08.25 김정호 NHN 고문, 북한 아동에 ‘곰보빵’ 선물
- 08.26 시드니에서 북한 인권 일러스트 전시회 열려
- 08.26 한국 국적 취득한 탈북자 호주 위장 망명시킨 조직 적발
- 08.29 “베이징 한국영사관서 탈북자 집단이탈”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서 생활해오던 북  
수의 탈북자가 지난달 19일 영사관 측에 요청해 영사관을  
떠났음.
- 08.31 자유북한운동연합, 김포서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
- .....
- 09.02 북한인권단체 “외교부가 탈북자 인권침해” 제소
- 09.11 탈북자단체 북한정부수립일 맞아 임진각서 전단살포
- 09.18 미국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방한
- 09.19 외교부, “재외공관 보호 탈북자 378명” 발표
- 09.19 통일부 22일 청평서 이산가족 초청행사
- 09.20 “이탈리아, WFP 대북지원에 43만 달러 기부”
- 09.22 인천경찰, 탈북자 숙여 대출금 9천여 만원 횡령 30대 구속
- 09.22 중국, 연변서 대대적 탈북자 단속… 은신처 3~4곳 덮쳐 22명  
체포
- 09.23 “북한, 지난해 60여명 사형”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FP)발표

- 09.29 탈북자단체 ‘독침 테러기도’ 후 첫 대북전단 살포
- 09.30 북민협, 북한수해지역에 밀가루 첫 지원  
북민협은 30일 북한 내 수해지역을 돕기 위해 밀가루 250톤 등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인도지원물자를 북한에 전달
- .....
- 10.02 탈북자단체 마라톤대회 열어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이끌던 (사)북한민주화위원회(북민위) 주최 ‘2011 한반도통일마라톤대회’가 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림.
- 10.04 정부 대북 수해지원 ‘북한 무반응’으로 무산
- 10.06 “통영의 딸 구출하자” 서울역광장서 캠페인
- 10.0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채택
- 10.06 ‘독침테러’ 기도 탈북자 간첩 구속기소
- 10.06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 “위장망명 탈북자 109명 국내 유턴”
- 10.06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워싱턴 세미나 개최
- 10.06 신변보호 경찰차 고의 추돌 탈북자 집행유예 2년
- 10.07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 “납북억류자 517명 중 어부가 458명” 발표
- 10.07 대법 “납북 실종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 10.10 탈북자단체 북한노동당 창당일 임진각서 전단 살포
- 10.10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타계 1주년 추모식 거행
- 10.14 KBS, 탈북자·다문화부부 50쌍 합동결혼식 개최
- 10.15 한국탈북민연합회(회장 임창호 목사) 주최 부산서 북한이탈 주민 운동회 열려 탈북민 300여 명이 참가
- 10.18 황장엽 이후 최고위 탈북자, 국정원 연구소 재직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핵심 간부가 국가정보원

- 산하 연구소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
- 10.19 내년 이산가족 지원 예산 74.8% 삭감
- 10.25 탈북자들의 애환 다룬 영화 ‘선처’ 개봉
- 10.27 ‘북한인권 특별전시’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서호갤러리에서 27일부터 열림.
- 10.28 탈북자단체들, 중국대사관 앞서 강제송환 규탄
- 10.30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탈북자가 이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진정서 제출

.....

- 11.04 캐나다서 탈북자 100여 명 참여한 ‘탈북민협회’ 결성
- 11.05 서해상 탈북자 21명, 인천 통해 입국
- 11.07 북한, 압록강 건너 탈북자 국경서 사살
- 11.08 정부, WHO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 11.09 하나원, 인천적십자병원과 탈북자 의료지원협약
- 11.10 러시아, 북한에 식량 5만 톤 지원 완료
- 11.13 르몽드, 탈북자 교육기관 하나원 소개
- 11.15 일본민간단체, 탈북자에 첫 일어교육 실시
- 11.15 정부, 북한어린이 100만 명 접종 간염백신 지원 완료
- 11.20 탈북자 위장 북한 간첩 김모씨 구속
- 11.22 남북사랑네트워크(이사장 동영진), 탈북자 지원을 위한 후원 의 밤 개최
- 11.23 제네바서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 개최
- 11.23 탈북자단체들 ‘연평도 1주년’ 규탄행사
- 11.23 미국적십자사, 북한에 이산가족 서한 전달
- 11.26 북한인권단체 오두산전망대서 북한에 양말풍선 띄워
- 11.30 압록강 건너던 북한주민 또 사살

- 12.01 평화대사협의회, 북한에 밀가루 300톤 2차 지원
- 12.02 민화협, 북한안주시에 밀가루 1천 톤 지원
- 12.03~05 영국정부, 북한대표단과 인권·핵문제 논의
- 12.08 캐나다 의회, '통영의 딸' 결의안 채택
- 12.09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북한 인권개선 촉구 집회 개최
- 12.09 미국 북한인권단체, 국회에 북한인권법 촉구 서한 발송
- 12.09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북한인권 개입' 쟁기대회 개최
- 12.13 정부, 납북피해신청 264건 중 217건을 납북사건으로 인정
- 12.14 미국 하원, '한국전쟁 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결의안 채택
- 12.20 탈북자들, 주영 북한대사관 진입 시도
- 12.21 탈북단체, 조문반대 대북전단 살포

##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총 52명)

날짜	대상자	명수	장소	죄목
2009년 12월	함북 남양 국경경비대 소대장	1명	함북 남양	○ 마약밀매, 기밀누출 ○ 인신매매
	시위자(名·性別미상)	2명	함북 함흥	○ 화폐개혁 관련 시위
	시위자(名·性別미상)	2명	함북 청진	○ 화폐개혁 관련 시위
	일반범죄자 (남 8명, 여 2명)	10명	평양시 형제산구역 인근공터	○ 강도·강간·소매치기· 매춘 등
1월	함북 연사 국경경비대원	1명	함북 연사	○ 일가족 6명 탈북 지원
	함북 함흥 군수공장 노동자(남)	1명	함북 함흥	○ 재남 탈북친구에게 휴대폰을 통해 내부정보 유출
2월	재북화교(名·性別미상)	2명	함북 청진	○ 내부정보 유출 혐의
3월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및 리태일 부부장	2명	평양시 강건군관학교	○ 화폐개혁 실패책임 ○ 한국과 연계한 간첩혐의
	리기웅(38세, 남)· 오충일(24세, 남)	2명	평양시 낙랑구역 인근공터	○ 신권화폐 37만 6천 원 위조·유통
	김승필 중앙은행 양강도지점 지배인(남)	1명	양강도 혜산	○ 대규모 횡령혐의 ○ 6명의 여자와 불륜관계
4월	함북 회령 국경경비대 소대장	1명	함북 회령 신암구역 사격장	○ 인신매매, 탈북목인 ○ 국가·군사비밀 유출
	소매치기 일당	17명	평양시	○ 소매치기 범죄조직 결성 ○ 김정일 비난
5월	평남 평성시 지하교인 (名·性別미상)	3명	평남 평성시 구월동	○ 기독교 전파
6월	일반범죄자 (名·性別미상)	3명	함북 온성	○ 살인죄 2명 ○ 인신매매 1명
7월	함북 회령 양정사업소 노동자(25세, 남) 및 남동생	2명	함북 회령시 종합경기장	○ 탈북자 여동생 통화 적발 ○ 보위부원 살해
	함북 청진 주민 (名·性別미상)	2명	함북 청진시 청년공원	○ 김정일 형상 패러디 ○ 화폐개혁불만 뼈라살포 * 동조자 3명은 무기징역



2012



#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9 788984 796539

93340

ISBN 978-89-8479-653-9